

「미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제도화 기초연구」

2021. 6.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미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제도화 기초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6월

-
- 주관연구기관 :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 : 이 동 기(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변호사)
 - 공동연구 : 최 태 만(국민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김 남 시(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교수)
박 경 신(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연구보조 : 임 수 아(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한 효 정(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

목 차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 배경	3
제2절 연구의 필요성	4
제2장 미술 관련 법·제도적 현황	6
제1절 미술 관련 문화예술 정책 및 제도	6
제2절 미술 관련 법제	50
제3절 미술 진흥을 위한 단일 법률 제정 필요성	64
제3장 미술진흥에 관한 법제 정비	65
제1절 미술진흥 관련 법·제도적 쟁점	65
1. 주요 용어들의 법적 개념	65
2. 미술창작자 등의 권익 보호 제도화	72
3. 소비자 보호	98
4. 미술품 유통업 및 감정업 신고제	112
5. 감정센터의 설립 및 업무범위	154
6. 공공미술품의 관리와 미술은행	175
7. 통합미술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용	187
8. 국립미술진흥원의 설립	192
제2절 미술진흥에 관한 법률(안)	202
1. 제정안의 체계	202
2. 제정안의 조항별 검토	204
가. 총칙	204
나. 창작, 전시, 유통 및 향유 지원	221
다.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267
라. 국립미술진흥원	278

마. 권한의 위임·위탁	290
바. 부칙	291
제4장 미술진흥 단계적 제도화 방안	293
제1절 중기 제도화 방안	293
1. 국립미술진흥원의 사업 범위 확대	293
2. 전시(展示) 손실보상제도	293
3. 미술저작권 관리 및 활용을 통한 수익 창출	295
4. 미술 관련 분쟁 조정기구 설치	296
5. 미술 향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구축	303
6.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개편	305
제2절 장기 제도화 방안	314
1. 미술진흥기금 설치	314
2. 공공수장고	317
3. 미술진흥지구	319
제5장 결론	323
별 지	
※ 미술진흥에 관한 법률(안)	323

1 연구 배경

- 미술 분야의 경우 창작에 대한 지원을 근간으로, 전시 및 유통 체제를 공정하고 지속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나아가 이를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전담 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통하여 미술인 개개인의 역량과 노력에 맡겨져 왔던 부분을 국가 지원 체제 확립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국가 구축을 위한 미술분야 지원책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폭넓게 진행되고 있음.
- 또한 최근 매체와 재료의 확장과 더불어 기술과의 적극적인 결합이 시작되었으며,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표현·공표 방법의 등장과 다양한 형태의 예술 장르의 발생은 예술의 창작 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안공간을 비롯한 비영리 공간이나 비엔날레 및 그에 관계된 미술인들의 다양한 활동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됨.
- 특히 창작을 중심으로, 아날로그 매체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물성 기반 작업(object-based work)과 달리 비물성 기반 작업(nonobject-based work)은 미술생태계 전반에 변화를 야기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전시’의 확대를 비롯하여 새로운 유형의 미술품의 향유가 활발해지고 있음.
- 아울러 화랑, 경매, 아트페어와 같은 전통적인 미술품 유통 플랫폼 이외에도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공유 플랫폼, ‘대체 불가 토큰’으로 불리는 NFT(Non-Fungible Token) 아트 시장의 등장을 비롯하여 미술품 유통 구조가 다변화됨.
- 국내 미술시장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고¹⁾, 그 시장의 확대와 발전이 창작자에게 환류(還流)될 수 있는

1) 2020 미술시장 실태조사(2019년 기준)에 의하면 각 주체들 간의 작품거래 실적에서 발생한 중복 값을 제외한 결과, 2019년 한국 미술시장규모는 약 4,147억 원(거래 작품 수 37,930점)으로 추정되었음. 주요유통영역의 업체수와 종사자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정체상태를 보이다, 2016년부터

제도적 도입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는 논의가 창작 분야 미술인과 학계를 중심으로 대두됨.

2 연구 필요성

- 문화예술정책의 모범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온 「문화예술진흥법」에 미술 장르가 명시되어 있으나, 미술진흥을 위한 실효적인 진흥체계로서는 구체성이 부족함. 미술 분야 법률이 명확한 원칙이나 가치 확립 없이 미술(응용미술을 포함)분야 내 일부 세부 장르인 공예(「공예문화산업진흥법」), 서예(「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은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제정되어 체계적이고 일관성·지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미술의 진흥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어 관련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복수의 운영 기관들에 의한 유사·중복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단발성 지원 사업 종료 이후 연계 사업 전개 등 확장과정에 대한 단계적·중장기적 지원으로 연결되지 않아 지속가능한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지역간 편차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미술 관련 정책과 사업들이 장르간 융합, 플랫폼 다양화 등 급변하는 미술 현장 흐름에 대응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지원책의 경직성을 해소하여 창작공간이 다변화하고 그에 관계되는 미술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부응하는 지원 정책이 새롭게 도입될 필요가 있음. 또한 창작과 관계된 비평, 연구·조사, 지역간 협력 등 융합적이고 다각화된 지원이 미흡한 면이 있음. 미술

터 업체수와 종사자수가 증가하면서 2018년 대비 2019년 업체수는 1.9%(10개), 종사자수는 5.4%(101명) 증가하였음. 2013년까지 하락세를 보이던 작품판매금액은 2014년 이후 증가세를 보인다. 2018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작품판매금액은 2018년 대비 2019년 9.2%(약 38,587억 원) 하락, 판매 작품수는 2018년 대비 다소 증가(0.6%(266점))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해당 조사는 미술시장 주요유통영역인 화랑(475개), 경매회사(9개), 아트페어(49개)의 작품판매금액 추정치와 공공영역인 건축물미술작품, 미술은행, 미술관(256개)의 작품구입금액 추정치를 합산한 것임. 그러나 2021년 3월 국내 양대 경매사인 서울옥션과 케이옥션이 각각 역대 최고 낙찰률인 95%, 낙찰총액 104억원과 낙찰률 74%, 낙찰총액 135억8030만원 기록한데 이어, 2021년 6월 경매에서도 서울옥션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인 낙찰총액 243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케이옥션 역시 경매 낙찰총액이 100억원, 낙찰률은 75% 를 기록했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 역시 창작, 향유, 유통이 선순환하는 미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면이 있음.

- 미술생태계 활성화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화 검토를 통해 문화예술 내 주요 장르로서의 미술 진흥 체계를 구축하고, 창작·기획·전시·유통·향유가 선순환하는 생태적 기능체계를 재구성하여 미술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다각화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아울러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미술 활성화를 통해 창작·기획·전시·유통·향유의 생태계 전반을 안정적으로 정상화할 제도적 지원책 마련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최근 2021년, 미술시장이 코로나 상황이 아직 지속되고 있는 여건에서도 일시적 호황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또한 MZ 세대를 비롯한 미술시장 참여자의 저변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 그렇지만, 그러한 시장의 발달과 호황이 미술 창작자들에게 적절하게 환류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고, 유통의 성장과 창작자의 환경이 상호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 준비를 모색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됨.
- 이에 따라 미술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주요 개념 정리 및 창작자, 기획자의 권익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설정하고, 각 주체별 권리와 의무 설정,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검토와 기획·전시·유통·감정 등 매개 분야를 정비하여 국내 실정에 적용가능한 미술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변화한 미술 분야 법제 및 급변하는 미술생태계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미술 분야 법령의 실효성과 체계성 확보를 위해 「미술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미술진흥법(가칭)」)의 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미술 관련 법체계를 「문화예술진흥법」과의 관계에서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현재 미술 관련 법체계와의 관계 속에서 변화된 법제 하에 미술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상과 관계 설정 방향에 대하여 진단할 것임. 둘째 미술 관련 정책 및 지원사업 등의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할 것임. 이를 통해 미술진흥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과 타 법률들과의 정합성을 진단하고 아울러 해외 미술진흥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셋째,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미술 분야 법제도의 큰 틀에서 미술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방향 및 지향 목표를 제시하고 제정(안)을 제시하고자 함. 아울러, 창작·기획·전시·유통·향유 등 미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이 필요한 중장기적 제도를 제안하고자 함.

제2장 미술진흥 관련 법·제도적 현황

1 미술 관련 문화예술 정책 및 제도

1. 미술진흥 중장기계획 (2018~2022)

가. 개요

- 미술 분야 낮은 수입과 높은 창작비용, 낮은 고용안정성, 전시관람 및 공급율의 지역 간 편차, 시장의 불투명성과 높은 시장집중도 등의 문제로 인해 선순환의 미술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략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2018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계와의 논의를 거쳐 ‘미술로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을 발표함.
-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은 국민 누구나 사람 중심의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미술로 행복한 삶’을 미술진흥 정책의 비전으로 정하고 창작-향유-유통이 선순환하는 미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미술로 행복한 삶’을 위한 4대 추진전략, 16개 핵심과제를 설정함.

나. 주요 내용

- 4대 추진전략으로 ▲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한 ‘자생력을 높이는 창작환경’ 조성, ▲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일상에서 누리는 미술문화’ 확산, ▲ 투명하고 공정한 ‘지속가능한 미술시장’ 육성, ▲ 법·제도 등 ‘미래를 위한 미술 기반’ 조성을 제시하고, 16개 핵심과제, 44개 세부과제를 설정함.

- 창작과 관련해서는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일명 ‘추급권’(Artist’ Resale Right)의 도입, 전속작가 제 확대를 통한 미술계 고용안정성 제고 및 미술 전공자들의 다양한 직업 선택 지원, 전시기획 (기획자, 자료수집가 등), 전시제작 (조명·음향·영상 전문가), 전시해설 (도슨트) 등 미술계 직업군의 세분화·전문화를 통한 신직무군으로 육성 및 창작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한국미술의 기초역량 강화와 미래지향적 담론 형성을 위한 국내외 출판, 연구개발(R&D) 지원체제도 구축을 주요 과제로 함.
- 향유와 관련해서는 지역으로의 전시콘텐츠 확산과 공공미술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전시콘텐츠의 지역 순회전시 지원 전시관람비 소득공제, 중저가 미술품 시장 육성을 통한 미술 소비 대중화 유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현장실태 점검·개선, 법제상 불명확한 기준 개선과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도 추진, 도시재생 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작가들의 사회적 역할 확대, 공동 창작·전시·판매 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가칭 예술창작소) 조성을 주요 과제로 함.
- 시장과 관련해서는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미술은행의 기능 확대·개편을 통한 정부미술품의 통합 관리범위 확대, 미술품 보험, 미술품 담보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 도입확대, 지역미술은행 설립, 공공수장고 설치 지원, 미술품 유통·감정업 제도화, 화랑·경매·미술품 감정사 대상 전문교육 등을 통한 미술시장 육성, 개인 중심의 국제교류에서 기관 중심의 국제교류로 확대, 남북 미술 교류 유도 및 해외 미술기관의 한국 미술 전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주요 과제로 함.
- 법·제도 등 미래를 위한 미술 기반 마련과 관련해서는 미술품 유통 관련 법률 제정,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공모사업 지원 방식 개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속제 물납제 등 각종 세제지원도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함.

2. 미술 관련 사업 현황

가. 중앙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지원 소관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사업/유형명	세부내용	
공모 사업	2021년도 문예진흥 기금 창작산실	우수전시지원 전시사전 연구지원 비평지원 공간지원 (비영리전시공간/ 사립미술관)	내용	· 우수 기획전시 발굴 및 기획자 지원
			대상	· 최근 5년간 3회 이상 기획실적이 있는 기획자 개인 및 프로젝트팀
			진행	· 온라인 전시 지원 추가 · 자부담 예산 의무 편성 제외
			제출	· 지원신청서(포트폴리오 제외)
	문예진흥 기금 국제교류 지원사업	예술가 해외레지던스지원 (시각예술-독일 베타니언스튜디오)	내용	· 베타니언스튜디오 창작프로그램 참여
			대상	· 시각예술분야 작가 1인
			기간	· 1년
			추가 제출	· 영문지원신청서, 포트폴리오
	문예진흥 기금 국제교류 지원사업	남북문화예술 교류지원	내용	· 연구 및 행사: 남북 문화예술 조사연구,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등 · 창작활동: 남북 문화예술을 주제로 하는 전시, 책 발간 등 · 교류사업: 민간 차원의 남북문화예술교류사업(초청, 협업사업)
			내용	· 국제무대 진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 및 교류활동을 지원
문예진흥 기금 국제교류 지원사업	청년예술가 해외진출지원	내용	· 만 39세 이하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전문가 · 기획전이나 단체, 개인전 1회 이상 참여한 자, 큐레이터의 경우 전시기획 및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대상		

공모 사업	작은 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 신규조성지원 - 지속운영지원 - 전시활성화지원	내용	· 지역 내 공공 유휴공간을 작은미술관으로 조성 및 운영하도록 지원
			기간	· 21년 3월 ~ 12월
	아르코 청년 예술가 지원	- 전시 사전연구지원 - 기획전시지원 - 비평발간지원	내용	· 직접 경비/비평 활동비 및 출판 발간비 등
			대상	· 만 39세 이하 전시기획자, 작가, 비평가
	20년도 시각예술 창작산실 전시공간 긴급지원 (1/2차)	민간전시공간 사립미술관 화랑(갤러리)	내용	·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 손실이 있는 전시공간 긴급 지원
			대상	· 민간 전시공간, 사립미술관, 화랑(갤러리/20년 한시 지원)
			진행	· 지원신청서 양식 간소화 및 필수 서류 최소화, 자체부담금 의무 및 보조금 정산 회계검사 적용 제외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아트 체인지업 (Art Change UP) 사업	내용	· 온라인미디어를 활용한 예술 활동 지원 및 온라인상으로 향유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대상	· 기초예술 전 장르 중심 온라인 미디어 창작, 향유 활동에 관심이 있는 예술가, 스타트업,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진행	· 지역별 주관기관 공모
아르코 공공예술 사업	공공예술 사업지원(자율형/ 관리형/기획형) 공공예술 연구지원	내용	· 자율형: 주제와 형식 제한 없는 우수 공공예술 프로젝트	
			· 관리형: 지역의 기존 공공미술 관리 및 활용 사업	
			· 기획형: 특정 기획 주제(미디어아트/기후위기)에 따른 공공예술 사업 집중 지원	
			· 연구지원: 공공예술분야 연구/발간 활동 지원	
창작 지원	현장예술 인력지원 사업	한국예술 창작아카데미	내용	· 창작 및 기획 역량을 높이고 소재 확장과 아이디어 실현 과정 지원
			대상	· 만 35세 이하 차세대 예술가 (작가 4명, 큐레이터 2명)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내용	
지원 사업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 창작디딤돌	내용	·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소득인정액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3백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함
		대상	·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이내인 예술인 · 당해 연도 최초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 연도 내 구직급여 미수급 예술인
		제출	· 예술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계획보고서>
	예술인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지원	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의 40~80% 환급
		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표준계약서(서면계약)를 사용하여 예술 활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표준계약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 표준계약서(서면계약)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예술 활동 계약을 체결한 예술단체 및 회사
		지원 범위	· 2020년 7월 ~ 2021년 6월 보험료 부과분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내용	· 산재보험 가입 등 보험 사무 대행 및 납부보험료의 50~90% 지원
		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지원 범위	· 산재보험 사무대행: 가입 상담 및 대행, 정보 변경 등 보험료 지원 산재 청구 상담 및 컨설팅 · 월 보험료 및 지원 금액
	예술인 의료비 지원	내용	· 예술인에게 의료비 지원
		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 ·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0% 이하이며 지역별 자산 기준 이하인 예술인
		지원 범위	·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간병비, 보장구구입비, 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 예술로	내용	·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 확산 및 다양한 예술직무영역 개발, 예술과 사회의 상호협력을 통한 창의적 사회 토대 마련
		대상	· 리더예술인 · 참여예술인(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기업,기관(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필수)
		지원 범위	· 리더예술인: 6개월 이내 총 910만원 · 참여예술인: 6개월 이내 총 720만원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	내용	· 온라인 교육을 통한 예술 역량 강화, 실습을 통한 직업 역량 강화	
	대상	· 예술활동증명 특례를 완료한 신진예술인 90명 내외	
	지원 범위	· 3개월 이내 총 50만원	

● 예술경영지원센터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사업 유형명	세부내용	
공모 사업	미술 품 해외 시장 개척 지원	2021 온라인 홍보 전시 지원	내용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한국미술 홍보/판매/전시 지원 · 플랫폼 이용비, 콘텐츠 제작비 지원
			대상	· 한국 국적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전시공간을 운영하는 567화랑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한국미술을 판매, 홍보 또는 전시하려는 국내 화랑
			기간	· 2021년 4월 1일 ~ 11월 30일
		진행	· 해외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플랫폼 지원 (예. 아트넷, 아트시, 오쿨라, 아트로직 등) · 플랫폼 이용비 중 광고비 불인정 · 콘텐츠 제작비 중 사진/영상 촬영 및 편집비만 해당	
		2020 해외 아트 페어 참가 지원	내용	· 부스 임차료, 작품 운송료, 보험료 지원
		대상	· 해외 아트페어(제한 없음) 참여 확정된 국내 화랑 · 참여 작가 및 작품의 60% 이상이 국내 작가 및 작품	
	진행	· 최대 2천5백만원		
	미술품 감정 및 유통 기반 구축 사업	2021 원로 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 수집 연구 지원	내용	· 원로작가 화업 관련 자료수집·정리·연구 정액지원 · 연구팀 인건비 및 활동비, 작품사진 촬영 및 영상자료 제작비 지원 · 연구팀 선정 후 작가와 매칭하여 진행 · 수집·연구 성과물은 국·영문 온라인 아카이빙 등 디지털 자료 제작
			대상	· 한국 근현대미술 발전에 기여한 만 65세 이상 원로작가 · 한국미술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해외 홍보에 적합한 작가 · 책임연구원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팀 단위로 구성
			기간	· 2021년 2월 ~ 2022년 9월
진행			· 수집·연구과제: 작가 및 작품자료 조사·목록화, 비평 및 영상자료, 기타 원고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사업 유형명	세부내용	

공모 사업	한국 미술 해외 출판 지원 사업	시각 예술 도록 · 자료 번역 지원	내용	·한국미술 해외소개 및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 번역
			대상	· 한국미술 해외 홍보 및 유통을 계획하는 시각예술 분야 개인 및 기관, 단체
			기간	· 최종 번역본 제출일(9월 4주~11월 30일)
			진행	· 번역 및 감수비 건당 최대 6백만원 · 4건 내외 지원 · 지정번역가가 있는 경우 언어 제한 없음 · 지정번역가가 없는 경우 영어/중국어/일어/프랑스어/ 독일어/스페인어 지원 가능
	시각 예술 비평가 - 매체 매칭 지원	매체	내용	· 시각예술 비평문 2회 연재 비평가 매칭 · 게재료/편집료 지원 · 주제: 작가론/주제비평/전시비평 (국내 작가 및 전시, 현장으로 한정)
			대상	· 시각예술 전문 온/오프라인 매체
			기간	· 2020년 4월 22일 ~ 5월 6일
			진행	· 최근 2년 이상 시각예술 비평문 및 기획 기사를 고정적 게재하고 있는 전문 매체 · 2회 연재 원고 게재를 위한 지면을 제공할 수 있는 매체 · 오프라인 매체: 60만원, 온라인 매체: 40만원
		비평가	내용	· 시각예술 비평문 2회 연재 기획, 매체 매칭, 원고료 지원 · 주제: 작가론/주제비평/전시비평 (국내 작가 및 전시, 현장으로 한정)
			대상	· 시각예술 전문 필자 및 그룹(최대 3인)
기간			· 2020년 5월 8일 ~ 22일	
진행			· 동일 주제 2회 연재 기획안 제출 · 비평가 기획 연재 비평문 및 연재 기사 기획안 제출 · 지면 제공 매체와 매칭 후 원고 집필 · 최대 2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사업 유형명	세부내용	

공모 사업	미술 주간 연계 프로그램 운영	미술 주간 연계 기획 자율형	내용	· 미술 문화 향유 증진 및 미술품 소비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 기획 방향: 향유확대, 소비촉진
			대상	· 공· 사립미술관, 비엔날레, 아트페어, 갤러리 및 기타 전시 관련 공간 · 미술 관련 사업 및 교육을 운영하는 단체
			진행	23건 내외 건당 4백~7백만원 차등 지원
		미술 주간 장르 특화 기획형	내용	기획장르: 판화
			대상	· 미술 관련 협· 단체 및 기관 · 공· 사립미술관, 갤러리 및 기타 전시 관련 공간
			진행	· 1건 선정, 3천만원 정액 지원
	예비 전속 작가 지원	참여 단체 공모	내용	· 화랑 등 단체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작가의 창작활동비 일부 국고 지원 · 전속작가 프로모션비 지원: 작가 1인당 정액 250만원 · 연말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 전속화랑을 선정하여 차기년도 연속 지원 · 전속작가제 안정적인 정착 및 인식 전환을 위한 강의 프로그램 · 전속작가 작업 활동 온라인 홍보, 미술은행 작품구입 추천 등
			대상	· <작가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된 작가와 전속계약을 맺은 단체(화랑 등) · 사업장 소재지에 전용 전시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 연 매출액 100억 미만인 단체 ·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단체
			기간	· 2020년 3월 ~ 12월
			진행	· 공모 유형: 신규 단체/2019 우수 전속화랑
	미술품 과학적 분석 및 감정 연계 연구 지원		내용	· 미술품 과학적 분석 및 감정 연계 연구 지원을 통한 체계적 미술품 감정 체계 마련
			대상	· 2019년 선정과제 연구팀 중 2020년 과제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
			기간	· 2020년 2월 ~ 12월 (연구 과제에 따라 지원자/팀에서 합리적으로 설정)
진행			· 총 3억원 내 3건 내외 차등 지원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사업 유형명	세부내용	

공모 사업	미술품 감정 및 유통 인력 양성 지원	미국 감정가 협회 (AAA) 협력 프로그램	내용	· 미술품 시가감정 강사 양성 프로그램 등록비, 항공비, 여행자보험비, 숙박비 등
			대상	· 미술품 시가감정 관련 3년 이상 업무종사자 또는 교육 과정 강의·기획·운영 경험이 있는 자 · '17~18 미국감정가협회 협력프로그램 참가자 또는 그에 준하는 미술품 시가감정 경험 및 이해도를 통해 시가감정 교육과정 개발이 가능한 자 · 영어로 수업을 듣고 과제를 수행할 수 있으며 국내 미술품 시가감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의를 가능한 자 우선 선발
			기간	· 2020년 1월 ~ 2월
			진행	· 최대 5인, 1인당 최대 425만원 지원 · 전 세션에 필수 참여 및 사전유인물 숙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내용	
		내용	대상
지원 사업	전시 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	내용	· 전시공간과 전시프로그램 매칭 및 경비 지원
		대상	· 전시프로그램제공자: 국공립사립미술관, 비엔날레재단, 전시기획사가 기획한 전시프로그램 · 전시공간제공자: 문예회관, 생활문화센터 등 지역 유휴 전시공간
		기간	· 2020년 3월 ~ 12월
	전시 해설 인력 지원 사업	내용	· 전시해설사 고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
		대상	· 사업기관: 미술관, 문예회관, 비영리전시공간, 비엔날레재단 등 · 채용대상: 미술 전공 졸업생, 졸업예정자, 야간대학원 재학생 또는 미술 작가, 미술 해설 경력자 등
		기간	· 2021년 1월 ~ 12월

나. 광역문화재단 (17개)

● 강원문화재단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내용	
공모 사업	문화 예술 교류 지원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교류: 국내예술단체(인)의 공동작품 제작, 공동워크숍 등 · 국제교류: 국외예술단체(인)의 공동작품 제작, 워크숍, 페스티벌 참가 등 · 국제 레지던시(자율형): 국제 레지던시 기관에 직접 신청하여 참가허가를 받은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가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소재 예술단체 및 예술인 · (개인) 최근 3년간 1회 이상 개인작품 발표 또는 주연급 공연 출연 · (단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전시회, 공연 등 단독 주관
	전문 예술 지원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창작형/예술활동형/공공예술형/역량강화형 · 회화, 조각, 공예, 서예, 사진, 영상 등 전시활동(기획전, 회원전 등) 지원 · (개인) 4백~1천만원 (단체) 4백~2천만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소재 전문예술단체 및 전문예술인 · 강원도에서 최근 3년 이상 활동한 전문예술단체 및 전문예술인
	생활 예술 지원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화, 조각, 공예, 서예, 사진, 영상 등 전시활동(기획전, 교류전, 회원전 등) 지원 · 건별 3백만원 정액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보유한 문화예술 분야 아마추어 단체 및 동호회
	생애 최초 지원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발표한 첫 전시 및 공연을 기준으로 작품 발표를 위한 사업비 지원 · 최대 5백만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거주 및 활동경력 10년 이하의 공공지원 실적이 없는 예술가, 비영리 순수예술 활동하는 개인
	문화 예술 공간 지원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공간 지원형 · 공간운영비, 기획자 인건비, 입주작가 사례비, 사업 운영(창작 작업 및 발표,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등 · 기획자 의무 채용, 지역성을 반영한 콘텐츠 1건 이상 개발, 사업주제에 맞는 결과발표 1회 이상 실행, 예산계획 수립 시, 회계감사 수수료 의무 책정 · 최대 5천만원 이내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레지던스 시설을 소유한 예술단체(기관) · 도내 레지던스 시설과 협약한 예술단체
	신진 예술가 창작 활동 지원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지원금 + 직접사업비 지원 · 월별 창작활동보고서 제출, 매년 개인전 1회 이상, 회당 창작 신작 3작품 이상, 재단 시행 관련 프로그램 참가 등 · 최대 1천만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9세 이하의 예술인 · 최근 5년 이내 개인전 또는 기획, 초대전 경력이 있는 작가 (기획, 큐레이터, 평론 제외)

● 서울문화재단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내용	
공모 사업 - 창작 지원	서울 예술 지원 - 예술 기반 지원	시각 예술 작품집 발간 지원	내용	· 작가 본인의 작품세계를 폭넓게(연대기별, 주제별 등) 수록한 작품집(서적) 발간 · 1천만원 정액 지원
			대상	· 첫 개인전 이후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시각예술 작가
		창작 예술 공간 지원	내용	· 1개소 당 6개월의 순 임차료를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부가세, 관리비 제외한 순 임차료)
			대상	· 작업실 · 연습실: 창작활동을 목적으로 서울시 소재의 공간을 월세로 임차해 작업실 · 연습실로 사용하는 예술인 · 민간예술단체 · 예술공간: 예술가와 활발한 교류활동을 하며, 예술가에게 창작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서울시 소재의 문화예술공간
		예술인 연구 모임 지원	내용	· 연구모임 활동에 필요한 지원금 정액 1천만원
			대상	· 서울을 거점으로 예술계(예술현장)의 이슈를 발굴 및 논의하는 연구모임으로 대표자 본인 포함 3인 이상의 예술인(예술가, 기획자, 비평가, 활동가 등) 연구모임 단체등록증 소유 모임만 신청 가능 (미학적 이론 연구 모임, 특정 기관/단체/개인의 창작물과 관련된 연구모임 지원 제외)
		예술 전문 서적 발간 지원	내용	· 목차 제외 200쪽 이상 분량 예술전문서적 발간 · 1천만원 정액 지원
			대상	· 21.12.31 수행기간 종료 후 성과보고 기한까지 예술 전문서적(연구 · 비평서)발간이 가능한 사업 · 지원대상 장르 및 분야에 대한 연구 · 기록 · 비평 활동을 정리하여 관련 연구서적을 발간하고자 하는 개인 (2인의 공동 연구 · 비평, 집필은 신청 가능, 3인 이상의 공동연구/비평, 출판사 명의 신청 불가)
		RE:SE ARCH	내용	· 조사/실험/연구→공유→피드백 등 준비단계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창작준비과정을 모두 포함한 활동(리서치, 인터뷰, 실험 및 연구, 세미나, 워크숍, 연구보고회, 역량강화 워크숍 등, 공연/전시 등 작품발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계획 또는 그 계획의 일부 단계는 미포함)에 대한 300만원 정액 지원
			대상	· 서울에 거주하는 예술인(개인)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내용	

공모 사업 - 창작 지원	서울 예술 지원 - 예술 창작 활동 지원	A트랙: 예술인 으로서 작업 세계 형성	내용	·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활동을 촉진하여 예술인의 성장 도모 · 창작활동비: 300만원 정액 별도 지급 · 창작지원금: 최대 1,500만원
			대상	· 첫 활동 이후 5년 내외의 예술활동을 한 예술인 및 예술단체
		B트랙: 예술인 으로서 작업 세계 안정화	내용	·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활동을 촉진하여 예술인의 성장 도모 · 창작활동비: 300만원 정액 별도 지급 · 창작지원금: 최대 1,500만원
			대상	· 첫 활동 이후 6년 내외에서 15년 내외의 예술활동을 한 예술인 및 예술단체
		C트랙: 예술계/ 향유자 대상 영향력 발현및 가치 생성	내용	·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활동을 촉진하여 예술인의 성장 도모 · 창작활동비: 300만원 정액 별도 지급 · 창작지원금: 최대 1,500만원
			대상	· 첫 활동 이후 10년 이상의 예술활동을 한 예술인 및 예술단체
	기획형 예술 창작 지원 사업	BENXT	내용	· 신작: 관객 대상 공연/전시로 발표한 적 없는 순수 창작물 · 재창작: 기존 작업에서 한 단계 나아가 작품 변화 및 도약을 계획 중이며, 최종 공연/전시 발표가 가능한 창작물
			대상	· 서울에서 예술창작활동 및 작품제작/발표를 계획한, 개인전 1회 이상 개최 혹은 기획전 2회 이상 참여 경력이 있는 데뷔 10년 이하 예술인

● 경기문화재단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내용	
공모 사업	새예술 준비지원	내용	· 예술기획, 실험, 창작 준비과정 지원 · 3백만원 정액
		대상	· 경기도 거주(소재) 예술가 및 예술단체
	자금예술 창작지원	내용	· 신작 창작 지원 및 발표전시 제공 · 최고 2천만원 · 재단의 작가워크숍(2회) 및 평론 매칭 프로그램 참가 필수
		대상	· 경기도 거주 작가 · 개인전 1회 이상 혹은 그룹전 2회 이상 활동 실적을 보유한 작가
	경기에술 활동지원 (모든예술31)	내용	· 경기도 14개 지역에서 개최되는 예술가, 예술 단체의 예술활동 지원 · 해당 도시의 문화기반 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등) 및 문화거점(마을회관, 북카페 등)에서 실행되는 모든 예술활동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소재) 예술가, 예술단체

● 경북문화재단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내용	
공모 사업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사업	내용	· 입주작가 숙식비, 창작활동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시 예술활동 경비 지원 · 단체당 20 ~ 30백만원 내외
		대상	· 경북도 내에 2년 이상 소재한 예술단체 · 레지던시 시설을 갖춘 전문 예술기관 · 단체로 경북도 내에서연간 1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	내용	· 정기회원전, 기획전, 공모전 등 활동 지원 · 일반지원: 200 ~ 1,000만원 · 개인(신진)예술가 창작지원: 200 ~ 700만원
		대상	· 경북도 내에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경북 소재 단체 또는 예술인으로서 각 사업에서 정하는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단체 및 개인

● 대구문화재단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사업/ 유형명	세부내용
-------	-----	-----------	------

공 모 사 업	예 술 단 체 지 원	신규 단체 활동 지원	내용	· 미술/사진/건축/영상 등 다수의 작가가 참여하는 창작 전시회 및 회원전, 지역민 대상 시각예술 분야의 기획 사업, 시각예술 기반의 비상업적 작품 발표활동 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 소재 설립 3년 미만의 전문예술단체
		창작 활동 지원	내용	· 다수의 시각예술 작가가 참여하는 정기 전시회 및 회원전, 지역민 대상 시각예술 분야의 기획사업(공공프로젝트 포함), 시각예술을 기반으로 한 비상업적 작품 발표활동, 지역미술의 역사성과 전통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 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 소재 3년 이상의 활동실적 있는 전문예술단체
		창작 활성화 지원	내용	· 회화, 조형물, 사진 등의 기획전시, 워크숍, 포럼 등으로 어우러진 기획전시로서 일반 대중의 접근이 용이한 공간 및 콘텐츠로 구성된 사업 지원 · 예술단체의 초연 및 창작작품의 우수기획, 콘텐츠 레퍼토리화를 위한 활성화 사업 지원 · 재공연 및 기획전시 개최로 기존 작품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레퍼토리화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창작사업 우선 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 소재 5년 이상의 활동실적 있는 전문예술단체
	명작 산실 지원	내용	· 회화, 조형물, 사진 등의 기획전시, 워크숍, 포럼 등으로 어우러진 기획전시로서 일반 대중의 접근이 용이한 공간 및 콘텐츠로 구성된 작업 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 소재 5년 이상의 활동실적 있는 전문예술단체	
	개 인 예 술 가	최초 예술 활동 지원	내용	· 창작준비지원: 조사 연구비나 창작 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 지원 · 창작발표지원: 첫 단독 개인발표회 제반경비 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만 35세 이하의 예비 예술인, 단독 전시회 등 개인 발표 이력이 없는 자, 재단 및 공공 지원금 수혜 실적이 없는 자로 시각예술 분야의 창작자 및 기획자
		경력 예술인 활동 지원	내용	· 시각예술 분야의 신청 예술가 단독 전시회 및 프로젝트 활동사업 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만 36~64세의 전문 예술인
원로 예술인 활동 지원		내용	· 단독전시회 및 활동이력과 작품 총 망라한 발간물 제작	
		대상	· 대구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만 65세 이상, 30년 이상의 활동경력 증빙할 수 있는 원로예술인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사업/ 유형명	세부내용
----------	-----	--------------	------

공 모 사 업	예 술 단 체 및 개 인 예 술 가 전 대 상	학 술 조 사 활 동 지 원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콘텐츠화: 지역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자료 구축 및 기록 보존 활동(음반, 영상물, 자료집 등), 예술가 생애, 예술활동 및 성과에 대한 구술채록, 지역 전통문화예술 및 문화유산·민속 등 보존·전승사업, 예술현상에 대한 비평, 연구, 실험 등 자료의 발간과 보급 · 학술조사활동지원: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강연, 세미나, 학술대회 등 지역 대표 예술인 선양을 위한 사업,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사업, 예술계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아카데미, 예술단체의 전문지·기관지 발간
			대 상	· 대구광역시 소재(거주), 관련 활동 1회 이상을 증빙할 수 있는 전문예술단체 및 전문예술인
		예 술 교 류 활 동 지 원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교류: 공인된 기관(단체)의 초청에 의한 참여 및 예술단체(인)간 공동 창작·협력 제작형식으로 진행되는 사업 우선지원, 해외 현지 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 · 국내교류: 민간 단위 자발적 진출활동으로 예술단체(인)간 공동 창작·협력 제작형식으로 진행되는 사업 우선지원,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초청료와 체제비가 지급되는 사업 및 개인·친목단체와의 단순 교류활동은 지원불가, 진출활동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지원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광역시 소재 3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는 전문예술단체 · 대구광역시 거주 전문 예술인
		창 작 연 구 년 지 원	내 용	· 기초예술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전 단계의 창작준비활동, 기획단계 및 사업 초기 구현단계에 해당하는 일련의 창작준비활동, 리서치/인터뷰/실험 및 연구/세미나/워크숍 등 지원
			대 상	· 대구광역시에 소재(거주)하며 연내 준비 과정에 대한 결과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전문예술단체 및 전문예술인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내용
----------	-----	------

공모 사업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	내용	· 기초문화예술 확대로 실질적 향유기회 활성화 · 7개 장르 416여건, 단체 별 3백~20백만원
		대상	· 경남도 내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청년 예술인 발굴 지원사업	내용	· 예술활동 경험(경력)과 역량이 부족한 청년예술가에게 역량 교육, 우수사례 답사, 개별 실습(전시, 출판, 실연)을 통해 기존 문화예술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 1인 250만원 예술활동, 창작, 발표비용 등, 우수사례 현장견학 및 조사 1회, 역량향상 교육 2회, 확인서 발급, 개인 전시(창작 및 기존 작품) 지원
		대상	· 예술활동증명이 없는 만 19~34세 이하 도내 예술 분야 전공자
	경남예술창작센터 입주 작가 지원	내용	· 공간지원: 창작공간 및 작가숙소 · 창작지원: 재료비 및 활동비, 창작활성화 프로그램 제공 타지역스튜디오 및 작가와의 교류, 결과물 전시회 지원
		대상	· 만 25세 이상 ~ 만 45세 미만까지 창작 활동이 활발한 순수 시각예술분야 작가 · 타 레지던시 참여기간이 중복되지 않고 경남예술창작센터 기 입주경력이 없는 자 · 순수예술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개인, 그룹 및 단체 지원 불가
	창작공간 아트스페이스 남강 입주 작가 지원	내용	· 창작공간지원 · 창작지원금 지원: 재료비 및 활동비 · 성과발표: 입주작가전 및 동인전
		대상	· 시각예술 분야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입주 경력이 있는 예술인 및 예술활동증명이 없는 만 34세 이하 청년예술인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	내용	· 전문예술단체의 기획공모형 사업 지원 · 문학, 시각예술 중심 프로그램 · 레지던스 운영 목적이 뚜렷하고 장르별, 공간별, 프로젝트별 특성이 분명한 사업, 지역정체성과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레지던스 공간 활용 사업, 큐레이터 기획력 중심사업, 프로젝트 추진사업 지원, 지역 신진 예술인들의 창작환경 제공과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지원, 지역 주민연계 예술교육, 강좌 등 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원 · 레지던스 시설 당 40백만원 ~ 80백만원
		대상	· 경남도 내 설립일 3년 이상의 단체 · 등록증을 발급받고 레지던스 시설을 갖춘 전문예술단체로서, 도 내에서 최근 5년 간 3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경남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	내용	· 창작비 지원(1인 2백만원)	
	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소득 및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일정기준 이하 도내 예술인	

● 대전문화재단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내용
----------	-----	------

공 모 사 업	예술창작지원	내용	· 전문예술가 및 예술단체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목적으로 창작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사업비 일부 지원
		대상	· 전문예술인(단체)
	아티언스대전	내용	· 과학도시 대전의 강점을 살린 예술 · 과학 융복합 실험 예술 기반 마련 목적으로 작품제작비 지원
		대상	· 예술인
	레지던시 지원	내용	· 지역 내 민간 레지던시 지원을 통한 정주형 창작거점 육성 및 국내외 예술가와 지역 예술가 간 교류 활성화 목적으로 레지던시 활동에 소요되는 직접사업비 일부 지원
		대상	· 지역 내에서 레지던시를 운영할 수 있는 민간 전문예술단체
	차세대 artiStar 지원	내용	· 차세대 예술가의 창작, 발표 활동 지원으로 지역 대표 예술인 육성 기반 구축 목적 · 역량강화 및 창작활동에 소요되는 직접사업비 일부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전문예술가
	국제문화예술 교류지원	내용	· 지역예술가(단체)의 해외 진출기회 마련 및 국제교류 네트워킹 기반 확대 목적으로 해외 단체(기관) 공동 작품 발표 및 페스티벌 참여, 국가간 예술교류 활동 등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일부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 내 예술단체(개인)
	문화예술연구및 평론 지원	내용	· 대전 문화예술 자료의 연구 발표 등 예술의 학술적 토대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
		대상	· 전문예술인 및 예술단체
	대전청년작가장터	내용	· 지역 특화 미술시장 플랫폼 개발 및 구축, 지역 청년예술가 정주성 확보 및 미술시장 활성화 목적 대전청년작가 미술작품 직거래 장터 운영
		대상	· 대전광역시에서 활동 중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작가 (대전광역시 출신으로 타 지역에서 활동 중인 작가 포함, 예술대학 졸업자 이상)

● 부산문화재단 (7개)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내용
-------	-----	------

공모 사업	홍티아트센터 입주 작가 지원	내용	· 창작활동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창작지원금 지급, 개인전 공간 및 홍보, 비평가 1:1 매칭, 라운드테이블, 오픈스튜디오 개최 지원 등 · 공간 및 시설 지원: 개별 창작공간, 레지던시 공간, 공동 창작공간, 전시실, 고소작업대 등 장비 및 공구 제공, 국내/외 레지던시 공간 및 네트워크 교류 지원
		대상	·입주 경력이 없는 만 25세 이상 시각/설치 분야 예술가
	청년아트페어 참여 작가 지원	내용	· 작품 판매 및 전시 지원, 작품 운송비 등 (모든 작품 판매수익은 작가에게 지급)
		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부산으로 되어 있는 39세 이하 청년예술가 (시각분야/개인) · 거주지가 부산일 경우 최근 1년 이상, 부산이 아닐 경우 최근 2년 이내 부산에서 활동한 증빙자료 제출
	반딧불이 (빈집활용)사업 입주예술가 지원	내용	· 도심 속 유휴공간을 발굴 및 확보하여 예술인의 창작공간과 시민문화향유공간으로 마련,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시민향유프로그램 운영 · 공간 무상제공(최대 3년), 창작활동 및 시민향유프로그램 운영 경비 일부 지원
		대상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부산거주자 예술인(개인, 단체) · 부산 거주자가 아닐 경우, 최근 3년 이내 부산활동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 광주문화재단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사업/유형명	세부내용	
공모 사업	지역 문화 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	창작 공간 프로그램 지원	내용	· 작가의 창작, 발표, 역량강화 활동, 퍼블릭 프로그램, 기타 기획프로그램 등 지원
			대상	· 3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고 창작공간을 보유한 전문예술단체(상업 갤러리 제외)
		문화 예술 교류 지원	내용	· 국내 타 지역(또는 지역 내) 예술단체(인)과 공동작품제작 및 발표, 교류 워크숍, 상호교류활동, 해외진출 및 초청 참가 등 지원
			대상	· 3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는 전문예술단체 및 예술인
		지역 특화 문화 거점 지원	내용	· 광주 5개구 내 특정 권역의 지역성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발굴 및 기획형 프로그램 지원
			대상	· 3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는 전문 예술단체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내용		

공모 사업	생활문화 예술활동 단체 지원	내용	· 미술, 사진/영상 장르 문화예술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여 문화예술 사업 안정적 추진
		대상	· 최근 2년간 광주 지역 내에서 문화예술 분야 활동실적이 2건 이상 있는 광주광역시 소재 민간단체
	미디어아트 창의 랩 구축 및 운영 사업	내용	· 전문 창작 프로젝트 팀: 연구 개발 및 결과물 제작을 위한 지원금 및 활동비 지원 · 예비·시민 창작 프로젝트: 교육을 통한 창작 제작비 지원 · 공간 지원 및 장비 임차 지원 · 미디어아트 분야 멘토링을 통한 교육 기회 제공 등
		대상	· 전문 창작 프로젝트: 뉴미디어, 사운드, 미디어 파사드 등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연구·개발할 수 있는 창·제작 프로젝트 팀, 미디어아트 콘텐츠 창·제작 관련 활동 경력 및 기술력과 실행 경험이 있는 창·제작팀(2인 이상), 엔지니어/과학자/IT기업/미디어 융·복합 콘텐츠 단체 또는 기업, 미디어아트 작가 등(직종 무관) · 예비 창작 프로젝트: 예비·전문 창작자 대상(순수예술, 예비 미디어아티스트 등)으로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미디어 아트 특화공간, 광주공원에 적용 가능한 콘텐츠 연구 개발 · 시민 창작 프로젝트: 일반인, 창작 교육자(예술강사 등)들을 대상으로 SI 시각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창작 프로토타입 제작, 창작 교육자들을 통한 SI 시각화 기술 활용 창작자 재생산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내용	
공모 사업	2021 인천형 예술인 지원 사업	유망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내용	· 1차년도 최대 1,500만원/2차년도 최대 2,000만원, · 창작준비 영역 편성 필수
		창작활동 지원	대상	· 창작활동 10년 미만의 인천 예술인(기관 등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 기획자 및 독립 큐레이터 포함) · 설립 2년 이상 인천 소재 문화예술단체
		창원 예술인	내용	· 개인: 1차년도 최대 1,500만원/2차년도 최대 2,000만원 · 단체: 1차년도 최대 2,000만원/2차년도 최대 2,500만원
		창작활동 지원	대상	· 창작준비 영역 편성 필수 · 창작활동 10년 이상 인천 예술인 · 설립 5년 이상 인천 소재 문화예술단체
	2021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	원로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내용	· 개인: 최대 500만원/단체: 최대 300만원 발표 경비, 활동비 및 교류 · 창작지원, 전문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대상	· 창작활동 10년 이상 인천 예술인 지급 · 설립 5년 이상 인천 소재 문화예술단체
	2021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	원로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내용	· 인천 문화예술인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 중이며 최근 3년 이내 총 거주 기간 대상 · 최대 한도 4,800천원/1년 이상 되는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인 중 공공지원 대상
			대상	· 인천 내 예술 창작활동공간을 운영 중인 문화예술인 및단체
	2021 예술 표현 활동 지원	시각 예술	내용	· 개인전: 최대 800만원 · 단체전/기획전: 최대 200만원 · 전시관련 내용: 최대 600만원 (통해 자격여부 심사 후 결정) 지원 ·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 단체: 최근 3년 내 3회 이상 창작활동증명 단체 · 개인 또는 단체 대표자가 인천 연고 기준 부합자 (인천 출생/인천 소재 학교 졸업/재학자/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자/인천 내 활동실적 경험자 등) 단체전 참여 실적 3건 이상
			대상	· 2021년도 내 울산에서 시행 될 예술창작활동 및 역량 강화 활동 (9년차 지원은 1년차 사업 실적 평가 등으로 인해 선정여부 심사 후 결정) 지원 · 온/오프라인 공연, 전시 발표 경비 및 역량강화 활동비
공모 사업 - 기초 예술용 지원 (개인)		내용	· 작가/작품의 국내외 진출 등을 주제로 한 국제교류 활동: 최대 1,000만원 · 이를 준비하는 예비 활동: 최대 600만원 · 2021년 3 ~ 12월 진행 중 졸업 발표가 가능한 예술창작 활동 지원 · 국제 아트페어 참가 등 상업적 교류 행사 전시 발표 경비 지원 · 단체의 추천행사 지원: 최대 800만원 ~ 800만원 지원	
		대상	· 개인: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단체: 최근 3년 내 3회 이상 창작 활동 증명 · 개인 또는 단체 대표자 2년 이상 거주 중이며 최근 5년 이내에 거주 기간 2년 이상 거주 중이며 최근 5년 이내 실적 1건 이상 · 개인 또는 단체 대표자 2년 이상 거주 중이며 최근 5년 이내에 거주 기간 2년 이상 거주 중이며 최근 5년 이내 실적 1건 이상 · 전시: 개인전 또는 단체전 참여 실적 3건 이상 · 평론·연구: 평론·연구 활동(발표·발간) 실적 3건 이상	
작은 예술 공간 지원		내용	· 2021년 3월~12월 내 작은 예술공간 열정 활동(발표·발간) 실적 3건 이상 · 운영비 및 공간운영비 지원	
		대상	· 최근 2년 간 진행 프로그램 중 50% 이상 자체 기획 행사 필수 · 온/오프라인 공연, 전시 발표 경비 지원 · 65세 이상 인천 소재 복합전시공간 운영 민간단체/개인	
	예술인 지원 사업	대상	· 울산광역시에 거주 중이며 최근 5년 이내에 거주 기간이 2년 이상되는 만 65세 이상 예술인 · 최근 5년 이내 실적 1건 포함 필수 · 전시: 개인전 또는 단체전 참여 실적 3건 이상 · 평론·연구: 평론·연구 활동(발표·발간) 실적 3건 이상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내용		

공모 사업	울산 예술 지원 사업 - 기초 예술 지원 (단체)	신생 예술 단체 지원 사업	내용	· 공연, 전시 발표 경비 지원 · 500만원 ~ 1,500만원 지원
			대상	· 관내 소재 중인 설립 3년 미만의 예술단체 · 단체 설립일 이후 울산광역시 내 활동 경력이 1건 이상인 단체
		전문 예술 단체 지원 사업	내용	· 공연, 전시 발표 경비 지원 · 700만원 ~ 2,000만원 지원
			대상	· 관내 소재 중인 설립 3년 이상의 예술단체 · 단체 설립일 이후 울산광역시 내 활동 경력이 3건 이상인 단체 · 최근 3년 이내 실적 1건 포함 필수
	울산 예술 지원 사업 - 특성화 지원	우수 창작 재공연 재전시 지원 사업	내용	· 기존 기획전시 내용을 바탕으로 확장성을 갖춘 재전시 경비지원(연례 회원전, 협회전, 단순 교류전 등 제외) · 2000만원 ~ 5,000만원 지원 · 기존 전시에 대한 보완과 개선 프로젝트 의무
			대상	· 관내 소재 중인 설립 3년 이상의 예술단체 · 단체 설립일 이후 활동 경력이 5건 이상인 단체 · 최근 3년 이내 실적 1건 포함 필수 · 신청 프로젝트에 대한 1회 이상 개최 이력 필수
		창작 거점 공간 지원 사업	내용	· 민간에서 운영중인 관내 문화예술공간 지원 · 창작공간 거점의 창작/교류 프로그램 운영 경비 · 창작중심형: 창작 공간에서 정기적 예술창작 활동이 가능한 입주 예술가에게 창작, 사무, 회의, 워크숍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창작· 교류 프로그램 기획· 운영 · 교류중심형: 창작공간을 거점으로 한 실험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예술 교류 프로젝트
			대상	· 관내 소재 설립 1년 이상 민간 창작공간을 보유 또는 운영 중인 단체 · 최근 3년 이내 레지던시 또는 창작공간 거점 · 교류 사업 운영 실적 2건 이상 보유 단체
	비대면 예술창작활동 지원	내용	·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전시· 공연 지원 · 개인 최대 5,000천원 이내 · 단체 최대 10,000천원 이내	
		대상	· 코로나19로 직·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예술인/단체 · 활동 실적이 3건 이상, 최근 3년 이내 실적 1건 포함 필수 · 개인: 관내 2년 이상 거주 중인 예술가 · 단체: 관내 소재 중인 설립 3년 이상의 예술단체	

● 인천문화재단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내용	
공모 사업	2021 예술 표현 활동 지원	인천 문화 예술 연구 지원	내용	· 인천 지역 문화예술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연구 모임 활동 지원연구지원금 최대 1,000만원 지원
			대상	· 분야 불문, 연구자/기획자/창작자/교육자 등 구분 없음 · 신청자 포함 최소 2인 최대 5인 구성 · 최근 3년 내 인천에서 2회 이상의 문화예술 연구 실적 증명 필수 · 모임 대표자가 인천 연고 기준 부합자(인천 출생/인천 소재 학교 졸업/재학자/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자/인천 내 활동실적 증빙 가능자)
		역량 강화	내용	· 단체 및 개인의 예술적 역량강화를 계획하는 전 분야 · 국내 연구 주요 행사 참가: 개인 최대 500만원, 참가비/교통비/체재비 등 일부 · 전문선 강화 프로그램 운영: 단체 최대 800만원, 개최 비용 일부
			대상	· 개인: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단체: 최근 3년 내 3회 이상 창작 활동 증명 단체 · 개인 또는 단체 대표자가 인천 연고 기준 부합자 (인천 출생/인천 소재 학교 졸업/재학자/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자/인천 내 활동실적 증빙 가능자)
	2021 문화예술특화 거리 <점점점> 지원	내용	· 지원금 (12개월 공간임대료, 개별 및 협업 프로젝트 수행비), 반상회 및 공동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홍보 및 아카이빙 자료집 수록 등	
		대상	· 인천 연고 예술 그룹 및 단체 가업권역 내 임대 가능한 유휴공간에서 창작 활동을 하고 싶은 예술 그룹 및 단체. · 문화자치 및 지역 문화생태 활성화에 관심 있는 예술 그룹 및 단체	
	신진예술가 기획지원 <바로 그 지원>	내용	· 프로젝트 지원금 300만원 이내, 네트워크의 장 마련, 온라인 홍보 및 전문가 리뷰 지원, 결과자료집 수록 및 배포	
		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가 개인 또는 팀	
	인천미술 활성화 -인천미술은행 소장품 구입	내용	· 평면/입체 미술작품(공예,설치형,뉴미디어 제외) · 1인(팀) 2점, 1점에 최대 150만원 이내	
		대상	· 인천 활동 작가(인천 거주, 최근 5년 간 1회 이상 인천에서 전시, 인천 미술 발전 기여 작가)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내용		

공모 사업	2021 인천 아트 플랫폼 레지 던스 프로 그램 입주 지원	레지던스 프로그램 입주 예술가 모집	내용	· 1인(팀)당 스튜디오 1실 제공 · 창작지원 프로그램 및 발표 기회 제공 · 약 11개월 (21년 3월 ~ 22년 1월)
			대상	· 시각예술가 및 연구자 · 만 25세 이상, 경력 3년 이상, 미술 관련 기관 및 사업장 미소속자 · 인천 연고자 서류 가산점 부여
		지역 연구 오픈랩 프로젝트 레지던스 지원 사업	내용	· 지원금: 개인 최대 500만원, 그룹 최대 800만원 지원 · 연구 및 창작공간 (스튜디오 1팀 당 1실) 및 발표 공간 지원
			대상	· 시각예술 분야 작가 및 기획자(그룹) · 2 ~ 4명(팀) 내외 · 만 25세 이상, 경력 3년 이상 · 미술 관련 기관 및 사업장 미소속자 · 인천 연고자 서류 가산점 부여
	2021 우리 미술관 레지 던스 입주 지원	창작 문화 공간 만석	내용	· 레지던스 공간, 전시관 및 스튜디오 공간, 비품 및 징비, 프로그램 홍보, 프로젝트 진행비 1천 5백만원 지원
			대상	· 국내 타 레지던스 참여 기간과 중복되지 않고 개인 전용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시각예술 작가 1인/팀 · 인천 동구 연고 예술가 가산점 부여

● 세종시문화재단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내용
----------	-----	------

공모 사업	예술 창작 지원	지역 문화 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	내용	· 시각예술 장르별 창작활동 지원 · 개인 5백만원, 단체 2천만원 상한액
			대상	·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세종시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희망하고 상업성이 없는 비영리 순수 예술활동을 하며 세종시에 주소를 둔 개인/문화예술단체 · 최근 4년 간 주최 또는 주관으로 예술활동실적 3회(연 1회만 인정) 이상인 경우, 청년예술가의 경우 활동실적 요건 해당사항 없음
	창작 기반 지원 - 시각 예술 전시공 간지원	BRT 작은 미술관 대관	내용	· 지역 시각예술 작가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여건 마련과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목적 · 1 ~ 4회차 일정 별 무료 대관
		박연 문화관 갤러리 대관	대상	· 세종시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전북문화관광재단 (9개)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내용
----------	-----	------

공 모 사 업	지역 문화 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	국제 문화 예술 교류 지원 사업	내용	· 교류활동에 필요한 직접경비 일부 지원 · 해외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가와 비대면 방식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또는 교류 목적의 활동을 진행하는 사업 · 최소 500만원 ~ 10백만원
			대상	· 전북 소재 예술단체 및 예술인
		창작공간 프로그램 지원사업	내용	· 레지던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경비 지원, 입주 예술가의 창작·발표·교류, 지역 주민 연계 예술 교육 및 강좌 등 퍼블릭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입주예술가 창작지원금 지급, 인건비성 운영비 30% 이내 편성, 레지던시 시설 운영 공공요금 10% 이내 편성 지원 · 50백 ~ 70백만원
			대상	· 도내 창작공간을 보유 또는 운영 중인 단체
		문화예술 창작 - 육성	내용	· 개인전 및 중소규모 전시 지원, 3백만원
			대상	· 전북 예술인(단체)으로 활동중이며 작업세계 형성과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성장하는 범위,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활동 경력
		문화예술 창작 - 심화	내용	· 대규모 전시 지원, 최소 4백 ~ 1천만원
			대상	· 전북 예술인(단체)으로 활동중이며 예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여 예술계와 향유자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범위, 최근 5년 이내 5회 이상 활동 경력
		문화 예술 기반 구축	내용	· 예술계의 발전을 위해 예술인을 발굴·육성하거나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문화 예술 기반을 구축하는 범위 · 최소 4백 ~ 1천만원
			대상	· 전북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 ·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활동 경력 증빙
아트체인지업 사업	내용	· 창작과정, 발표 형식 실험, 오프라인 연계형 등 온라인 미디어를 통한 예술활동, 온라인을 통한 기성작품에 대한 소개 및 관객 소통 리뷰, 비평, 아카이빙, 참여 예술인들의 수익활동이 가능한 신규 온라인 플랫폼 구축 혹은 기존 플랫폼 성장 지원 · 플랫폼 제작 형태의 경우 플랫폼에 담기는 콘텐츠 제작 필수 · 사업 취지에 맞는 자율 기획형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한 예술 활동 · 개인: 500만원 · 소· 규모단체: 10백만원, 중· 대규모단체: 25백만원, · 플랫폼구축:50백만원		
		대상	· 전북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내용		

공 모 사 업	중견예술인 포트폴리오 제작 지원사업	내용	· 도내 중견예술인의 창작물을 체계적, 질적으로 관리하 기 위한 포트폴리오 제작 지원 · 1인당 3,000천원
		대상	· 50 ~ 60대 중견 예술인, 도내에서 20년 이상 활동, 창작활동 지속 조건
	순수예술작가 아트상품 개발지원사업	내용	· 전북지역 작가 작품을 활용한 아트상품 개발지원 · 아트상품 제작비, 재료비, 홍보비 등 3백 ~ 5백 차등지 원
		대상	· 전북 3년 이상 거주, 전북 출생자이며 도내 소재 · 고등학교 졸업자, 전북 소재 대학 미술 관련학과 출신 자, 최근 3년 활동 실적이 있는 시각 분야 예술인

- 전남문화재단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내용	
공모 사업	지역 문화 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	육성 사업	내용	· 도내 시·군 지역에서 진행되는 전문 시각분야 창작/전시/연구 문화예술 활동 · 개인 3백만원, 단체 5백만원
			대상	· 전남도내 거주 예술단체 및 예술인
		집중 사업 - 문화 예술 해외 교류	내용	· 국외 또는 도내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 교류 활동 · 화물비/통번역비/홍보비/임차비/숙박비 등 · 20백만원 이내
			대상	· 전남도내 거주 예술단체 및 예술인
		집중 사업 - 레지던스 프로그램	내용	· 레지던스 공간을 활용한 창작 지원, 전시, 교류 활동, 레지던시 작가 공모 및 선정을 통한 창작활동 지원 · 입주 예술가의 개인 창작 활동비 3개월 이상 지원 · 단체 소속기획자 및 문화예술 활동 관련 전문가 인건비 일부 지원 · 별도의 기획자 및 전문가 참여, 공모를 통한 레지던시 작가 선정 · 기존 참여 입주 예술인 중 1/3이상 교체 필수 · 70백만원 이내
			대상	· 전남도내 창작활동 공간과 레지던시 공간을 갖추고 있는 문화예술 단체
	집중 사업 - 청년 예술가 활동	내용	· 청년 예술가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 지정 멘토 프로그램 진행 필수 · 창작준비(1년차): 창작준비 및 역량강화, 10백만원 이내 · 창작발표(2년차): 창작활동·발표 및 역량강화, 15백만원 이내	
		대상	· 전남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39세 이하의 청년 예술가(개인)	
	예술작품 렌트사업	내용	· 예술작품 렌트사업 홍보 기획전 참여, 예술 작품 유무상 임대 추진, 작가 당 10점 이내	
		대상	· 도내에 2년 이상 거주/전남 출신 미술작가 · 개인전 1회 이상/기획전 또는 그룹전 3회 이상의 경력, 전국 규모의 미술공모전에서 3회 이상 입상, 국내외 유명 미술 초대전 출품 경력, 공신력 있는 기관장으로부터의 추천 중 하나라도 해당 시 자격 조건 충족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내용	

공 모 사 업	아트체인지업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한 예술작품 발표 및 향유자와의 소통활동 지원 · 온라인 콘텐츠 제작/동일 콘텐츠의 멀티미디어화/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등 지원 · 관객개발형: 최소 5백 ~ 최대 20백만원 내외 · 창작활동형: 최소 10백 ~ 최대 30백만원 내외 · 플랫폼기반형: 최소 10백 ~ 최대 50백만원 내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미디어 창작 및 향유 활동에 관심이 있는 예술가 및 운영단체 · 개인의 경우 전남 연고 예술인, 사업 신청하는 주체는 대표자가 반드시 전남 연고 프로젝트 팀이거나 전남에 기반을 둔 예술단체 필수
	남도예술은행 미술작품 구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작가 창작활동 지원 · 작가 1인 최대 3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에 2년 이상 거주/전남 출신 미술작가 · 개인전 1회 이상/기획전 또는 그룹전 3회 이상의 경력, 전국 규모의 미술공모전에서 3회 이상 입상, 국내외 유명 미술 초대전 출품 경력, 공신력 있는 기관장으로부터의 추천 중 하나라도 해당 시 자격 조건 충족

● 제주문화예술재단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내용
----------	-----	------

공 모 사 업	예술 공간 전시 지원 및 대관 사업	예술 공간 이야 일반 대관	내용	· 예술공간 이야 2전시실 유료대관	
			대상	· 창작 · 예술 활동을 하는 시각예술 분야 제주 소재 예술가 및 단체 (동호회 포함)	
		산지천 갤러리 기획 전시	내용	· 산지천 갤러리 기획전시실 2,3층 무료대관 · 최대 20백만원 지원	
			대상	· 최근 3년간 3회 이상 전시기획 경력이 있는 전시기획자, 3년 이상 활동 경력의 예술인 · 활동증명서를 소지한 전시 기획자	
	청년 문화 예술 처음 발표 지원	청년 문화 예술 처음 발표 지원	내용	· 단독/개인발표회 기획 및 구현, 최대 4백만원 지원	
			대상	· 만 19~34세 도내 청년예술가 및 기획자(대학생 가능) · 제주 거주지 등록, 단독/개인발표회 경험이 전문한 자	
		청년 예술가 육성 지원	내용	· 예술 창작, 시행을 위해 소요되는 직접경비 지원 · 개인/팀 당 최대 1천만원 지원	
			대상	· 만 19~34세 도내 청년예술가 및 기획자(대학생 제외) · 제주 거주지 등록 2년 이상 또는 본적이 제주인 자 · 4대 보험 미가입자 · 최근 3년간 개인전 2회 이상, 개인전 개최 및 도내 전시 1회 이상, 개인전 및 그룹전 참가 총 3회 이상 필수	
		청년 문화 매개 특성화 사업	청년 예술 창작 공간 임대료 지원	내용	· 청년예술가의 작업 · 발표 · 연습 등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공간 임대료 지원 · 개인/팀 당 최대 5백만원 지원
				대상	· 만 19~34세 도내 청년예술가 및 기획자(대학생 제외) · 제주 거주지 등록 2년 이상 또는 본적이 제주인 자
	제주 청년 아트 컬렉티브 <이야> 상주형 기획사업	제주 청년 아트 컬렉티브 <이야> 상주형 기획사업	내용	· 창작, 비평, 기획회의, 작품분석, 워크숍, 연구 · 조사, 작품제작, 발표 등 예술창작 과정을 위한 고유한 활동 전반 · 지역(커뮤니티) 연계 활동, 상주 계약 체결, 예술공간 이야 창작스튜디오 기반 창작 활동 필수, ·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석 및 네트워킹 활동 · 팀별 창작활동비 지급: 개인 월 1백만원, 창작그룹 1인당 월 70만원 · 예술공간 이야 공간 지원, 사업 통합홍보 지원	
			대상	· 제주 소재 또는 출신(본적이 제주, 도내 학교 졸업)예술가 · 예술공간 이야를 기반으로 예술 활동이 가능한 만 19~39 세 이하 예술인 또는 3인 이내로 구성된 창작그룹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내용			

공 모 사 업	예술 공간 지원	작은 예술 공간 프로 그램 지원	내용	· 복합예술공간 내 소규모 행사 발표 · 예술공간 지원사업에 필요한 직접 경비 · 300만원 ~ 700만원 지원
			대상	· 최근 3년간 2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실적이 있는 도내 소재 복합예술공간
		창작 공간 프로 그램 지원	내용	· 창작공간 프로그램 내 연간 우수 기획 프로그램, 수행 중 '사전~중간~결과(성과)' 과정에서 전문가 인터뷰, 컨설팅 등에 적극 참여 가능한 사업 · 예술공간 지원사업에 필요한 직접 경비 1천 ~ 5천만원 지원
			대상	· 기초예술 중심으로 운영되는 도내 소재 창작공간
	예술 창작 준비 지원	창작 활동 준비 지원	내용	· 기초예술 분야의 기획, 조사, 연구 등 준비과정 지원 · 창작 준비 활동·사업 수행에 필요한 직접 경비, 창작활동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운영비, 전담인력 인건비 · 개인: 사업당 2백만원 정액 지원 · 단체: 사업당 3백만원 정액 지원
			대상	·개인: 예술활동경력 10년 이상 제주소재(거주) 예술인 · 단체: 최근 5년간 지원 해당분야 3회 이상 실적이 있는 제주 소재 예술단체
		창작 역량 강화 지원	내용	· 창작 준비 활동·사업 수행에 필요한 직접 경비, 창작활동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운영비, 전담인력 인건비 · 사업당 5백만원 정액 지원
			대상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실적이 있는 제주 소재 예술단체
	국제예술교류지원	내용	· 올해 말까지 완료가 가능한 국내외 국제예술교류사업 진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최대 2천만원 지원	
		대상	· 개인: 최근 3년간 기획 경력이 2회 이상, 제주 소재(거주) 예술인 · 단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실적이 있는 제주 소재 예술 단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창작 사업 대관료 지원사업	내용	· 공공 및 민간 전시장 등에서 진행한 예술창작 발표활동 대관료 보전 지원, 최대 700천원		
	대상	· 최근 3년간 1회 이상 실적이 있는 경우 · 2020년 도내 공공·민간시설에서 전시 등 예술창작 발표 활동 진행한 제주 소재 예술단체 및 예술인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내용		

공 모 사 업	예술 창작 활동 지원	신진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내용	· 시각예술분야 전시, 행사 활동 지원 · 전시 기획 및 구현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대상	· 첫 활동 이후 예술활동경력 10년 미만 제주 소재(거주) 예술가 · 첫 발표 지원 가능
		우수 기획 창작 활동 지원	내용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직접 경비 · 단년: 최대 4천만원 · 다년: 1년차 최대 2천, 2년차 최대 4천 지원 (1년차 사업성과 평가 통해 2년차 지원 결정)
			대상	· 개인: 기획경력 있는 제주소재(거주) 예술인 · 단체: 기획경력 있는 사업전담 기획자 1인 포함 제주 소재 예술단체
		제주 원로 예술인 지원	내용	· 유형1: 제주원로예술인 구술채록지원, 최소 1천 ~ 1천 5백만원 지원 · 유형2: 제주원로예술인 회고지원사업, 최소 1천 ~ 3천만원 지원 ·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작품집 및 작품도록 발간에 필요한 출판비, 사업전담인력 인건비, 학술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대상	· 만 70세 이상 · 예술활동경력 30년 이상 제주 소재(거주) 원로예술인/ 예술단체 또는 제주원로예술인지원 사업추진역량을 가진 제주 소재 예술단체
		문화 예술 연구 및 비평 지원	내용	· 비평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직접경비 · 500만원 ~ 1천만원 지원
			대상	· 최근 5년간 문화예술 연구·평론 전문 간행물을 1회 이상 발간하거나 연구·평론 발표 3회 이상 실적이 있는 제주 소재(거주) 개인 또는 단체
		예술 활동 기록 지원	내용	· 예술인(단체) 스스로 예술 활동내용 기록과 결과물에 대한 지원 · 사업수행이 필요한 직접 경비 3백 ~ 7백만원
			대상	· 개인: 예술활동경력 10년 이상인 제주 소재(거주) 예술인(공고일 기준) · 단체: 최근 3년간 지원 해당분야 3회 이상 실적이 있는 제주 소재 예술단체
일반 예술 창작 활동 지원	내용	· 전시 기획 및 구현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 개인: 300만원 ~ 700만원 · 단체: 5백 ~ 2천 지원		
	대상	· 개인: 예술활동경력 10년 이상 제주 소재(거주) 예술인 · 단체: 최근 3년간 3회 이상 실적 있는 제주 소재 예술단체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내용		

공 모 사 업	JFAC 아트 체인지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객개발형: 기성 작품에 대한 소개 및 관객 소통 리뷰, 비평, 아카이빙 사업, 최대 3천만원 지원 · 창작활동형: 창작 과정, 발표, 형식 실험, 오프라인 연계형 창작 활동, 최대 5천만원 지원 · 플랫폼기반형: 참여 예술인들의 수익 활동이 가능한 신규 온라인 플랫폼 제작 또는 기존 플랫폼 고도화 등, 최대 7천만원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미디어 창작 · 향유 활동에 관심이 있는 제주 소재 예술인 · 관객개발형/창작활동형: 개인 (최근 3년간 2회 이상 문화예술분야 실적이 있는 제주 소재 예술가 · 기획자 또는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가), 단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실적 있는 제주 소재 예술단체), 프로젝트팀(최근 3년간 2회 이상 문화예술분야 활동 실적이 있는 제주 소재 예술가 · 기획자 등으로 구성된 3인 이상 프로젝트 팀)
	내용	· 예술 창작 및 발표 기획서 지원, 건당 50만원	
	제주문화예술활동 기획서지원사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거주 개인으로 최근 3년간 개인발표 1회 또는 단체 발표 3회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자 ·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이 있는 예술인

다. 기초문화재단

1) 서울특별시

● 중구문화재단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내용	
공 모 사 업	지역 연계형 청년 예술 활동 지원 사업 - O15: O(Young) 아티스트, 15개의 서울	청년 예술가 모집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워드: 맥락, 콜렉티브, 네트워크, 이슈, 장소 · 중구의 가치를 발굴 및 확장 또는 재해석하여 문화 예술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중구의 장소와 네트워크 기반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 활동, 지역의 이슈를 새로운 시선과 해결법으로 접근한 문화예술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 활동비: 월 70만원 · 프로젝트 실행비: 총 1,500만원 · 온/오프라인 홍보, 멘토링, 지역 네트워킹, 공간 지원
			대상	· 종로구 내 개인: 39세 이하 예술인, 단체: 구성원 전원 39세 이하 예술 단체 (최대 3인)

● 성동문화재단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내용
----------	-----	------

공 모 사 업	지역 연계형 청년 예술 활동 지원 사업 - O15: O(Young) 아티스트, 15개의 서울	청년 예술 활(活) 성동 청년 예술인 모집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워드: 활(活), 상생, 도시재생, 지속가능성 · 지역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수행, 지역과 소통을 위한 사회적연대프로그램 참여, 창작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워크숍/교육 참여 · 활동비: 월 70만원 · 프로젝트 실행비: 총 1,500만원 · 지역 내 네트워크 활동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동구 내 개인: 39세 이하 예술인, 단체: 구성원 전원 39세 이하 예술 단체 (최대 3인)

● 성북문화재단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내용	
공 모 사 업	성북 예술 창작터	성북N 작가 공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공간 및 기획, 심층토크, 홍보/홍보물, 온라인 VR 전시 플랫폼 · 작가: 운송, 창작 지원금 100만원 · 리뷰어: 창작 지원금 50만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예술 작가/팀, 리뷰어/팀
	지역 연계형 청년 예술활동 지원사업 - O15: O(Young) 아티스트, 15개의 서울	어슬렁 동네 예술 기록단 청년 예술인 모집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워드: 함께 성장, 예술활동의 사회적 실천, 경험과 실천을 통한, 공진화하는 예술실험 · 성북 지역이해 워크숍 및 지역탐구 멘토링 프로그램 및 회의, 어슬렁 동네예술 기록단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 활동비: 월 70만원 · 공동 프로젝트 실행비: 총 1,500만원 · 지역 네트워킹/온오프라인 홍보/기획회의 공간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북구 기반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공동 기획, 실행할 39세 이하 청년예술인/참여 예술가 · 5인 공동기획 프로젝트 진행

● 마포문화재단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내용
----------	-----	------

공 모 사 업	마포구 예술 활동 거점 지역 활성화 사업	문화 로드맵 <예술로 업:業 CYCLE> 예술 지원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창작지원: 추진 과정을 중시하며 다양한 형태의 예술창작 및 실험진행, 최대 3백만원 지원 · 공간-예술가 협력 지원: 예술가와 예술공간 네트워크를 통해 공간을 중심으로 한 예술거점 지역 형성 지원, 최대 7백만원 지원 · 클러스터 확장 시범 지원: 마포구 예술거점지역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예술공간 중심 예술인 클러스터 형성 지원, 최대 5백만원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창작지원 거주자: 마포구 1년 이상 거주한 예술 분야 종사하는 개인/팀, 작업실: 마포구에서 작업실을 두고 예술관련 활동하는 개인/팀(단체), 사업장: 마포구에서 예술관련 분야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팀(단체), 활동: 마포구에서 최근 3년 이내 예술관련 활동증빙이 가능한 개인/팀(단체) · 공간-예술가 협력 지원 예술가: 예술 활동 가능한 개인/팀(단체), 공간: 서교, 연남, 합정 소재 실내외 공간 소유자 · 클러스터 확장 시범 지원 예술가: 예술활동이 가능한 개인/팀(단체) 공간: 서교, 연남, 합정 외 13동 실내외 공간
	마포 커뮤니티 예술축제	꿈의전시 참여 커뮤니티 모집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및 축제 진행시 홍보 인쇄물, 전시 물품, 현장 구성 물품 지원 · 커뮤니티 간 네트워킹 및 기획 모임 시 제반사항 제공 · 전문인력과 협업해 전시 기획, 활동 전반 실행 기획 제공, 전시 렌탈을 통해 전시 기회 확대
			대상	· 마포에서 활동하는 시각예술 커뮤니티(3인 이상)

● 서초문화재단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내용	
공 모 사 업	서리풀갤러리 시각예술 전시기획 공모 사업	내용	· 도시의 유휴공간인 지하보도를 갤러리로 변모시켜 만든 특징을 살려서 표현한 작품과 기획
		대상	· 만 19세 ~ 39세 이하 시각예술 분야 기획자 및 작가로 기획자 1인 및 작가 1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 (2인 이상 10인 이내)

● 강남문화재단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내용
----------	-----	------

공 모 사 업	지역 연계형 청년 예술활동 지원사업 - O15: O(Young) 아티스트, 15개의 서울	VIEW: 티폴 강남 2.0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워드: 청년예술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표현하는 강남구 도시 건축 · 활동비 월 70만원 · 프로젝트 실행비 최대 1,500만원 · 멘토링 프로그램, 지역이해 워크숍, 청년예술인 홍보, 자문 및 리뷰단 운영 제공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남구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39세 이하 청년 예술인 및 단체

● 구로문화재단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내용	
공 모 사 업	문화철도959 아트플랫폼 입주작가 모집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지원: 공동 창작공간 · 프로그램 지원: 연 1회 오픈스튜디오, 기획전시, 959 갤러리 개인전 등 작품 발표 및 홍보 · 홍보 지원: 온오프라인, 미술잡지, 지역신문 등 광고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창작 공간이 없고, 공동 공간에서 작업 가능한 만 45세 미만 예술가 · 관련 학과 졸업한 자로서 다양한 지역 문화 프로그램에 협업 가능한 작가로 구로구 관내 출신 및 지역 작가 우선 선정
	지역 연계형 청년 예술활동 지원사업 - O15: O(Young) 아티스트, 15개의 서울	판 갈아주기 프로젝트 청년 예술인 모집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비: 월 70만원 · 프로젝트 추진 비용 · 성장지원 워크숍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로구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39세 이하 청년예술인 또는 대표자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 39세 이하 예술인 단체 (최대 3인)

● 영등포문화재단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내용
----------	-----	------

공모 사업	예술×기술프로젝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기술 시제품 개발, 예술×기술 협력을 시도하는 과정 중심의 프로젝트, 예술을 입은 제품, 기술을 입은 작품, 그 외 예술×기술 융복합 프로젝트 등 · 프로젝트 운영비 팀별 1 ~ 2천만원 내외 지원 · 술술 3층 예술×기술랩 공간 지원
			대상	· 문래창작촌을 기반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하고 싶은 예술인&기술인 (신청자 중 1명 이상 거주지 또는 작업실이 문래동이어야 함)
	에할거할 프로젝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공간의 안정화, 창작의 지속가능한 활동 기반 구축,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 확산(10백 ~ 25백만원 내외) · 이웃 자율 활동 모임 활성화 (3백만원 이내)
			대상	· 문래동/영등포동/당산1동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단체)
	예술 활동 거점 지역 활성화 사업	지속 가능한 창작 공간 지원 사업	내용	· 지속가능한 창작공간 운영지원 (임대료 일부와 창작환경개선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래동/영등포동/당산1동 내에 있고 공간의 용도를 창작(예술)활동으로 사용중이며 예술 공유가 가능하고 의지가 있으며 지원 사업 · 기간 동안 해당 공간을 계속 점유 및 사용 예정으로 임대료지급 후 영수 증빙이 가능한 공간의 임차인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구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 창작준비, 콘텐츠 제작, 문화예술 활동 인건비, 공간 운영비 · 개인: 40만원 · 단체: 최대 87만원
			대상	·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문화예술인/단체 (예술가/단체, 활동가, 기획자, 문화예술 강사 등)
	우정과 현대의 예술제 자공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주제: 해독 (다양한 의미를 통한 해석 가능) · 작가료: 50만원 · 전시 제반사항, 아카이빙 도록 제작 및 배포 제공, 향후 연계된 아트뱅크 사업 또는 재단 주최 기획사업 선정 우선 배려
			대상	· 영등포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시각 예술 작가

● 도봉문화재단 (6개)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내용
----------	-----	------

공 모 사 업	평화문화진지 입주작가 모집		내용	· 예술문화 전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지원
			대상	· 문화예술창작 활동 공간이 필요하고 창작 활동이 활발한 예술가, 창작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고자 하는 예술가, 스튜디오를 개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술가로 전용스튜디오 사용(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예술가
	유희공간심폐소생 프로젝트: 예술119		내용	· 유희공간에 주민 이야기를 반영한 작품제작 및 전시 · 예술인 1인당 총 350만원 지원
			대상	· 만 20세 이상 도봉구 거점 예술인(도봉구 거주자/생활권자, 고봉구 과거/현재 거주자, 도봉구 소재 학교 또는 작업공간에서 생활한 자, 도봉구 거점 전시 및 프로젝트 활동한 이력 증빙 가능한 자 포함)
	지역 연계형 창년 예술 활동 지원 사업 - O15: O(Young) 이티스트, 15개의 서울	협업은 처음 이라서	내용	· 키워드: 평화문화 · 활동비 월 70만원 · 통합 프로젝트 실행비 총 1,500만원 · 프로젝트 성장 촉진을 위한 분야별 전문 코칭 및 교육 지원
			대상	· 39세 이하 예술인으로 창작 활동 2회 이상, 데뷔 이후 활동 경력 7년 이하
	지역 문화 예술인 지원 사업 (일반 공모)	1차	내용	· 도봉구 거점의 전 분야 예술인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 · 팀당 최대 2천만원, 홍보 지원
			대상	도봉구를 거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예술인
	지역 문화 예술인 지원 사업 (기획 공모)	신진 예술인 연차 지원	내용	· 신진예술인들에 대한 다년지원(2년)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 · 팀당 최대 1천만원 · 쌍방향적인 멘토링/홍보 지원
			대상	도봉구를 거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활동경력 5년 이하 전문예술인
커뮤 니티 지원		내용	· 도봉구가 당면한 사회문화적 이슈 혹은 도봉구에서 논의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를 연구하는 커뮤니티 지원 · 팀당 최대 1천만원 · 홍보 지원	
		대상	· 공모 목적에 적합한 모임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예술인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연구모임	

● 강북문화재단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내용
----------	-----	------

공 모 사 업	2021 지역 문화 예술 공모 사업	예술 창작	내용	· 전 장르 초연 작품에 한해 사업기간 내 강북구 내 활동 가능한 작품으로 사업 실행 또는 교육 공간 사업계획서 내 명시 필수 · 단체(개인)별 최대 1,000만원 내 지원
			대상	· 강북구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문화예술 관련 개인 및 단체 · 강북구 거주 문화예술인 또는 소재 문화예술단체
	2020 문화예술프로젝트 지원사업		내용	·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젝트, 문화예술 공간 및 개념 확장 프로젝트,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문화예술 프로젝트 지원 · 프로젝트 별 350만원 정액 지원
			대상	· 강북구 거주 문화예술인 또는 소재 문화예술단체
	지역 연계형 청년 예술 활동 지원 사업 - O15: O(Young) 아티스트, 15개의 서울	청년 공유 <우리 동네>	내용	· 키워드: #나는 우리동네 '청년 0 0' · 청년예술인 활동비 월 70만원 · 프로젝트 실행비 총 1,500만원 · 다양한 성장 프로그램, 활동 홍보 지원
			대상	· 강북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고 지속적으로 청년예술활동을 하고 싶은 청년 예술인 (39세 이하 개인 청년 예술인, 대표자 포함 전원 39세 이하 최대 3인 예술 단체)

● 은평문화재단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내용
----------	-----	------

공모 사업	신진 청년작가 공모 지원사업 <사이>		내용	· 아트숨비센터 2층 갤러리 전시(개인전/단체전) 무상 공간 및 소모품, 온오프라인 홍보, 전시통합 도록, 창 작 활동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예산(최대 1,500천원) 지원
			대상	시각예술 전 분야의 예술계 진입을 시도하는 신진 예술가 및 단체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지역 문화 프로젝트	내용	· 지역문화 자원을 발굴 및 활용한 지역특화 콘텐츠 지원 · 사업 당 최대 4,000천원, 활동 간접 지원
			대상	· 은평 지역에 거소를 둔 문화예술 개인 및 단체, 사업 기간 내 실행 완료 가능한 프로그램 대상
		청년 예술가 지역 연계 지원	내용	· 지역 내 공간을 기반으로 예술활동을 통해 지역의 의미를 새롭게 환기하는 프로젝트 지원 · 사업 당 최대 5,000천원 · 활동 간접 지원
			대상	·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하는 19세 ~ 39세 이하 예술 인 중 3인 이상 모임으로 그룹 과반수가 은평구 거 주 또는 은평구가 거점 활동지며 지역 내 문화 공간 활용이 가능한 그룹
	예술시장 '다다'		내용	· 지역, 공간, 예술가를 연결하는 독립예술시장 조성 및 관련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은평구 내 공간과 예술 가 매칭 후 각 공간에 참여 · 예술가의 작품 전시, 온·오프라인 판매, 예술가와 작품 홍보 및 판매를 위한 부대 프로그램 진행 · 판매 수익금 전액 지급, 예술가 홍보
			대상	· 창작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는 예술가/팀 · 장르 제한 없음 · 예술가 순수 창작물에 한함
	지역문화 진흥사업	W더불어 은평 <이슈의 발견>	내용	· 주제: 코로나 시대 예술 발견하기 · 지역 내에서 실행하고 싶은 아이디어로 내용 및 형 태 제한 없음 · 프로그램 별 50 ~ 100만원 내 신청 가능
			대상	· 은평 지역 문화 주체 (예술가, 기획자 및 단체, 주민등)

	지역 연계형 청년 예술활동 지원사업 - O15: O(Young) 아티스트 15개의 서울	<LINK>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워드: 연결된 우리(지역 내 청년예술인의 모임 및 지역 이해 과정), 창작으로 살아남기(예술 창작 이후 시장 진입과 활동 지속에 필요한 심화과정) · 활동비 월 70만원 · 프로젝트 실행비 최대 1,500만원 ·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평구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39세 이하 청년 예술인 및 단체

● 금천문화재단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내용	
공 모 사 업	금나래아트홀 2021 전문예술단체 공연, 전시 공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2개 단체별 최대 5백만원 지원 · 금나래아트홀 갤러리 무료 대관, 홍보마케팅, 전시 지킴이, 매표 및 티켓 관리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분야 민간예술단체 (최소 2인 이상) · 2년 이상 전시활동 경력 필수
	2021 금천아티스트랩 작가 공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키워드: 먹는다는 것) 발전을 위해 기획한 과정 중심 프로젝트 및 창작 지원 · 작업 리서치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및 지역 커뮤니티 연계 라운드 테이블 지원 · 소정의 활동비(총 3,000천원/1인), 금나래아트홀 기획전 참여 지원 및 제작비 일부(1,000천원/1인)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소재/거주하고 있는 만 40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의 시각 예술 전 분야 3년 이상 활동 경력을 갖춘 작가/팀

● 광진문화재단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내용	
공모 사업	청년/신진작가 전시 지원사업 <나루의 발견>		내용	· 전시 준비에 필요한 비용(팀당 세전 5백만원) · 나루아트센터 전시실 공간 및 소모품, 온/오프라인 홍보, 전시 통합 홍보물 제작 및 사진 촬영 지원
			대상	· 예술계 진입을 시도하는 신진 예술가 및 단체 · 데뷔 10년 이하 예술인
	지역 연계형 청년 예술활동 지원사업 - O15: O(Young) 아티스트 15개의 서울	<스퀘어 프로젝트>	내용	· 키워드: 나루아트센터 광장, 6평, 공공예술, 일상 · 활동비 월 70만원 · 지역 이해 워크숍 1회, 피칭 프로그램 2회 제공, 멘토링 프로그램, 네트워킹, 공연/전시관람비, 프로젝트 기획/실행 시 관련 비용, 나루아트센터 시설,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대상	· 39세 이하 개인 예술가, 대표자를 포함한 전원 39세 이하 예술 단체 (최대 3인)

● 동작문화재단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내용	
공모 사업	지역 문화 예술 지원 사업	동작 예술찾기	내용	· 지역예술단체 정기활동 지원: 6백만원 이내 · 창작예술단체 창작활동 지원: 5백만원 이내 · 문화사회계층 예술활동 지원: 7백만원 이내 · 개인예술가 지원: 2백만원 이내
			대상	· 동작구 소재(거주)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예술가
	지역 문화 발굴 사업	심훈 프로젝트	내용	· 심훈을 활용한 콘텐츠 창작 · 실연 공모로 심훈의 탄생 120주년을 기념하는 프로젝트 전시 · 실행비 지급 후 작품 제작 및 실연(최소 2 ~ 4백만원)
			대상	· 동작구 거주 1년 이상인 만 19세 이상의 개인예술가 또는 동작구 설립 1년 이상 예술단체
	동작아트갤러리 공간지원사업		내용	· 전시 공간 무료 대관, 홍보물 및 전시 홍보 지원
			대상	· 현재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 예술인

● 양천문화재단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내용	
공 모 사 업	양천문화거점공간 양성사업<주춧돌>		내용	· 공간별 500 ~ 1,500만원 차등 지원(임차료, 프로젝트 실행비) · 필수사업: 공간 기반 문화예술 프로젝트 예술가 지원활동
			대상	· 양천구 소재 공간을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창작작업 및 연습을 목적으로 사용/운영하는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
	지역 연계형 청년 예술활동 지원사업 - O15: O(Young) 아티스트, 15개의 서울	<따뜻한 업글인간>	내용	· 주제: 오랫동안 양천을 지킨 주인들, 꿈꾸는 책들의 도시 · 월 활동비 70만원 · 양천 주제의 예술활동 실행비 1인 3백만원 · 1:1 멘토링, 협력 멘토링 지원
			대상	· 39세 이하 개인 또는 단체 (최대 3인)

● 노원문화재단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내용	
공 모 사 업	노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		내용	· 노원역 역사 4-7호선 환승통로에 미디어 아트 설치
			대상	· 노원 지역 거주 미술 종사자로 인정되는 전문 작가
	상계예술마당 전시지원사업		내용	· 관내 시각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한 전시공간 지원 (6 ~ 8월 중 전시계획 있는 경우 무료대관) · 전시 주제 및 내용 고려한 홍보물 제작지원
			대상	· 노원구 소재 시각예술단체, 협회, 동아리, 개인작가
	시각예술 신진작가지원사업		내용	· 노원문화예술회관 노원아트갤러리 전시 및 출품료 (50만원), 전시 관련 홍보 지원
			대상	· 노원구 관내 만 19 ~39세 관내 청년 작가/팀

● 강동문화재단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내용	
공 모 사 업	강동아트센터 개관10주년 신진·중견작가 전시 지원 공모	내용	· 전시 공간 및 전시 운영비, 홍보물 지원 · 신진작가(개인): 500만원 · 신진작가(단체): 1천만원 · 중견작가(개인): 2천만원 · 중견작가(단체): 3천만원
		대상	· 신진작가: 제한없음 · 중견작가: 국내외 다양한 전시 경력이 있는 작가/단체

● 관악문화재단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내용	
공 모 사 업	지역문화 진흥사업	N개의 서울 <관악 교집합>	내용	· 주제: 팬데믹 · 프로젝트 및 워크숍 참여, 관악 아트워크 운영 · 프로젝트 기획 사례비 지급(팀/개인 별 150만원)
			대상	· 관악구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예술인/단체
	관악 우수창작문화 콘텐츠 지원사업		내용	· 키워드: 관악의 재발견,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관악 이야기, 강감찬, 낙성대, 관악산, 샬로수길, 도림천, 백순대, 청년, 1인 가구, 액티브 시니어, 다문화 · 관악구의 자연·문화·인물·문화재 등의 원천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 창작(고유자원 또는 지역 상징성을 포함하거나 재발견할 수 있는 콘텐츠) · 최저 500만원 ~ 최고 2천만원 지원
	지역 연계형 청년 예술활동 지원사업 - O15: O(Young) 아티스트, 15개의 서울	<예술 첫관문>	내용	· 키워드: 생애 첫 예술: 기회의 관악,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예술 실험 · 월 활동비 70만원 · 공동 프로젝트 실행 및 성과 발표 최대 1,500만 ·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워크숍 및 청년 예술인 네트워크, 관악문화재단과 향후 연계 기회 제공
			대상	· 관악구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인

■ 소결

- 각 기관 별로 중복된 성격의 미술 창작, 기획, 전시 지원 사업들이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단기간, 단발 사업의 한계로 인하여 지원사업 이후 확장과정에 대한 지원이 미흡함. 또한 미술 창작, 기획, 전시 이외에 연구·기술개발 지원 또는 미술 향유 확대를 위한 지원이 여전히 미흡함.
- 따라서 지속가능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미술 생태계 활성화 방안과 다양한 관계자 간에 상호 협력하는 심층적 체계 마련이 필요함.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미술생태계의 다각화를 감안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

2 미술 관련 법제

■ 국내 미술 관련 법제

기본법	문화기본법		
분야별 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법	국어기본법
영역/장르/ 대상별 집행법	공연	공연법	
	문학	문학진흥법	
	도서관	도서관법	
	박물관/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공예	공예문화산업진흥법	
	디자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서예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인문학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예술인	예술인복지법	
	원로	대한민국예술원법	
	교육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여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독서	독서문화진흥법	
	다양성	문화다양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제교류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저작권	저작권법	
	지역문화	지역문화진흥법	
	장애예술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예술진흥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영상	영상진흥기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만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대중문화	대중문화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출판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인쇄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콘텐츠전반	콘텐츠산업진흥법	
	국회 계류 법률안	예술인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사진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가. 문화예술진흥법

1) 의의

- 1972년에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은 헌법상 문화국가원리가 직접적으로 구현된 대표적 문화행정법인 동시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법의 성격을 가진 최초의 문화예술 관련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함.

2) 미술 관련 주요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진흥관련 시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 권장·보호·육성을 위한 재원을 조성할 의무가 있음(제3조).
-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음(제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고 그 문화강좌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제12조), 학교 및 직장의 학생·직원, 그 밖의 종업원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및 직장에 학생·직원, 그 밖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하나 이상 두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1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제15조의3).
-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할 수 있으며(제1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제39조).

3) 한계

- 이상과 같은 다양한 미술진흥에 관한 「문화예술진흥법」 상 규정은 미술 창작, 기획, 전시 환경의 변화와 특히 미술생태계의 중요한 축인 유통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효적 정책 수단과 그 근거가 확보되지 못하였음.

나. 문화예술교육지원법

1) 의의

- 2005년 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함.

2) 미술 관련 주요 내용

-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하며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음(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제5조의2).
-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축제·학예회·발표회 등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고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제15조 내지 제18조).
- 사회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

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고 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제21조 내지 제26조).

3) 한계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미술인력 양성 및 재교육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음.

다. 예술인복지법

1) 의의

- 예술인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과 복지문제의 해결을 위해 2011년 11월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었음
- 이 법은 예술인에게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부여하는 한편 예술인을 단순한 직업인이 아닌 국가에 대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공헌자로 규정하여 예술인의 법적 지위를 상향시킴.

2) 미술진흥 관련 주요 내용

- 「예술인 복지법」상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함.
- 이 법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예술인에 대하여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와 이를 통해 정당한 정신적·물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고,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4조).
-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7조).
-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개인 창작 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함(제10조).

3) 한계

-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및 복지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술 유통 분야 활성화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음. 아울러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표된 저작물이 있거나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함.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1) 의의

- 1991년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을 유도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지원제도를 강화하여 그 설립을 촉진하며, 기타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면 보완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제정됨. 박물관을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구분하면서 미술관의 설립·운영의 주체에 관하여는 박물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현대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 근거,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제도,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의무,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평가, 공립박물관 건립 전 설립 타당성 평가 등을 규정함.

2) 미술 관련 주요 내용

-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를 둘 수 있음(제6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유의 유휴 부동산 또는 건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 지역 문화공간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휴 부동산 또는 건물을 대여(貸與)할 것을 요청하면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음(제19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관리 및 이용과 각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제로서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을 구성하고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도서관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도서관·문화예술회관 등 다른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함(제33조).

3) 한계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은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적용되며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립과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기 때문에 미술생태계 전반의 진흥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음.

마. 지역문화진흥법

1) 의의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전에도 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등의 법률에 지역문화와 관련된 사항들이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문화 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법의 제정을 통해 비로소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종합적·기본적 법률을 마련하게 되었음.

2) 미술 관련 주요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제7조)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8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제9조 제1항 및 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각종의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음(제12조).

3) 한계

- 「지역문화진흥법」은 생활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에 대한 지원, 특히 공간이나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지역문화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활동을 지원을 규정하면서도 그 실천적 방법을 밝히지 않아 지역미술 활성화를 위한 지역간 협력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음.

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1) 의의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미술을 포함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영화, 음악, 만화, 애니메이션, 출판, 방송, 인쇄, 공예 등 각 분야에 대한 진흥법 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예 분야에 대한 시책이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었던 상황에서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국민의 인성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자영상시대에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해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8년 제정됨.

2) 미술 관련 내용

- 서예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서예교육의 지원(제6조),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제7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추진하기 위한 해외 홍보, 마케팅 및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등의 사업을 지원(제8조,) 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제9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3) 한계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은 미술의 한 장르인 서예 교육을 중심으로 서예 진흥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으로써 서예 교육에 미술 전반을 아우르기는 한계가 있음.

사.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1) 의의

- 공예 분야의 경우 부분적이고 산발적인 공예진흥 정책과 더불어 공예문화산업을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고 공예의 다양한 측면들이 상호간 융합 효과를 내지 못하고 공예문화산업 전반이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었으며, 생활 속의 예술이라는 공예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일상생활과 괴리되어 왔음. 또한 전통 공예는 전승과 보존 위주의 소극적 정책으로 대중화와 활성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문화산업 측면에서도 공예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일반적인 기업지원정책으로 일관하여 그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음.
- 이에 하나의 문화적 결정체이자 총체적인 문화장르로서의 공예를 공예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전통과 현대, 예술과 산업을 아우르는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육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문화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공예의 가치 확산을 통하여 품격 높은 일상문화를 창출함으로써 생활 속의 예술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 2015년 제정됨.

2) 미술 관련 내용

-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제5조), 창업 및 제작 지원(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제9조), 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등(제10조),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충(제11조), 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제12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제13조), 우수공예품의 지정 및 지정 취소(제14조 및 제15조), 공예문화산업의 융합 및 연계(제17조).

3) 한계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써 미술생태계 전반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아.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1) 의의

-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 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여 많은 예술인들이 직·간접적 피해를 본바, 불공정한 예술 환경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의 삶을 구제할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예술계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
- 이에 따라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폐쇄적 예술계 환경과 권리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마련됨.

2) 미술 관련 주요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여야 하며, 예술을 검열하거나(안 제5조),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 활동의 성과를 전과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안 제7조), 예술지원에 있어 투명성·공정성 등을 확보해야 하며(안 제11조),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예술인은 예술 활동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 등이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안 제16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고(안 제17조), 피해구제 지원기관을 지정(안 제18조)하는 한편, 2년마다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안 제19조).
- 예술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안 제20조)와 예술인 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안 제27조), 예술인보호관을 통해 예술인권리침해행위와 성희롱·성폭력행위 사건을 담당하도록 함(안 제29조).

3) 한계

-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법률로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술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 근거와 체계 마련에는 한계가 있음.

■ 해외 미술 관련 법제

가. 일본

1) 문화예술진흥기본법

- 문화예술진흥기본법(2001)은 제8조에서 국가는 문학, 음악, 미술, 사진, 연극, 무용, 기타 예술(미디어예술은 제외) 진흥을 위해, 이들 예술의 공연, 전시 등에 대한 지원, 예술제 등의 개최,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고 규정함. 다만 미디어예술과 관련해서는 국가는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및 컴퓨터, 기타 전자기기 등을 이용한 예술을 진흥하기 위해 미디어예술의 제작, 상영 등에 대한 지원,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고 제9조에서 별도로 규정함. 이외에도 제12조에서 국가는 생활문화, 다도, 꽃꽂이, 서도, 기타 생활과 관련된 문화를 말함), 국민오락(바둑, 장기, 기타 국민적 오락을 말함), 출판물 및 레코드를 보급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지원,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고 규정함.

나. 미국

1) 연방법

-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 문화예술 관련 법률이나 미술진흥을 위한 개별법이 연방 차원에서 존재하지는 않음. 다만 1964년 국립예술위원회(National Council on the Arts) 설립을 위해 국립예술문화발전시행법(National Arts and Cultural Development Act)이 제정됨. 또한 1965년

국립예술인문재단에 관한 법률(National Foundation on the Arts and Humanities Act)에 의해 NEA가 설립되었으며 1970년 동법은 개정됨(National Foundation on the Arts and the Humanities Arts and the Amendments of 1970). 연방정부는 국가적 통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권한만 부여받고 독립된 주권을 가진 각 주가 주헌법을 정해 지역의 통치와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권한을 모두 행사함. 미국의 경우 문화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는 없으며, 학술과 문화예술에 관련된 단체는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Institute of Museum & Library Services),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국립인문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예술지원정책을 담당하는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등이 있음.

- 현재 미 연방정부 차원의 예술지원정책은 국립예술위원회(NCA)와 국립예술기금(NEA)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국립예술기금(NEA) - 광역예술기구(Regional Arts Organizations) - 주 예술위원회(State Arts Agencies) - 지역 예술진흥기관(Local Art Agencies)로 이어지는 협력적 구조로 이루어짐.
- NEA의 심의와 관련해서 전문심의회(advisory expert panel)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미국연방예술위원회(National Council on Arts)에 추천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예술에 있어서 다양한 경향을 수렴하기 위해 문화, 인종, 지역, 나이, 지역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심사위원을 위촉함. 또한 일반위원(lay individual)을 반드시 포함시켜 전문인으로서만 구성되어 관련 분야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도록 조정함. 심의결과는 지원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NEA의 서류보관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 심사위원의 성명은 공개되지 않음.

2) 뉴욕주 문화예술법

- 뉴욕주의 문화예술법은 예술의 증진, 작가와 작품과 관련된 거래, 대중예술 또는 영화예술의 전시의 규제, 뉴욕주 문화자원, 극장 연합 자금지원, 극장

티켓 판매 규제, 허가받지 않은 사진과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자료와 관련된 제재, 상표, 아동 공연자와 모델의 보호, 연극 고용 계약 및 각종 문화 관련 트러스트 등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포괄함.

- 미술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뉴욕주 문화예술법은 작가와 작품과 관련된 거래의 장에서 명시적 보증(Express Warranties)의 항목을 별도로 두어 미술상(art merchant)이 미술품을 판매함에 있어 부담하는 특수한 의무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명시적 보증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음.
- 특히 뉴욕주 문화예술법은 미술상이 미술상이 아닌 소비자에게 진품증명서(certificate of authenticity)를 교부한 경우의 효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뉴욕주 문화예술법에 따르면 미술상이 미술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진품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진품증명서는 거래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추정됨.
- 미술상이 순수미술 작품을 팔거나 교환함에 있어 미술상이 아닌 자에게 진품증명서나 이와 유사한 서면을 제공한 경우, 이러한 서면은 1) 거래의 기초(basis of the bargain)를 이루는 것으로 추정되고, 매매나 교환이 있었던 날에 진술된 중요한 사실(material facts)에 대한 명시적 보증(express warranty)이 됨(뉴욕주 문화예술법 §13.01.1). 이때 보증의 정도를 해석함에 있어서 사용된 용어와 매매나 교환이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에서의 거래 관습과 용례에 의해 주어진 용어의 의미를 적절히 고려하였다면 그러한 보증은 부정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됨(뉴욕주 문화예술법 §13.01.2). 뉴욕주법상, 진품증명서 기타 이와 유사한 서면에 사용된 문언의 해석에 있어서는, 1) 아무런 제한 문구 없이 작품이 기명 저작자에 의한 것이라는 진술 또는 작품의 저작자가 기명된 자라는 진술은 명백하게 해당 작품이 해당 저작자에 의한 것 또는 해당 작품의 저작자가 기명된 자임을 의미하며, 2) 작품이 “특정 저작자의 것이라고 여겨진다”라는 진술은 그 작가의 그 시기의 작품이 그의 것으로 보이나 확실하지는 않음을 의미하고, 3) 작품이 “기명 작가의 화파”의 작품이라는 진술은 해당 작품이 해당 작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작가의 제자 또는 가까운 추종자에 의한 해당 작가의 시기의 작품을 의미함(뉴욕주 문화예술법 §13.01.3).
- 뉴욕주 문화예술법은 보증의 정도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 관습이나 용례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품증명서상의 모든 기재에 명시적 보증의 범위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함. 그러나 뉴욕주 문화예술법은 책임부인의 규정이 눈에 잘 띄이도록 서면으로 작성되고 명시적 보증과 별개로 매도인이 해당 작품과 관련하여 어떠한 위험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구로 매수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다면 그러한 책임부인 조항상의 보증의 부정이나 제한은 비합리적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책임부인 문구는 명시적 보증을 부정하거나 제한하는데 충분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음(뉴욕주 문화예술법 §13.01.4)이 전문가의 증언 등의 증거에 의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함.

3

미술 진흥을 위한 단일 법률 제정 필요성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예술진흥법」이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비롯한 기존의 문화예술 관련 법률들은 미술진흥에의 측면에서 미술 생태계 전부를 포괄하고 미술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미비한 사항들이 많으며 미술 창작, 기획, 전시, 유통, 향유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 특히 문화예술 분야의 모범적 성격을 가진 「문화예술진흥법」의 경우 문화예술 전체 장르에 대한 지원을 주된 목적과 내용으로 삼고 있어 최근 기술과 플랫폼의 다각적 발달로 인하여 큰 변화를 겪고 있는 미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미술진흥법 제정을 통해 미술생태계 전체의 활성화를 위한 미술 관련 정책을 체계화하고, 정책의 일관성·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1 미술 관련 법·제도적 쟁점

1. 주요 용어들의 법적 개념

가. 미술

□ 정의 방식

-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의 개념에 “미술”이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정의 규정은 부재함. 다만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공공디자인’을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은 ‘서예’를 “문자를 중심으로 종이와 붓,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각예술”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은 ‘공예’를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취하고 있는 장르 및 부문의 열거식 정의 방식은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열거 방식은 새로운 예술영역이나 장르의 발현, 예술과 비예술부문과의 통섭과 융·복합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보호나 공적지원 대상에서 배제 또는 누락되는 등 ‘법의 지체’ 현상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며 새로운 장르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를 보여줌.²⁾ 반면 열거방식의 대안으로 ‘미술’의 핵심적인

2) 양혜원 외, 문화예술진흥법 정비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p.

속성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기술하고, 여기에 포함되는 장르나 부문을 예시 규정으로 제시하는 방식(예: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문화산업’의 정의,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의 정의)은 열거방식보다 좀 더 유연하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법 적용대상을 보다 폭넓게 정의할 수 있고, 핵심적인 속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예시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이를 보호대상으로 포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짐. 그러나 이러한 혼용적인 방식의 경우에도 예시로 제시된 장르에 포함되지 못하는 활동은 법의 적용 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을 대표하고 있음.

- 따라서 ‘시각적 매체의 이용’을 주 개념으로 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영상, 건축 등 시각적 매체를 이용하는 예술 활동으로 볼 수 있지만 다양한 속성을 포함하는 장르의 경우 미술진흥법상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 적용 범위

- 미술진흥법이 적용되는 미술의 정의에는 전통적인 미술 형식인 회화, 복제가 가능한 사진, 판화, 조각, 공예, 사진 이외에 장르간 융합을 통해 동시대 미술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행위예술이 포함됨.
- NEA는 미디어 아트를 “예술적 매개체 또는 학문 분야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확장하기 위한 매개체로 전자적 매체, 영화 및 신구 기술(아날로그 및 디지털)을 사용하는 모든 장르와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영화, 텔레비전, 라디오, 음향, 비디오, 인터넷, 인터랙티브 및 모바일 기술, 비디오 게임, 복합 플랫폼 스토리텔링 및 위성 스트리밍이 포함됨.³⁾ 한편 미술 분야에서 현재 ‘영상’ 혹은 ‘영상예술’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영상’의 개념과 범위가 불분명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상 ‘영화’는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3) Media arts is defined by all genres and forms that use electronic media, film and technology (analog & digital; old and new) as an artistic medium or a medium to broaden arts appreciation and awareness of any discipline. For example, this includes projects presented via film, television, radio, audio, video, the Internet, interactive and mobile technologies, video games, immersive and multi-platform storytelling, and satellite streaming. [<https://www.arts.gov/artistic-fields/media-arts>](2021.3.11. 검색)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며 ‘애니메이션(animation) 영화’는 “실물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현실과 유사한 동적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인력 또는 기술력을 이용하여 표현한 영화”를 말하고 ‘비디오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 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함. 따라서 ‘영상’의 경우 ‘영화’, ‘애니메이션’, ‘비디오물’의 정의를 다 포괄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한편 ‘매체’라는 단어 자체가 매우 포괄적이라서 어떤 관점에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정 속성을 가진 정보 담지체 전부를 ‘매체/미디어’라고 지칭하기도 하며 종이, 물감, 소리, 글자, 신체, 빛, 디지털 디바이스 등이 다 ‘매체’이고, 그런 ‘매체예술’이라는 용어는 그런 매체를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사용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매체예술’보다는 이미 널리 통용되고 있는 ‘미디어 아트’로 지칭하는 것이 바람직함.

- 최근 미술 분야에서 건축가와의 협업을 통한 여러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기존의 ‘조각’ 개념으로는 포괄되지 않는 ‘공원’이나 ‘교량, 임시 혹은 영구 건축물 등이 포함되며 ‘아트 파빌리온’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건축물과는 다른 스타일의 건축물 제작도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건축의 경우 예술적 가치를 가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인 미술품 보다 그 규모나 제작비 규모가 더 크고, 또 공공적 성격을 가지게 되기에 일반적으로 건축 법령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한옥 등의 건축자산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건축을 이 법상 미술에 포함하는 경우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기존의 건축과 다르게 규정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므로 건축은 이 법의 적용대상인 미술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미술진흥법이 적용되는 미술에는 개별법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공예, 서예 역시 포함됨. 다만 미술진흥법과 이들 개별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장르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른 지원을 우선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미술품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은 “공예”에 대한 개념 정의와 별개로,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공예품’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이 포함됨. 이러한 기술 방식을 감안할 때 ‘미술’에 대한 정의와 별개로 미술 관련 활동을 통하여 산출된 결과물의 법적 개념이 필요함.

다. 미술기록물

- 미술 관련 활동을 통하여 산출한 유·무형의 창작물 이외에 미술 활동 과정에서 생성된 기록 역시 보존할 가치가 있으며 기록 자체가 전시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미술 관련 기록물의 수집, 관리, 활용 등 아카이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미술기록물’의 법적 개념도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관(行政博物館)로 규정하고 있음.
- 기록은 문자, 기호, 숫자, 이미지, 소리 등으로 표현된 ‘내용’과 이를 서식, 단락, 글자크기 등 특정의 물리적 특성과 양식으로써 구현되도록 한 ‘구조’, 기록이 생산되도록 한 정황을 나타내어 기록의 이해를 돕는 ‘맥락’의 3가지 주요한 기본 요소로 이루어 있는데 기관·조직에서 관련 업무가 진행 중이고 해당 기록을 현재 업무수행에 계속해서 필요로 할 경우 현용기록으로 분류되며, 업무 종결 후 참고로 활용되는 기록은 준현용기록, 일정기간 경과 후 완전히 종결되어 업무상 활용되는 일은 드물지만 영구적 가치가 인정되어 보존기록으로서 관리되는 기록을 비현용기록으로 분류될 수 있음.⁴⁾

4) 기록학용어사전, 한국기록학회.

라. 미술전시

- 전통적인 미술관, 갤러리가 아니라 작업실, 작업실이 없는 경우 거주지에서도, 온라인 웹사이트나 유튜브, 카카오톡, 컴퓨터 게임 내부에서 전시하는 경우와 같이 ‘전시’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음. 증강현실(AR) 기반 전시 관람 플랫폼의 출현이나 전례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낳은 소위 ‘언택트’ 전시 관람의 확대, 나아가 NFT와 메타버스(metaverse)가 결합한 가상 공간에서의 미술 관람의 급부상을 감안할 때 이런 경향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미술전시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 ‘전시’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은 제19조에서 저작자는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도 전시를 정의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는데, 이는 복제, 공연, 방송, 전송 등 저작물의 주요 이용 양태를 정의하고 있는 태도와 차이를 보임. 대신 저작물의 공표 방법의 하나로 전시를 열거하고 있으며(제2조 제25호) 공표권의 제한 규정(제11조 제3항), 전시권의 제한 규정(제35조) 등에서 “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한편 대법원은 저작권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전시를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 등의 유형물을 일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⁵⁾ 따라서 저작권법상 전시권의 적용 대상인 전시가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 자체에 의한 직접 전시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개 수단을 통한 간접 전시나 인터넷 접속을 통한 소위 ‘인터넷 전시’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음. 반면 미국 저작권법의 경우 전시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시는 직접적으로 또는 필름, 슬라이드, TV 영상, 또는 그 밖의 다른 장치나 공정에 의하여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며, 영화나 그 밖의 시청각저작물의 경우에는 개별 영상을 비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함.⁶⁾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예술의 표현·공표 기법이 다양해지고 매체 간 융합도 활발해짐에 따라 미술관 내에서 통상적으로 ‘전시’로 불리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음.

5)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4343 판결.

6)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

-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미술진흥법상 지원 대상에 전시가 포함되는 경우 미술관, 갤러리 등 기존의 미술전시 공간이나 시설이 아닌 곳에서 전시하는 경우에도 미술진흥법에 따른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미술전시’에 대한 정의는 포괄적이어야 함.

마. 미술 관련 서비스업

- 미술시장의 확대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미술품 유통과 향유 플랫폼이 다양해짐에 따라 전통적인 유통업이나 감정업, 전시업 이외에 인터넷을 활용한 미술 관련 서비스업 역시 다양해지고 있으며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미술 관련 서비스업이 증가하고 있음.
- 미술품 유통의 경우 화랑이나 경매회사, 아트페어를 통한 미술품 판매나 중개, 전문 업체를 통해 미술품이 대여되는 경우 이외에도 대체 투자 수단으로 미술품이 활용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미술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 결정에 관한 자문을 영리 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미술품 자체를 유통하는 경우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의 지분을 판매하는 공유 플랫폼이 등장함.
- 또한 대안공간의 경우 미술관의 권위주의와 상업 화랑의 상업주의에서 벗어나 작가나 기획자의 활동과 유기적으로 결부된 비영리적인 전시공간으로 인식되었으나 재원 마련을 위한 상업 활동도 병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술품 대여업체의 경우 미술품 대여 뿐 아니라 일정한 대여 기간이 지난 후 작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대여 기간에 따라 지급된 대여료의 일부나 전액을 구매대금에서 할인해 주고 있음.
- 화랑이나 미술관, 비엔날레 등을 통한 전통적인 전시 이외에 전문전시업체를 통해 기획·운영되는 전시,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시 등 전시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미술진흥법상 적용대상인 미술 관련 서비스업은 전통적인 미술품 유통업으로 볼 수 있는 화랑업이나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대여업 이외의 유통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품 전시업을 포괄하는 개념임.

- 미술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정의 및 분류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제정된 분류 체계는 없으며 관련 산업 통계생산을 위해 한국문화정보원에서 만든 문화예술산업 분류 상 시각예술은 미술용품 제조업, 미술용품 유통업, 미술품 유통업, 미술 전문 서비스업, 미술 제공업, 디자인업, 디자인 제공업, 사진용품 제조업, 사진 촬영 및 처리업, 사진용품 유통업, 사진 제공업, 공예품 제조업, 공예품 유통업, 공예 제공업, 전시 서비스업으로 분류됨. 다만 이 분류는 문화예술산업상 분류 체계로 미술품 자체가 아닌 미술용품의 제조나 유통에 관한 업을 비롯하여 미술진흥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분야는 미술진흥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대분류	중분류
문학 및 출판	번역 서비스업, 문학 제공업, 출판업, 출판 인쇄, 출판 유통업
공연	연극 제공업, 무용 제공업, 악기 제조업, 악기 유통업, 음악 제작업, 음악 복제업, 음악 유통업, 음악 제공업, 기타 공연 제공업, 공연 기획 및 제작업, 공연의류 제조업, 공연용품 유통업
시각예술	미술용품 제조업, 미술용품 유통업, 미술품 유통업, 미술 전문 서비스업, 미술 제공업, 디자인업, 디자인 제공업, 사진용품 제조업, 사진 촬영 및 처리업, 사진용품 유통업, 사진 제공업, 공예품 제조업, 공예품 유통업, 공예 제공업, 전시 서비스업
문화유산및 문화시설	사적지 운영업, 문예시설 운영업, 도서시설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시설 운영업

<문화예술산업분류(한국문화정보원)>

바. 기타

- 미술진흥법상 지원대상인 ‘창작활동’과 관련해서는 ‘창작’이라는 단어가 그림, 조각 등 유형의 미술품에 해당한다는 함의가 있어 퍼포먼스와 같은 미술 작업은 ‘창작활동’ 지원에 포함되지 않음을 시사하는 우려가 있으므로 ‘창작활동’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음.
- 미술 분야에서 기획의 개념이 전시 구상, 운영, 전시장 조성 등을 전제로 한 전시를 넘어서 교육 프로그램, 시각적 매체 기반의 융복합콘텐츠 프로젝트로 확대됨에 따라 기획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2. 미술창작자 등의 권익 보호 제도화

가. 불공정행위 금지

- 현행 「저작권법」에는 저작재산권 양도에 대한 제약이 없어, 양도가 불공정한 경우에도 이를 교정하기가 곤란함. 아직 창작되지 않았거나 예정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한 포괄적 양도 및 이용허락 계약을 무효로 하고, 저작물의 내용이 정해진 장래 저작물의 경우도 5년 경과시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저작재산권등의 계약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도록 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2018년 국회에 발의된 바 있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됨.⁷⁾ 아울러 대부분의 공모전에서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됨을 일방적으로 결정·공고하고, 이에 따라 공모전에 응모하면 정당한 보상 없이 모든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14년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나 가이드라인의 사용이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보니 2019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자료⁸⁾에서도 파악된 바와 같이 국내 공공부문에서조차도 이러한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이 준수되지 않고있음. 이에 2020년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귀속하도록 하고, 공모전 주최자는 '이용허락'의 방법으로 저작물 활용이 가능하며, 저작재산권의 양도가 필요할 경우 응모자(입상자)와 별도로 합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020년 개정판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배포함. 그러나 이 지침의 사용 역시 강제성이 없음. 한편, 협상력이 약한 창작자가 저작재산권을 과도하게 '양도'하고 저작물 이용 수익 분배에서 소외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진흥법」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제24조 제2항). 따라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저작재산권 양도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7)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016777.

8) 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최근 4년간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열린 창작물 공모전 525건을 대상으로 저작권 실태를 점검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중앙부처 등에서 주최한 공모전 525건 가운데 입상작의 저작권을 응모자가 가진 경우는 223건으로 전체의 42.5%에 그쳤다.

- 이러한 현저하게 불공정한 저작재산권 양도 금지는 현재 논의 중인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의안번호 제2107440) 역시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이후, 계약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수익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에 저작재산권 양수인에게 일정한 보상(수익의 분배)을 청구할 수 있는 저작자의 추가 보상청구권을 신설하였다는 점과 함께 고려되어야 함. 저작물의 경우 시대나 환경에 따라 가치의 편차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양도에 따른 대가에 비해 양수인이 과도한 이익을 얻게 될 수 있고, 양수인에 비해 창작자의 협상력이나 정보가 부족함에 따라 저작물을 통한 이익의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저작재산권 양도에 대한 제약이 없어, 양도가 불공정한 경우에도 이를 교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저작자의 창작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추가 보상청구권이 도입됨.⁹⁾ 추가 보상청구권은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 사전에 포기가 불가하나, 일정한 기간 이내에만(계약일로부터 10년) 행사가 가능함(개정안 제59조). 아울러 추가보상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저작권 양수인에게 해당 저작물의 이용 및 수익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며 양수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다만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저작재산권을 영상제작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나. 미술 용역에 대한 적절한 대가 지급

□ 미술 용역의 특성

- ‘용역(用役)’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 또는 노동 인력을 제공하는 일”을 의미하며 사업체가 외부의 용역업체 또는 사람에게 인력을 공급받아 일정한 업무를 맡겨 수행케 하는 형태를 통칭함.¹⁰⁾
- 현행 법률에서 ‘용역’의 정의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유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9)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 채호일, 「용역과 유사용역의 실태 및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 노동부(2006).

이에 따르면 용역이란 반드시 재산 가치가 있는 역무(役務)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며, 고용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이 특징임. 한편 「예술인 복지법」은 ‘문화예술용역’을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제2조 제3호)는 「예술인 복지법」상의 문화예술용역이란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하는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현행 법률상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민법」상 ‘고용(민법 제655조 이하)’, ‘도급(민법 제664조 이하)’, ‘현상광고’(민법 제675조), ‘위임’(민법 제680조 이하)의 4가지를 전형계약과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과건법’)」의 ‘과건’을 들 수 있음.¹¹⁾
- 「민법」 제655조에 따르면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임. 「민법」 제664조에 따르면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임. 「민법」 제675조에 따르면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임. 특히 일정한 응모기간을 지정한 뒤 이러한 행위를 완료한 자 가운데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우수현상광고로 규정함(민법 제678조). 현상광고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노무의 이용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요물계약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 도급 및 위임과는 그 법적 성질이 현저히 다르다고 할 수 있음. 「민법」 제680조에 따르면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것으로, 도급과는 달리 일의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약정한 보수를 지급함. 「과건법」 제2조에 따르면 ‘과건’은 “과건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과건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임.

11)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양혜원 외,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문화예술용역 범위 설정 방안 기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2018), 29-37면

- 미술 분야의 용역 계약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당사자인 경우 이외에도 사인들, 특히 예술인들 간에 체결되는 경우가 빈번함.
- 미술 분야에서 주로 맺는 계약은 인적 용역제공계약과 저작권양도와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임. 그 외에도 신작 제작, 출판계약, 공모전, 매매, 출연, 대관, 운송, 배급, 대여 등의 다양한 계약이 존재함. 미술 분야의 용역계약은 사람의 노동력 공급과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고용, 도급, 위임 등에 해당하는 노무계약(勞務契約)의 형태를 가짐. 특히 소정의 기간 중 특정 업무의 완성을 약정하는 도급의 형태가 많음. 홍보인쇄물 제작 및 배급이나 운송, 설치 등의 업무나 디자인 계약 등은 업무의 완성을 약정하고 있으므로 도급의 형태를 가짐. 그러나 장비의 대여나 대관의 경우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형태를 가짐. 전문적인 홍보대행업체나 입장권 판매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위임에 해당함. 미술 분야의 경우 단일 계약을 통해 순수한 의미에서의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와 제작비, 경비 등이 일괄적으로 종종 지급됨. 저작물 창작 계약의 경우에도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와 작가나 기획자 등이 제공한 용역의 결과물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양도, 저작물 이용허락, 출판 등을 위한 대가가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빈번함.
- 한나 아렌트는 인간 활동을 ‘생명유지에 필요한 소비재를 생산’하는 활동인 노동(labour), ‘지속성을 가지며 세계의 일부가 되는 사물을 산출’하는 활동인 작업(work), 행위(action)로 구분하는데,¹²⁾ 노동의 산물은 생명유지를 위해 소비되어 사라지지만, 제작의 산물은 좀 더 견고하고 지속적으로 세계를 구성함. 예술제작의 산물은 유용성을 가지지 않고 따라서 이용되지도 않기에 가장 큰 영속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예술은 일반적인 유용품 제작활동과도 구분됨. 따라서 ‘미술 용역’에 대한 ‘용역 대가’는 일반적인 노동이나 유용품 제작활동과는 다르게 적정한 대가 기준이 책정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은 9조에서 국가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창달에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22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예술의 자유’를 가지고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미술가의 활동은 문화 발전에 중요한 기여이며, 국가는 미술활동(용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을 보장함으로써 미술가의 활동을 지원할 헌법상의 의무를 지님.

12) 한나 아렌트(이진우·태정호 옮김), 인간의 조건(한길사, 2006).

또한 미술용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국민으로서 미술가의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건이기도 함. 또한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문화 예술을 제공하는 미술가의 활동이 필수적이며, 이는 그 활동의 정당한 대가가 보장될 경우에만 지속 가능함. 따라서 국가는 미술용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가치 차이(value gap)와 적절한 용역 대가 지급

- 적절한 용역 대가의 지급은 저작물의 디지털 이용에 따른 수익과 창작자가 받는 보상 간의 불균형의 문제를 지적하는 가치 차이(value gap)의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¹³⁾
- 2005년 ‘UNESCO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채택 이후 디지털 환경 및 관련 기술에서 문화 제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변화되었음. 그러나 필요한 기반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술가들이 필요한 기술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과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의 문화에 대한 접근이 실제 쉽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가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이에 대하여 2015년 6월 제5차 동 협약 당사국 총회는 동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디지털 쟁점들을 검토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2017년 6월 제6차 당사국 총회에 제출할 것을 동 협약의 각국 위원회에 요구하였음. 이에 따라 2017년 6월 UNESCO는 기술 중립성, 창작자의 기본권 존중, 공정한 보상을 받을 창작자의 권리, 지식재산권이나 단체교섭권과 같은 기본 원칙들을 강조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UNESCO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집행에 관한 운영 가이드라인(Operational Guidelin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Digital Environment)>을 채택함. 동 가이드라인은 동 협약 및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사국들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적 표현을 보호하며 특히 창

13) 저명 인터넷 정책 학자이나 네트워킹 엔지니어링 전문가인 리차드 바넷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객원연구원은 구글은 콘텐츠 재생 횟수를 기준으로 1회당 0.0006 달러를 예술가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애플 뮤직, 스포티파이와 판도라와 같은 플랫폼들이 지급하는 금액의 약 10%에 불과한 반면 구글 서치가 유튜브를 우선 순위에 배치하기 때문에 트래픽을 보장받는다고 지적하였다. <https://bit.ly/2P2wCHS> 참고.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박경신, 2018 KIPnet IP-저작권분과 보고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한국저작권위원회(2018), pp.43-49 참고.

작의 단계에서 당사국들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예술가와 전문가를 직접 지원하고, 예술가와 문화전문가에 대한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증진하며, 디지털 권리의 집중 관리와 디지털 권리의 단체 협상이 가능하도록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15년 3월 유럽 위원회는 디지털 싱글 마켓 전략 수립을 위하여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의 접근성 개선, 디지털 네트워크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환경 구축, 디지털 경제 조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2015년 5월 6일 3대 중점 전략과 16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된 ‘유럽 디지털 싱글 마켓 전략(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을 발표함. 동 전략의 일환으로 2015년 12월 9일 유럽 위원회는 동시에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EU 저작권 지침 개정을 포함한 EU 저작권법 현대화를 위한 실천 계획인 ‘현대적인, 보다 유럽적인 저작권 체계를 향하여(Towards a modern, more European Copyright Framework)’와 함께 ‘올바른 기능을 하는 저작권 시장 구축(ACHIEVING A WELL-FUNCTIONING MARKETPLACE FOR COPYRIGHT)’을 정책 목표로 천명한 실천 계획인 전달문(Communication)을 발표함. 이와 관련하여 유럽 위원회는 시장이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권리자가 라이선스를 부여하여 온라인상 배포된 자신의 콘텐츠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온라인에서 창작자나 창조적인 산업 분야에 의해 생성된 저작물이 다양한 시장 플레이어에 의해 가치가 공유되고 있는지 여부, 저작자 및 실연자에 대한 보상시스템의 법적 안정성, 투명성, 균형을 제고하기 위하여 EU 차원에서의 해결책이 요구되는지 여부가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이러한 맥락에서 2019년 3월 26일 유럽 의회를 통과한 디지털 싱글 마켓에서의 저작권 지침은 저작자 및 실연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이나 실연을 이용허락한 경우 적정하고 공정한 보상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제18조) 저작자 및 실연자는 자신의 저작물이나 실연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여기에는 이용 방법과 이용으로 인한 수익도 포함된다고 규정함(제19조). 또한 처음에 합의한 보상이 이후에 전체 수입과 비교해서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제20조) 저작자 및 실연자는 자신의 저작물이나 실연이 이용되지 않는 경우 이용허락의 전체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22조).

- 2014년 7월 16일 독립 음반 회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세계 독립 네트워크 (Worldwide Independent Network, 'WIN')는 디지털 음악 서비스로 인하여 창출된 수익에 대한 예술가와 음반 회사 사이의 공정하고 투명한 결산을 서약한 '공정 디지털 거래 선언서(Worldwide Independent Network's Fair Digital Deals Declaration, 'WIN 선언서')'를 채택하였고 23개국 750개 이상의 독립 음반 회사들이 WIN 선언서에 서명함.¹⁴⁾ WIN은 WIN 선언서의 발표와 함께 독립 음반 회사와 대형 음반 회사 사이의 공정한 거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성명서(Global Independent Manifesto)를 발표하였는데 동 성명서는 독립 음반 회사들이 대형 음반 회사들과 동일한 시장 접근 기회와 계약 조건을 보장받아야 하며 독립 음반 회사들이 행사하는 저작권 역시 대형 음반 회사들이 행사하는 저작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치가 평가되고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함. WIN 선언서는 음반 회사는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하여 예술가가 분배받을 수익에 관하여 음반 계약과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명세표에 명확히 설명할 것과 음반의 디지털 서비스로부터 수익이 창출되었으나 수익이 특정 음반으로부터 창출된 것은 아닌 경우에도 음반 회사는 예술가들에게 균등하게 선의로 분배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함. WIN 선언서를 바탕으로 2015년 9월 29일 프랑스 문화통신부 장관은 디지털 거래에 관한 투명성 보장과 공정한 수익 분배를 골자로 '온라인 음악의 공정한 발전을 위한 협정(Protocole d'accord pour un développement équitable de la musique en ligne)'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영국 상원은 WIN 선언서를 모범 관행의 예시로 인용하였음.
- 2015년 5월 프랑스 문화통신부 장관은 온라인 음악 산업의 발전에 관한 음반 회사, 실연자, 디지털 서비스 업체 간의 논의를 감독하기 위한 중재자를 임명한 이후 2015년 9월 디지털 거래에 관한 투명성 보장과 공정한 수익 분배를 골자로 하는 '온라인 음악의 공정한 발전을 위한 협정(Protocole d'accord pour un développement équitable de la musique en ligne)'을 발표하였고

14) 2014년 6월 유튜브가 새로 시작할 유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YouTube Music Pass)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음반 회사의 뮤직비디오와 음원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한 계획에 대하여 독립 음반 회사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유튜브는 삭제 계획을 연기하였음. 독립 음반 회사들의 주장은 새로 시작될 유튜브 서비스에 관한 계약이 경쟁 스트리밍 서비스업체에 비해 적은 사용료 지급 조건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튜브가 독립 음반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사용료보다 적은 액수의 사용료의 지급에 대형 음반 회사들이 동의하는 경우 유튜브는 이메일을 통한 30일간의 통지 이후 독립 음반 회사들에게 지급할 사용료를 대형 음반 회사에 지급할 사용료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계약 조건이 대형 음반 회사들에 비하여 독립 음반 회사들에 불리하다는 것이었음.

2015년 10월 2일 프랑스음악저작권협회 (SACEM), 프랑스음반제작자협회 (SPPF), 프랑스음반협회 (SNEP)를 비롯한 18개 단체가 협정에 서명함. 이 협장은 i) 경제적 투명성의 확립, ii) 예술가를 위한 공정한 보상 보장, iii) 관련자들의 음악 저작물의 디지털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자원의 유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2018년 9월 25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음악현대화법 (Music Modernization Act)에 포함된 음악 프로듀서를 위한 분배법 (Allocation for Music Producers Act)(안)은 미국 저작권법 제114조 제(f)호의 법정허락 적용 대상인 녹음물의 디지털 음성 송신에 의한 공연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분배하도록 저작권 사용료 심판관에 의하여 지정된 비영리 집중관리단체는 예술가에게 지급해야 할 라이선스 사용료의 일부를 해당 녹음물의 프로듀서, 믹서 (mixer)나 사운드 엔지니어에게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술인고용보험

- 예술인의 경우 수입이 불규칙하고 소득이 있는 기간 이외에 사실상 실업상태인 예술 활동 준비기간이 많아 실업 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어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에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특례 규정이 신설되면서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됨.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예술인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임. 이는 임의가입이 아니라 당연가입으로 설사 계약서에 고용보험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예술인 고용보험의 강제 적용대상이 되는 예술인은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으로 창작, 실연 (實演), 기술지원 등의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 뿐만 아니라 예술활동 증명은 어려우나 예술 활동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 예술인과 처음으로 예술활동을 시작한 신진 예술인도 적용 대상임.
- 이에 따라 예술인을 상대로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문화

예술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는 작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의 자격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따라서 작가의 노무 제공 대가인 인건비(인건비성 금액으로 노무 제공을 위해 수반되는 식비, 교통비, 소모성 재료비 등 운영비를 포함)는 고용보험료와 실업급여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다. 기술 기반 미술 플랫폼의 등장과 건전한 유통질서 조성 필요성

□ NFT 아트의 부상

- 블록체인 기반 NFT 아트는 권리 변동에 따른 추적이 용이하여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저작권 정보의 명확성을 제공함으로써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하고 저작권 사용료 정산·분배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며, 창작 활동의 촉진과 미술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미술시장을 활성화하는 등의 순기능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크립토아트(Crypto Art)에 따르면, 5개 NFT 거래소에서 집계된 2021년 3월 NFT 미술품 거래 금액은 총 2억515만달러였는데, 이는 2월 거래액 9154만달러보다 124%나 증가한 것임.¹⁵⁾ 처음부터 NFT 거래를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미술품 이외에, 파블로 피카소와 같은 거장의 기존 작품들도 NFT 시장에 가세하고 있는데, 2021년 4월 23일 가상자산 플랫폼 트론(TRON)은 피카소 작품을 포함한 “The First Collections”를 위한 ‘저스트 NFT 펀드(JUST NFT Fund)’를 공개한 바 있음.¹⁶⁾
- 크리스티(Christie’s), 소더비(Sotheby’s)와 필립스(Phillips) 등 글로벌 경매회사들이 적극적으로 NFT 아트 판매에 나서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서울옥션과 카카오가 시장진출을 선언하는 등 NFT 아트가 미술시장에 갖는 영향력

15) <https://cryptoart.io/data>(최종방문일: 2021.5.31.)

16)

<https://cryptopotato.com/justin-suns-just-nft-fund-has-released-the-first-ever-picasso-nft/>(최종방문일: 2021.5.31.)

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메타버스(metaverse)와의 결합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NFT 아트는 기존의 디지털 콘텐츠의 거래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저작권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NFT 아트에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이 이용되더라도 이미 유통된 저작권 침해물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가 있음. 게다가 블록체인 기반 NFT 플랫폼 운영자가 탈중앙화를 이유로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는 NFT 아트의 삭제 요청에 소극적일 수 있는데 실제 2021년 1월 크립토 예술 그룹인 BCA(BlockCreatArt)는, 「크로스(Cross)」라는 NFT 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작품들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침해 혐의가 있는 작품들을 플랫폼에서 삭제해 줄 것을 크로스에 요구하였으나 크로스 측에서는, 자신들은 탈중앙화 플랫폼 형태라 개인이 올린 작품을 삭제할 권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¹⁷⁾ 또한 위작이 NFT화되어 유통되는 경우 미술계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위작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21년 5월 31일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작가의 작품 3점이 NFT화되어 온라인 경매에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시장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나, 박수근과 김환기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유족과 재단측이 반발하고 나섰고 위작 논란까지 함께 제기되자,¹⁸⁾ 경매를 진행했던 업체는 경매를 중단한 바 있음.
- 블록체인을 통해 허위로 저장된 권리 정보가 일정한 시점에 입력된 경우, 그 정보는 입력 시점 이후로 수정되지 아니한 채 진품인 것처럼 유통될 수 있음.
- 그러므로 NFT 아트의 건전한 유통질서 조성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NFT 아트가 제기한 새로운 과제들에 대하여 저작권법을 비롯한 법률적 측면에서의 검토 필요성이 큼.¹⁹⁾ 아울러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제기

17)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는 상당수의 작품들의 거래는 현재 종료된 상태임. NFT 거래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 책임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박경신, "NFT 아트를 둘러싼 저작권법 쟁점에 대한 검토", 2021 저작권 학술대회: 새로운 플랫폼에서의 저작권 쟁점 자료집(2021.6.11.) 참고.

18) 이한빛, "NFT아트시장, 진위 의혹·저작권 논란에 '흔탁'", 헤럴드경제(2021.6.1.),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601001054>(최종 방문일: 2021.6.1.). 이중섭 작가의 경우 1956년 사망했기 때문에 저작권재산권은 만료했다.

19) NFT 아트와 관련해서는 저작권 쟁점 이외에도 다양한 법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NFT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NFT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상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NFT 아트가 야기하는 환경 문제 역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거래하는 데 막대한 양의 전기가 소모되자,

된 문제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비롯한 적절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²⁰⁾

라. 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 (추급권)

□ 개요

- ‘추급권(追及權)’으로도 불리는 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보상청구권 (resale right)은 일반적으로 미술품 원본의 소유권을 작가가 양도한 후에도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에 대하여 매매가 또는 수익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배당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 재판매보상청구권은 미술품의 최초 판매시 작가가 소유권 양도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보상적 성격의 청구권으로 볼 수 있으며 재판매보상청구권은 형평성에 근거하여 법률상 인정된다는 점에서 실연의 기회 상실에 대한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실연자에게 인정되는 저작권 법상 음반의 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이나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포함된 추가 보상청구권과 유사함.
- 2011년 7월 1일 발효된 한-유럽연합 FTA 제6차 협상의 결과로 협정이 발효된 후 양측은 2년 내에 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보상청구권 도입의 적절성 및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기 위한 협의를 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도입에 관한 국내에서의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미흡한 상황임. 그러나 향후 어떤 형태로든 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보상청구권 도입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협의 개시가 예정된 상황임.
- 미술 원작품 저작자의 이익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84/EC(이하 ‘EU 재판매보상청구권지침’) ²¹⁾을 채택함. 영

NFT의 생태적 비용에 비판이 커지고 있으며, NFT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뒤늦게 알려지자 디지털 예술가를 위한 온라인 시장 아트스테이션(ArtStation)은 NFT 플랫폼 출시 계획을 취소했다.

20) 박경신, 앞의 자료집 참고.

21) Directive 2001/8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01 on the Resale Right for the Benefit of the Author of an Original Work of Art.

국은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비하여 늦은 2006년 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 규칙(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2006)이 제정되어 2006년 2월 14일부터 재판매보상청구권이 시행됨. 다만 미술시장이 재판매보상청구권의 도입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장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 사항이라는 이유로 사망한 미술인의 미술품에 대한 재판매보상청구권 적용을 2010년까지 유예하면서 경우에 따라 추가적으로 2년 더 유예할 수 있도록 결정함.²²⁾ 2009년 12월 18일 영국 정부는 사망한 미술인의 미술품에 재판매보상청구권이 적용될 경우 추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예술가의 상속인이 재판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2년 더 유예하기로 결정함. 이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사망 후 70년이 지나지 않은 미술인의 미술품에 대하여도 재판매보상청구권이 확대 적용됨.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이후에도 미술품 재판매 보상청구권은 영국 내에서 발생한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유럽 경제 지역(European Economic Area) 내에서 발생한 미술품 재판매에 적용됨.²³⁾

□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에 대한 국내 찬반 논의²⁴⁾

- 한-유럽연합 FTA 협상이 진행되던 2007년 당시 한국미술협회와 한국미술추급권협회는 한국 미술시장의 발전과 미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생계보장을 위한 적절한 제도가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 재판매보상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힘. 이와 관련하여 미술품 거래를 중개하는 포털아트 역시 미술인들의 권익보호와 미술품 시장의 투명화를 위해서 추급권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힘. 반면 한-유럽연합 FTA 협상이 진행되던 2007년 당시 서울옥션과 K옥션은 추급권이 시행될 경우에도 미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점과 한국 미술시장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에 반대 입장을 보임.²⁵⁾

22) EXPLANATORY MEMORANDUM TO THE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2006.

23)

[<https://www.dacs.org.uk/for-art-market-professionals/frequently-asked-questions#FAQ1341>] (최종방문일: 2021.2.30.)

24)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계승균·박경신, 「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보상청구권 도입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2017) 참고.

25) 2007. 7. 20. 서울옥션, 2007. 7. 16. K옥션, 2007. 7. 13. 한국미술협회, 2007. 8. 11. 한국미술권추급권협회, 2007. 8. 11. 포털아트가 각각 작성하여 당시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추급권 도입에 대한 의견서' 참고. 이동기·김솔하, "유럽의 추급권 제도 운영과 우리나라에의 도입 여부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22권 1호, 한국저작권위원회(2009), p.66에서 재인용.

- 재판매보상청구권 국내 도입과 관련하여 2011년 실시된 재판매보상청구권 인식 현황 실태조사에 의하면 제도에 대해 설명한 후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찬성 의견은 80.3%, 반대 의견은 19.7%였음.²⁶⁾ 작가 영역의 찬성비율은 90.1%(미술작가 90.5%, 사진작가 80%)이며 예비작가는 94.3%, 공공영역은 69.8%(국립미술관 47.4%, 사립미술관 79.5%)로 나타난 반면 유통영역의 찬성비율은 35%(화랑 34%, 경매회사 28.6%, 아트페어 100%)로 작가영역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큰 차이를 보였음.²⁷⁾ 제도 도입 시기는 일정기간 후 도입 의견이 55.9%(작가영역 51.3%(예비작가 55.6%), 유통영역 75%, 공공영역 83.3%), 즉시 도입 의견이 44.1%로 나타났으며 도입방법에 대해서는 단계적 도입 의견이 66.9%(작가영역 60%(예비작가 71.6%), 유통영역 87.5%, 공공영역 88.1%), 전면 도입 의견이 33.1%로 나타남.²⁸⁾
- 순수미술인에 대한 복지와 정책적인 지원이라는 재판매보상청구권 연혁 및 입법 취지와 재판매보상청구권 제도가 시행되는 유럽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판매보상청구권 제도의 도입이 미술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은 제도와 현실을 면밀히 고찰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고 보면서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순수미술인의 사회권적 기본권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제도로서 경과 규정의 내용을 정비하고 집중관리단체 등 재판매보상금의 집행에 관한 제도를 마련해가면서 도입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²⁹⁾
- 이외에도 재판매보상청구권의 도입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시장상황, 관련 시스템의 구축 정도, 그 밖에 외국의 도입 사례와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국제적 추세를 감안할 때 더 이상 선택의 문제는 아니며 다만 방식과 정도, 도입 시기의 문제가 남아 있을 뿐이라는 견해가 있음.³⁰⁾
- 재판매보상청구권이 도입되는 경우 재판매보상청구권이 도입되지 않은 해외 미술시장으로 이탈될 수 있다는 우려는 실증적 논거가 미비함. 특히 영국은 EU 재판매보상청구권 지침의 제정과 영국 내 도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는데 이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영국 미술시장이³¹⁾ 재판매보상

26) 한국저작권위원회, 앞의 보고서, p.50.

27) 한국저작권위원회, 앞의 보고서, p.50.

28) 한국저작권위원회, 앞의 보고서, p.54.

29) 이동기·김솔하, 앞의 글, p.68.

30) 미래 저작권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2016), p.97.

청구권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유럽권 내에 중요한 미술시장 라이벌인 스위스와 같은 재판매보상청구권이 도입되지 않는 국가에 재판매보상청구권의 회피 시장이 형성되거나 화랑이나 미술상이 이전하여 시장주도권을 빼앗길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강했음. 실제 유럽순수미술재단 (European Fine Art Foundation)의 2005년 2월에 나온 재판매보상청구권에 관한 보고서³²⁾에 따르면 2001년 당시 약 5,690만 유로의 가치를 평가받은 르네 가페 컬렉션 (René Gaffé Collection)을 유엔아동기금 (UNICEF)이 유증받아 파리가 아닌 뉴욕에서 판매한 것은 총 170만 유로의 재판매보상금 지급을 회피하고자 재판매보상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뉴욕을 판매지로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음.³³⁾ 반면 미국인 컬렉터가 독일 쾰른에 소재한 경매회사인 쿤트하우스 렘페르츠 (Kunsthau Lempertz)의 2004년 12월 4일자 경매에 자신의 근대 미술 컬렉션을 경매로 내놓은 결과 매우 성공적인 낙찰기록을 기록했으며 독일 다다이스트 미술인인 커트 슈비터스 (Kurt Schwitters)의 미술품의 낙찰가는 세계 기록³⁴⁾을 수립하기도 함.³⁵⁾ 이러한 상반된 사례들은 특히 하나의 미술품이 아닌 컬렉션 전체를 경매에 위탁하는 경우 재판매보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판매 장소를 고려하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으나 독일 다다이즘 컬렉션이 쾰른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것처럼 특정 사조의 미술품, 특히 컬렉션의 경우 특정 국가의 미술시장에서 더욱 높은 가격대에 판매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매보상금은 매우 성공적인 낙찰가 안에 흡수되어 그 영향이 미미할 수 있음을 보여 줌.³⁶⁾ 따라서 미술시장의 특수성에 대한 분석 없이 단순논리로써 시장의 이동을 우려할 필요는 없음. 또한 미술품 거래 장소에 대한 판단은 포장비, 보험료, 운송비,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부대비용과 환율변동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단지 재판매보상청구권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미술시장이 이동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31) 1998년 영국 미술시장의 거래액이 유럽 전체 미술품 거래액 중 60%를 차지하는 등 영국 미술시장은 미국 시장에 이어 세계 2위의 거래규모를 자랑하고 있었음. Culture, Media and Sport Committee, The Market for Art, April 2005, Evidence, p. 26 참고.

32) Kusin, McAndrew & Ginsburgh, The Modern and Contemporary Art Market, TEFAF, 2005

33) N. Ferry-Maccario & O. Silhol, Droit de l'art, Ellipses, 2006, p. 22 ; Scoping Study: Artist's Resale Right, Intellectual Property Institute, Oct 2005, p. 15 [http://www.ipi.gov.uk/ipinstitute/study.pdf] (최종방문일: 2017.11.30.).

34) Kurt Schwitters의 부조작품 Relief mit gelbem Viereck 2(1928)는 2004년 예상가 800,000 - 1,000,000 유로를 상회하는 1,460,000유로의 낙찰가를 기록하였음. [http://www.lempertz.eu/rekorde.html]

35) Culture, Media and Sport Committee, The Market for Art, April 2005, Evidence, p. 34.

36) 이동기·김솔하, 앞의 글, pp.59~60.

- 재판매보상청구권을 도입한 국가들의 제도내용과 운영현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도 도입이 미술시장을 위축시킨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음.³⁷⁾ 다만 시장 위축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시장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판매보상금 최고한도 책정, 세제 혜택 등의 제도 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미술품의 판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이 함께 개발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에 따라 제기되는 구매 이력을 비롯한 개인 정보의 공개에 따른 시장 위축 문제는 개인 정보의 경우 이를 수령한 자나 집중관리단체에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거나 특정 정보에 대한 접근을 특정인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통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실제 국내 미술품의 가치 증대는 일부 미술인에게만 일어나고 있고 그 결과 재판매보상금의 소득 재분배효과는 극히 비대칭적인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있음.³⁸⁾ 특히 1차 시장인 화랑에서 재판매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재판매가 발생하는 2차 시장인 경매에서 거래되는 미술인의 수가 일부에 불과한 상황임.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 재판매보상금의 징수액은 상당히 높으며 생존 미술인들에게 대한 재판매보상금 분배 역시 점점 증가하고 있음.³⁹⁾ 2010년 유럽미술시장연맹 (European Art Market Coalition)의 보고서에 의하면 유럽 대륙에서 징수된 재판매보상금의 74%는 미술인의 상속인, 20%는 집중관리단체에게 돌아갔고 6%만이 생존 미술인에게 분배되었음.⁴⁰⁾ 그러나 2013년 프랑스는 24,293건의 거래로부터 재판매보상금으로 12,442,901 유로를 징수하였는데 1,938명의 미술인 중 45%는 생존 미술인이었음. 영국의 경우 EU 재판매보상청구권 지침의 내용을 완전히 도입한 후 2년째인 2013년 840만 유로 규모의 재판매보상금을 1,400명의 미술인 및 유족들에게 분배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470만 유로와 비교했을 때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였음.⁴¹⁾ 또한 이러한 재판매보상청구권의 도입에 따른

37) 이동기·김솔하, 앞의 글, p.68.

38) 정상철, 재판매보상청구권제도 도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계간 저작권 제107호, 한국저작권위원회(2014), pp.161-162. 해당 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술인 1인당 평균 재판매보상금은 작고 미술인이 생존 미술인보다 대체로 2배에서 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최저 거래한도 100만원 하에서 상위 50명의 미술인이 전체 재판매보상금의 65%를, 나머지 미술인이 35%를 배분받는다. 상위 50명의 미술인은 평균 1인당 5천만원, 나머지(1,742명) 미술인은 평균 1인당 74만원 정도를 배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39) Sam Ricketson, Proposed international treaty on droit de suite/resale royalty right for visual artists(2015), pp.19-20.

40) Daniel Grant, The Royalty Treatment, NEW YORK OBSERVER (Apr. 2, 2014), [<http://observer.com/2014/04/the-royalty-treatment/>]

41) Allison Schten, 앞의 글, p.129, 각주99에서 재인용.

수혜자는 소수에 불과할 뿐이라는 의견은 비단 재판매보상청구권에만 제기 되는 반대가 아니라 복제권, 공연권이나 공중전달권과 같은 저작권에도 제기 되는 반대로써 저작권은 수익이나 수익의 공평한 공유를 “담보(guarantee)”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취향이나 수요에 따른 수익을 “약속(promise)”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⁴²⁾ 아울러 재판매보상청구권이 적용되는 최저가격 기준을 설정하고 재판매보상금 중 미분배 보상금을 창작활동 지원 및 미술 분야 발전을 위한 공익목적의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국내에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시 재판매보상청구권 혜택을 받는 미술인은 소수에 불과하고 미술인의 소득 불평등이 더욱 가중된다는 문제점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음.

- 재판매보상청구권이 실질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재판매보상청구권자가 미술품 거래 이력의 추적할 수 있어야 하며 재판매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고 이러한 등록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에 행정상 부담 및 비용 소요의 문제가 있음. 그러나 미술시장의 비밀주의 관행을 고려하여 미술품 재판매 관련 정보의 수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용 대상 재판매 경로를 제한하거나 관리비용 내지 행정 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재판매가의 최저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 아울러 미술인이나 미술인의 유족이 개별적으로 재판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관 관청이 지정하는 집중관리단체를 통한 강제적 집중관리 방식을 도입하고 해당 집중관리단체에게 정보제공요청권을 부여하며 정보제공의무 미준수에 대한 제재 조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판매보상청구권의 집행의 실효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 재판매보상청구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등록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관리에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법률의 시행에는 비용이 소요되며 효율적인 법률의 시행에 따른 비용의 부담과 비용 절감을 위한 비효율적인 법률의 유지 사이에서 선택이 이루어져야만 함.⁴³⁾
- 재판매보상청구권의 도입이 미술품 가격 상승의 감소로 이어져 미술인의 수입이 더욱 감소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데이터가 부재함. 아울러 재판매보상청구권의 도입에 따라 미술인이 질적으로 더 좋은 작품을 생산하

42) Sam Ricketson, 앞의 보고서, p.18

43) Stephanie B. Turner, 앞의 글, p.368

는 경우 이는 최초 판매가의 상승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상승효과(quality effect)는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 최초 판매가의 하락효과(tax effect)를 상쇄할 수 있음.⁴⁴⁾ 수입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할 때 극소수의 미술인만이 경제적 성공을 거둔 뿐 압도적 다수는 성공과는 거리가 멀고 미술인이 미술 활동 이외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미술 활동을 통해서만 창출되는 수입은 더욱 낮을 수 있으므로 미술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지 않다는 견해는 설득력이 없음.⁴⁵⁾

- 재판매보상청구권을 미술저작물이 체화된 유체물의 최초 판매 후 해당 유체물에 대한 일정한 통제로 이해하는 경우 권리소진의 원칙과 충돌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재판매보상청구권은 미술품의 유통 자체의 통제가 아닌 유통시 일정한 수익의 공유만을 목적으로 하므로 저작권법상 권리소진의 원칙과 충돌한 여지는 없음.
- 미술품은 작가의 창작물이면서 동시에 제품이지만, 미술창작은 노동의 대가가 정해진 임금 등의 명시적 형태로 지급되는 일반적인 노동과는 달리 그 가치가 작품에 잠재적 형태로 구현되는 노동으로 미술작품에 내재하는 이 잠재적 가치는 작가의 명망, 미술사적 의의의 발견, 작가의 사망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사후에 발현/실현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초 판매 가격보다 작품가격이 상승했다면 창작 노동의 산물인 작품의 잠재적 가치가 사후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이유로 그 판매가 일부가 그 가치 생산자인 작가/혹은 유족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함.

□ 재판매보상청구권의 도입 관련 쟁점⁴⁶⁾

○ 법적 성격

- 재판매보상청구권은 형평성에 근거하여 법률상 인정된다는 점에서 실연의 기회 상실에 대한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실연자에게 인정되는 저작권

44) Carson W Bays, Does a Droit de Suite Benefit Artists? The Case of California, Association for Cultural Economics International Meetings(2007.7.6.-9.), p.3.

45) 2010년 조사에 의하며 약 264,000명의 미국 근로자 중 미술인을 부수적 직업으로 가지고 있었음.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Artists and Arts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Findings from the American Community Survey (2005-2009)(Resale Royalties: An Updated Analysis, U.S. COPYRIGHT OFFICE(2013), p.35 각주 237에서 재인용) 참고.

46)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계승균·박경신, 앞의 보고서 참고.

법상 음반의 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과 유사함. 따라서 물권적 금지권이 아니라 일종의 채권적 청구권으로 볼 수 있으며 재판매보상청구권 위반시 금지청구를 인정할 수 없음.

- 재판매보상청구권의 사전 포기나 양도를 인정하는 경우 재판매보상청구권이 필요하지만 협상력이 약한 작가, 특히 신진 작가들은 계약 과정에서 재판매보상청구권의 행사가 사전에 배제될 수 있음. 협상력의 우위에서 미술시장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판매가를 비롯한 거래 조건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장래의 재판매보상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미술인을 설득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음. 재판매보상청구권을 도입한 국가들은 재판매보상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판매보상청구권의 입법취지가 미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해주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계약상으로 협상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미술인이 궁핍이나 압력에 의하여 재판매보상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사태를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상속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작가와 그의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의 해소와 수입 확보라는 재판매보상청구권의 취지에 반하므로 작가 사망 이후에는 상속인이 재판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적용 대상 미술품

- 저작권법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보호 대상을 한정함. 그러나 재판매보상청구권 적용 대상을 저작물로 한정하는 경우 저작권법상 창작성이 인정되지 못하거나 저작물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는 미술품들이 적용 대상에 제외될 수 있으며 재판매보상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물성에 관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음. 그러나 모든 유형의 미술품을 재판매보상청구권 적용 대상으로 허용하는 경우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음. 이는 재판매보상청구권인 미술품 판매의 일회성을 감안하여 인정되었다는 점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복제물의 경우 작가가 직접 제작하거나 그의 책임 하에 만들어진 제한된 부수의 복제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다른 유형의 저작물의 저작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한 재판매보상청구권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대량 복제를 전제로 한 응용미술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초기 적용 대상 미술품의 범위는 최소한으로 하고

시행 경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적용 범위

- 재판매보상청구권 적용 대상인 재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작가에 의한 최초 판매를 상업적 판매로 한정하고 유상 양도 이외의 교환, 증여, 상속 등을 제외하는 경우 재판매보상금 지급 대상의 확인이 어려움. 따라서 교환, 증여 등을 제외한 유상 양도에만 국한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최초 소유권의 이전이 금전 또는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경우에도 후속 판매는 재판매에 해당함.
- 재판매보상청구권 적용 대상인 미술품 재판매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인간의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실상 거의 불가능하므로 사인 간의 거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화랑이나 미술상을 통해 거래되는 미술품 재판매의 경우 거래내역 신고제가 도입되거나 거래이력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니터링이 어려우며 자발적 신고 의무를 부가하는 경우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초기 시장의 부담을 야기할 수 있음. 경매의 경우 경매회사가 경매 전 매매 카탈로그를 배포하고 경매 후 낙찰가를 발표하며 이에 따라 일반 대중은 매매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매매가와 같은 매매 관련 정보를 상대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매보상청구권의 행사가 일정 수준 보장될 수 있음. 경매가 미술품 재판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⁴⁷⁾ 일부 미술품 재판매에만 재판매보상청구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⁴⁸⁾ 이러한 유형의 재판매보상청구권에 관한 법률은 미술품 판매를 사적 매매 시장을 비롯한 1차 미술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개인 미술상에 비하여 경매회사를 차별한다는 논란이 야기될 수 있음.⁴⁹⁾ 그러나 도입 초기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재판매보상청구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프랑스나 벨기에의 경우처럼 도입 단계에서는 화랑을 비롯한 미술상을 통한 재판매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행 경과를 검토한 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47) Carole M. Vickers, Comment, The Applicability of the Droit de Suite In the United States, 3 B.C. INT'L & COMP. L. REV. 433, 463 (1980).

48) Carole M. Vickers, 앞의 글, p.463.

49) John Henry Merryman, The Wrath of Robert Rauschenberg, 41 AM. J. COMP. L. 103, 123 (1993).



<미술품 판매 금액 비중(2019년)>



<미술품 판매 수 비중(2019년)⁵⁰⁾>

- 재판매보상청구권 미적용을 통하여 징수분배비용이 재판매보상금 지급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최저가격 기준이 높을수록 징수·분배를 위한 관리비용에서 보다 자유롭지만 재판매보상금 규모 축소에 따라 혜택을 향유하는 작가의 수가 감소함. 최저가격 기준이 낮거나 없는 경우 재판매보상금 규모는 커지고 혜택을 향유하는 작가의 수는 증가하는 반면 징수·분배를 위한 관리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게 됨. 경매회사를 통해 판매된 미술품의 가격 비율과 EU와의 재협상 가능성을 감안하여 재판매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 저작물⁵¹⁾의 저작자 규정이 적용되어 실제 미술품을 창작한 작가가 아닌 미술품의 창작을 기획한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자로 의제되는 미술품의 경우 미술품 원본 시장과 미술저작물 시장에서의 권리관계의 충돌로 인한 미술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재판매보상청구권을 보호할 이익과 미술품 소유권자를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일정한 경우 재판매의 범위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음. 따라서 EU 입법례를 감안하여 매도인이 원작자로부터 작품을 직접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재판매하는 경우로서 재판매가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을 제외함. 또한 재판매보상청구권을 화랑이나 기타 미술상을 통한 재판매에까지 확대하는 경우에는 1차 미술시장의 가장 중요한 참여자인 화랑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기 위하여 화랑이나 미술상이 작가로부터 해당 미술품을 직접 구매하여 비교적 단기간 이내에 해당 미술품을 소정의 재판매가 이내에서 재판매하는

50) 2020 미술시장실태조사, 예술경영지원센터(2021), p.40.

5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의미함.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참고.

경우나 화랑이나 미술상 고객에게 판매했던 미술품을 해당 고객이 소정의 기간 내에 해당 화랑이나 미술상에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19년 2월 이탈리아 재판매보상청구권 집중관리단체인 SIAE는 화랑들과의 6년여간의 논쟁 끝에 화랑이 작가로부터 미술품 판매 위탁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 재판매보상청구권이 적용되는 최초 판매 이후의 재판매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간함.

○ 산정기준

- 브라질이 채택하고 있는 미술품의 가액 상승분을 기준을 하는 방식이 판매된 미술품의 가치 증가에 대하여 작가가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재판매보상청구권의 도입 취지에 논리적으로 부합할 수 있음. 그러나 미술품의 가액 상승분 중 일정 비율을 재판매보상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은 해당 미술품의 가액이 상승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매수인이나 대리인이 전매에서의 판매가를 공개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다면 가액 상승의 입증이 어려움. 따라서 이 방식은 재판매보상청구권의 집행을 "거의 불가능"하게 함.⁵²⁾ 재판매가를 기준으로 재판매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 이전 매매 기록을 보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고 실용적인 산정 방식임.⁵³⁾ 따라서 가액 상승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아닌 재판매가를 기준으로 재판매보상금이 산정되는 방식이 바람직함. 추가 과세의 성격을 갖는 재판매보상금이 시장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되지 않도록 재판매가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다만 복원비, 액자비, 경매수수료 등 필요경비는 제외함.

○ 산정요율

- 재판매보상청구권 요율과 관련하여 인도, 멕시코, 나이지리아 등의 국가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관할 관청에 의한 요율 책정 방식은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시장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음. 단일요율제 방식은 단계요율제에 비하여 매수인과 미술상, 작가에게 확실성과 예견가능성을 보장해 주며

52) Michael B. Reddy, The Droit de Suite: Why American Fine Artists Should Have a Right to a Resale Royalty, 15 LOY. L.A. ENT. L. REV. 509, 516(1995).

53) Liliane de Pierredon-Fawcett, The Droit De Suite in Literary and Artistic Property: A Comparative Law Study (John M. Kernochan, ed., Louise Martin-Valiquette trans.), Center for Law and the Arts,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1991), p.5

집중관리가 용이함. 그러나 재판매보상금이 지나치게 소액 또는 고액이 될 가능성 있음. 단계요율제 방식은 매매가가 높아짐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요율을 적용함으로써 높은 재판매보상금 요율의 적용으로 인한 시장 이탈을 방지할 수 있음. 그러나 단계요율제 방식 중 단순 단계요율제의 경우 재판매가가 고액일수록 지급해야 하는 재판매보상금이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재판매가	단순 단계요율제 적용시 재판매보상금	구간별 단계요율제 적용시 재판매보상금
250,000유로	2,500유로	7,000유로
700,000유로	1,750유로	9,250유로

<단순 단계요율제와 구간별 단계요율제의 비교⁵⁴⁾>

- 따라서 작가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고 보상금 지급의무자간의 형평성을 감안하고 EU와의 재협상 가능성을 고려할 때 EU와 같은 구간별 단계요율제가 무난함. 다만 미술품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기준선 등을 고려하여 재판매가 구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 경매 시장에서 판매되는 미술품 거래가 비율, EU의 최고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 매수인에게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요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재판매보상금 최고 한도

- 따라서 재판매보상금에 총액제한을 두는 것은 저작권의 전통과 배치되고 미술품의 가액이 상승하는 경우 작가가 그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그러나 과도한 재판매보상금 발생을 억제하여 재판매보상청구권이 도입되지 않는 국가의 시장으로 고가의 미술품 시장이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총액 제한은 필요함.
- EU와의 재협상 가능성을 감안할 때 EU의 재판매보상금 최고한도가 12,500 유로와 비슷한 수준인 1,500만원이 무난함.

○ 청구권자 및 지급의무자

54) EU 재판매보상청구권지침 상 요율을 적용함. 계승균·박경신, 앞의 보고서, p171.

- 작가가 생존하는 경우에는 작가에게, 작가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귀속함.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저작인격권과는 다른 성격의 권리로 침해금지 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저작자 사후 저작인격권 침해금지청구권자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음. 작가 사후 재판매보상청구권자를 민법 제1000조에 따른 미술인의 법정상속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작가의 유증에 의한 상속을 허용하더라도 민법 제1112조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이 인정되어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⁵⁵⁾ 그러나 유증을 허용하는 경우 재판매보상청구권을 사실상 양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유류분 제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유증에 의한 사실상의 양도를 일정 정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버린다면 재판매보상청구권 제도 자체를 파행으로 몰고 갈 가능성도 있음. 작가나 그의 가족의 권익 보호라는 재판매보상청구권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작가가 사망 후 재판매보상청구권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콜렉티브를 비롯한 다수가 미술품 창작에 참여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다수의 작가가 창작한 미술품의 재판매보상청구권자의 검토가 필요함. 재판매보상청구권은 미술품의 이용을 금지하는 준물권적 배타적 권리가 아니라 채권적 성격의 권리이므로 공동으로 미술품을 창작한 작가들 간의 합의를 권리 행사 요건으로 할 필요는 없음. 그러나 다수의 작가가 공동으로 창작에 참여하는 작업 형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재판매보상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공동 창작자 간의 권리 관계를 규정할 수 있음. 따라서 2인 이상의 작가가 공동으로 미술품을 창작한 경우 서면으로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각 작가는 창작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판매보상청구권을 보유하도록 함.
- 재판매보상청구권을 도입한 국가들은 통상적으로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자국민인 미술인의 재판매보상청구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외국인만 내국민대우를 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작가가 해외에서 재판매보상금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인 작가에게도 재판매보상청구권을 인정할 필

55)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됨.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참고.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음.

요가 있음.

- 미술품 재판매를 통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매도인이 재판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재판매보상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도인과 매도인의 대리인인 미술품 경매업자의 보상금 지급 공동책임을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이러한 공동지급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매도인의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미술품 경매업자가 매도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게 되어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음.

○ 집행방식

- 작가나 그의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재판매보상청구권을 관리하고 후속판매를 모니터링하는 어려움을 감안하면 미술품 경매업자를 상대로 직접 재판매보상청구권을 집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집중관리단체를 통한 재판매보상청구권의 관리가 효율적임. 집중관리단체는 미술시장과 지속적인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고 이를 통해 법적 조치를 동원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재판매보상청구권이 집행을 보장할 수 있음. 아울러 해당 집중관리단체는 해외의 집중관리단체들과의 상호협정을 맺어 해당 국가에서 징수되는 재판매보상금을 용이하게 분배받을 수 있음. 미술품 경매업자의 입장에서라도 개별적인 재판매보상금 지급 요청에 대응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재판매보상청구권을 위한 집중관리단체를 신설하는 방안보다는 기존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이 초기 관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재판매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음.⁵⁶⁾
- 재판매보상청구권이 저작권법상 보상청구권과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강제적 집중관리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집중관리단체가 해당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작가를 위해서도 재판매보상금을 징수·분배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 효과적인 재판매보상청구권 관리를 위해서는 집중관리단체의 수수료 징수를

56)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신탁관리는 한국문화정보원이 하고 있음.

인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여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집중관리단체와 마찬가지로 과도한 수수료 책정 및 임의적인 요율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요율에 대해서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미분배된 재판매보상금의 경우 지급한 자에게 환불하기보다는 저작권법상 미분배보상금과 마찬가지로 공익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다만 재판매보상청구권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미분배보상금은 작가의 복지를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집중관리단체에 의한 임의적인 보상금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정보제공청구권

- 해외 재판매보상청구권의 실효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매도인, 작가, 집중관리단체 등 다양한 매매 당사자들이 일정한 매매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미술시장의 폐쇄성에 의하여 강력하게 지배되고 있는 미술시장에서 이러한 정보는 이용에 많은 제한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재판매보상청구권과 미술시장의 비밀주의 관행 사이에 상당한 충돌을 야기함.⁵⁷⁾ 재판매보상청구권이 시행된 이후에도 미술시장의 당사자들이 재판매보상청구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술품 매매 정보를 공개하기보다 시장의 비밀주의 관행을 계속 따르는 경우 재판매보상청구권은 무의미하게 됨.⁵⁸⁾ 재판매보상청구권의 효율적 행사를 위한 매매 정보 수집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시 정보제공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재판매보상청구권을 인정하면서 매도인이 이러한 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매도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이론적으로 재판매보상청구권의 집행이 보다 용이해지므로 정보제공청구권은 재판매보상청구권과 관련된 정보 부재의 문제에 대하여 부분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 강제적 집중관리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정보제공요청권 역시 집중관리단체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제도의 도입 초기 시장의

57) Stephanie B. Turner, The Artist's Resale Royalty Right: Overcoming the Information Problem, UCLA Entertainment Law Review, Vol. 19, No. 2 329, 333 (2012).

58) 박경신, 미술시장의 비밀 준수 관행 및 추급권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재고, 정보법학 제20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2016), 98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음.

- 다만 재판매통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호주의 입법례에서처럼 매도인에게 재판매 사실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방식은 매도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야기하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비칠 수 있으므로 영국의 DACS처럼 재판매보상청구권 집중관리단체가 정기적으로 정보제공 요청서를 미술품 경매업자에게 발송하여 정보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방안이 필요함.
- 아울러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신원과 같은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정보를 수령한 작가나 집중관리단체에 부과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107440)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대가와 저작물 이용으로 양수인 등이 얻은 수익 간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저작자가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보상 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추가보상 청구를 위해서는 권리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성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양수인의 영업비밀 침해 등을 우려하여 통상적인 자료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그 위반에 대한 제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⁵⁹⁾

○ 보호기간

- 해외 입법례와 유사하게 작가 사망 후 일정 기간 동안 재판매보상청구권이 존속하도록 하되 미술품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 국내 현실과 도입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여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보다 단축된 기간 동안 보호하고 운영 현황을 검토한 후 추후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인 7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경과 규정

- 재판매보상청구권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국내 미술시장의 혼란

59)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40) 검토보고서(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2).

과 반발을 최소화하고 기타 세부적인 제도 마련을 통한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표 후 2년의 유예 기간이 필요함.

3. 소비자 보호

가. 소비자의 권익 보호

- 백화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을 비롯해 미술 유통 플랫폼이 다양해짐에 따라 과거 미술시장은 소수 컬렉터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지금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비층이 다양해지면서 새로우면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대중적인 시장으로 바뀌고 있음.
- 특히 미술품이 대체투자 수단으로 적극 활용됨에 따라 고가의 미술품을 다수의 투자자가 나눠서 구매한 뒤 되팔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업체들이 다수 생김.
- 그간 미술 관련 제도나 지원이 작가를 비롯한 창작자, 전시, 유통업자 등에 집중되어 온 반면 미술시장의 주요 구성원인 소비자는 간과된 측면이 있었음. 따라서 건전한 미술품 유통 질서 조성을 위해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과 제도 운영이 필요함.

* 유사 입법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0조의4(소비자 보호) 정부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문화산업과 관련된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5.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보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7조(청약철회 등) ① 콘텐츠제작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외한다)에 따라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가 불가능한 콘텐츠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거나 콘텐츠의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31조, 제32조, 제40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콘텐츠사업자”로 “재화등”은 “콘텐츠”로, “소비자”는 “이용자”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본다.
- 제28조(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① 정부는 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콘텐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지침(이하 “이용자 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사업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 ② 콘텐츠사업자는 콘텐츠를 거래할 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오금의 환불, 콘텐츠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권리, 콘텐츠 결함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콘텐츠사업자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이 이용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이용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콘텐츠 거래에 관한 약관의 견본을 마련하여 콘텐츠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 ⑤ 콘텐츠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시정권고, 시정조치 및 벌칙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40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본다.

나. 진품증명서 발행 요청

□ 진품증명서의 역할

- 전통적으로 미술품에 직접 서명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미술품의 창작과 완성에 대한 보증을 하는 주체는 작가였음. 그러나 미니멀리즘이나 개념미술의 등장 이후 진품증명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진품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작가, 매체, 일자, 일품인지 한정판인지 여부를 기재함. 솔 르윗(Sol LeWitt)의 벽에 설치되는 드로잉 작품이나 펠릭스 곤잘레스-토레스(Felix Gonzalez-Torres, 1957-1996)의 종이 스택이나 사탕더미로 이루어진 작품의 경우에는 작품의 설치 방법이 설명되어 있기도 함.
- 미술품이 일단 공중에 유통되고 나면, 작가가 생존하는 경우 작가와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딜러, 큐레이터, 감정인 등 시장전문가가 진품 증명을 주로 담당하며 작가의 재단이 진품 증명을 하기도 함.
- 진품 증명과 관련해서는 허위 감정, 진품 인정 거절⁶⁰⁾ 이외에도 진품 인정 철회가

60) 1995년 앤디 워홀 재단의 진위감정위원회(Authentication Board)는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 휘말린

쟁점이 되고 있음.

- 특히 진품 인정 철회는 저작권권과 관련이 있는데, 프랑스의 경우 지식재산법에서 명시적으로 철회권을 인정하고 있음. 진품 인정 철회는 1) 작가가 판매한 작품이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2) 작품이 변경된 경우, 3) 대가 지급과 관련하여 작가와 소장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 있음. 비물성의 작품이 종이에 쓰여진 일련의 지시문과 드로잉으로 이루어져 있고 소장자에게 작품을 실현하도록 하거나 기성품을 조립하도록 위임하는 미니멀 아트와 개념 미술의 등장과 함께 진품증명서는 작가와 소장자에게 모두 중요함. 개념 미술품의 소장자가 진품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이를 판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조셉 쿠수스 (Joseph Kosuth) 같은 작가는 진품증명서의 분실 또는 도난 시 재발급을 하지 않는 데 이 경우 사전 서면 합의가 없는 경우 법적으로 재발급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함.



<솔 르윗의 진품증명서⁶¹⁾>

이후 2011년 운영을 중단함.

61) <http://www.themilanese.com/?p=3610>



<RED AND GREEN ALTERNATIVES (TO SONJA) 2와 진품증명서⁶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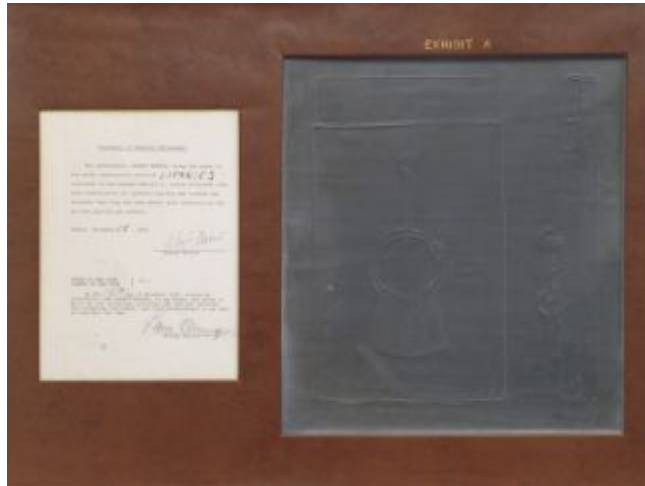
- 작가와 소장자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진품 인정이 철회된 대표적인 사건은 로버트 모리스(Robert Morris)가 자신의 작품을 구매한 소장자가 육개월 이상 작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심미적 철회 선언 (Statement of Esthetic Withdrawal) 이라는 또 하나의 작품을 발표한 것임. 선언문에서 모리스는 “아래 서명한 로버트 모리스는 첨부한 ‘증거 A’에 묘사된 <리타니즈>라는 금속 조각의 제작자로서 원작품의 모든 심미적 특성과 내용(aesthetic quality and content of the original work)을 철회하는 바이다. 그리고 명시한 날짜로부터 위의 작품은 어떠한 특성이나 내용도 갖고 있지 않음을 선언하다”고 기록하고 서명한 후 공증을 받았음.⁶³⁾ 이러한 논란은 도널드 저드(Donald Judd)와 저드의 작품을 여러 점 구매한 이탈리아의 주세페 판자 백작(Count Giuseppe Panza di Biumo) 간의 분쟁에서도 재발하였음. 미니멀리즘 작가들의 작품 판매는 작품의 설계도와 드로잉과 함께 진품보증서를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종이상의 설명과 스케치로만 존재하는 저드의 작품을 구매한 판자 백작이 작가에게 알리지 않고 이를 토대로 제작한 작품에 대해 저드는 자신의 모든 작품은 재료와 제작 방식의 선택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는데 자신의 감독하에 제작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고 공표한 바 있음.

62)

<https://www.sothebys.com/fr/auctions/ecatalogue/2014/contemporary-art-day-sale-n09142/lot.201.html>

63) 로버트 모리스(Robert Morris)는 자신의 작은 금속 조각 작품인 <리타니즈(Litanies)>를 선보였는데 <리타니즈>는 나무 위에 납판을 씌우고 스물일곱개의 열쇠가 걸려있는 통그란 고리를 매달아 둔 단순한 작품으로 각각의 열쇠에는 마르셀 뒤상(Marcel Duchamp)의 노트에서 발췌한 단어들을 새겨져 있었음.

64) <https://www.moma.org/collection/works/79897>



<로버트 모리스의 Document⁶⁴⁾>

□ 미술품 판매자의 보증 책임

- 통상적으로 작가나 소장자가 작품의 판매를 화랑을 비롯한 유통업자에게 맡기는 경우 중개계약이 될 수도 있고, 위탁판매 계약이 될 수도 있음. 화랑 등이 작가나 소장자를 구매자를 중간에서 연결해 주고 작품 판매자 명의를 작가나 소장자로 하는 경우 작가나 소장자와 화랑 등 사이의 계약을 중개계약으로 해석되고, 화랑 등이 작품 판매자로 나서는 경우 위탁매매계약이 됨. 중개업과 위탁매매업의 경우에는 상법이 적용됨.
- 이에 따라 타인 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인 중개인(상법 제93조)의 경우 중개인이 임의로 또는 당사자가 그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할 것을 중개인에게 요구하여 중개인이 그 상대방에게 교부할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년월일과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과 중개인의 장부의 등본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게 하여 당사자의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96조부터 제99조).
- 한편,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인 위탁매매인에 해당하는 경우, 상법 제105조(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

□ 관련 해외 입법례

○ 미국: 뉴욕주 문화예술법

- 미술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뉴욕주 문화예술법은 작가와 작품과 관련된 거래의 장에서 명시적 보증(Express Warranties)의 항목을 별도로 두어 미술상(Art merchant)이 미술품을 판매함에 있어 부담하는 특수한 의무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명시적 보증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음.
- 특히 뉴욕주 문화예술법은 미술상이 미술상이 아닌 소비자에게 진품증명서(certIFICATE OF AUTHENTICITY)⁶⁵⁾를 교부한 경우의 효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뉴욕주 문화예술법에 따르면 미술상이 미술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진품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진품증명서는 거래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추정됨.
- 미술상이 순수미술 작품을 판매하거나 교환함에 있어 미술상이 아닌 자에게 진품증명서나 그와 유사한 서면을 제공한 경우, 그러한 서면은 i) 거래의 기초(basis of the bargain)를 이루는 것으로 추정되고, ii) 매매나 교환이 있었던 날에 진술된 중요한 사실(material facts)에 대한 명시적 보증(express warranty)이 됨(뉴욕주 문화예술법 §13.01.1). 이때 보증의 정도를 해석함에 있어서 사용된 용어와 매매나 교환이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에서의 거래 관습과 용례에 의해 주어진 용어의 의미를 적절히 고려하였다면 그러한 보증은 부정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됨(뉴욕주 문화예술법 §13.01.2). 뉴욕주법상, 진품증명서 기타 이와 유사한 서면에 사용된 문언의 해석에 있어서는, 1) 아무런 제한 문구 없이 작품이 기명 저작자에 의한 것이라는 진술 또는 작품의 저작자가 기명된 자라는 진술은 명백하게 해당 작품이 해당 저작자에 의한 것 또는 해당 작품의 저작자가 기명된 자임을 의미하며⁶⁶⁾, 2) 작품이 “특정 저작자의 것이라고 여겨진다”라는 진술은 그 작가의 그 시기의 작품이 그의 것으로 보이거나 확실하지는 않음을 의미하고⁶⁷⁾, 3) 작품이 “기명 작가의

65) 미술상이 순수미술 작품 또는 복본의 작가를 확인, 승인 또는 증명하는 서면 진술로서 누군가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문서(a written statement by an art merchant confirming, approving or attesting to the authorship of a work of fine art or multiple, which is capable of being used to the advantage or disadvantage of some person)를 의미함. 뉴욕주 문화예술법 §11.01.06.

66) (a) The work is by a named author or has a named authorship, without any limiting words, means unequivocally, that the work is by such named author or has such named authorship.

67) (b) The work is "attributed to a named author" means a work of the period of the

화파”의 작품이라는 진술은 해당 작품이 해당 작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작가의 제자 또는 가까운 추종자에 의한 해당 작가의 시기의 작품을 의미함⁶⁸⁾(뉴욕주 문화예술법 §13.01.3).

- 뉴욕주 문화예술법은 보증의 정도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 관습이나 용례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품증명서상의 모든 기재에 명시적 보증의 범위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함.⁶⁹⁾ 그러나 뉴욕주 문화예술법은 책임부인의 규정이 눈에 잘 띄이도록 서면으로 작성되고 명시적 보증과 별개로 매도인이 해당 작품과 관련하여 어떠한 위험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구로 매수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다면 그러한 책임부인 조항상의 보증의 부정이나 제한은 비합리적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책임부인 문구는 명시적 보증을 부정하거나 제한하는데 충분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음(뉴욕주 문화예술법 §13.01.4). Dawson v. Malina 판결⁷⁰⁾에서 매도인의 명시적 보증 의무 위반을 판단함에 있어 i)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표시를 할 당시, 표시에 관하여 사실상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어야 하며, ii) 매도인에게 사실상 합리적인 근거가 없었다는 사실은 매수인이 전문가의 증언 등의 증거에 의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함.⁷¹⁾

author, attributed to him, but not with certainty by him.

68) (c) The work is of the "school of a named author" means a work of the period of the author, by a pupil or close follower of the author, but not by the author.

69) Patty Gerstenblith, "Cultural, Aesthetic and Legal Perspectives on Authenticity", 35 Colum. J. L. & Arts (2012) 321, 347.

70) 463 F. Supp. 461 (S.D.N.Y. 1978).. 이 사건에서 매수인인 원고는 매도인인 피고으로부터 고미술 품에 해당하는 도자류 11점을 매매대금 합계 총 105,400달러에 매수하였는데 원고가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이후 전문가들로부터 해당 도자류가 피고의 표시와는 달리 중국 송대에 만들어진 진품이 아니라는 의견을 받게 되었고 이에 작품 중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의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게 됨. 원고는 명시적 보증 위반이 인정되기 위하여 원고는 작품이 매도인의 설명과 어떠한 점에서든 일치하지 않음을 증명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보증의 정도를 해석함에 있어서 사용된 용어와 매매나 교환이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에서의 거래 관습과 용례에 의해 주어진 용어의 의미를 적절히 고려하여야" 함을 이유로 이 사안에서와 같은 도자류 작품 감정 절차의 부정확함을 고려하여야만 한다고 반박하면서, 매수인이 증거에 의해 매도인의 표시가 사실상 부정확하였음을 확실하게 증명하지 않는다면 명시적 보증 위반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다만 이 사건은 뉴욕주 문화예술법이 독립한 법률로 제정된 1983년 이전의 사건으로서, 당시 뉴욕주 상법에 규정되어 있던 미술상의 명시적 보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구체적인 조문의 내용은 현재 뉴욕주 문화예술법의 규정과 동일함.

71) 뉴욕남부지방법원은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매도인이 매매 당시 작품이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전시되었던 중국 송대의 작품이다 등의 설명을 제공한 것은 사실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매도인의 명시적 보증 위반을 인정함.

- 뉴욕주 문화예술법은 판화, 사진, 조각 등 단일품이 아닌 미술품 유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우선 뉴욕주 문화예술법은 “복본(multiples)”을 판화, 사진, 조각 등의 미술품으로서 1개 이상이 창작되어 액자를 제외하고 미화 100달러(조각의 경우 미화 1,500달러)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미국내에서 판매되거나 청약되거나, 판매를 위해 위탁된 것으로 정의함(뉴욕주 문화예술법 §11.21). 1982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제작된 복본이 판매될 경우 매도인은 작가, 서명,⁷²⁾매체 또는 처리방식, 창작 시기, 원판(master)의 사용, 제작 시기, 판본의 규모 등의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함(뉴욕주 문화예술법 §15.03.2). 작가의 서명과 관련해서는 직접 서명하였는지 여부를 진술해야 하며 만일 작가가 직접 서명하지 않은 경우 작가의 서명의 출처(작가가 원판에 서명을 하였는지 여부, 작가의 성명이 날인되었는지, 작가의 재단이 날인되었는지, 또는 작가의 이름에 대한 다른 출처가 있거나 다른 방식으로 복본에 표기되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함. 매체나 공정과 관련해서는 매체나 처리방식을 설명하고 사진의 처리방식에 적합한 경우라면 복본이 동판, 목판, 석판, 공판 또는 특별한 방식을 통해 제작되었는지 여부와 같은 복본 제작에 사용된 재료 및/또는 사진현상 과정에서 사용된 재료를 설명해야 함. 거래 관습에 따라 확립된 용어로는 매체나 처리방식을 설명하기에 정확하지 않다면 간략하고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함. 해당 복본의 작가로 추정되는 자가 복본이 제작된 원판이 만들어진 당시 사망하였다면 이러한 사실이 진술되어야 함. 복본이나 원판상의 이미지가 기계적, 사진제판, 수공 또는 사진적 복제물인 경우 또는 설명된 복본의 창작 이외의 용도로 다른 매체로 제작된 이미지의 복제본인 경우라면 이러한 정보와 각각의 매체가 진술되어야 하고 이 경우 복본에 서명이 없다면 해당 작가가 해당 복본이나 해당 복본이 하나로 포함된 판본을 승인하였는지 여부를 진술하여야 함. 원판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복본이 작가 사후 복본인 경우 원판이 작가 생존 중에 창작되었지만 해당 복본은 작가 사망 후 제작되었다면 이러한 사실이 진술되어야 하며 해당 복본이 이전의 한정판 판본을 제작한 원판이나 또는 이전의 복본이나 이전의 복본을 제작한 원판의 복제본에 해당하는 원판을 통해 만들어졌다면 이를 진술하여야 함. 제작 시기와 관련해서는 1959년 이후 제작된 복본의 경우 복본이 제작된 연도나 추정 연도를 진술하고, 1950년 이전 제작된 복본의

72) 작가가 직접 서명하였는지 밝혀야 하며 만일 작가가 직접 서명하지 않은 경우 에디션상의 작가의 서명 출처를 밝혀야 함. 뉴욕주 문화예술법 §15.03.2 참고.

경우에는 복본을 제작한 원판이 만들어지거나 설명 대상인 특정 복본이 제작된 연도, 추정 연도 또는 시기를 진술하여야 함. 판본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설명 대상인 복본이 한정판 판본의 하나로 제공된 경우라면 이러한 사실과 해당 판본을 구성하는 복본의 개수, 해당 복본의 번호가 매겨졌는지 여부 및 방식이 진술되어야 하며 이렇게 진술된 복본의 개수는 작가 보관용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이미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번호가 매겨진 복본이 제작되지 않았다는 명시적 보증에 해당하며 또한 이렇게 진술된 복본의 개수는 시험용 인쇄 이외에는 번호가 매겨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이미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번호가 매겨진 복본이 한정판 판본에서 20개 또는 20%(둘 중 더 많은 개수)를 초과해서 제작되지 않았다는 명시적 보증에 해당함. 이처럼 미술상이 복본의 작가 성명이나 복본과 관련하여 뉴욕주 문화예술법상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명시적 보증이 성립하며, 순수 미술 작품의 판매와는 달리 미술상 사이의 복본의 판매에도 명시적 보증의 규정이 적용됨 (뉴욕주 문화예술법 §13.05.1.).

- 뉴욕주 문화예술법은 진품증명서의 기재된 바에 대하여 명시적 보증의 성립을 인정하는 한편, 진품증명서의 진실성을 해한 자에 대한 형사책임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타인을 기망하거나 해할 의도로 작품의 실제와 다른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진품증명서 기타 이와 유사한 서면을 작성 또는 사용하거나 발급한 사람은 A급 경범죄 (Class A Misdemeanor)로 처벌될 수 있음(뉴욕주 문화예술법 §13.03.). 그러나 뉴욕주 문화예술법은 이외에 위작을 판매하거나 제작한 사람에 대한 형사책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프랑스

- 미술품의 예술품 및 수집품에 대한 사기 방지를 위한 1981년 3월 3일 특별입법 81-25587(décret n° 81-255 du 3 mars 1981 sur la répression des fraudes en matière de transaction d'œuvres d'art et d'objets de collection)은 매매증서에 설명해야 할 내용과 작품 및 작가에 대한 설명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공통 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예술품 또는수집품의 판매자 혹은 그의 수입인, 공매 진행 공무원 또는 진행 자격자는 양수인의

요구에 의해 판매상품의 본질, 구성, 출처, 연식에 대한 사항이 명시된 납품서 (facture), 판매명세서 (bordereau de vente), 공매 조서 (procès-verbal de la vente publique)를 인도해야 함(제1조).

○ 중국

- 미술품의 예술품 중국 「예술품 경영관리 방법(藝術品經營管理辦法)」 (2016년 3월 15일 시행)에 따라 미술품 유통업체를 설립하기 위해서 공상행정관리부로부터 영업허가증을 발급받고, 문화행정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제5조), 위작 유통 시 금액에 따라 최소 1만원안의 벌금을 부과함(제19조).
- 또한 미술품 유통업자는 거래하는 작품은 작가, 나이, 크기, 재료, 보존상태, 판매가격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하며, 거래와 관련된 소유권의 증명, 매매계약서, 장부, 기타 판매기록 원본을 보관하고 법령에서 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거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그 보존 기간은 최소한 5년이어야 함(제9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만원안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22조).
- 미술품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화랑 등 미술품 유통업자는 매수인이 구매한 미술품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1) 작품의 창작자 본인이 인증하거나 발행한 원작에 관한 증명서; (2) 미술품 감정업자가 발행한 증명 서류; (3) 기타 해당 작품의 출처를 증명하거나 그와 관련한 증빙서류 중 하나의 증명 서류를 제공해야 함(제10조). 이외에도 미술품 감정업자는 미술품의 평가 및 그에 관련한 사항, 평가 및 그에 따른 결론을 적용할 범위, 감정을 위탁하는 자의 책임에 대해 약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미술품 평가 및 평가 절차, 감정을 위탁한 자에게 통지하거나 상기시켜야 할 사항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기재하여야 함.
- 또한 미술품 감정업자는 감정평가의 결론은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며, 그 감정평가의 결론에는 위탁한 작품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설명, 감정평가절차, 감정평가의 결론에 대한 근거, 감정평가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 진실성에 대한 책임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감정서, 감정서 결론 및 감정서 사본, 감정인의 서명 및 기타 관련 서류는 최소한 5년을 보관하여야 함(제11

조).

□ 진품증명서와 관련된 법적 책임

- 미술품 구매자가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의 발행을 요구하는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는 1) 작가, 2) 미술품을 중개하거나 판매한 미술 관련 서비스업자임.
- 작가로부터 직접 미술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작가가 발행하는 작품증명 관련 서면에 작가의 날인을 하는 것으로 진품증명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미술품을 중개하거나 판매한 미술 관련 서비스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매수자의 상대방 법적 지위가 ① 미술품을 소유하고 판매하는 미술 관련 서비스업자인 경우, ② 미술품 중개업인 경우, ③ 미술품 위탁매매업자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 ① 미술품을 소유하고, 이를 판매하는 미술 관련 서비스업자인 경우, 일반적인 매도인과 마찬가지로 의무를 부담하지만, 미술품 유통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면을 교부할 의무를 부여함. 매수인과의 합의에 따라 그 의무는 면제될 수 있음. 진품증명서는 매도인으로서 거래 미술품에 대하여 진품이라는 사실을 전제하여 매각하는 것이므로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면을 작성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그에 관한 명확한 보증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거래 질서와 미술품 유통의 선진적 체계를 달성하고자 함. 여기서 진품증명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미술품의 감정서에 기초하여 진품으로 판단하게 된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매수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미술품에 관한 매매 서류의 일부에 해당하고, 진품증명서를 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술품 유통업자가 해당 작품이 진품이라고 판단하게 된 설명을 기술한 서면(진품증명서에 갈음하는 서면)을 교부하고, 매수인이 이를 이의없이 수령함으로써 그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봄. 만일, 매수인이 진품에 관한 미술품 유통업자의 서면(진품증명서 또는 진품증명서에 갈음하는 서면)을 받고서 이의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으로 완성되지 아니함. 나아가, 매수인이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면'의 수령 이후 진품

여부와 관련한 추가적인 요청을 하는 경우,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 후 인도 시점 이전까지 별도로 지정한 감정인을 대동하여 작품의 진위 여부를 감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술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미술품 유통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와 추가적인 감정 결과 작품이 위작이라는 의견이 나올 경우,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해석됨.

- ② 미술품 중개업인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미술품 소유자와 구매자가 되지만, 이와 달리 ③ 미술품 위탁매매업의 경우에는 타인(미술품의 소유자)의 계산으로 미술품을 매매하지만 거래 또는 계약당사자(권리의무의 주체)는 위탁매매한 미술 관련 서비스업자와 그 상대방이 되는 것임. 미술품의 중개라 함은, 미술품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 미술품 중개업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미술품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
- 실무상으로는 미술품 유통업 중 중개업과 위탁매매업의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됨. 특히 미술품이 동산으로 그 거래 형태를 다양하고 변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에 관해 시장에서는 그 거래 분류에 관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는 법률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관한 권리 의무의 주체를 확정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거래에 문제가 생기거나 법률관계에 다툼이 생겨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를 확정하게 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임.
- 위탁매매업과 화랑으로서 미술품 판매업의 차이는, 위탁판매업은 미술품 매도인의 계산으로 하되, 거래 명의를 위탁매매업자로 하는 반면, 미술품 판매업자는 본인의 계산 및 본인의 명의로 미술품을 매매한다는 점에서 구분됨. 일반적인 미술품 판매업자는 상황에 따라 가격 및 대금결제 조건 등을 시장 상황에 따라 독자적으로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지만, 위탁매매인은 위탁자가 책정해 놓은 거래 조건 등에 기속되며,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의 미술품 또는 그 미술품에 대한 매매대금 등은 위탁자 본인의 소유로 됨.

- 미술품 중개의 경우 진품보증서 관련 의무

- 미술 관련 서비스업자 중 미술품을 중개하는 경우, 진품보증서 발행에 관련한 의무는 미술품 판매자로서 발생하는 의무가 아니라, 중개업에 종사하는 미술

품 유통업자로서의 직무에서 파생하는 의무임. 우선적으로 만일 매도인이 거래 미술품에 관한 진품보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술 관련 서비스업자 중 중개업자는 직접 미술품 매도 관련 계약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 매도인이 소지한 진품보증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그러나 이와 별개로 미술품 유통업자로서의 중개업에 있어서는, 중개하는 미술품의 상태,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하는 미술품에 관한 설명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고, 그 설명서에 중개인이 거래 미술품에 관하여 진품으로 판단하고 중개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기재하여야 함. 이러한 사실 기재 설명서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술품 중개업자는 미술품의 매도인(중개의뢰인)에게 당해 미술품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또한 미술품 중개업자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과 미술품의 진위를 감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경우라면, 감정에 필요한 실비를 중개수수료 이외에 청구할 수 있음.

- 한편 중개인이 거래 미술품에 대하여 진위를 의심하면서도 이를 묵비하거나 호도해서는 안되고,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미술품 중개업자는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여기에서 미술품 중개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의무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미술품 중개업자는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그 보호이익에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며, 당사자가 당해 사실을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할 것이어서 당사자가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짐으로써 이익을 침해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은 미술품 중개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비밀준수 의무의 대상에 해당함. 그러나 당사자가 비밀로 할 것을 미술품 중개업자에게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중개하여 거래되는 미술품이 위작이라는 사실이나 작품연대가 허위라는 사실 등 거래상 중대한 하자의 경우나 만일 그 상대방이 이를 알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준수하여야 할 비밀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함. 오히려 중대한 하자 및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술품 중개업자로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미술품 위탁매매의 경우 진품증명서 관련 의무

- 위탁매매업의 경우에는 타인(미술품의 소유자)의 계산으로 미술품을 매매하지만 거래 또는 계약당사자(권리의무의 주체)는 1) 매도 위탁을 받은 미술 관련 서비스업자와 구매자가 되거나, 2) 매수 위탁을 받은 미술 관련 서비스업자와 판매자가 되거나, 또는 3) 매도 위탁을 받은 미술 관련 서비스업자와 매수 위탁을 받은 미술 관련 서비스업자가 되는 것임. 따라서 위탁매매의 경우에 매매계약에 대한 사기, 착오, 강박, 해제, 무효, 취소 등의 사유에 대하여도 위탁매매인과 그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임.
- 상법상 위탁매매의 법률관계는 ①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간의 위탁계약, ② 위탁매매인과 매수인(또는 매도인) 간의 매매계약, ③ 위탁매매인의 위탁자에 대한 매매 결과의 이전행위라는 구조를 가짐. 또한 상법은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을 규정(제105조)하고 있음. 즉,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 또한 여기서 위탁매매인 자신의 매매계약인지, 아니면 위탁사무의 실행행위로서의 매매계약인지 여부가 불명한 경우가 실무상 발생할 경우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판례는 “위탁매매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한다. 그리고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자기 명의로써, 그러나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이른바 준위탁매매(상법 제113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단하여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⁷³⁾
- 미술품의 매도위탁의 경우, 미술품의 소유권은 매도계약이 이행되지 전까지는 미술품 위탁자에게 있고, 따라서 상법 제103조가 규정한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는 내용은 미술품 매도계약이 체결되어 위탁매매인이 취득하는 미술품의 대금채권에 적용됨. 미술품

73)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의 매수위탁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거래형태로는 위탁매매인이 미술품의 소유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게 됨. 이 경우에 위 제103조는 위탁매매인과 상대방간에 매수계약이 체결되어 목적물 인도청구권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적용된다고 해석됨.

- 미술품의 매도위탁의 경우, 미술품의 매도를 위탁한 자료부터 진품증명서를 위탁매매업자가 교부받은 때에는 미술품의 인도와 함께 이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게 됨. 이와 별도로 미술품 유통업자의 지위를 지니는 미술품 위탁매매업자에게 진품증명서 발행과 관계된 의무를 인정할 것인지 문제가 됨.
- 우선, 실무적으로 위탁매매의 형태로 미술품 유통업자가 미술품의 거래에 관여하는 경우 어떠한 형태의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파악하여 그 유형을 정형화하되, 진품증명서 발행과 관계된 의무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 의무를 부담시킬수 있는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음.
- 실무상 미술품 위탁매매의 경우, 미술품 중개와 달리 두 가지 거래상 징표가 있음. 그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물품을 거래할 때 발송인이 수하인에게 보내는 거래상품명세서인 인보이스(invoice)를 미술품 위탁매매인(매도위탁의 경우)이 발행함. 이는 대금 청구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해당 미술품의 작가명, 작품 이미지, 작품 정보, 수량, 그리고 금액 또는 할인액 등이 표기되고, 매수인(매수예정인)의 사항과 결제방법을 기재함과 아울러, 위탁매매업자의 사업자주소, 연락처, 상호 등이 기재됨. 두 번째는 대금수령자가 미술품 위탁매매인(매도위탁의 경우)이 되고, 앞서 설명한 인보이스 상에 기재된 결제방법상 계좌 등이 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탁매매인이 되는 것임.
- 인보이스의 발행 자체는 작품이 진품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기재된 작품 정보(제작 연도, 작품의 크기 및 소재 등)에 관한 진실함을 위탁매매업자가 보증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위탁매매업자가 이와 같은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진품증명서에 갈음하는 증명서로 해석되고, 나아가 작품의 진위에 관한 사항이나 부기할 사항을 인보이스에 추가 기재함으로써 진품증명서 관련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인보이스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보증의 방법 이외에도 위탁매매인은 거래 미술품의 인도 시에 진품확인서 등의 문서(또는 감정서류 등)를 첨부하여 매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현행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유형 중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와 ‘매수인과 작가 간의 매매계약서’는 이러한 진품확인서 교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11호)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제6조(확인 및 보증) ① 위탁판매인은 위탁자가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고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어 이에 관한 어떠한 법률적 문제도 없음을 보증한다.

② 위탁판매인은 작품의 인도 시 작품이 작가가 창작한 진품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품 확인서 등 문서 또는 공인된 감정인에 의한 감정 서류를 첨부한다.

③ 매수인이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감정 외에 추가적인 요청을 하는 경우,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 후 인도 시점이 전까지 별도로 지정한 감정인을 대동하여 작품의 진위 여부를 감정할 수 있으며, 위탁판매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만약 감정 결과 작품이 위작이라는 의견이 나올 경우,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④ 본 계약 체결 이후 공인된 감정 의견에 의해 작품이 위작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탁판매인은 작품이 위작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매수인과 작가 간의 매매계약서

제6조(확인 및 보증) ① 작가는 작품을 스스로 창작하였고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고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어 이에 관한 어떠한 법률적 문제도 없음을 보증한다.

② 작가는 작품의 인도 시 작품이 진품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품 확인서 등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4. 미술품 유통업 및 감정업 신고제

가. 필요성

- 위작(僞作) 미술품의 유통과 미술품에 대한 허위감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내 미술품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미술품 유통업과 감정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화랑업·미술품 경매업 및 미술품 감정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기타 미술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위작 미술품을 진품인 것처럼 유통시킨 자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음.

- 미술품이 대체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미술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 결정에 관한 자문을 영리 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나, 미술품 자체를 유통하는 경우보다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거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의 지분을 판매하는 블록체인 기반 미술품 분할 소유 플랫폼 업체 역시 증가하고 있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법 제10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온라인상 일정 수익을 보장하면서 미술품 투자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수 있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집합투자업으로 규정하면서(제6조제4항 및 제5항)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선관주의의무 등을 부과되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의 제한을 두고 있음(제8조, 제244조, 제84조 및 제85조).
- 구매자 전원이 하나의 작품을 점유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상 소유권은 미술품을 공동구매한 분할 소유자들이 취득하되 플랫폼으로 하여금 일정한 조건하에 처분, 관리, 보관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미술품 분할소유의 경우, 작품 또는 지분을 거래할 경우 소유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매수인에게 작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⁷⁴⁾ 플랫폼을 통해 매각 이익을 취득하는 구조인데 분할 소유자와 플랫폼의

관계는 작품에 대한 소유권과 별개로 채권적 관계로 이러한 채권적 권리관계를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됨.⁷⁵⁾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위탁자(신탁계약에 따라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를 포함)의 지시에 따라서만 신탁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신탁,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보존행위 또는 그 신탁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개량 행위만을 하는 신탁의 수익권 등은 제외됨(제3조 제1항). 미술품의 공동구매분할소유 및 미술품 판매에 따라 지분에 비례한 수익을 배부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업 플랫폼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권한을 플랫폼에 부여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탁자의 지시로만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미술시장의 유통 거래의 안전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술 관련 서비스업 영위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등록제나 허가제의 경우 공권력을 활용한 일종의 정부규제로 인식될 수 있으며 정부부처·지자체가 규제 준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74)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기며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민법 제188조). 한편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보며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봄(민법 제189조 및 제190조).

75) 이재경,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 시장 현황 및 분석, K-ARIMARKET 미술시장 리포트(2021.3.10.), 예술경영지원센터

<p>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p> <p>신동근 의원(안)</p>	<p>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p> <p>김영주 의원안</p>	<p>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p> <p>정부안</p>
<p>제2장 미술품 유통업</p> <p>제1절 통칙</p> <p>제5조(등록) ① 화랑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p>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랑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화랑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와 제4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제2장 미술품 유통업</p> <p>제5조(등록) ① 화랑업 및 미술품 경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화랑업자 및 미술품 경매업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을 영업장 내에 게시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⑤ 화랑업자는 자신이 발굴·양성하는 작가의 명단을 영업장 내에 게시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작가에게 명단 게시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p>	<p>제2장 미술품의 유통</p> <p>제1절 화랑업</p> <p>제5조(화랑업의 등록) ① 화랑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작가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에 따라 화랑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화랑업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과 자신이 발굴·양성하는 작가의 명단을 자신의 영업장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작가에게 명단 게시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라 화랑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한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p>

제6조(허가) ① 미술품 경매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미술품 경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신고) ① 단순 미술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변경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신고) ① 기타 미술품 유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 및

등록 또는 변경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랑업의 등록을 하거나 미술품 경매업을 허가받을 수 없고, 단순 미술품 판매업을 신고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이 법, 「형법」 제231조, 제237조의2, 제239조 및 제240조, 제347조부터 제35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 말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32조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신고증의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등록 또는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형법」 제231조, 제239조, 제347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형법」 제231조, 제239조, 제347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 「형법」 제231조, 제347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22조제1항에 따라 영업이 폐쇄(이 조 제1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랑업을 등록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이나 「형법」 제231조, 제239조, 제347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이나 「형법」 제231조, 제239조, 제347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이나 「형법」 제231조, 제347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사나 감사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영업을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9. 법인의 임원이 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제8조(화랑업의 등록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화랑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한 날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6조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이사나 감사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미술품의 유통 내

제11조(우수화랑 육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품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화랑을 지정하여 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화랑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역을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6.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7. 영업정지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자가 다시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우수화랑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가의 발굴·양성과 미술품 시장의 발전에 기여한 화랑업자가 운영하는 화랑을 우수화랑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화랑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미술품 경매업

제10조(미술품 경매업의 등록) ① 미술품 경매업을 하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시설, 인력 및 업무규정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미술품 경매업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

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미술품 경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규정과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자신의 영업장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미술품 경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등록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사나 감사로 둔 자는 미술품 경매업을 등록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이나 「형법」 제231조, 제239조, 제347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이나 「형법」 제231조, 제239조, 제347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이나 「형법」 제231조, 제347조 또는

제12조(낙찰금액 등의 보고) ① 미술품 경매업자는 미술품 경매에 의한 낙찰금액 및 총액, 낙찰 이후 매각대금의 납입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실거래의 규모 및 총액, 총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 분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미술품 경매업을 등록할 수 없다.

제12조(낙찰가격 등의 보고 및 공시) 미술품 경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매에 의하여 낙찰된 미술품의 낙찰 가격과 경락대금의 완납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5조(미술품 경매업의 등록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품 경매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1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한 날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해당 이사나 감사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2조에 따른 보고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6.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실시하는 경매에 참여하거나 공정한 경매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아니한 경우

8.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미술품의 유통 내역을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9.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10. 영업정지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자가 다시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기타 미술품 판매업

제16조(기타 미술품 판매업의 신고) ① 기타 미술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및 신고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신고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타 미술품 판매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이나 「형법」 제231조, 제239조, 제347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이나 「형법」 제231조, 제239조, 제347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이나 「형법」 제231조, 제347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업이 폐쇄(이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영업이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사나 감사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18조(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등) ① 기타 미술품 판매업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타 미술품 판매업자가 폐업을 하고도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타 미술품 판매업자가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이사나 감사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타 미술품 판매업자가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미술품의 유통 내역을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

제2절 미술품 유통업자의 의무 등

제13조(미술품 유통업자의 의무) ① 미술품 유통업자는 위작 미술품을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미술품 유통업자는 미술품을 판매·경매·중개 또는 그 밖에 유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와 미술품 보증서를 작성하여 구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미술품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전한 미술품 유통 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미술품 유통업자의 계약서 교부 시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미술품 유통업자는 제2항의 미술품 보증서에 갈음하여 해당 미술품에 대하여 미술품 감정업자가 작성한 미술품 감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⑤ 미술품 유통업자는 자신이 거래한 미술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그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미술품 유통업자의 의무) ① 미술품 유통업자는 위작(僞作) 미술품을 진품으로 속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미술품 유통업자는 미술품을 유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와 미술품 보증서를 작성하여 구매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미술품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전한 미술품 유통 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미술품 유통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미술품 유통업자는 미술품 감정업자가 발급한 감정서로 제2항에 따른 미술품 보증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⑤ 미술품 유통업자는 자신이 유통한 미술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미술품 유통업자의 의무 등

제19조(미술품 유통업자의 의무) ① 미술품 유통업자는 위작(僞作) 미술품을 진품인 것처럼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미술품 유통업자는 미술품을 유통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와 미술품 보증서를 작성하여 구매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미술품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표준계약서 형태로 마련하여 미술품 유통업자들에게 그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미술품 유통업자는 제2항에 따른 미술품 보증서를 갈음하여 미술품 감정업자가 발급한 감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미술품 유통업자는 자신이 유통시킨 미술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공정한 경매 실시 의무) ① 미술품 경매업자는 경매를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공정한 경매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미술품 경매업자는 자신이 실시하는 미술품 경매에 참여하거나 경매에 붙여진 미술품을 경락(競落)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미술품 경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소유하는 미술품을 자신이 실시하는 경매에 붙이는 경우 경매의 실시에 앞서 참가자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④ 미술품 경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정한 경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준수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미술품 경매업자의 의무) ① 미술품 경매업자(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자신이 실시하는 경매에 참여하거나 공정한 경매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미술품 경매업자는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미술품을 자신이 실시하는 경매에 부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매의 실시에 앞서 참가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낙찰가격 등의 보고 및 공시) 미술품 경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품 경매에 의하여 낙찰된 미술품의 낙찰가격, 낙찰 이후 매각대금의 납입 여부를 매 분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

제4장 영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

제32조(등록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화랑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3.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 임원 중에 제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알고도 그 직을 유지하도록 한 경우
5.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랑업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6. 제37조에 따른 점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품 경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시하여야 한다.

제5장 영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

제21조(등록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화랑업자 또는 미술품 경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 각 호의 결정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이 제7조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대표자 또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미술품의 유통 내역을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실시하는 경매에 참여하거나 공정한 경매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6.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참가자 등에게 해당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아니한 경우
7. 제12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제25조(미술품 감정업의 등록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품 감정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2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한 날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2조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이사나 감사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7. 영업정지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자가 다시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3.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 임원 중에 제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알고도 그 직을 유지하도록 한 경우
5. 제12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미술품 경매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7. 제37조에 따른 점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미술품 감정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3.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으로 심판을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경우

8. 화랑업 또는 미술품 경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10. 이 법에 따라 3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품 감정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이 제14조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대표자 또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정서를 발급한 경우
5.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본인 또는 「민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받고 종료의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영업의 정지를 3회 이상 명령받은 미술품 감정업자가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제20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1조제2호의 어느 하나의 범죄를 범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8. 임원 중에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알고도 그 직을 유지하도록 한 경우

9. 제23조에 따른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미술품 감정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11. 제37조에 따른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④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제7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미술품 감정업 등록을 할 수 없고, 제3항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복권되지 아니하면 미술품 감정업 등록을 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또는 미술품 감정업의 등록 또는 허가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미술품에 대해서 감정한 경우

6.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감정수수료와 실비 외에 대가를 받거나 감정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하기로 약속한 경우

7. 미술품 감정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9. 이 법에 따라 3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미술품 유통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① 미술품 유통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작 미술품을 유통함으로써 미술품의 작가·판매자 또는 구매자 등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미술품 유통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술품 유통업자가 미술품 감정서나 작가확인서 등(이하 “미술품감정서등”이라 한다) 및 그 기재사실을 신뢰하고 위작 미술품을 유통한 경우 미술품감정서등 및 그 기재사실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미술품 유통업자가 그 신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신고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신고제와 과잉금지원칙

- 헌법은 기본권제한과 관련하여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국가작용 중 특히 입법작용에 있어서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방법의 적정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법익의 균형성)는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비례의 원칙을 말하는 것임.
- 이를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여 입법권의 한계로서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헌법위반여부의 판단은 헌법 제111조와 제107조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여⁷⁶⁾ 과잉금지원칙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법치국가원리 및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찾고 있음. 즉 과잉금지원칙은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할 수 밖에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도, 그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야 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하며, 이에 따라 기본권의 구체적

76) 헌재 1992.12.24. 92헌가8.

내용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 그 제한의 정도를 심사하는 기준이 됨.⁷⁷⁾

-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또는 비례원칙)을 위헌심사에 적용할 시, 개별 심사단계에서 구체적인 공익을 발견하고 심사정도에서 차이를 두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따라 개념 및 재판기준으로써 확정되는 공익의 내용은 매우 중요함.⁷⁸⁾
-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직업의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직업수행의 자유도 포함하는 것임. 그러나 기본권 주체의 직업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음.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행사의 자유는 기본권 주체에 대한 그 제한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제한에 있어서 적용되는 기준도 다르며, 특히 직업행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직업선택 그 자체에 대한 제한에 비하여 적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한은 보다 폭넓게 허용된다고 할 수 있음.⁷⁹⁾
- 따라서 이 법상 미술품 유통업과 미술품 감정업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시장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 지원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을 통한 성과와 미술시장의 투명성 제고라는 공익적 측면에서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침해로 볼 수 없음.

□ 신고제와 재량입법의 한계

- 위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입법권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을 부여한 것으로 전제하고 입법형성권의 한계 이탈 여부를 심사기준으로 하고 있음. 즉 “과잉금지원칙에 의하면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과도한 침해가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위헌으로 판단되지만, 입법형성권 한계 이탈 여부를 기준으로 하면 입법자가 입법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한계를 넘었다는 점, 즉 자의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그 법률

77) 표명환, “과잉금지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침해 금지”, 『유럽헌법연구』 제17호, 유럽헌법학회, 2015, 505면.

78) 정문식,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나타난 공익:-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에서 공익을 발견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제19호, 유럽헌법학회, 2015, 297면.

79) 현재 2002.10.31. 99헌바76

은 합헌으로 판단“됨.”⁸⁰⁾

- 일반적으로 헌재는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과잉금지원칙을 심사기준으로 하고 있음.⁸¹⁾ 다만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자유에 비하여 인격발현 침해 여지가 적기 때문에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됨.⁸²⁾ 따라서 위 결정에서도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앞서, 직업수행의 자유의 경우 공익목적에 위하여 상대적으로 폭넓은 입법적 규제가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그 수단은 목적달성에 적절한 것⁸³⁾이어야 하고,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것은 아니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음.

다. 신고의 성격

- 사인이 행정청에게 일정한 사태를 통지함으로써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신고는, 신고가 법령상 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행정청의 별도의 작용 없이 바로 신고에 따른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자기완결적 신고와 신고가 행정청에 도달하면 행정청이 이를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판단한 후 이를 수리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요건적 신고로 구분할 수 있는데⁸⁴⁾ 판례는 일반적으로 관련 법령의 목적과 취지, 관련 법규정의 합리적이고 유기적인 해석, 당해 신고행위의 성질들을 고려하여 양자를 구별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⁸⁵⁾
- 판례⁸⁶⁾는 ① 법령이 신고의무만을 규정할 뿐, 실질적 요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② 법령에서 신고를 하게 한 취지가 국민이 일정한

80) 헌재 2004. 8. 26. 2002헌가1, 판례집 16-2, 141, 183-185, 재판관 이상경의 별개의견.

81) 99헌마555, 2001. 1. 18. “직업수행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본래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인데…”

82) 권건보, “직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주요 법리 분석”, 『아주법학』 제12권 제2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35면.

83) 수단의 적합성 판단에서는 그 적합성 범위의 결정이 정도의 문제에 대한 판단이며 헌법재판소의 재량의 개입 여지가 크다고 한다. 수단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수단의 적정성”, “수단의 적절성”, “수단의 상당성” 등 다양한 표현이 쓰이고 있는데, 이는 헌재가 명시적으로 체계화하진 않았지만, 심사강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 이우영, “표현의 자유 법리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기준”,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301면.

84) 류지태·박종수, 행정법신론(제17판), 박영사(2019), p.128.

85) 고재중 외, 영업승계제도 집행실태 및 입법개선사항 연구, 법제처(2017), p.42.

86) 대법원 2011.1.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행위를 하기 전에 행정청에게 이를 알리게 함으로써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상 정보를 파악하여 관리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규제를 가하는 경우, ③ 사회 질서나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작거나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에 침해하지 않는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고 있는 반면 ①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산지관리법 제15조(산지 전용신고) 등과 같이 수리를 요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② 법령에서 신고와 관련하여 일정한 실질적 요건을 정하거나 행정청의 실질적 심사를 허용하고 있다고 볼만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③ 그 신고사항이 사회적 질서나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에 침해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행정요건적 신고로 보고 있음.

-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기재사항에 하자가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한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한 경우에 행정청의 수리 여부와는 관계없이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 자기완결적 신고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수리행위는 불필요하고, 단지 접수라는 사실행위가 있게 되는 반면 수리를 요하는 행정요건적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형식에 적합한 신고인지의 여부와 실제적 심사를 마친 후 신고의 수리가 있어야 개별법상의 특수한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됨.⁸⁷⁾ 또한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에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로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행정청은 접수를 거부할 수 있고,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반면, 수리를 요하는 행정요건적 신고에 있어서는 부적법한 신고가 있을 경우 행정청은 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만약 수리가 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영업행위는 무신고 영업행위가 됨.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 교부되는 신고필증은 사인의 행위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을 승인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인이 일정한 사실을 행정청에게 알렸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사실행위로서 접수증에 지나지 않는 반면, 행정요건적 신고에 있어서 신고필증은 자체완결적 신고와는 달리 사인에게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수리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행위에 해당함.⁸⁸⁾

- 미술진흥법상 미술품 유통업 및 미술품 감정업에 대한 신고 의무 부과에 취지

87)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9판, 박영사(2012), p.126.

88) 고재중 외, 앞의 보고서, p.40-42.

가 국민이 일정한 행위를 하기 전에 행정청에게 이를 알리게 함으로써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상 정보를 파악하여 관리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도의 최소한의 규제를 가하는 경우이며 행정청에게 실질적 심사권이나 수리 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부여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미술진흥법상 미술 관련 서비스업자를 영위하려는 자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함. 따라서 완화된 허가로서의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처럼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할 필요가 없음.

- 그러나, 신고를 한 미술 관련 서비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미술 관련 서비스업자가 종전의 미술 관련 서비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미술진흥법은 신고하도록 규정함.
- 즉,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에 대하여 적법한 경우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해석되지 않고, 수리를 통하여 종전 미술 관련 서비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효력이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 행정요건적 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미술진흥법상 규정된 신고제의 원칙적 유형은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신고에 대하여 수리를 규정하는 양도, 상속, 합병의 경우에는 신고에 대한 수리 과정을 통하여 지위 승계의 효력이 비로소 발생하는 행정요건적 신고로 해석됨.

라. 신고의 대상

□ 적용 대상

- 미술 관련 서비스업 중 미술품 유통업과 미술품 감정업은 소비자에게 미술 향유나 미술품 구매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모두 신고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음. 다만 미술품 감정업의 경우 미술진흥법 시행 후 바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감정업자에게 공적 자격을 부여

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법 시행 후 교육을 통하여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법 시행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미술품 유통업과 미술품 감정업과 달리 미술 전시업의 경우에도 소비자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거래당사자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를 의무화하지는 않음.
- 이 법 시행 당시 미술 관련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미술 관련 서비스업의 신고를 하도록 함.

□ 기타 미술품 판매업

- 미술품의 공동구매·분할소유 및 미술품 판매에 따라 지분에 비례한 수익을 지급하는 행위는 미술품 판매를 통한 차익을 얻기 위한 경제적·투자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지분에 관한 권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소유를 위한 투자금을 모집하고 작품 판매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는 플랫폼사업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사(집합투자업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각종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받게 됨.⁸⁹⁾
- 집합투자업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자본시장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선관주의 의무 등을 부과되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의 제한을 두고 있음(제8조, 제244조, 제84조 및 제85조).
- 구매자 전원이 하나의 작품을 점유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상 소유권은 미술품을 공동구매한 분할 소유자들이 취득하되 플랫폼으로 하여금 일정한 조건하에 처분, 관리, 보관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미술품 분할소유의 경우 작품 또는 지분을 거래할 경우 소유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매수인에게 작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

89) 이재경 외,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 기초 조사 용역, 예술경영지원센터(2020), p.116.

하고⁹⁰⁾ 플랫폼을 통해 매각 이익을 취득하는 구조인데 분할 소유자와 플랫폼의 관계는 작품에 대한 소유권과 별개로 채권적 관계로 이러한 채권적 권리관계를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됨.⁹¹⁾

-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위탁자(신탁계약에 따라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를 포함)의 지시에 따라서만 신탁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신탁,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보존행위 또는 그 신탁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개량 행위만을 하는 신탁의 수익권 등은 제외됨(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 플랫폼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권한을 플랫폼에 부여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탁자의 지시로만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한편 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증권은 투자자가 취득할 때 지급한 금전등 외에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그리고 증권예탁증권으로 구분됨(자본시장법 제4조). 미술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을 구매자가 그 보유한 지분에 비례하여 청구할 경우 이러한 권리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중 증권에 해당하는지, 또는 파생상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불분명함. 파생상품은 기초자산(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등)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기초자산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거나 일방의 의사표시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 지수로

90)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기며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8조). 한편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보며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봄(민법 제189조 및 제190조).

91) 이재경,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 시장 현황 및 분석, K-ARIMARKET 미술시장 리포트(2021.3.10.), 예술경영지원센터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지수에 의해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함(자본시장법 제5조). 미술품은 통화나 일반상품, 신용위험이라고 볼 수 없고, 다른 자산과 비교하여 미술품의 가격을 균일하게 평가하고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방법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구매자가 수익을 청구할 권리가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투자 상품으로써 기초자산에 해당할 수 있음.

-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 권리”를 말함(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 미술품의 구매자가 플랫폼사업자와 미술품을 통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 금전을 투자하고, 주로 플랫폼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며, 그 결과에 따른 손익이 분할소유자에게 귀속받는 계약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미술품을 공동으로 구매하여 분할소유하는 자들은 작품 구매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해당 작품을 처분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모집되어, 플랫폼사업자의 사업수완 또는 매각처 모집의 노력에 따라 분할소유자들의 이익달성 성공 여부가 좌우되므로 플랫폼사업자 및 다른 분할소유자와의 관계는 공동사업에 기초한 투자계약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다만, 구매자가 직접 소유하고 편안하게 감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할소유를 하는 거래구조라면, 즉, 일정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처분에 반대할 수 있는 조건으로 구매하는 플랫폼의 경우에는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미술품 지분의 가격이 올라서 발생한 수익을 장래의 특정시점에 구매자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한다면, 파생상품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므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대한 별도 제한을 준수하여야 하고 일정수량 이상의 장내파생상품을 보유하게 될 경우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의 별도 제한이 있음(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제173조의2)⁹²⁾
-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92) 이재경 외, 앞의 보고서, p.119.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고(제2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영업에 관한 표시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제3조 내지 제8조). 따라서 미술품 공동구매 및 분할소유, 지분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사업자가 다른 법령상 인허가,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후에 높은 가격으로 작품을 매각하여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

- 자본시장법은 금융·보험, 부동산업, 유흥 기타 일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것 외의 업종으로 창업한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비상장중소기업 또는 상장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고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을 한 실적이 없는 상장중소기업이 타인의 계산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의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사업자와 투자자간, 투자자 상호간 의견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후 채무증권, 지분증권 또는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고, 그 증권의 모집이나 사모에 관한 중개를 하는 것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로 규정하고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음(자본시장법 제9조 제27항, 제117조의3 내지 제117조의16). 미술품 분할소유자가 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증권적이라고 하더라도 플랫폼사업자는 직접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고, 직접 모집, 사모까지 하게 되므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라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추후 특정 작품에 대한 공동구매 및 운영, 매각을 각 다른 사업자가 진행하면서 증권을 발행하고, 그들을 중개하는 플랫폼까지 만들어지는 경우 그 플랫폼사업자는 온라인소액투자증권발행인에 해당하게 되어 관련 규제를 받게 될 수 있음.⁹³⁾

93) 이재경 외, 앞의 보고서, p.122.

□ 미술품 자문업(아트 컨설팅)

- 미술품 자문업, 소위 아트 컨설팅은 일반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하거나 전시, 선정하는데 있어 조언을 해주는 업을 지칭하는데 이러한 조언과 함께 전체적인 관리 방법과 유통방법, 시기 등을 포괄적으로 자문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최근에는 투자 대체수단으로써의 미술품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미술품 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음.
- 컨설턴트는 자신의 견해나 권고사항이 의뢰인 또는 의뢰인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에게 손실이나 재정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함.
- 순수한 위임계약적 특성을 가진 컨설팅 계약의 경우에는 컨설턴트의 의무는 상담업무급부에 제한되고, 그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상담업무에 임하였다면 그는 의뢰인의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음. 컨설턴트의 구체적인 책임 범위와 면책사항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해지겠지만, 이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아트 컨설팅 계약의 법적 성질을 통해 컨설팅 서비스의 범위와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함. 아트 컨설팅 계약은 컨설턴트가 의뢰인이 요청한 작품의 진위여부, 제작연대, 작품상태, 시가 등에 관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서비스 계약임. 이런 점에서 컨설턴트의 의무는 상담업무급부에 제한되고, 그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상담업무에 임하였다면 컨설턴트가 제공한 정보가 후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하자있는 상담급부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자문 계약은 매우 다양하여 전형계약의 하나로 특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여러 가지 계약요소가 혼합된 혼합계약으로 보아야 할 경우가 많으나 대체로 민법상 도급계약과 위임계약의 성질을 갖고 있음. 자문 계약에서 컨설턴트가 일의 결과를 급부내용으로 한다면 법적 성질은 순수한 도급계약이라 할 수 있으나, 컨설팅 계약을 도급이라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음.⁹⁴⁾
- 위임에 있어서 사무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행위로서 법률행위, 준법

94) 박현일, “컨설팅계약을 둘러싼 법률문제”, 국제거래법연구 제15집 제2호, 국제거래법학회(2006), pp.252~254 참조.

를 행위, 사실행위가 모두 사무의 범위에 포함되며,⁹⁵⁾ 자문 역시 사무의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있음. 따라서 자문 수행과정 중 컨설턴트(수임인)는 의뢰인(위임인)에게 주된 직무내용인 사무처리업무 이외에 선관주의의무(민법 제681조), 조언의무, 자기복무의 의무(민법 제682조), 보고의무(민법 제683조), 취득한 권리의 이전의무(민법 제684조),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등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그 소비금의 이자 및 손해배상 의무(민법 제685조) 등의 의무를 부담함.

- 통상 채무자는 모든 채권관계에 성립하는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민법상 주의의무의 기준(원칙)을 이루고 있음. 이 의무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대부분의 법률관계에서 당연히 인정됨. 위임과 관련하여 제681조에는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선관주의의무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간에 다른 특약이 있거나 법률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선관주의의무는 모든유상계약의 의무이행을 위해,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무상계약의 의무이행에서도 채무자가 일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행위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음.⁹⁶⁾ 무상위임의 경우에도 유상위임과 같이 선관의무를 지는가에 대해서 민법에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판례는 유상위임과 무상위임을 구별하지 않고 선관의무를 인정하고 있음.⁹⁷⁾ 무상수임인은 무상수치인의 경우(민법 제695조 참조)와는 달리 추상적 경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만⁹⁸⁾ 무상위임의 경우에는 유상위임의 경우에 요구되는 선관의무보다 약한 정도의 주의의무를 진다고 볼 수도 있음.⁹⁹⁾
- 다만 백지규범적 성질을 가진 선관주의의무의 내용을 한마디로 단정하기는 불가능하며, 이는 수임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직업, 계층, 계약내용 등에 따라 달라짐.¹⁰⁰⁾ 그 선관주의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할 수는

95) 박윤직, 「채권각론」, 제6판 2003, p.275.

96) 이철송,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관한 이론의 발전과 전망”, 「비교사법」, 제22집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2015), p.2.

97) 대법원(2002. 2. 5. 선고 2001다71484 판결)은 “부동산중개계약에 따른 중개업자의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확인·설명업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업무는 무상위임의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함으로써 위임계약의 유·무상 여부와 상관없이 수임인의 선관의무를 인정하고 있음.

98) 김형배, 「채권각론(계약법)」, 박영사(1997), 673면.

99)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2004), p.569.

없음. 선관주의의무는 수입의무가 비직업적 활동의 경우와 직업적 활동의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¹⁰¹⁾ 이 선관주의의무는 통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속해 있는 직업군에 속하는 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평균인의 주의의무를 의미함.¹⁰²⁾

- 일반적으로 자문 계약에서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구체적인 책임 범위와 면책사항을 정하므로 이에 따름.¹⁰³⁾ 그러나 자문 계약 당사자 사이에 컨설턴트의 책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문 계약의 법적 성질을 고려하여 컨설팅 서비스의 범위, 컨설턴트의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게 됨. 순수한 위임계약적 특성을 가진 자문계약의 경우에는 컨설턴트의 의무는 상담업무급부에 제한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상담업무에 임하였다면 컨설턴트가 제공한 정보가 후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하자 있는 상담급부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¹⁰⁴⁾ 컨설턴트가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함. 컨설턴트의 채무내용이 결과채무인 경우에는 컨설팅계약의 원치 않은 결과의 발생 또는 불발생은 바로 불완전이행으로 추정되며,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컨설턴트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 그러나 수단채무의 성격이 강한 계약인 경우에는 컨설팅 결과만을 가지고 채무불이행이 추정되는 않음. 채무자인 컨설턴트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여 이행행위의 완전성을 주장하면,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과 발생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는 의뢰인이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함.¹⁰⁵⁾ 컨설팅의 결과인 경영의 성과 문제는 의뢰인의 책임영역이기 때문에 컨설턴트의 컨설팅이 의뢰인에게 나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컨설턴트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반면 컨설팅 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보는 경우, 도급계약의 성질상, 컨설팅 급부 수령 전 민법 제664조와 민법 제667조 제1항에 의하여 의뢰인에게 일의 완성 및 하자보수청구를 포함한 이행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보아

100) 박윤직편집대표, 전계서, pp.536-537.

101) 수입행위가 직업행위인 경우 직업활동을 반드시 고려하여 판단하되, 직업적 행위의 내용과 범위, 직업인의 자격요건, 직업인의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필요한 통상적·평균적 주의의무가 일정한 관행을 형성하고 있다. 주의의무는 수입행위 자체의 성질보다는 그 직업의 성질이나 수행자의 평균적 능력, 자질, 전문성 그리고 그 직업수행의 난이도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전우현, “보험중 개인의 엄격한 책임과 그 완화에 관한 연구”, 『보험개발연구』, 제13권 제3호(2002), p.77.

102) 반도현, 컨설팅 계약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논문(2020), p.145.

103) 송오식, “컨설팅 계약과 법적책임”, 비교사법 제11권 제3호, 한국비교사법학회(2004), p.198.

104) 송오식, 앞의 글, p.199.

105) 반도현, 앞의 글, p.160.

야 함.¹⁰⁶⁾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투자자문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함(제6조 제7항 및 제18조). 또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10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마. 신고사항

- 미술 관련 서비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신고제의 취지인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측면에서 신고서상 기재 사항은 상호(개인인 경우에는 서비스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함.
- 다만 소비자 보호라는 미술품 유통업 및 미술품 감정업의 신고제 취지를 감안하여 업무개시일(최초 사업자 등록일), 업무 형태(예: 화랑업의 경우 전속작가 유무 및 수, 미술품 경매업의 경우 경매 유형(오프라인 경매, 온라인경매, 해외경매) 및 횟수, 미술품 대여업의 경우 대여가능 작품 수 등), 미술품 경매업 및 미술품 대여업의 경우 약관,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 근무 임직원 수를 포함한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106) 송오식, 앞의 글, p.197.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미술품을 유통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제12조) 규정을 감안하여 도메인 네임과 호스트 서버 소재지를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미술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호,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며 폐업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효과적인 신고제 운영을 위해서는 신고 대상 미술 관련 서비스업자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신고 업무를 담당할 전담 기구의 설립이 필요함.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관리시스템(<https://production.mcst.go.kr/>)>

- 신고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서비스업자에게는 제재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허가업이나 등록업의 경우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 대상인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신고업의 경우에는 일종의 완화된 형태의 허가과 같은 성격을 지녔더라도 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 정지나 영업장 폐쇄와 같은 방법을 택하며 영업장 폐쇄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문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도록 함.¹⁰⁷⁾ 아울러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107) 법령입안심사기준(2020), 법제처, p.142

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 사유에 미술품 유통업 및 감정업에 대한 미신고를 포함함.¹⁰⁸⁾

- 다수의 입법례가 전혀 다른 영업이 아닌 동종 내지 유사 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또 다른 자가 같은 내지 유사한 영업을 하면서 시간과 노력, 비용을 새로이 지불하지 않도록 기존의 영업을 승계하여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러한 방법을 택하여 그에 대한 시간과 노력,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고 경제활동의 계속성 단절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영업 승계를 허용하고 있음. 아울러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양도인이 법령위반으로 행정제재처분을 받을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의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는 등 행정제재처분을 회피수단으로 영업의 양도가 자행될 우려가 있어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 처분의 의도적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양도, 상속, 합병의 경우 영업 승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유사 입법례

「저작권법」

-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변경신고 수리 여부나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

108) 법령입안심사기준(2020), 법제처, p.144

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⑧ 제1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⑨ 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 ⑪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하여 승인 신청을 받거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⑫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항에 따른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05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9.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이후에 제10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05조제7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업무를 계속한 경우
-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16조(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②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제작업자와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배급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절차·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①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등록증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 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2. 독립한 사무소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요건 및 방법,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등록으로 본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방송 또는 시청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방송사업자등은 제외한다.

제10조의3(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① 독립제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제10조의4(독립제작사의 준수사항) ① 독립제작사는 방송영상물 제작에 참여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같은 조 제9호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해서는 아니 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제작사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독립제작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독립제작사의 임금체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독립제작사의 임금체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임금체불 사업장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2. 대표자 성명(「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3. 체불인원, 체불임금액 및 청산금액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투자회사 및 투자조합의 투자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작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배제하도록 하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작 지원을 중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① 정부는 독립제작사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독립제작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방송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제작을 지원하기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립제작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제작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독립제작사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독립제작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립제작사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의2(독립제작사의 폐업 및 직권말소) ① 독립제작사가 폐업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으면 신고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58조의2(영업정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의3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때

2. 제10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한 때

4.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업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독립제작사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자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5.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2조(방송영상프로그램독립제작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방송영상프로그램독립제작사는 제2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로 본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시행령」

제11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①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한 실적서

2.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한 계획서 또는 그 요약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독립제작사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절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신고요건을 확인하여 신고증을 발급하고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의2(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독립제작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예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독립제작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하였을 때에는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로 한다.

② 영 제11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명칭
2.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소재지
3.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대표자

③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변경신고서에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 및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대장은 각각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과 같다.

⑤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2호의4서식과 같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시키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경우
7.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8. 제5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영업의 승계) ①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비디오물제작업자, 비디오물배급업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이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이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비디오물에 관한 영업시설·기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비디오물에 관한 영업시설·기구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 제64조에 따른 폐업신고에 의하여 폐업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이 1년 이내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은 폐업신고 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① 국가는 제1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회사·기관·학교 및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육성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공공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

② 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이하 “공공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명칭
2.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대표자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문학진흥법」

- 제21조(등록 등) ① 문학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문학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문학관은 그 문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사립문학관은 그 문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문학관의 경우에는 준공 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증을 받은 문학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 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등에 등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에 관한 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등록 문학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 등록된 문학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보조할 수 있다.
-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 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 등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개관 전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경비 보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국영 수송 기관에 의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이나 그 밖의 요금을 할인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①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사항의 공개 여부 및 범위

-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보호라는 신고제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신고 사항을 공공에 공개할 필요가 있음. 다만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에 대한 사전 동의가 필요함.

The screenshot shows the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Similar Investment Advisor Registration Status) page on the FSS website.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links for '홈정보', '파인 서비스 소개', '연기행렬 순위', and '개인정보수출/등록/해제'. A search bar is located in the top right corner. The main heading is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Below the heading, there are three download links: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현황 다운로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서 다운로드', and '유사투자자문업 폐지·변경보고서서 다운로드'. A search form is present with fields for '지역 선택' (Region Selection) with dropdown menus for '전체' (All) and '시도' (Province), and '시(군/구)' (City/Gun/Gu). The '신고일 선택' (Registration Date Selection) field includes 'YYYY-MM-DD' input boxes and a '조회기간 초기화' (Reset Search Period) button, with a date '2018-01-01' displayed. The '검색 구분' (Search Criteria) section has radio buttons for '입재품' (Selected), '정보공개' (Information Disclosur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대표자' (Representative), and '전화번호' (Phone Number). A '검색' (Search) button is at the bottom right of the form. Below the form, there are two more download links: '작성완료 유사투자자문업자 목록 다운로드' and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용 자료 다운로드'. At the bottom, a table header is visible with columns: '순번' (Serial Number),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상호' (Name), '정보명칭' (Information Name), '신고일자' (Registration Date), '대표자' (Representative), '소재지' (Address), '전화번호' (Phone Number), and '홈페이지' (Homepage). The text '전체 240건, 현재 페이지 1/25' is shown below the table header.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https://www.fss.or.kr/main/fin_comp/similar/business_list.jsp)>

- 신고서 양식에 사전 동의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사전 동의 가능하도록 운영함으로써, 신고의 수월성과 행정적 편의성을 제고함.

***유사 입법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그 사이버몰에서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4. 감정센터의 설립 및 업무 범위

가. 감정센터 설립 필요성

□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감정 시스템의 부재

- 현재 대표적으로 한국화랑협회 미술품감정위원회,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한국시가감정협회가 미술품 감정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한국고미술협회도 산하에 감정위원회를 두고 있고 서울옥션, 케이옥션 등 경매회사들이 자체 감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미술품 감정의 문제는 수십 년간 감정업계의 현실, 전문적인 교육시스템의 부재, 감정 결과에 대한 불신 등 다양한 논쟁의 걸림돌을 번번이 넘지 못한 채 표류해 오고 있으며 미술시장에 관한 폐쇄성과 불투명성을 극복하기 위한 미술품의 평가 내지 감정 시스템 도입에 대한 논의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함. 특히 그동안 사인 간 또는 화랑이나 경매회사 등 시장거래에서의 효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온 것과 비교하여, 행정, 사법

등 공적 측면에서 필요한 미술품 감정 시스템에 대해서는 논의가 미흡함.

- 따라서 행정적·사법적 필요를 위한 미술품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행위를 위한 판단자료나 사법적 판단의 기초자료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즉 미술품 감정시스템을 우선 문화행정 영역에서 구축하고, 그와 관련된 시책을 펼치면서 유통 영역의 감정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전시키는 구조로 발전시켜야 함.
- 행정 영역에서 감정 평가시스템이 먼저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사인 간의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그간 발의된 미술품 유통법안과 같이 감정연구센터의 역할을 사인 간의 민사분쟁에 관계하고, 형사사건에 감정서를 발급하게 되면, 사실상 모든 미술품 감정에 국가 영역에서 관여하는 결과를 초래함.
- 따라서 감정센터는 행정영역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감정을 실시함으로써 감정센터의 감정서에 의하여 시장 유통영역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그 기술의 축적과 감정의 노하우를 발전시켜, 추후 미술시장 전체의 감정 체계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감정 기초 자료의 미정립

- 감정과 관련하여 그간 많은 선행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이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체계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아울러 국내 작가의 작품에 대한 인문학적 평가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작품의 이용된 재료와 기법 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함.
- 따라서 민간 영역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근현대미술의 재료, 기법, 자료의 구축, 미술품의 과학적 분석방법의 개발 및 기준 자료의 정립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미술품 감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감정 인력 양성의 한계

- 다양한 감정 인력 교육 사업들이 그간 진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미술품 감정기반 구축사업¹⁰⁹⁾을 통해 미술감정 인력 양성과 감

정 기초자료 확보 및 관련 연구자의 연구수행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감정 인력 양성사업이 공모를 통한 감정 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감정 전문인력을 위한 해외 감정프로그램 참가 및 리서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인문학 및 과학적 소양을 갖춘 감정인력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양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리서치 결과물의 실질적 활용 역시 미비한 상황임.
- 또한 그간의 감정 인력 양성은 시가 감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 장래 감정 영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감정 인력 양성 계획의 수립과 운용이 필요함.

109) <예술경영지원센터 연도별 예·결산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15 결산	'16 결산	'17 결산	'18 결산	'19 결산(A)	'20 예산(B)	증 감		연평균 증가율
							(B-A)	%	
미술품 감정기반 구축	1,365	1,375	2,075	1,975	1,825	1,820	△5	△0.3	5.9

<p>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p> <p>신동근 의원(안)</p>	<p>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p> <p>김영주 의원안</p>	<p>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p> <p>정부안</p>
<p>제3장 미술품 감정 제1절 미술품감정사</p> <p>제15조(업무) 미술품감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의 수사나 재판상 필요한 미술품의 감정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의뢰에 따른 미술품의 감정 3.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미술품의 감정 4. 미술품 감정과 관련된 상담 및 자문 5. 다른 법령에 따라 미술품 감정업자가 할 수 있는 미술품의 감정평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p>제16조(자격) 미술품감정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미술품감정사의 자격이 있다.</p> <p>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술품감정사가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p>제3장 미술품 감정업</p>	<p>제3장 미술품의 감정</p>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18조에 따라 미술품감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미술품감정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2회 이상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자격의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미술품감정사의 자격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미술품감정사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술품감정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시험) ① 시험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이루어

진다.

②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1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합격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시험과목, 시험공고 등 시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미술품 감정업

제20조(등록) ① 미술품 감정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술품 감정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미술품 감정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제13조(미술품 감정업의 등록) ① 미술품 감정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미술품 감정업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을 영업장 내에 게시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

제1절 미술품 감정업

제21조(미술품 감정업의 등록) ① 미술품 감정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업무규정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미술품 감정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미술품 감정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규정과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자신의 영업장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절차와 제4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미술품 감정업을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이 법, 「형법」 제231조, 제237조의2, 제239조 및 제240조, 제347조부터 제35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에 따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형법」 제231조, 제239조, 제347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형법」 제231조, 제239조, 제347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 「형법」 제231조, 제347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

⑤ 제1항에 따라 미술품 감정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미술품 감정업을 등록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이나 「형법」 제231조, 제239조, 제347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이나 「형법」 제231조, 제239조, 제347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이나 「형법」 제231조, 제347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

제22조(휴업 등의 신고) ① 미술품 감정업자는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미술품 감정업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을 신고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휴업기간 종료 전까지 재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폐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미술품 감정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그 취지를 사업장이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등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성실의무 등) ① 미술품 감정업자는 미술품 감정업무를 하는 경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감정의뢰인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정을 하여야 하며, 거짓 감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8. 법인의 임원이 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제15조(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① 미술품 감정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제16조(미술품 감정업자의 의무) ① 미술품 감정업자는 미술품의 감정을 의뢰한 자, 미술품 유통업자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정을 하여야 한다.

② 미술품 감정업자는 감정의뢰인에게 문화체

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사나 감사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24조(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① 미술품 감정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제23조(미술품 감정업자의 의무) ① 미술품 감정업자는 미술품의 감정을 의뢰한 자, 미술품 유통업자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정을 하여야 한다.

② 미술품 감정업자는 허위감정서를 발급해서

② 미술품 감정업자는 자신, 자신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 또는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자가 보유·소유한 미술품 등 불공정한 감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품에 대해서는 이를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미술품 감정업자는 감정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감정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미술품 감정업자는 자신에게 소속되어 있는 미술품 감정인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감정이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미술품 감정업자는 자신에게 소속되어 있는 미술품 감정인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감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양식에 따른 감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미술품 감정업자는 허위감정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미술품 감정업자는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미술품을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미술품 감정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정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감정 수주(受注)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미술품 감정업자는 자신에게 소속된 감정과 관련된 인력이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⑦ 미술품 감정업자는 자신에게 소속된 감정과 관련된 인력이 공정한 감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는 아니 된다.

③ 미술품 감정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식에 따른 감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미술품 감정업자는 자신이 소유·관리 또는 유통시키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미술품으로서 불공정한 감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품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미술품 감정업자는 감정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감정 수주(受注)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미술품 감정업자는 자신에게 소속된 감정과 관련된 인력이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정한 감정을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25조(미술품 감정업의 등록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품 감정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3절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

제24조(연구원의 설치 등) ① 미술품의 적정 가치와 진위 판정 등에 관한 과학적 감정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2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날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2조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이사회 감사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7. 영업정지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자가 다시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미술품감정연구센터

제26조(미술품감정연구센터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품 감정의 지원 및 그와 관련된 연구·개발·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미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미술품감

둔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및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의 수사나 재판상 필요한 미술품의 감정 지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의뢰에 따른 미술품의 감정의 지원

3. 미술품 감정 관련 분쟁 조정

4. 미술품의 감정기법 연구 및 기술개발

5. 제19조에 따른 미술품감정사 시험 시행

6. 미술품감정사 양성에 관한 사업

7. 국가의 미술품감정을 위한 시책 수립의 지원 및 집행

8. 위작 미술품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9. 미술품시장의 진흥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

10. 미술품 유통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11. 다른 법률에 따라 연구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⑤ 연구원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4항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

정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요청한 미술품 감정의 지원

2. 국제청장이 과세와 관련하여 요청한 미술품 감정의 지원

3. 미술품 감정 관련 분쟁 해결의 지원

4. 미술품 감정기법의 연구 및 기술 개발

5. 감정과 관련된 인력의 교육·양성

6. 미술품 감정을 위한 국가 시책의 수립 지원

7. 위작 미술품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미술품 감정의 지원 및 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구센터가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 지원할 수 있다.

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미술품감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15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에 미술품감정위원회 (이하 “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감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미술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미술품의 유통이나 감정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미학·예술학·고고학·역사학·인류학·건축·법률·종교·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미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미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4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③ 감정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한국감정사협회

제26조(한국감정사협회의 설치 등) ① 미술품감정사의 품위 유지와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감정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회는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④ 협회의 설립,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회칙) ① 협회는 회칙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2. 회원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8조(회원가입 의무 등) ① 미술품 감정업자와 그 소속 미술품감정사는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외의 미술품감정사도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미술품 감정업자와 미술품감정사는 제27조에 따른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직업윤리규정) ① 협회는 회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자문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에 따른 미술품감정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회에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자문 등을 요청받은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요청받은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협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미술품 감정평가의 관리·감독·의뢰 등과 관련한 업무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제31조(회원에 대한 교육·연수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교육·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교육·연수활동을 지도·관리한다.

1. 회원

2. 제20조에 따라 미술품 감정업 등록을 하려는 미술품감정사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협회에 연수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 및 지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5조(미술품 감정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① 미술품 감정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미술품에 대하여 진위감정을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감정 서류에 거짓을 기록함으로써 감정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미술품 감정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미술품 감정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정센터의 업무

□ 미술품 감정 및 상태조사

- 감정센터의 설립 취지에 비추어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미술품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세무 당국으로부터 과세를 위하여 미술품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정부미술품의 구입 및 대여, 재평가, 매각 및 처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제한될 필요가 있음.
- 정부미술품의 구입 및 대여에 대하여는 현재에도 미술은행 및 정부미술은행 시스템에서 미술품의 평가가 행해지고 있음. 다만, 재평가는 일부 작품에 한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하고 처분은 최소한으로만 행해지고 있으며 매각은 이루지지 않고 있음.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소장 미술품을 재조사하면서 재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미술품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그 자산으로서 미술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구축하게 됨. 따라서 정부미술품의 구입, 대여, 매각 및 처분, 재평가 작업에 미술품의 평가 시스템이 감정센터의 업무가 되어야 함.
- 미술품을 국가에 기증하는 경우, 그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기증자 또는 정당한 대리인이 하여야 함. 기증이 신청되어 접수된 경우, 당해 미술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증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함. 만일 기증받더라도 해당 미술품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없거나 그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경우, 미술품의 출처 및 소유권 등 수증과 관련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정부미술품으로서 적합한 심미적 가치가 없는 미술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증하여서는 안 됨. 기증 미술품의 적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작가명, 작품명, 제작연도, 재료 및 기법, 작품규격, 작품설명, 소장처, 소장자명, 작품 게시장소 등 해당 미술품이 기증 당시 보유하고거나 알 수 있었던 모든 정보를 미술은행이 수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함. 기증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서 미술은행은 기증의 업무를 단순히 행정적인 처리와 원칙만을 고수해서는 안되는 측면이 있고, 기증자를 설득하고 조건을 완화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조건으로 협상하여 처리하는 행정 능력의 발휘도 요구됨.
- 미술은행은 정부미술품 관리, 처분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정부미술품 관리

에 관한 기술의 연구 및 개발, 해외에 소재한 한국미술품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미술품에 관한 조사·연구, 미술품의 평가 내지 감정에 관한 심의 및 연구)에 지원을 위하여 본 법안에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음. 그러나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는 없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참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음. 동법 제5조 제2항의 단서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미술은행도 한정된 업무에 지원할 목적으로 기부금품이 자발적으로 기부된 때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하도록 함. 따라서 진흥원에 법안에서 정하는 업무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미술품이 기부된 경우에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야 함. 이러한 심의에는 적격성 여부와 가치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함. 이에 따라 기부자가 미술품을 기부한 경우 세제상 혜택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함. 이와 같이 기부된 미술품에 대한 평가 내지 감정이 필요하므로, 이를 감정센터에서 기부심사위원회를 주관하여 판단하도록 함.

- 미술품 물납제도는 개인이 소장하던 탁월한 미술품과 문화유산을 공공자산화하여 확보하는 기능을 하며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원로작가의 상속인과 개인소장가의 상속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¹¹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에 대하여 미술품 물납이 시행되지 않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등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그러나 상속세금에 대한 미술품 납부는 세금 납부를 얼마로 할 것인가를 확정하는 미술품 평가체제가 제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탓에 상속세 물납¹¹¹⁾ 도입 여부에 대한 실현 가능성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110) 이와 관련하여 작가의 상속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개인소장가의 상속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대해서는 양현미, “상속세에 대한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방향 연구”, 「예술경영연구」 제41집: 67-101, 한국예술경영학회, 2017, pp.91-95 참조.

111) 프랑스에서는 일반세법(2019년 2월 1일 개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고, 제2권 세금징수, 제1장 세금 납부 중 1716조 제1항에 따르면, I. - 상속세 납부에 대하여, 서적, 수집품, 문서, 예술적 또는 역

왔음. 즉, 상속세 물납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기 어려운 이유는 물납된 미술품의 적절한 평가와 물납된 미술품의 관리의 어려움 때문임. 따라서 상속세의 미술품 물납이 있는 경우, 그 미술품 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감정 시스템이 전제되어야 함. 감정센터에서 상속세 물납에 관한 미술품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미술품에 의한 물납의 세액을 평가하여 세무당국에 통보하도록 한 뒤, 그에 근거하여 세무당국에서 물납을 최종 결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적 개선을 이루고, 나아가 해당 물납된 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를 미술은행과 같은 별도의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민이 공유하는 공공유산화라는 물납제의 취지와 상속세 물납의 절차가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임.

- 현재 미술품 감정과 관련해서는 진위감정과 시가 감정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술품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상태조사 역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감정센터의 감정 대상 미술품에 대한 상태조사를 실시함.

□ 감정 기준 자료 구축

- 감정센터의 역할은 단순한 미술품의 진위를 판정하거나 가치 평가를 하는 역할 이외에도 미술품에 이용되는 재료 전반에 걸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한 감정 기준 자료를 축적하고 미술계에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적 역할도 가능해야 함. 또한 감정센터는 감정과 관련하여 기존에 진행된 선행 연구결과물들을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감정 기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감정센터는 근현대미술의 작가별·시대별 재료, 기법 등 감정 자료를 구축하고, 미술품의 과학적 분석방법의 개발 및 기준자료를 정립하도록 함.

사적 가치가 높은 작품 또는 예술 작품의 납부에 의해 세금이 지불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지급 과정은 의회법에 따라 정해진 승인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프랑스 이외에도 상속세의 미술품 물납은 영국의 Acceptance in Lieu 제도에 따라 상속세에 한하여 재무장관이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경우에 한해 물납을 허용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미술품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으며(IHTA 230(1), (4)), 독일의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재산세를 납부할 때 미술품으로 물납할 수 있으나, 물납이 가능한 자산은 예술적, 역사적, 학문적으로 중요하며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함(조세기본법 224a(2)). 일본의 경우, 「美術品の美術館における公開の促進に関する法律」제2조 제3호 소정의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등록된) 등록미술품의 경우 상속세 물납 허용 제도 등으로 시행되고 있음.

□ 감정 인력 양성

- 감정센터는 기존의 감정 인력 양성 방안들과 교육 과정들을 검토하여 체계적 교육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과정을 운영함.
- 다만 설립 초기 감정센터의 구성과 동시에 인력 양성 사업을 즉시 시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센터의 출범 이후 1년 이후부터는 인력 양성을 위한 교재를 개발과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를 시작함.
- 또한 지속적인 감정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감정 인력이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데 소정의 기관에의 감정 인력의 의무배치를 고려할 수 있음.

다. 감정센터의 운영 방안

□ 단계별 운영 방안

- 감정센터의 설립 및 운영 계획은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내용
1차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 시설 확보 · 연구인력 확보 및 활용 · 선행 자료 분석 및 검토 · 기초자료 조사 및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분석하여 데이터 구축 ▶ 미술품의 과학적 분석을 위해 필요한 기준자료의 선정, 유·무기 분석기기 및 측정기기 등 과학기기와 이를 운용하는 인력풀 확립 ▶ 유기물, 무기물, 미술사, 보존과학, 감정학 등 관련 학문을 이수하거나 현장 경험을 구비한 감정인력을 확보하여 재교육하고 기준 자료의 정립과 재료분석 등 감정에 필요한 기준 데이터의 확립 ▶ 인문학적, 도상학적, 재료분석학적 연구결과를 결집하여 근·현대 미술품에 대한 기준 자료 정리 ▶ 미술품에 이용된 재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과학 분석기기 및 기기설치 공간을 확보하여 장비를 시험 운행
2차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확충 · 감정 기준 자료 정립 · 인력 양성(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대별로 이용되었던 미술재료의 과학기술사적 정비와 작가별 기법의 분류 체계를 완성하고, 근현대미술사의 대표적 작가를 선정하여 법과학적

		<p>으로 미술품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p> <p>▶ 미술계의 특성과 작품의 제작방법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부응하는 감정 인력양성 방안 마련 및 교육 교재 개발</p>
3차년도	<p>· 인력양성</p> <p>· 협력 체계 구축</p>	<p>▶ 신규 인력 양성 및 재교육 실시</p> <p>▶ 축적된 연구결과를 민간 영역과 공유하고 협력사업 체계를 구축</p>

□ 감정 절차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미술품 평가에 있어 요구되는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문성과 공정성임. 미술품 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에 전문적인 소양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그 전문적인 능력에 따른 평가가 진행됨에 있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그 의견이 표시되어지는 것이 중요함. 행정작용에 필요한 미술품 평가에 있어서도, 해당 미술전문가뿐만 아니라, 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설계하고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요구됨.
- 우선 인적 공정성 확보 방안이 필요함. 행정작용 과정에서 미술품의 평가에 참여한 감정인은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그의 공정한 판단에 기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인 자신도 감정인으로서 준수 사항과 감정윤리를 충실하게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감정 평가 직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윤리 및 업무 수행 기준에 관하여 미국의 감정협회가 수립한 전문 감정인의 업무 표준 (USPAP), 국제 감정사 협회 (International Society of Appraisers)의 윤리 강령 (Code of Ethics), 그리고 전미 감정사 연맹 (Appraisers Association of America)의 윤리 강령 (Code of Ethics)을 고려해 볼 수 있음.¹¹²⁾
- 절차적 공정성 역시 보장되어야 함. 여러 행정기관에서 진행되는 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과정에서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풀과 참여가 보장되고

112) 이는 미국에서 감정 평가 직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윤리 및 업무 수행 기준을 말함. USPAP는 1989년 의회에서 채택되었으며 부동산, 개인 자산, 비즈니스 및 대량 평가 등 모든 유형의 평가 서비스에 대한 표준을 포함하고 있음. 예를 들면, 감정에 관여하는 위 윤리 및 업무 수행 기준의 준수가 요구되며, USPAP는 매 2년마다 업데이트되고 감정사가 편견 없는 전문적인 감정의견을 전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

있지만, 그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에 관해서 외부에서 쉽게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프로세스도 함께 갖추어져 있어야 함. 미술품 평가의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술품 평가 내지 감정 절차 자체를 어떻게 설정할지의 문제보다 어떤 절차가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감안해야 함. 일반적으로 평가위원 3인 이상의 감정위원회 체제를 고려할 수 있으나 1인의 책임감정인의 감정의 결론을 감정전문위원 3인 내지 중대한 사안의 경우 5인의 회의를 통해 검증받는 시스템을 두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책임감정인의 감정’ 및 ‘감정전문위원의 검토회의’의 이중적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 심도 있고 책임있는 감정이 가능하고, 3인의 감정위원회 체제로, 책임을 회피하기 용이한 구조보다는 오히려 신속한 결정이 가능할 수 있음. 중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전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다 더 강화된 절차를 설정하여, 더 많은 전문위원이나 감정위원을 구성하는 절차를 선택할 수도 있도록 함. 감정센터에서 근무하는 인력(전문위원)이 간사 역할을 하여 감정전문위원회가 주최되고, 감정전문위원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감정전문위원의 검토회의는 영상녹화될 수 있으나 감정센터 소속 기관장의 승인 없이는 공개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함. 이는 감정과정에서 고려되는 사항 등에 대한 절차적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작용할 수 있고 감정인의 책임에 관한 중대성을 고려한 것임. 이와 같은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술품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매년 일정한 시간 의무적인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에 관한 쟁점 사항과 제도 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정례화하여 전문감정인 및 감정전문위원회 위원 인력 풀의 유지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세미나 형식 등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서 감정서의 양식과 용어 정형화, 감정에 필요한 표준 등을 개발하고, 업데이트시켜가며 선진감정기법을 실무적으로 정착해나가는 작업이 행해질 수 있도록 하면 한국 미술품 감정평가 체계의 수립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게 될 것으로 전망함.

□ 감정센터의 조직 구성

- 감정센터는 재단법인 국립미술진흥원 내에 설치하며 다음의 팀을 두어 운영함. 감정센터의 직원은 유기물, 무기물, 미술사, 보존과학, 감정학 등 감정유관 분야 전공자를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함.

구분		인력
센터장	감정센터 업무 총괄	1
자료분석팀	미술품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감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미술품 감정을 담당	4명
연구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및 민간단체의 연구 성과 등을 수집·정리하며, 작가별·시대별 미술품의 흐름을 정리하여 감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조사하여 정리	6명
인력양성팀	새로운 감정인력을 양성하고 기존 감정인력들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대학과의 산·학 협동을 지원하고, 관련 민간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인력 양성을 지원	4명
감정전문위원회	감정이 의뢰된 미술품에 대한 진위감정 및 시가 감정을 실시하고 최종 감정결과를 도출 전문감정인과 감정전문위원으로 구성	외부전문가 20명

6. 공공미술품의 관리와 미술은행

가. 현행 국가소유 미술품 관리 근거 규정 및 문제점¹¹³⁾

□ 근거 규정

- 국가 소유의 미술품은 일반적으로 정부미술품이라고 부르는 미술품에 국한하지 않고, 미술품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모든 미술품을 말하며 조달청이 관리하는 정부소장 미술품, 문화체육관광부가 위탁하여 국립현대미술관이 관리하는 정부미술은행 미술품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국립박물관이나 정부미술은행 미술품을 제외한 국립미술관의 모든 미술품, 각 국가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은 그 소유권이 국가에 있으므로 국가 소유 미술

113)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동기 외, 국가 소유 미술품 관리감정 체계 구축 연구, 예술경영지원센터(2019) 참고.

품의 범주에 속함.

- 현행 국가 소유 미술품 전반에 관한 법률은 없고, 다만 국가 소유 미술품을 국유재산의 일종인 물품으로 분류하여,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2011년 12월 30일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를 신설하여, 각 국가기관별(국회, 사법기관 포함)로 구입 및 관리해 오던 정부미술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소관 정부미술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관리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통합관리의 근거가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2012년 정부미술은행이 출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위탁 운영을 맡게 됨.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정부미술품 운영규정,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운영규정 등이 만들어짐.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의 관리) ① 조달청장은 정부미술품의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소관 정부미술품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관리전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정부미술품의 취득 및 대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받은 정부미술품을 관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정부미술품의 취득 및 대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을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으로부터 대부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 취득가격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경우

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4. 자체 제작하는 경우

5. 그 밖에 각 중앙관서 및 해당 정부미술품·정부미화물품의 특성상 전문기관으로부터 대부받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조달청장이 승인한 경우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전환한 경우 해당 정부미술품을 우선적으로 대부받거나 대부기간을 갱신받을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대부받은 정부미술품의 관리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조달청 <고시> -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은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7호, 제7호의2 및 제52조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관리와 도난·망실·훼손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고시됨.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 정부미술품운영규정 [시행 2015. 7. 24.]은 정부미술품의 전문적인 통합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부미술품의 질적 수준 향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고시임.
- 국립현대미술관 <예규>- 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 규정 [시행 2018. 4. 11.]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429호) 제52조 제3항, 「정부미술품 운영규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2-35호) 제7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국립현대미술관장 (이하 ‘정부미술은행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정부미술품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 규정 제2조에서 정부미술은행의 업무를 1. 정부미술품의 선정, 구입, 가격 등에 관한 업무, 2. 정부미술품의 대부, 활용, 보존관리 등에 관한 업무, 3. 기타 정부미술품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함.
-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운영 관리지침 <훈령> [시행 2017. 1. 6.]은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① 정부청사 미술품 전반에 대한 전시·운영과 관련된 사항, ②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장 미술품의 활용도 제고 및 보존관리에 관련된 업무, ③ 작품의 구입·대여 등의 관련된 업무, ④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운영 자문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함.
- 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 <훈령> ; 외교부는 본부(국립외교원 포함) 및 재외공관(관저 포함)이 취득·소유·관리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관리와 신규 미술품의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을 두고 있음.

□ 문제점

-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는 정부미술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소유 미술품 전반에 관한 취득, 관리 등에 적용할 법률이 없기 때문에, 국가 소유 미술품 전체에 대하여 규범력이 미치지 아니함. 이에 따라 정부미술품 전체에 대하여 전반적인 취득과 관리에 대하여 총괄적이고, 전문적인 체계를 수립하지 못하며 국가 소유 미술품의 취득에 있어 그 시대의 문화적 유산으로서의 미술품 취득이라는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이 투영되지 않은 채 구입·관리되고 있음.
- 국립현대미술관이 2021년 1월 산하 미술은행의 새해 작품 구입 공모계획을 알리면서 응모 자격을 ‘지난 5년간 국공립·사립 미술관과 민간 이권단체인 화랑협회 업체에서 개인전을 연 작가’로 제한했다가 불공정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하고 응모 자격 부분에 화랑협회를 빼고 ‘문화재단, 비영리·영리 갤러리 및 전시 공간’으로 대상 범위를 넓힌 새 공모안을 발표한 바 있음. 국가 소유 미술품의 취득에 관한 전체적인 큐레이팅 설계가 부족한 채 구입이 이루어지고, 미술품의 효용 및 전시, 대여, 종합적 이용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로 관리와 대부가 이루어지고 있어 미술에 대한 국가적 문화가치를 반영키 어려움. 상당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미술품 구입에 이르고 있으나, 정부미술품에 대한 국민의 미술 전시체험이나 문화적 관람기회 등 국민의 문화향유권 입장을 고려한 구입과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임.
- 현재 정부미술은행과 미술은행을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미술은행관리과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고, 그 구입, 대여, 관리 등 중복된 업무를 이중으로 수행되고 있는 점을 개선이 지적되며, 작품의 구입에서 차별화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취지 역시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미술은행과 미술은행을 통합 운영 필요성이 제기됨.
- 정부미술품 전체를 총괄하는 미술 관련 행정의 가동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음. 이는 현행 법규 체제가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고, 비전문적인 행정가에게 그 책임이 맡겨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임. 정부미술품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국가의 문화적 유산이며, 그 국가의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심미적 가치를 지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여 그에 관한 행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각 기관에서 기관장의 선호도에

따라 구입되고 기관장의 퇴임 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등의 현상까지 발생함. 이로 인하여 국민의 문화적 수준 발전 속도를 미술 관련 행정이 따라잡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결국 문화국가 원리의 구현이며 실천이 되어야 할 정부미술품이 국민 관심으로부터 소외받는 현상이 야기됨. 또한 현재 정부미술품은 그 구입 및 관리의 주체가 다양하고 각 기관으로 산재되어 있어, 그 수복의 필요성 판단과 적절한 수복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 미술품의 보존 및 사후관리에 문제점으로 지적됨.

□ 정부미술품을 비롯한 공공미술품 관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

- 미술품을 감가상각이 필요한 일반 물품으로서가 아니라, 문화적, 심미적 가치가 투영된 시장가격 등을 반영한 소장품 평가기능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술을 중심으로 한 국가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과 다양한 미술행정 정책이 가능하도록 제도와 법규 설정이 필요함.
- 정부미술품 구입 및 관리에 있어 국가기관의 미화를 위한 작품이 아니라,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의 미술품 향유를 위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의 고려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전문적 큐레이팅과 정부미술품 전체에서 해당 미술품의 가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입기관의 장의 선호도에 따라 구입되는 현실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전체 정부미술품 전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큐레이팅 작업을 통해 국민의 미술품 전시 접근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부미술품을 비롯한 공공미술품에 관하여 법규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정부미술은행과 미술은행으로 분화된 국가의 미술품 공공대여 제도를 보다 전문적인 독립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총괄하는 기관을 조달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공공미술품 관리에 관한 법규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전체 정부미술품 전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큐레이팅 작업을 통해 국민의 미술품 전시 접근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부미술품을 비롯한 공공미술품에 관하여 법규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정부미술은행과 미술은행으로 분화된 국가의 미술품 공공대여 제도를 보다 전문적인 독립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총괄하는 기관을 조달청에서 문화체

육관광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정부미술품 관리에 관한 법규가 필요함.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국가 소유 건축물 미술작품(사인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축물 미술작품은 제외)에 대하여 정부미술품의 범위로 하여, 그 설치 및 관리의 근거를 마련함.
- 우선 문화재와 미술관 등에 소장된 미술품을 정부미술품의 범위에 포함할 것인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나, 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62조 제1항의 “국유에 속하는 문화재는 「국유재산법」 제8조와 「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이 관리·총괄한다.”는 규정에 따라 미술진흥법에서도 그 적용 범위에서 제외함.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적용 대상인 박물관과 미술관이 소장하는 미술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 정부미술품의 특수성에 비추어 정부미술품 자체의 전시나 대여 뿐 아니라 미술품의 이미지의 적극적인 활용 역시 필요함. 따라서 저작권법상 미술저작자의 저작권 보호와 정부미술품의 제도 취지와 국민의 미술품 접근권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하여 미술은행은 미술품의 취득 단계부터 부당하게 저작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인 미술품의 이용과 국민의 이미지 접근에 관한 자유로운 권리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미술품에 자체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저작권 정보를 일반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나. 미술은행의 설립

□ 정부미술품 사무의 총괄과 관리

- 비교법적으로 보면, 정부미술품의 구입과 대여를 정부 부처 중 문화부에서 담당하는 국가와 조달청에서 담당하는 국가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 1791년 프랑스 정부가 교회와 귀족의 소유물이었던 미술작품 및 문화재를 국가의 공적 재산으로 지정하고, 1878년 ‘미술품 관리국(Bureau des travaux d'art)’을 설치함. 1976년 정부의 현대화 정책의 일환으로 「1976년

5월 25일 법」에 의해 미술품 관리국이 국립현대미술재단(FNAC)과 퐁피두 미술관을 개관하면서 순수한 작품 구입예산을 지원하게 됨. 1981년부터 라 데팡스 지역에 문화통신부 산하의 국립조형예술위원회(Centre national des art plastiques, CNAP)의 산하기관으로 국립현대미술재단(FNAC)을 두고, 정부가 관리하는 현대미술 수집기관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됨. 프랑스는 FNAC 과 함께 문화통신부 지방행정예술국의 지역현대미술기금(Fonds Regionaux d'Art Contemporain)을 두어 지방행정에 있어 미술품 관리를 담당함. 1980년대 프랑스 문화전반에 반영된 '지방분산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1982년에 시작된 문화통신부의 지방예술 행정국 소속 단체로서 지역단위로 운영되지만, 작가의 출신 지방·국적에 상관없이 전세계 현대미술의 최근 동향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함. 미술관, 전시장, 교육 센터의 복합적인 성격으로 박물관의 기능을 유연하게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교육과 전시활동을 위해 설립됨. 현재 23개가 설치되어 각 지방마다 있는 작품보존을 위한 수장고 역할을 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음.

- 영국에서 정부미술품의 총괄 관리는 우리나라의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하는 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 DCMS)에서 담당하고, 그중 정부미술품의 구입·관리는 DCMS 산하 집행기관인 정부예술품컬렉션(Government Art Collection : GAC)에서 담당함. 이는 우리나라 정부미술은행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정부미술품의 구입과 유지, 관리 및 대여 업무를 수행함.¹¹⁴⁾
- 미국은 정부미술품 컬렉션(The Fine Art Collection)을 연방조달청(GSA)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연방조달청 내 청사관리국 건축담당관실(Office of the Chief Architect)의 큐레이터 등 미술전문가로 구성된 우수디자인 및 미술과(Design Excellence & the Art Division)에서 관리하고 있는 점, 정부미술품 재고조사, 검사, 보존 및 타 박물관에 대여를 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진흥법상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와 유사한 Art-in-Architecture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서¹¹⁵⁾, 우리나라의 조달청의 기능 및 업무와는 상이함. 특히 각 지역(Region)에 있는 지역미술품관리자(Regional Fine Arts Officer, RFAO)의 전문적인 미술품 관리가 행해지고 있다는 점은

114) 황혜신 외 3인, 「효율적인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1, p.213 참조.

115) 앞의 보고서 p. 178.

정부미술품의 관리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함.

□ 정부미술은행과 미술은행의 통합

- 현재 정부미술은행과 미술은행은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미술은행관리과에서 함께 운영됨. 미술품의 소유 기관이 형식적으로 국가인가 국립현대미술관인가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국유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고, 미술작품의 대여대상 기관에 차이가 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제도적 차이라고 볼 수 없음. 오히려 미술작품의 구입과 그 과정에서 선정 기준, 대여의 일반적인 기준, 소장 및 사후관리 등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가 이중적인 구조 아래에서 수행되고 있을 뿐임.

구분	정 부 미 술 은 행	미 술 은 행	
주체	문화체육관광부(국립현대미술관을 업무수행 전문 기관으로 위탁)	국립현대미술관(2009년 5월 이후 문화관광부 예술정책과에서 미술품 구입 및 대여에 대한 모든 정책과 집행기능을 전환받음)	
도입 시기	2012년 10월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미술품 운영제도 도입	2005년 2월 미술은행제도 도입	
운영	운영위원회에서 주요사항 결정, 세부사항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위임 위원 구성은 관계기관 공무원(당연직 6명)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는 미술관련 전문가(7명 이내)	운영위원회에서 주요사항 결정, 위원 구성은 관장이 위촉하는 민간 위원(10명 이내) 및 당연직 2명(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은행관리과장, 학예연구실장)	
운영 목적	정부미술품의 전문적인 통합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정부미술품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	작가의 창작 활동 진흥정책을 통한 미술문화 발전을 도모: 미술품의 구입 및 대여·전시활동으로 국내미술시장 활성화 및 미술문화의 대중화 선도와 국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 해외전시를 통한 한국현대미술의 홍보 및 위상 강화	
미	현황	관리전환 1,436점+ 구입 748점= 총 2,184점(2018년)	구입 3,591점 총 3,591점(2018년)
	구입 예산	13억 원(2018년 기준)	19억 5천만 원(2018년, 전체운영예산 총 32억 5천만 원)

미술 품	소유권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장르	한국화, 문인화, 서예, 판화, 조각, 뉴미디어 및 설치, 공예, 사진 9개 장르	
	구입기준	예술적 가치 또는 보존가치가 높으며 대국민 문화기반 확대에 기여하고 국가기관에서 소장할 가치가 높은 미술품	역량있는 작가의 작품으로 그 질적 수준이 미술문화 발전 및 미술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국민일반의 취향을 반영한 미술품
	구입방식	공모형, 제안형(위원제안, 기관제안)	
	구입절차	작품제안→작품가치심사위원회→작품가격평가위원회→작품구입심의위원회	
관리 체계	활용실적	총 2,184작품 중 1,803점 209개기관 대부, 수익 없음(2018년 기준)	총 3,591작품 중 2,889점, 200개 기관에 대여, 수익 10억3백3십4만원 (2018년기준)
	소장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수장고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수장보존센터) 수장고	
	관리규정	물품 관리법 시행령(조달청 고시) 국가기관소유 미술품 보관 관리규정 (조달청 고시) 정부미술품 운영규정(문체부 고시) 정부미술품 운영 시행세칙(국립현대 미술관 예규)	미술은행 운영 규정 (국립현대미술관 예규)
매각폐기	「정부미술품 운영규정」 제 13조 (정부미술품 매각폐기)에 따라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정부미술품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음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 20조(관리전,매각 및 폐기 등)에 따라 관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결정을 한 작품에 대해 관리전환,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음

- 매년 증가하는 미술작품 수에 따라 정부미술은행과 미술은행의 구입과 관리 전환, 보존과 상태 조사 등 관리 업무가 가중되고 있고, 그 업무의 중요성과 규모에 비추어 전문적 전담 직원의 안정적 배치가 미흡하여, 정부미술품 관리에 관한 행정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기에는 개선될 필요가 있음.

- 미술은행은 정부미술품 전반에 관한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적인 미술 컨설턴트와 큐레이터 등을 통하여 전시와 대여를 종합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함. 디지털 바코드제도, 종합적인 정부미술품 데이터베이스와 작품관리 시스템, 미술작품의 정기적인 재조사 등이 미술은행에 의해 실시, 관리되어야 함.

다. 미술은행의 업무

□ 정부미술품 사무의 총괄과 관리

- 정부미술은행과 미술은행을 통한 형태의 기관인 “미술은행”이 정부미술품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됨. 정부미술품의 관리, 처분 업무를 담당함.

□ 국가 소유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업무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한 건축물 미술작품은 그 소유가 대체로 일반인이나 사기업체 법인인 경우가 많지만, 국가가 소유한 건축물인 경우 미술작품을 설치하고 국가가 그 소유자로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음.
- 미술은행이 건축물 미술작품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제도와 관련하여 참조할 제도로 미국의 제도를 들 수 있음. 정부미술품 관리기관에서 건축물 미술작품을 담당하는 미국의 연방 조달청(GSA)의 제도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GSA에서 시행하는 Art-in-Architecture Program은 연방청사 내의 미술품을 조달하는 업무 중의 하나로,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자산을 풍요롭게 할 목적으로 1972년부터 운영됨. 위 프로그램에 따라 연방청사의 신축 또는 증·개축 시 건설비용의 일정 비율을 건축미관사업 비용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를 GSA가 주관함. GSA는 미술가를 선정하는 작업을 우선 실시하는데, 예술가 선정을 위하여 5명의 지역 대표와 5명의 예술전문가와 건축가를 초청하여, 예술가의 포트폴리오를 검토하게 하고 3~5명의 예술가를 추천하도록 하고 그 예술가들은 설치할 작품에 관한 제안서를 작성하고 지역사회가 제안서, 예술가의 과거 활동과

전시 내역, 추천서 등을 검토하여 최종 추천안을 GSA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 GSA에서 확정되면 그 예술가가 작품을 설치함. 선정된 미술가는 건축 초기 단계에서부터 투입되고 건축가, 엔지니어, 조경예술가 등과 협력하여 건축물에 적합하고, 가장 어울리는 작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함.

- 미술은행이 건축물 미술작품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건축물 미술작품에 관한 심의과정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작품 설치에 있어 업체 중심에서 미술가가 설치 장소를 고려하여 작품을 설치하도록 작가 중심으로 전환함. 아울러 설치 과정 중에 전체적인 인테리어 및 조경 등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판단되거나 작품 설치에 관한 의견 조율이 되지 않는 경우 미술은행 소속의 미술관련 전문가 판단에 따라 작품 제작에 대한 일정 비용 지불 후 새로운 미술가의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판단을 미술은행 소속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 처리하게 함으로써 걱정하고 공정한 작품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 있음.
- 우리나라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임. 이에 관한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과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노후된 건축물 미술작품은 오히려 미관을 해치고 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평가를 받게 됨. 국가가 소유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해서는 미술은행이 미술작품 설치 후 매 2~3년마다 점검한 후, 점검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유지, 보수를 위한 예산을 책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유지, 보수에 필요한 경우 미술품 수복·보존을 위한 별도 용역계약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미술은행 소속 전문가가 판단토록 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이와 같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일반공무원의 순환 보직을 통한 관리보다는 미술은행 소속의 미술전문 직원으로 하여금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공익적 성격이 강한 공공건축물을 활용한 콘텐츠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공공건축물의 저작권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이용허락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위탁된 공유미술품의 관리 업무

- 지방자치단체의 미술은행은 2005년 미술은행이 설립되면서 가장 먼저, 남도 예술은행과 인천미술은행이 설립되었고 그 외는 2012년 이후로 설립되면서 현재는 전국적으로 확대됨. 현재 지방자치단체 미술은행으로는 인천 문화재단의 인천미술은행, 전남 문화예술재단의 남도예술은행, 성남미술재단의 성남미술은행, 민간위탁의 경기물품거래소, 서울문화재단의 바람난미술 등이 있음. 지역미술문화 확대와 지역 작가의 지원이 목적이므로 지역문화와 취향을 반영하여 지방에 따라 선호하는 장르와 모델이 다르고 다양함.
- 중앙정부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의 미술시장의 기반이 취약하기 예산이 적고 경기 흐름에 따라 영향이 큼. 초기에는 성황세를 보이다가 구입금액이 감소하거나 구입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남도미술은행은 2015·16·18년 중단 및 2017년 토요일경매 폐지, 성남미술은행은 2018년 중단, 인천미술은행은 2009년까지 증가하다 2016년 9천만 원으로 감소함. 운영모델은 크게 미술은행형과 공공갤러리형으로 각각 대여와 판매를 위주로 운영하였으나 점차 대여 위주로 변화되는 추세임. 인천과 성남·서울은 대여, 남도는 판매 중에서도 경매 위주, 경기도는 이 둘을 함께하고 있음. 특히 비용 관리 측면이 어렵다고 판단한 서울은 미술품을 구입하지 않고 공모와 추천으로 선정된 작품을 선대여·후활용하는 임시미술은행을 활용하고 있음. 미술은행과 비교하여 운영모델이 불분명, 미술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문성이 부족하며 관리 위주임.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미술품의 보관이나 전시에 있어서 그 범위가 지방자치단체 영역 범위 내로 한정되거나, 그 지역 주민들만 향유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적인 보관과 전시, 수복 등에 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미술은행에 미술품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주는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전시 장소의 광범위한 선정, 훼손된 미술품의 전문적인 수복, 많은 관람자가 다양한 미술품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위탁의 장점이 있고, 일정한 약정 기간 도과 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미술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도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소유 미술품의 관리위탁이란 해당 미술품의 관리에 관한 행정

사무를 수입기관에 맡기고 그 권한과 책임 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자체 소유의 미술품에 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는 행정재산인 병원, 청소년수련관 등 대부분 특별한 기술·장비 및 능력을 요하는 특정 시설물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는 행위로 나타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관리위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관리위탁의 실질은 민간위탁으로,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관리위탁이란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 운영하는 업무형태임.
- 이러한 위탁관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우선적으로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관리비용을 절감하여 재정 건전화에 유도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므로 재산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임대나 매각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임.
- 이러한 공유재산의 위탁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정부는 2008년 12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공유재산을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으며(동법 제43조의 2 제1항),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발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낼 수 있도록(동법 제43조의 3 제1항) 하고 있음.
- 앞서 살펴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미술품의 관리를 위하여 미술은행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제시

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미술진흥법에 마련함.

■ 통합미술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가. 필요성

- 2016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 한국미술시장 정보시스템 (www.k-artmarket.kr)은 화랑, 아트페어, 경매회사에서 거래된 미술작품 정보와 이를 기반으로 한 미술시장 관련 콘텐츠(거래정보 통계, 시장 동향 분석 등)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소재 해외갤러리의 유통 현황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미술판매가를 비롯해 재판매보상청구권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확인은 쉽지 않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기록원은 예술자료 종합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통해 소장자료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를 통해 근현대 예술사 및 예술자료의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미술 분야에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음. 이와 별도로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정보를 ‘공공미술포털사이트 (www.publicart.or.kr)’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나 기초적인 작품 정보 이외에 유지·보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움.
- 국립현대미술관은 홈페이지의 소장품 검색 시스템을 통해 소장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작품’ 정보에 해당하며 ‘기록물’에 해당하는 소장품에 대한 정보 제공은 미흡함. ‘작품’ 정보의 경우에도 저작권 등의 문제로 이미지가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음.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소장품 검색(작품가는 작가의 개인 정보 보호로 대여협약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만 공개) 및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와 별개로 국립현대미술관은 ‘지역미술관 아카이브 구축 지원 사업’을 통해 기록물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가 어려운 지역 공립미술관 기록물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을 지원하고 있음.
- 서울시립미술관의 경우에도 소장품들을 상세하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현대미술의 중요 자료와 기록을 수집·보존·연구

하고 전시하는 아카이브 기능이 특화된 미술관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가 2021년 12월 개관 예정으로 작가노트, 미완성 드로잉, 육필원고, 일기, 서신, 메모, 사진, 필름과 같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창작자와 비평가, 큐레이터 등이 생산한 미술 아카이브를 중점적으로 수집되어 홈페이지를 통해 미술 아카이브 컬렉션의 구체적인 정보 확인 및 자료와 관련된 온라인 콘텐츠가 제공될 예정임.

- 현재 미술 분야 인력 관련 지원정보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여러 기관과 플랫폼으로 분산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보가 없는 예술인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쉽게 파악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경력정보의 비공개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이 불가하여 실제 구인-구직 정보 제공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음.
 -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예술경영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제공되는 주요 일자리 정보는 문화기관 등의 일자리 정보에 특화되어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코로나19 발발 이후 예술지원사업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아트누리’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예술 현장에서 인지도는 높지 않음.
- 중앙부처 및 지자체별 공공건축 공간정보 DB 구축을 통한 지역별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기관에서 생산·소유하고 있는 공공건축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좋은 공공건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토부 산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내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설립되어 2014년 6월 국토부로부터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물 용도별, 소유주체별 현황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생산·소유하고 있는 공공건축 관련 통계자료, 국내외 우수공공건축 조성사례 등을 포함한 DB 구축 및 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 미술 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미술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신고제, 재판매보상청구권을 비롯하여 미술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 환경 조성 및 정부미술품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통합미술정보시스템 운영 방안

□ 구축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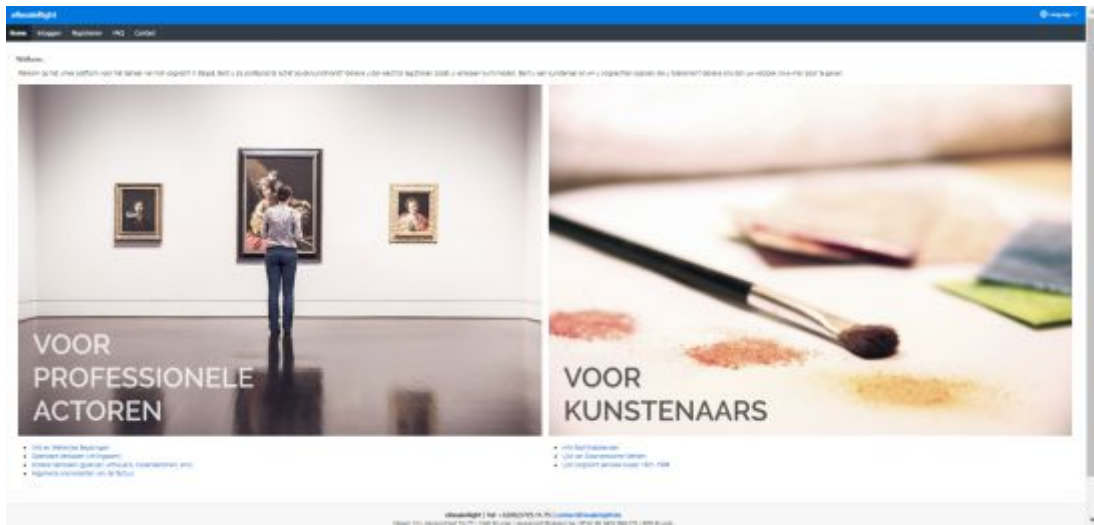
- 미술 관련 서비스업 신고 현황
- 미술진흥법 시행일로부터 2년 후 시행되는 재판매보상청구권의 집행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재판매보상금 징수 및 분배 사항
- 감정 관련 선행 연구 및 감정센터가 정립한 감정 기초 자료 및 과학적 분석 방법 및 기준 자료
- 미술은행이 소장·관리하는 미술품 정보(저작권 정보 포함) 및 해당 미술품의 대여 및 전시 현황

□ 제공 정보 및 공개 범위

- 미술 관련 서비스업 신고제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대중에 공개하는 정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인 업종, 대표자 성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로 제한함.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제공 정보(http://fine.fss.or.kr/main/fin_comp/similar/business_list.jsp)>

-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은 재판매보상청구권 제도에 대한 일반인과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제도 소개)를 제공함. 또한 재판매보상청구권의 효과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 적용 대상 미술품 재판매에 대해 미술품의 제호, 작가의 성명, 재판매보상금 지급 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 재판매일자 및 재판매가에 관한 정보를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함.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정보 중 재판매보상청구권이 적용되는 미술품의 제호, 작가의 성명, 재판매일자는 일반에게 공개하며 재판매보상금 청구권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재판매보상금 지급 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 재판매가를 공개하지 않음. 또한 징수된 재판매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 기준 및 대상, 지급 방법, 지급 기한 및 미분배 보상금 처리 방법, 담당자 및 연락처를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을 통해 1개월 이상 공고함.
- 벨기에의 경우 벨기에 저작자·작곡가·출판사협회 (Société d'Auteurs Belge - Belgische Auteurs Maatschappij, SABAM)와 멀티미디어·시각미술작가단체 (Société Multimédia des Auteurs des Arts Visuels, SOFAM)이 구축하여 관리하는 단일 플랫폼(www.resaleright.be)을 통해 재판매보상금이 징수되어 분배되는데 단일 플랫폼은 재판매를 통지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웹사이트를 통해 재판매된 미술품 및 작가 성명, 재판매일자, 재판매 신고일자를 공지함. 프랑스의 경우 재판매보상청구권자가 직접 또는 미술 분야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인 시각조형미술배포협회 (Association pour la Diffusion des Arts Graphique et Plastiques, ADAGP)를 통해 재판매보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ADAGP는 웹사이트를 통해 자사가 재판매보상청구권을 관리하는 작가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www.resaleright.be의 재판매 통지 시스템>



<ADAGP의 웹 사이트>

- 감정센터의 역할이 단순한 미술품의 진위를 판정하거나 가치 평가를 하는 역할 이외에도 미술품에 이용되는 재료 전반에 걸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한 감정 기준 자료를 축척하고 미술계에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적 역할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선행 연구결과물, 감정센터가 구축한 작가별·시대별 재료, 기법 등 감정 기초 자료, 미술품의 과학적 분석방법 및 기준자료가 통합미술정보시스템에 구축함. 다만 감정센터의 감정 결과가 일반에 공개될 필요는 없으며 감정 기초 자료와 미술품의 과학적 분석방법 및 기준자료의 경우 민간 감정단체를 비롯한 소정의 이해관계자들에게만 공개함.

- 미술은행이 소장·관리하는 정부미술품(국가 소유 건축물미술작품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위탁을 맡긴 미술품에 대한 정보(저작권 정보 포함), 해당 미술품들의 전시 및 대여 현황 정보를 통합미술정보시스템에 구축하고 미술은행이 소장·관리하는 미술품의 전시 및 대여, 저작권 활용을 위한 절차가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미술은행이 소장·관리하는 미술품의 목록과 전시 및 대여 현황, 저작권자에 대한 정보는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한편 해당 작품의 대여를 위한 대여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작품가는 대여협약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대여기관에 한정해서 공개함.

8. 국립미술진흥원의 설립

가. 설립 필요성

- 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06년 1월에 설립되어 공연시장 및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과 전문예술법인·단체 경영 활성화 지원, 예술기업 지원 등 예술 현장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미술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신고 업무, 재판매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미술품 감정 사업, 공공미술품 관리를 비롯한 공공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조직 구성과 인력의 전문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특히 현재 문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지정되어 있으나(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01호) 법정기관이 아니라는 이러한 사업들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1972년 8월 3일에 공포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1973년 3월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되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05년 1월 출범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학·시각·연극·음악·무용·전통·다원예술 등 순수예술 전 분야의 고른 발전을 위한 창작을 지원하고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바우처, 복권기금문화나눔 등 문화복지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미술 관련 사업들은 창작, 기획 분야의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진흥법상 유통 관련 사업들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처럼 기존의 미술 관련 지원 기관들이 창작, 기획, 전시, 유통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미술진흥법상 규정된 제도 시행에 따른 미술 관련 서비스업의 신고 업무, 재판매보상청구권의 집행 및 관리 업무와 민간 영역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미술품의 관리, 행정적·사법적 목적을 위한 감정 업무 및 감정 기반 자료의 구축, 통합미술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 따라서 이러한 공적 영역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된 기관 설립이 필요함.

나. 진흥원의 업무

□ 공적 목적의 감정 및 감정 인프라 구축

- 행정, 사법 등 공적 측면에서 필요한 공신력있는 미술품 감정 시스템의 부재를 감안한 감정센터의 설립 취지에 비추어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미술품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세무 당국으로부터 과세를 위하여 미술품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정부미술품의 구입 및 대여, 재평가, 매각 및 처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술품에 대한 감정 및 조사를 담당함.
- 감정센터는 단순히 미술품의 진위를 판정하거나 가치 평가를 하는 역할 이외에도 미술품에 이용되는 재료 전반에 걸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작가 별·시대별 재료, 기법 등 감정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미술품의 과학적 분석방법의 개발 및 기준 자료를 정립함.
- 기존의 감정 인력 양성 방안들과 교육 과정들을 검토하여 체계적 교육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과정을 운영함.

□ 공공미술품의 관리

- 정부미술품 전체에 대하여 전반적인 취득과 관리에 대하여 총괄적이고, 전문적인 체계를 수립하고 정부미술품 전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큐레이팅 작업을 통해 국민의 미술품 전시 접근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부미술품의 취득, 관리 사무, 정부미술품 데이터베이스와 작품관리 시스템, 미술작품의 정기적인 재조사 등 정부미술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함.
- 현재 정부미술은행과 미술은행으로 분화되어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미술은행관리과에서 함께 운영되고 있는 현행 국가의 미술품 공공대여 제도를 통합하여 업무를 담당함. 아울러 감정센터에서 미술품에 의한 물납의 세액을 평가하여 세무당국에 통보하도록 한 뒤, 그에 근거하여 세무당국에서 물납을 최종 결정한 경우 해당 물납된 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를 미술은행에서 운영하도록 하여 국민이 공유하는 공공유산화라는 물납제의 취지와 상속세 물납의 절차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중 국가가 소유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해서는 미술은행이 미술작품 설치 후 매 2~3년마다 점검한 후,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유지, 보수를 위한 예산을 책정하여 관리하며 유지, 보수에 필요한 경우 미술품 수복·보존을 위한 별도 용역 계약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미술은행이 판단함.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미술품의 전문적인 보관과 전시, 수복 등에 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미술은행에 미술품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주는 업무를 수행함.

□ 미술 관련 서비스업 신고 업무

- 미술진흥법상 미술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이러한 의무 부과가 행정청에게 실질적 심사권이나 수리 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부여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청의 수리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행정절차법에 따라 기재사항에 하자가 없고, 유형별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한 신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미술진흥법상 규정된 영업승계의 경우 자기

완결적 신고로 해석되지 않고, 수리를 통하여 종전 미술 관련 서비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효력이 비로소 발생하는 행정요건적 신고로 행정청의 수리 절차가 필요함. 이러한 신고제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영업 정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 신고 의무 준수를 위한 제재 조치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기존의 미술 관련 지원 기관에서 담당하지 적절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신고제 관련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기관이 필요함.

□ 재판매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 재판매보상청구권을 위한 집중관리단체를 신설하는 방안보다는 기존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이 초기 관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현재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저작물의 저작권자에 대한 신탁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회원 이탈과 저작권료 수입 저하 등으로 타 저작권신탁단체와의 합병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미술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진흥원을 재판매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하여 재판매보상금을 징수·분배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다만 진흥원은 재판매보상금 징수 및 분배 업무와 관하여 재판매보상청구권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승인 또는 변경 신청을 하도록 함.
- 이에 따라 진흥원이 재판매보상금 수령 및 분배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재판매보상금 징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재판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 수수료에 관한 사항, 재판매보상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보상 관계 업무 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재판매보상금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함.
- 진흥원은 미분배된 재판매보상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판매보상청구권 교육·홍보 및 연구, 재판매보상청구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재판매보상청구권 보호 사업, 작가 권익옹호 사업 등 공익 목적의 사업에 사용하고 미분배보상금 사용 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제출한 업무를 담당함.

□ 통합미술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

- 미술진흥원은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진흥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미술 관련 서비스업 신고 정보, 미술품에 이용되는 재료 전반에 걸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구축된 작가별·시대별 재료, 기법 등 감정 기초 자료, 미술품의 과학적 분석방법의 개발 및 기준 자료, 미술은행이 취득, 운영하는 미술품 및 대여 절차에 관한 정보, 재판매보상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미술품 재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함.
- 다만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는 해당 정보의 성격과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을 감안하여 정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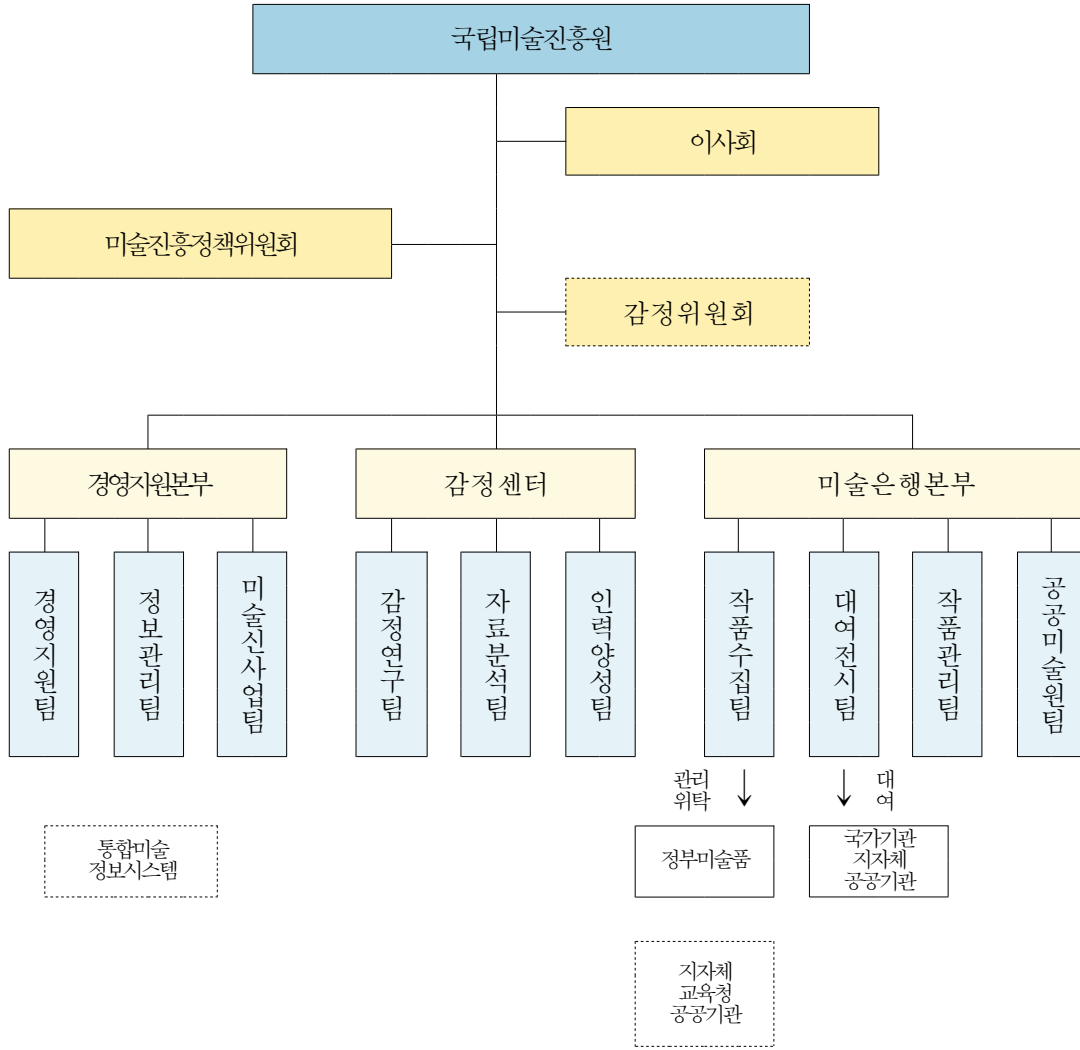
다. 진흥원의 운영 방안

□ 미술진흥원의 법적 성격

- 진흥원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하여 진흥원은 법인으로 설립하고 진흥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도록 하며 임직원에 관한 사항,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함.

□ 미술진흥원의 조직 구성

- 진흥원은 3개 하부 조직(경영지원본부, 감정센터, 미술은행부)로 구성됨.
- 진흥원 조직 내부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감정 사업, 미술은행 운영 등 미술 시장에 진흥원이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공정성 보장, 기관장의 경영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상임감사 제도를 도입함.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를 뒤야 하며, 통상 감사의 상임·비상임 여부는 기관별 정관 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진흥원의 정관에 상임감사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구분	업무	인력	
미술진흥원장	진흥원 업무 총괄	1명	
상임감사	감사	1명	
경영본부	본부장 (사무국장 겸임)	경영본부 총괄	1명
	경영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진흥정책위원회 운영, 소집 ▶ 예산 편성 및 총괄관리 ▶ 사업계획 및 예산, 대외업무(국회, 주무부처) ▶ 기관 소송 및 법무업무 ▶ 예산집행, 결산, 정산, 회계, 세무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노무, 복무 관련 업무 ▶ 용역·구매 계약 업무, 협약(R&D), 자산관리 ▶ 미술진흥 정책 개발연구 ▶ 미술진흥 정책 지원 ▶ 미술진흥 협력 체계 구축 	
	정보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미술정보시스템 관리 ▶ 미술 관련 서비스업 신고 ▶ 재판매보상금 징수 및 분배 	3명
	미술신사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및 기술개발 ▶ 신규사업 발굴·기획 	4명
감정센터	센터장	센터 업무 총괄	1명
	자료분석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품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 감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업무 ▶ 미술품 감정을 담당 	4명
	연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및 민간단체의 연구 성과 등을 수집·정리 ▶ 작가별·시대별 미술품의 흐름을 정리 ▶ 감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조사하여 정리 	6명
	인력양성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감정인력을 양성하고 기존 감정인력들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대학과의 산·학 협동을 지원하고, 관련 민간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인력 양성을 지원 	4명
	감정전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위감정 및 시가 감정을 실시하고 최종 감정결과를 도출 ▶ 책임감정인과 감정전문위원으로 구성 	외부 전문가 20명
미술은행부	부장	미술은행본부 업무 총괄	
	작품수집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의 신규 구입 ▶ 국가기관 접수 미술품 기증 관련 심사 ▶ 국가기관, 정부, 공공기관 등 작품 선정심사 ▶ 저작권 관리 ▶ 작가 이력조사 ▶ 수집 작품 아카이브 구축 	4명
	대여전시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여·전시 및 관련 컨설팅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전시기획 ▶ 재외공관 및 해외문화원 대여 ▶ 해외 홍보 전시 기획 	5명
	작품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장품 관리, 권역별 공공수장고 운영지원 ▶ 작품 상태조사 	4명

		▶ 지자체 보유 미술품 관리지원 ▶ 민간대여 활성화 지원 ▶ 미술품 대여업체 작품 운송 지원	
	공공미술지원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유 건축물미술작품 관리 지원 ▶ 공공미술프로젝트 관리 ▶ 공공미술품 데이터베이스 관리	4명

□ 진흥원의 운영예산

-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미술품 감정, 지방자치단체 소유 미술품 관리 위탁 등 진흥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에 그 업무의 위탁 및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진흥원은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미술품을 비롯하여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진흥원이 이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진흥원이 기부받은 물품 중 미술품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사전에 승인받도록 함.

구분	항목	세부 내용
설치비	자산취득비	▶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컴퓨터, 사무용품, 기타 물품 구입비용: 32,200만원(1인당 700만원) ▶ 인문학적 자료 조사를 위한 감정 관련 자료의 일시적 구입 비용: 2억원 ▶ 과학적 분석을 위한 분석기기 구입 비용*: 30억원
운영비	인건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타 공공기관의 1인당 평균 인건비 6,743만원(2019년 결산 기준)를 기준으로 1차년도(직원: 40명)에는 269,720만원, 2차년도(직원: 44명)에는 315,087만원, 3차년도(44명)에는 334,622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 연봉: 12,000만원(1차년도), 12,744만원(2차년도), 13,534만원(3차년도) ▶ 상임감사 연봉: 1차년도: 11,000만원(1차년도), 11,022만원(2차년도), 11,705만원(3차년도) ▶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인건비 증가율 연 6.2% 고려
	경상운영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 분야 기타 공공기관들의 인건비 대비 경상운영비 평균(36%)* 적용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위원회는 감정수수료로 소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추계에서 제외 ▶ 감정인력 양성 사업의 경우 2차년도에 교재 개발비용 5천만원, 3차년도에 강좌운영비용 1억원과 감정인력 및 감정예비인력에 대한 연구지원비(1억원: 20명, 1인당 500만원)를 가정 ▶ 통합미술정보시스템 구축 비용: 1차년도에는 10억원, 2차년도 및 3차년도에는 3억원 ▶ 대여 미술품 구입(정부미술품 포함): 24억 ▶ 연구비: 2억(2차년도 및 3차년도) ▶ 신규사업: 3억(2차년도 및 3차년도)

* 향후 3년간 인건비 소요 예상액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계
2,927	3,388	3,599	9,914

(단위: 백만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기타 공공기관의 인건비 대비 경상운영비율

기 관 명	인건비(a)	경상운영비(b)	비율(b/a)
한국저작권위원회	6,775	2,260	33%
예술경영지원센터	1,676	988	5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6,969	5,756	2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4,306	1,408	33%
평균			36%

(단위: 백만원)

* 향후 3년간 진흥원 연도별 경상운영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계
1,054	1,220	1,296	3,570

(단위: 백만원)

* 향후 3년간 진흥원 운영 예상액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계
설치비	자산취득비	294	28	-	322
운영비	인건비	2,927	3,388	3,599	9,914
	경상운영비	1,054	1,220	1,296	3,570
	사업비	3,450	3,250	3,400	9,510
계		7,725	7,886	8,295	23,906

(단위: 백만원)

2 미술진흥에 관한 법률(안)

1. 제정안의 체계

- 제정안은 본칙 3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칙에는 목적, 정의, 기본계획 수립, 창작, 전시 지원하기 위한 시책 강구, 실태조사, 유통활성화, 통합미술정보체계 구축 등의 규정과 함께 미술진흥정책위원회 설치 및 한국미술진흥원의 설립 근거 규정 등을 두고 있음.

<제정안의 체계>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미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미술진흥정책위원회의 설치)
- 제7조(실태조사)

제2장 창작, 유통 및 향유

- 제8조(창작활동 지원)
- 제9조(전시 지원)
- 제10조(창작공간등의 확충)
- 제11조(지역미술 활성화)
-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14조(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 제15조(미술관련 서비스업 활성화 등)
- 제16조(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
- 제17조(소비자 보호)
- 제18조(표준계약서)
- 제19조(미술품 유통업 또는 미술품 감정업의 신고)
- 제20조(영업정지등)
- 제21조(영업의 승계)
- 제22조(지식재산권의 보호)
- 제23조(연구·조사 등의 지원)
- 제24조(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3장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 제25조(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 제26조(재판매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 제27조(정보제공청구권)

제4장 국립미술진흥원

- 제28조(국립미술진흥원의 설립 등)
-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30조(경비의 지원 등)
- 제31조(감사)
- 제32조(이사회)
- 제33조(감정센터)
- 제34조(미술은행)
- 제35조(감독 등)

제5장 보칙

- 제36조(별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 제38조(과태료)

부칙

- 제1조(시행일)
- 제2조(미술품 유통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2. 제정안의 조항별 검토

가.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향유를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취지

- 문화예술정책의 모범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온 「문화예술진흥법」에 미술 장르가 명시되어 있으나, 미술진흥을 위한 실효적인 진흥체계로서는 구체성이 부족함.
- 미술 분야 전체(응용미술 포함)를 아우르는 명확한 원칙이나 종합적인 검토 없이 미술분야 내 일부 세부 장르인 공예(공예문화산업진흥법), 서예(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미술 분야 세부 장르에 관한 법률이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제정되어 정책의 일관성·지속성 측면과 미술생태계 선순환을 통한 미술 분야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미술진흥법의 목적은 종합적인 미술진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창작·기획·전시·유통·향유가 선순환하는 미술생태계의 활성화에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이 법의 입법 목적이 미술진흥을 통한 미술 향유 보장과 미술분야에서의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실현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 의견

- 미술 분야를 포함하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서예, 공예 등 미술 분야 세부 장르에 관한 기존의 법률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미술 생태계의 변화를 반영한 체계적인 별도의 입법이 필요함. 다만 적용 대상이 되는 미술의 범위나 지원에 있어서 기존의 법률과의 중복성 문제, 우선 순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유사 입법례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국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문자영상시대에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술”이란 시각적 매체를 이용하여 예술적 경험을 창출하는 일련의 예술활동을 말한다.
2. “미술품”이란 작가가 미술 관련 활동을 통하여 산출한 유·무형의 창작물을 말한다.
3. “미술기록물”이란 미술 활동 과정 중에 생성된 기록 중 보존할 가치를 지닌 기록을 말한다.
4. “미술전시”란 미술품 및 미술기록물(이하 “미술품등”이라 한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보여주는 활동을 말한다.
5. “미술 관련 서비스업”이란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이 경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미술품 유통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가. 화랑업: 작가를 발굴 또는 양성하고 미술전시를 통해 미술품을 대여, 중개하거나 판매하는 업

나. 미술품 경매업: 경매(「민사집행법」 제271조에 따른 경매는 제외한다)를 통하여 미술품을 중개하거나 판매하는 업

다. 미술품 대여업: 가목 이외에 업으로서 미술품을 대여하는 업

라. 기타 미술품 유통업: 미술품(미술품에 대한 권리 포함)에 대하여, 위 가목부터 다목 이외의 방법으로 중개, 판매 또는 대여하는 업

마. 미술품 자문업: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 방법으로 미술품(미술품에 대한 권리 포함)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 결정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는 업

7. “미술품 감정업”이란 미술품의 진위(眞僞)나 예술적, 문화적, 역사적 의미와 수준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표시한 감정서를 발급하는 업을 말한다.

8. “미술 전시업”이란 미술품등의 전시를 기획, 조직, 개최, 또는 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9. “미술 관련 서비스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9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게 신고하고 미술품 유통업 또는 미술품 감정업을 하는 자

나. 미술 전시업을 하는 자

10. “공공미술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소장품은 제외한다.

가. 제11호에 따른 정부미술품

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 교육청이 소유하는 미술품 중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미술진흥원에 관리 업무가 위탁된 미술품

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 소유하는 미술품 중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미술진흥원에 관리 업무가 위탁된 미술품

11. “정부미술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이 소유한 미술품으로서 예술적 가치 또는 보존가치가 높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정·관리되는 미술품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취지

-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용어들을 정의함.
- 미술생태계 전반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타 법률과 별도로 독자적 정의 규정을 마련함.
-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에 대한 제한적 열거방식에 대하여 꾸준히 제기되는 비판을 감안하여 개방적 예시 방식으로 미술을 정의함. 미술진흥법이 적용되는 미술의 정의에는 전통적인 미술 형식인 회화, 복제가 가능한 사진, 판화, 조각, 공예, 사진 이외에 장르간 융합을 통해 동시대 미술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행위예술이 포함됨.
- 미술 관련 기록물의 수집, 관리, 활용 등 아카이빙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미술기록물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미술관, 갤러리, 대안공간 등 기존의 미술전시 공간이나 시설이 아닌 공간이나 곳에서 전시하는 경우에도 이 법상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미술전시에 대한 정의는 포괄적이어야 함. 다만 미술전시 시설의 경우 하드웨어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술(품) 전시를 목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 - 카카오톡, 유튜브, 컴퓨터 게임 등 -은 미술전시시설에서 배제될 수 있으므로 미술전시 시설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미술시장의 확대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미술 향유와 유통 플랫폼이 다양해짐에 따라 전통적인 유통업이나 감정업, 전시업 이외에 인터넷을 활용한 미술 관련 서비스업 역시 다양해지고 있으며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미술

관련 서비스업이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미술 관련 서비스업은 미술 생태계의 환경 변화를 포괄하는 개념일 필요가 있음. 미술전시업의 경우 미술품 및 미술기록물의 전시를 기획, 조직, 개최, 또는 운영하는 업으로 규정함으로써 미술관, 상업 갤러리 뿐 아니라 비영리적 성격의 대안공간, 예술가 운영공간, 비엔날레, 나아가 ‘화이트 큐브(white cube)’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경우까지 포괄하도록 정의함. 미술품 유통업 및 미술품 감정업의 경우 이 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부담하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분류가 정의가 필요함.

- 정부미술품을 비롯한 공공미술품의 정의는 이 법상 설립되는 한국미술진흥원 내 미술은행의 업무를 확정하는 규정임.

□ 전문가 의견

- 미술을 정의함에 있어서 복수 장르의 융합 등 창작 방식의 변화를 반영해야 하며 기획에 대한 법적 정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일련의 예술활동’이란 막연한 표현을 풀어서 해명해줄 필요가 있음. 구체적인 예술활동에 대한 설명이 없이 ‘시각적 매체’라는 표현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가령, 영화나 만화, 애니메이션과 같은 장르들도 그대로 포함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문화산업 정의와는 구별될 수 있는 개념 정립이 필요함.

* 유사 입법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예술인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화”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스크 등 디지털매체에 담긴 것을 말한다.
7. “만화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만화를 기획·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전시시설”이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시사업자”란 전시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전시시설사업자 : 전시시설을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
 - 나. 전시주최사업자 :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개최 및 운영하는 사업자
 - 다.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
 - 라. 전시서비스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
 -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 나.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취지

- 미술진흥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의무를 부과하

는 것은 통상적인 입법조치임.

* 유사 입법례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자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자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미술과 미술품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취지

- 미술과 관련된 문화예술 분야 제법률들이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해석상의 충돌을 피하고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문화재보호법과의 관계에서 문제될 수 있으나, 본 법안 제2조에서 정부미술품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법 상호간 충돌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함.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 대상인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 이 법상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우선 적용되도

록 할 필요가 있음.

* 유사 입법례

「문화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역문화진흥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미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미술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술진흥 중·장기 기본방향
2. 미술진흥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3. 미술 창작·기획·전시 활동의 지원
4. 미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5.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6. 미술 관련 공정한 거래질서의 구축
7. 미술품의 유통 활성화
8. 공공미술품의 관리
9. 미술 향유 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10.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법인·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확정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제1항에서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취지

- 일반적으로 정책 집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규정은 법률의 구성체계를 이루는 중요 요소이므로, 필요한 입법조치임. 또한 관련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통해 미술진흥정책의 체계적·효과적 집행 도모를 위하여 필요함.
- 유사 입법례, 법제 원칙 및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이 법안 제6조의 미술진흥정책위원회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은 미술진흥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도록 규정함.

* 유사 입법례

「문화기본법」

제8조(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2.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3. 문화진흥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9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문화정책
5.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6. 문화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7. 문화·여가 시설 등의 조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문화정책 관련 조사·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10. 문화 진흥을 위한 자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문화진흥법」

-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서예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예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서예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법령·제도의 개선
 3. 서예의 해외교류 촉진
 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서예 진흥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7. 그 밖에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만화 진흥의 기본방향
2. 만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3. 만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
4. 만화 창작 활성화를 위한 방안
5.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만화산업과 관련된 기반 조성
7. 만화산업 및 디지털만화 관련 기술·표준의 개발과 보급
8.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9.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10. 그 밖의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6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삭제
2.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3. 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
4.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5.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6.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지원·평가
7.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8. 문화예술교육 연구의 지원
9.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
10. 문화예술교육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11.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전시·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운영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
9.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

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의 기본방향
2.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3.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기반조성
4.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기술·표준의 개발
5.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6.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7. 애니메이션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8. 애니메이션 배급 및 이용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9. 애니메이션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방안
10. 그 밖에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미술진흥정책위원회의 설치

제6조(미술진흥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미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미술진흥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미술진흥 정책 방향 설정
 3. 미술진흥 지원사업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위원은 미술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의 이해와 관련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취지

-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위원회 규정은 독임제 행정기관을 보완하여 행정의 전문성, 민주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입법조치임.
- 다만 미술진흥정책위원회와 같은 심의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미술진흥정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 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 이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중요 사항인 구성인원,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방식, 위원 위촉 방식과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가능 횟수를 규정함. 그밖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을 통해 정하도록 규정함.

구분	의결기관인 위원회	심의기관인 위원회	자문·협의기관인 위원회
기능	심의·의결	심의	자문또는 협의·조정
행정기관 구속력	행정기관에 대해 구속력 있음	구속력 없음	구속력 없음
대외 의사표시 권한	×	×	×
법적근거 마련	기능·구성·운영, 의결절차, 의결 구속력, 위원신분보장 등 규정	중요 사항만 법률 근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심의·자문위원회의 기능상 분류¹¹⁶⁾>

□ 전문가 의견

- 미술진흥정책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해 관여 금지를 명확히 하고 미술 분야 전문가뿐 아니라 행정, 법률 등 미술 관련 분야 전문가가 위원회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유사 입법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6조(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①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책에 관한 평가 및 자문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공예 및 공예문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8조(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정책방향 설정
 2.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교육 지원업무의 협력·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에서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⑤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교원 및 관련 학계 전문가,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법률·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창작 환경, 유통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 관련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취지

- 창작, 전시, 유통 환경 등 미술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수립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고 효과적인 미술진흥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함.

-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3¹¹⁷⁾에서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을 두어 문화체육

117)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3(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

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술인 복지정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끔 하면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¹¹⁸⁾에서는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미술 분야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로는 미흡함. 또한 2009년부터 매해 미술시장 주요 유통영역인 화랑, 경매회사, 아트페어를 대상으로 미술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국내에 진출한 해외 갤러리가 조사 대상에서 누락되는 등의 한계가 있음.

- 유사 입법례에 비추어 필요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전문가 의견

- 전체 미술시장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해외 갤러리들을 실태조사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유사 입법례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3(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8)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4(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삭제

②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다. 다만, 법 제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수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성별, 나이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취업상태 등 직업실태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가입 실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예술인 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8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예문화산업진흥법」

- 제7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예문화산업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 제5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예 창작 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서예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창작, 전시 및 유통 및 향유 지원

1) 창작활동 지원

- 제8조(창작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 창작활동의 활성화를 위

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취지

- 이 법의 제정 취지가 미술진흥이며 창작활동이 미술생태계의 근간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창작활동 지원에 대한 시책 강구를 별도로 규정한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임.
- 「예술인 복지법」이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및 복지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이 법은 창작활동 등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함.
-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을 대상으로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예술활동 실적 증빙이 불가능한 예술인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창작활동 등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제정안에 따르는 경우 기제정 법률과 다른 차별화된 지원이 기대됨.
- 이에 따라 창작활동의 지원과 연계하여 창작공간 등의 확충, 연구·조사 지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전문인력 양성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이 법에서 규정함.

□ 전문가 의견

-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세분화하여 복지 차원의 일회성 지원이 아닌 경우에는 신작 제작, 전시회 개최와 같은 결과물에 대한 단순 평가가 아니라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함.
-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 지원사업 종료 이후 홍보, 유통,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로까지 연계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유사 입법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및 만화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창작 활성화와 만화산업에 기여하는 만화가, 만화사업자, 관련 단체 등에게 자금 및 용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8조(창업 및 제작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예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공예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자금의 용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제작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전시 지원

제9조(전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미술문화 향유를 확대하고 미술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술 전시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 전시 활성화를 위하여 작가, 기획자, 미술 전시업자, 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취지

- 이 법의 제정 취지인 미술진흥 가운데 전시 지원 역시 중요하므로 시책 강구를 별도로 규정한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임.

- 작가, 기획자뿐 아니라 평론가, 연구자, 에듀케이터, 아키비스트 등 전시 관련 종사자와 상업적 전시 공간 이외에 비영리 전시공간, 비엔날레, 융복합 콘텐츠에 기반을 둔 상업적 성격의 전시기획업체 등이 이 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됨.

□ 전문가 의견

- 독립기획자의 경우 기관 근무 경력처럼 정량적 경력 기준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력 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기술이나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전시가 증가함에 따라 전시 전문업체에 역시 전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유사 입법례

「문화예술진흥법」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용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 육성시책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에 관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음악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악창작자 및 음반·음악영상물제작자에게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 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을 하는 자로 한다.
1. 작사·작곡·편곡 등 음악의 창작을 위한 창업
2.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의 유통·수출·수입업의 창업
3. 음악공연과 음반등의 기획·제작업의 창업
4. 음악산업 관련 교육기관의 창업
5. 악기·음향기기 등의 제작업의 창업
6. 그 밖에 음악산업과 관련된 창업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것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악상품의 창작자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자로 한다.

1. 국제 규모의 견본시장·시연회·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개발된 음악상품
2. 수출할 목적으로 개발된 음악상품
3. 그 밖의 문화적·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음악상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것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8조(창업 및 제작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예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공예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제작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창업 및 제작 지원)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기술 및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창업
2. 공예품을 개발·제작하기 위한 창업
3. 공예품을 유통·수출하기 위한 창업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창업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된 공예품의 제작
2. 법 제18조에 따른 지역특화 공예품의 제작
3. 국제적 규모의 견본시장·시연회·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개발된 공예품의 제작
4. 그 밖에 문화적 가치가 높은 공예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공예품의 제작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공모 방식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하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1조의2(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우선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기록, 조사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 대학을 비롯한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을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학진흥법」

제9조(학술활동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을 위하여 관계 기관, 학계 및 관련 학회 등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① 국가는 제1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회사·기관·학교 및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육성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공공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로서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 또는 연구소 등이 설치된 학교
 3. 연구기관으로서 공공디자인에 관한 연구 수행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
- ② 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7조(창업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문화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와 제작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① 정부는 독립제작사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을 사용하는 독립제작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방송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제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립제작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제작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독립제작사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독립제작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립제작사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범위) 법 제1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상품
2. 문화상품으로서 국제적 규모의 영화제·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광고제 등에 출품할 작품
3. 수출하기 위한 문화상품의 제작
4. 그 밖에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상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것

「콘텐츠산업진흥법」

제9조(콘텐츠제작의 활성화) ①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창작·유통·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

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콘텐츠제작자가 콘텐츠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련된 분야별·형태별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시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및 만화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창작 활성화와 만화산업에 기여하는 만화가, 만화사업자, 관련 단체 등에게 자금 및 용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기반시설 확충

제10조(창작공간등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 창작, 전시 및 보존·보관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이하 “창작공간등”이라 한다)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작공간등을 직접 제공하거나, 민간이 운영하는 창작공간등에 대해서 유지보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창작공간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창작공간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작공간 등의 제공·유지보수·운영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창작공간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창작공간 등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취지

- 제8조 및 제9조와 더불어 미술 창작, 전시 및 보존·보관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 유지보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통상적으로 ‘시설’은 하드웨어나 관리의 측면이 다소 강조되는 경향이 있으며, ‘공간’은 전문시설보다 넓은 범위의 개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법은 공간 및 시설 확충을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함.
- 공간 및 시설의 확충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원 내용을 보다 다각화하여 공간 및 시설의 제공이나 임대료 지원 이외에 유지보수, 운영 등이 지원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 조각공원 조성 사업은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 해당하므로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함.
- 창작공간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창작공간 등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유사 입법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1조(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시설의 확충, 단지 및 지구의 조성 등 공예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조성 등 공예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연법」

제8조(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9조(유휴 공간 활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유의 유휴 부동산 또는 건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 지역 문화 공간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휴 부동산 또는 건물을 대여(貸與)할 것을 요청하면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유휴 부동산 또는 건물 중 폐교시설에 관하여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8조(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 유관법률상 창작 공간 등과의 관계

-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은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적용되며 문화예술 분야의 모법적인 성격을 가진 「문화예술진흥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을 문화시설로

규정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정의를 준용하는 한편, 이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이외에도 화랑(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조각공원(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으로 상세 분류하고 있음.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정의하지 않은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등이 전시 관련 문화시설 범위에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문화예술진흥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보다 광의의 전시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조(문화시설의 종류)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활동시설
2. 문화 보급·전수시설
3. 삭제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제2조제2항 관련)

1. 공연시설
 - 가.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 1) 종합공연장: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 2) 일반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 3)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 나.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 상영장
- 다. 야외음악당 등: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
2. 전시시설
- 가.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 나.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
- 다. 화랑: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 라. 조각공원: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3. 도서관
- 가.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 나. 작은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
4. 지역문화활동시설
- 가. 문화의 집: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 나. 삭제
- 다. 문화체육센터: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 라.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기본법」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5. 문화 보급·전수시설
- 가.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 나. 국악원: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 다. 전수회관: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6. 종합시설: 제1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의 시설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복합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7. 삭제

- 그러나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는 것이 아닌, 설치의 ‘권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문화시설의 설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시행되어 있음. 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는 상징적인 조항으로만 기능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음. 실제 현재 이법 제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19개에 그치고 있음. 또한 현재 「문화예술진흥법」에는 문화시설의 ‘설치’에 대한 권장만 언급할 뿐, 문화시설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항이 필요하며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 문화시설의 범위에 대해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시설의 정의 규정과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으나,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시설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건립 요건이나 건립을 위한 절차, 운영에 대한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이러한 이유로 현재 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사항은 국토부가 정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건립 계획, 타당성 검사, 건립 추진계획 등을 포괄하는 모든 절차가 문화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음.
- 아울러 현재는 전시의 목적을 위해 활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대안공간이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시설의 영역에 포함되고 있지 못하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언급된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되는 ‘종합시설’을 문화시설로 포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문화시설로 인정하는 ‘종합시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의 제목은 ‘문화예술공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제2조 제3항의 ‘문화시설’과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위 내용은 사실상 ‘문화시설’에 관련한 내용으로 하나의 법률 내에 용어를 통일성 있게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미술 생태계 전체의 활성화와 국민의 문화적 소양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창작 및 전시공간에 필요한 지원과 환경을 조성 위해서는 전시시설에 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전시시설, 대안공간, 기타 이 법이 정한 모든 전시공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문화시설 실태조사는 전문예술시설과 그 외 문화시설에 대한 구분없이 조사되고 있어, 통계상 상당수의 지역에 충분한 문화시설이 갖추어진 것으로 보임. 그러나 미술의 전문적 향유와 별개로 전문화, 고도화를 위해서는 양질의 창작 및 전시공간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다목적 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전문 창작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향후 미술분야의 다양화한 발전을 위해서는 고도의 시설을 갖춘 창작공간 등이 필요하며, 이에 통계나 운영현황 파악도 구분될 필요가 있음.

□ 전문가 의견

- 현재 가용 창작공간은 부족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

템이 구축되는 경우 작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중견작가들의 경우 작업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의 제공이 필요함.

4) 지역미술 활성화

제11조(지역미술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미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역 간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협력과 교류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취지

- 창작, 기획, 전시, 교육 활동 등을 위한 인프라, 전시 관람 및 공급물의 지역 간 편차는 미술향유에 있어 지역 간 격차로 이어지고 있음.
- 미술 생태계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미술의 자생 역량 강화 및 지역문화미술생태계 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 문화기본법상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제4조) 국가는 이러한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제5조 제3항).
- 이처럼 문화향유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문화참여권의 실현을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이 규정되지 못하고 오히려 문화교육권, 환경권 등에서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있으며 환경권의 경우에도 국민들이 명시적으로 문화환경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보다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시책과 관련하여서만 문화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라는 소극적인 관점으로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권리가 되지 못하고 있음.¹¹⁹⁾

-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간 미술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문화권 실현을 촉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입법 조치임.

□ 전문가 의견

- 미술의 지역간 편차로 인해 지역 미술인력의 수도권으로의 이탈이 심화되고 있으며 순회전시의 경우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시의 지역 순회 전시뿐 아니라 지역의 우수 전시 및 프로그램이 수도권에 소개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지역 미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간 전시인력 교류, 합동 연구 등에 대한 지원이 전제되어야 함.

* 유사 입법례

「지역문화진흥법」

제12조(협력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협력에 필요한 각종의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5)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과 관련한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관련 자료의 출판 및 배급
2.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조사·연구
3.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4. 그 밖에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

119) 정광렬 외, 2017, 「문화국가를 위한 헌법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54

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취지

- 문화예술 분야의 모범적 성격을 갖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상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작가나 기획자, 비평가 등 개인이나 민간 단체의 경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해외에서의 전시, 영문 자료 출판 등 일회성 지원이 아닌 국내 작가를 비롯한 미술 인력 및 미술 콘텐츠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필요함.
- 유사 입법례를 감안할 때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 임.

□ 전문가 의견

- 해외 홍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도록 번역, 통역 매칭, 국내외 전시회 개최와 관련한 국내외 비평가 및 기획자 매칭, 해외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한 미술인력에 대한 정보제공 등이 실효성있는 지원 방법임.

* 유사 입법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마케팅 및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3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학진흥법」

제11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 문학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지원
 2.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조사·연구
 3.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4.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정부는 문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 마케팅·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 유치, 국제영상제·견본시장 참여 및 국내 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및 만화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전시회 등의 개최
 2.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3. 외국인의 투자유치
 4. 만화의 해외 현지화 지원
 5. 만화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국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와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 및 음반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해외마케팅·홍보활동 지원,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음반전시회 개최 등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지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6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작가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의 기반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수급의 균형 및 다양성 확보
2. 산·학·관의 협력기능 강화
3. 전문인력의 연수·교류·재교육 기회 확대
4. 연구기반 강화
5. 전문인력의 관련 분야 진출기회 확대
6.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필요성

- 문화예술 영역에서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문화예술 분야의 타 법률의 경우 '전문인력' 관련 조항을 마련되어 있음.
- 미술분야 인력양성 환경은 창작인력배출에 집중되어 있으며 미술 창작, 전시, 유통, 향유 환경에 변화에 따른 기획인력, 경영인력, 매개인력, 기술지원인력, 유통인력 등 비창작인력 등의 공급을 필요로 하는 미술생태계 구조와의 불균형 문제를 야기함.
- 또한 교육제공 형식의 지원의 경우 신진 및 예비인력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현장에서 활동 중인 경력급 인력이 필요로 하는 영역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등은 재구성이 필요하며 미술 인력의 경력별로 다음 단계의 경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는 단계별 지원 방식 개발이 미흡함.
- 이를 감안할 때 창작, 기획, 비평, 예술경영, 예술행정, 홍보마케팅, 국제교류, 기술지원, 유통 등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미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 전문가 의견

- 사업 운영에 있어서 기존 교육 프로그램 및 기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각 대학 및 대학원 포함)과의 연계 방안 및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카이빙을 비롯하여 통합미술정보체계 구축에 있어서 전문인력이 필요함. 현재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자나 학예 인력이 기관에서 아카이빙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따라서 미술관 기록물관리요원 자격증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1.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미술관 관련 전공 학위를 이수한 자나 2. 미술관에서 기록관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증빙이 가능한 현장 학예사(학예사 자격증 소지자)를 자격 요건으로 고려할 수 있음.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운영중인 자격증과 연계하여 교육 과정에 미술관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발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유사 입법례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전문인력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력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⑤ 그 밖에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공예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로서 공예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또는 단체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공예문화산업과 관련된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시설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기관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절할 것
 2. 1명 이상의 전임교수 요원을 확보할 것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시설·장비를 확보할 것
 4. 운영경비 조달 능력이 있을 것
-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산학 협동과 교육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문화진흥 관련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연법」

- 제14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기준을 갖추고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을 발급한다.
- ② 무대예술 전문인은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④ 무대예술 전문인은 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 등의 종류별로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자격의 종류 및 자격검정, 그 밖에 자격증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정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의 지정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등)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 공연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학진흥법」

-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문학 관련 우수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
 2. 전문인력의 연수·해외교류 기회 확대
 3. 학계의 연구기반 및 교육역량 강화

「문화산업 진흥기본법」

-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만화가 및 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5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산업"은 "출판문화산업"으로 본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음악산업 인력수급의 균형 및 우수 전문인력 확보
 2. 산·학·관의 협력기능 강화
 3. 전문인력의 연수·해외교류 기회 확대
 4. 학계의 연구기반 및 교육역량 강화
 5. 전문인력의 관련업계 진출기회 확대
 6. 그 밖에 음악산업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육훈련 지원) ① 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 ⑤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제14조(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진흥이나 미술 관련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취지

- 미술생태계의 개인의 활동 이외에 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미술생태계 구성원들의 권익 증진, 창작이 향유와 소비로 선순환되는 생태계 조성, 건전한 유통질서 조성 등이 수월해짐.
- 「2014년 5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사업비는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교부할 수 있음.¹²⁰⁾ 기획재정부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사업유형별·목별 매뉴얼)」에 따라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연례적 인건비·운영비 등 경상사업비 지원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¹²¹⁾ 미술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항목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상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육성과 관계

- 「문화예술진흥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으며(제7조 제1항).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으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음. 이에 따라 개인 기부자는 「소득세법」 제34조, 제59조의4에 따라서 1천만원 이하, 기부자 소득금액의 30% 한도에서 15%를

120) 제17조 및 제32조의2. 이에 따라 2016년 2월 「문화예술진흥법」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단체·법인 또는 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음.

121)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사업유형별·목별 매뉴얼) 14. 민간보조 사업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 법인 기부자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법인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며 이들에게 기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일정한도 안에서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짐. 이는 국내 상당수의 민간 예술단체가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공공 지원 신청이나 민간 기부금 모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을 가진 단체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하고, 예술단체의 활발한 활동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 것임. 이를 통해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단체에게는 세제 혜택 등 제도적 지원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단체의 상시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하고 체계적인 예술경영 시스템을 적용한 전문예술법인·단체 모델을 다수 개발함으로써 민간 예술분야의 자생력 강화를 촉진하고자 함.¹²²⁾

- 이에 따라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될 수 있음(제7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이외에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제7조 제2항 제5호),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전문예술법인·단체 선정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음.
- 현재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범위를 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미술 관련 단체가 현재 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등의 형태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자격 요건을 비영리로 제한하는 것은 문화예술 분야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비영리법인·단체의 경우도 실제로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격 요건을 ‘비영리’로 제한함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로서 혜택을 누림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¹²³⁾
- 2019년부터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세제적격단체로 인정받기 위해 별도의 지정기부금단체 신청과 심사를 받아야 하게 되므로,

122) 양혜원 외, 앞의 보고서, p.177.

123) 양혜원 외, 앞의 보고서, p.185.

실질적인 혜택이 사라졌으며 특히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예술단체의 상황상 예술법인·단체의 경우 대부분 지정기부금단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별도로 가지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기부금 모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임. 전문예술법인의 경우 기업이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지정기부금단체에의 기부 이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방법이 많기 때문에, 전문예술법인·단체에의 기부가 큰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는 상황임. 기업의 경우 예술단체에 제공하는 협찬을 ‘광고홍보비’ 계정으로 비용 처리를 하는 경우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고 기부금보다 마케팅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많음.¹²⁴⁾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에의 법정기부금도 가능해지면서 개인은 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정기부가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기부보다 선호되는 상황임.¹²⁵⁾

- 「문화예술진흥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단체·법인 또는 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음(제39조). 따라서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인정받은 단체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국고 지원의 자격이 주어지지만, 이는 사실상 대부분의 민간 예술단체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음.
- 전문예술법인·단체만을 위한 별도의 지원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며 대부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정책에 맡기고 있으나 지자체에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부재함.
- 따라서 이 법에 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항임.

□ 전문가 의견

- 미술 전시, 유통 등 미술생태계 변화에 따라 비영리 단체 중심의 지원 방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여 새로운 유형의 전시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124) 허은영 외.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 실효성 분석 및 내실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125) 허은영(2004).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 실효성 분석 및 내실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유사 입법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8조(창업 및 제작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예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공예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제작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창업 및 제작 지원)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기술 및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창업
2. 공예품을 개발·제작하기 위한 창업
3. 공예품을 유통·수출하기 위한 창업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창업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된 공예품의 제작
2. 법 제18조에 따른 지역특화 공예품의 제작
3. 국제적 규모의 견본시장·시연회·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개발된 공예품의 제작
4. 그 밖에 문화적 가치가 높은 공예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공예품의 제작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공모 방식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하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24조(경비 보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영 수송 기관에 의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이나

- 그 밖의 요금을 할인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학진흥법」

제8조(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이나 문학 관련 학술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문학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문학교육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 및 국민의 문학 향유를 위하여 문학 관련 교육이나 그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및 만화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창작 활성화와 만화산업에 기여하는 만화가, 만화사업자, 관련 단체 등에게 자금 및 용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8) 유통활성화 등

제15조(미술 관련 서비스업 활성화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관련 서비스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미술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미술 관련 서비스업의 활성화 및 정보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 관련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 관련 서비스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취지

- 미술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술생태계의 기본 축인 유통 분야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미술품 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이 도모되어야 함.

□ 전문가 의견

-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납제 도입을 비롯한 세제 개선이 전제되어야 하며 해외아트페어 참가 시 현장에서의 통역 서비스와 같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

* 유사 입법례

「전시산업발전법」

제21조(전시산업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전시산업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2.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전시산업 기반조성 사업
 3. 국내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 개최
 4. 해외 전시회 참가 사업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사업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지원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전시회 중 유사한 전시회에 대하여 이를 통합 또는 조정할 수 있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마케팅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해외마케팅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제1항제4호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유형 및 기준 등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의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라 해외마케팅 성과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통구조를 현대화하는 등 공예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예와 관련된 협동조합의 공동구매·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유통활성화) ① 정부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상품에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다.

제14조(유통전문회사의 설립·지원) ① 문화상품의 유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동구매와 공동판매시설의 운영
2. 공동전산망의 운영(전자주문·재고 및 반품 처리를 포함한다)

3. 공동물류창고의 설치·운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④ 유통전문회사 설립·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유통전문회사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상품의 유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유통전문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유통단계의 축소와 유통구조의 광역화사업
- 2. 문화상품 배급업 및 도매·소매상의 협업화사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유통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유통을 건전화하기 위하여 음반등에 식별표시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7조(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간행물을 출판하는 자는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출판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건전한 거래질서 조성

제16조(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 ① 국가는 미술진흥을 위하여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미술시장 현황 분석 및 평가
- 2. 그 밖에 공정한 거래 및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미술의 창작, 기획, 전시, 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불공정한 계약을 계약상대자에게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 ④ 누구든지 미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미술 관련 용역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하여 적절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취지

- 건강한 미술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미술시장의 유통거래의 안전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의 조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확립함. 아울러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미술시장 현황 분석 및 평가 등을 통해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저작권을 과도하게 양도하고 저작물 이용 수익 분배에서 소외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
-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3호는 ‘문화예술용역’을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4조의4에서는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요건과 표준계약서, 위반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 조치 권한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비롯한 문화예술기획업자(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예술인복지법상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 준용하는 개념으로 미술진흥법상 “미술”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이 법에서 불공정계약 체결 금지, 미술 용역 관련 계약 체결과 관련한 적절한 용역 대가 지급을 보장함.

□ 전문가 의견

- 작가뿐 아니라 기획자, 디자이너 등에 대한 사례비(아티스트피) 지급을 위한

제도적 보장이 필요함.

*유사 입법례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③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0조의4(독립제작사의 준수사항) ① 독립제작사는 방송영상물 제작에 참여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같은 조 제9호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해서는 아니 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제작사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독립제작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독립제작사의 임금체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독립제작사의 임금체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임금체불 사업장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2. 대표자 성명(「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3. 체불인원, 체불임금액 및 청산금액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투자회사 및 투자조합의 투자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작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배제하도록 하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작 지원을 중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의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① 문화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산업 경쟁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2.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3. 그 밖에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4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 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정보통신망사업자”라 한다)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콘텐츠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 등 중개시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정보통신망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그 밖에 콘텐츠 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 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콘텐츠산업 유통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2. 콘텐츠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3. 제2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6조(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① 국가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의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계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계약 당사자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3.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및 매체에 관한 사항
 4. 대중문화예술인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
 5. 상표권, 초상권, 콘텐츠 귀속에 관한 사항
 6. 수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7.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8.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에 관한 사항
 9. 부속 합의에 관한 사항

③ 제8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한 것으로 본다.

* 유사 입법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공공디자인 용역)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다.

②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공공디자인 용역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1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의 겸업 특례) ①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을 겸업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 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가 음반 또는 음원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중문화예술인이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조건을 일방적 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소속 대중문화예술인과 차별대우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알선료에 따른 비용 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그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여야 할 보수를 부당하게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소비자 보호

제17조(소비자 보호) ① 정부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미 술품 유통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작가 또는 미술품 유통업자로부터 미술품을 구매한 자는 해당 미술품 의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진품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발행하여 줄 것을 해당 작가 또는 미술품 유통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취지

- 미술품 유통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범위 확대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수립이 필요함.

- 진품증명서 발급 요청은 미술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로 볼 수 있음. 진품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은 미술품의 매체 및 유형의 특성이나 유통 방식을 감안하여 정해질 수 있음. 에디션 작품의 경우 작가 성명, 작가의 서명, 매체 또는 처리방식, 창작 시기, 제작 시기, 전체 에디션 규모와 해당 작품의 번호, 작가 사후 복본인지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함.

11) 표준계약서

- 제18조(표준계약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미술 창작, 기획, 전시, 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누구라도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서에 ‘표준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술인 복지법」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 취지

-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결은 경험률은 42.1%(서면계약: 37.3%, 구두계약: 4.8%)이며 분야별로 살펴보면 연극(71.5%), 만화(71.5%), 영화(69.1%) 분야에서 계약 체결 경험률이 높았고, 계약 체결 경험자 중 ‘서면계약 없이 구두계약’ 경험률이 높은 분야는 방송연예(10.1%), 연극(7.7%), 음악(6.5%) 순이었음. 미술 분야 계약 체결 경험은 31.7%(서면계약: 27.9%, 구두계약: 3.8%)로 계약서 작성 및 계약절차를

밝는 경우는 미미한 수준이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 창작의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및 미술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작가와 화랑·미술관 간 공정한 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보험과의 연계 강화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 계획의 추진 결과로 2019년 3월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이 도입되었음.

유형	주요내용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	▲ 전시 ▲ 수익 정산, ▲ 저작권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 (매니지먼트계약서)	▲ 기간 ▲ 전속적 권한 부여 대가 ▲ 전시 ▲ 수익 정산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 기간 ▲ 수익 정산 ▲ 작품목록의 작성 및 제공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 기간 ▲ 수익 정산 ▲ 작품목록의 작성 및 제공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 확인 및 보증 ▲ 저작권
매수인과 작가 간의 매매계약서	▲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 확인 및 보증 ▲ 저작권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 전시개요 ▲ 저작권 ▲ 미술창작 대가 지급 ▲ 제작비
독립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 전시기획 및 진행 ▲ 미술창작 대가 지급 ▲ 저작권
대관계약서	▲ 기간 ▲ 전시개요 ▲ 대가 ▲ 전시공간의 상태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 작업의 내용 및 범위 ▲ 모델료 ▲ 초상권 ▲ 저작권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 작품개요 ▲ 대가 ▲ 소유권 ▲ 저작권

-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표준계약서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표준계약서 사용시 재정 지원에 있어서 우대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함.
- 미술 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의 주기적인 개정 작업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

□ 전문가 의견

- 미술 분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를 통해 배포한 표준계약서와 민간 협회가 배포한 표준계약서가 모두 “표준계약서”로 지칭됨에 따라 사용에 있어서 혼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유사 입법례

「예술인복지법」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국가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문화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또는 서로 다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표준계약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및 제20조에 따른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표준약관) 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련 상황을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3. 법률의 제정·개정·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3항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거래 당사자 및 소비자단체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심사하거나 제정·개정된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공시(公示)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標識)를 정할 수 있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 ⑧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미술품 유통업 또는 미술품 감정업의 신고

제19조(미술품 유통업 또는 미술품 감정업의 신고) ① 미술품 유통업 또는 미술품 감정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에 관여하는 미술품 유통업 또는 미술품 감정업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미술품 유통업 또는 미술품 감정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20조 제1항에 따라 영업폐쇄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게

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⑤ 제1항에 따라 미술품 유통업 신고를 한 자(이하 “미술품 유통업자”라 한다) 또는 미술품 감정업 신고를 한 자(이하 “미술품 감정업자”라 한다)가 폐업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으면 신고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20조(영업정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술품 유통업 또는 미술품 감정업을 하거나, 미술품 유통업자 또는 미술품 감정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때

2.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4. 제19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에 같은 조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업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영업의 승계) ① 미술품 유통업자 또는 미술품 감정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미술품 유통업자 또는 미술품 감정업자(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가 종전의 미술품 유통업자 또는 미술품 감정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등은 그 양수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미술품 유통업자 또는 미술품 감정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④ 제19조제5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여 신고사항이 말소된 미술품 유통업자 또는 미술품 감정업자가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그 미술품 유통업자 또는 미술품 감정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미술품 유통업자 또는 미술품 감정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취지

- 새로운 유형의 미술품의 판매, 소비, 향유 방식이 등장함에 따라 미술품 유통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미술품의 유통 구조의 현대화를 비롯한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아울러 온라인 공유 플랫폼의 등장을 비롯하여 미술품 유통 구조가 다변화되고, 미술품이 감상이나 공간 장식 목적을 넘어 투자의 대상이라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커짐. 따라서 미술시장의 유통 거래의 안전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술 관련 서비스업 중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의 영위를

위한 일정한 절차적 요건이 필요함. 다만, 지나친 규제 입법 때문에 미술품 유통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므로 최소한의 요건으로 신고 의무를 부과함.

- 유사 입법례를 감안하여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 소정의 경우 신고 결격 사유를 규정함. 미술품 유통업 및 감정업의 신고제의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특히 「형법」을 위반하여 사기(제347조), 컴퓨터등 사용사기(제347조의), 횡령·배임(제355조) 또는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제356조)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 역시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 보호라는 미술품 유통업 및 미술품 감정업 신고 제도의 도입 취지 및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 미준수에 대한 조치, 영업 양도나 합병 등을 사유로 한 영업승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 전문가 의견

- 미술품 유통업의 경우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고 최근에는 개인이 미술품 판매를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며 단일 미술품에 재위탁되는 경우가 많아 미술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소정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13)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활용

제22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의 창작, 기획, 전시, 유통 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함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품등의 불법복제·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 정보의 부착

2.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취지

- 미술 창작, 기획, 전시, 유통 방식이 다양해지고 미술품을 이용한 상품 제작 및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미술품이나 미술기록물, 전시나 프로그램의 권리화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아울러 NFT 아트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술 관련 플랫폼이 발전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미술 창작, 기획, 전시, 유통 활동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있음. 특히 영상 매체를 활용한 미술의 경우 창작이 유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불법 복제 방지 조치가 필요한데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 정보의 부착이 대안으로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

□ 전문가 의견

- 현행 저작권법상 기획은 저작권 부여에 있어서 제한이 있어 기획자의 권리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기획자에 대한 크레딧 표기 준수가 여전히 미흡함.
- 미술 분야의 경우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을 통한 해결이 쉽지 않음. 따라서 미술계 내의 조정을 통한 해결을 가능하도록 관련 기구나 제도 마련이 필요함.

* 유사 입법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콘텐츠 이용

방법의 다양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콘텐츠제작자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보호조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콘텐츠사업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함에 있어서 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불법복제·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음반등의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 정보의 부착
 - 2. 음반등의 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및 홍보
 - 3. 그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4) 연구·조사 및 기술개발의 지원

제23조(연구·조사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술 창작, 기획, 전시, 유통, 미술품등의 관리·보존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력·시설·기자재·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 연구·조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취지

- 사회문화환경 변화에 따라 미술 창작, 기획, 전시, 유통, 향유 방식, 미술 관련 아카이빙, 연구·조사 및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협동 연구·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지역 간 인력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지원사업의 중복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미술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사례연구, 조사연구, 실행연구 등 다양한 연구·조사를 통해 미술생태계 저변이 확대될 수 있음.

□ 전문가 의견

- 기술인력의 공동활용, 전시 관련 협동 연구 등은 미술 창작, 기획, 전시의 다양화, 기존의 연구 결과의 사장 방지, 지역 간 미술 격차 해소 등의 순기능이 예상됨.

<p>* 유사 입법례</p> <p>「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0조(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품의 품질향상과 공예소재·재료 및 처리기법 등 공예품의 제작·창작에 필요한 공예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품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의 원활한 공급 및 대체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과 관련된 기관·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제1항에 따른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위탁의 범위 및 지정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지역문화진흥법」 제11조의2(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우선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기록, 조사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만화 및 만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p> <p>제7조(협동 개발 및 연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또는 만화상품의 개발·연구를 위하여 인력·시설·기자재·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 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동 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협동 개발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8조(협동개발 및 연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개발·연구를 위하여 인력·시설·기자재·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동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8조(협동 개발 및 연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 또는 애니메이션상품의 개발·연구를 위하여 인력·시설·기자재·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 개발과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동 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협동 개발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1조(기술개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1인 창조기업의 단독 또는 공동 기술개발
 2.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공동 기술개발
 3.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통합미술정보체계 구축 및 운용

제24조(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미술 관련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술진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 개인에게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 취지

- 미술 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작가, 기획자를 비롯한 국내 미술인력의 해외 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사업 등 이 법에 따른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이 가능한 기반환경 조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 의견

- 개별적으로 구축되어 운영 중인 기존의 시스템들과 연동이 필요하며 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동시대 미술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비용이 확보되어야 함.

*유사 입법례

「공연법」

제4조(공연예술통합전산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연의 관람자 수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하여 공연 명칭·시간 및 기간, 공연 예매 및 결제금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연 관련 정보(이하 “공연정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장권 판매의 전부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에 한정한다.

1. 공연장운영자
2. 공연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
3. 공연을 기획 또는 제작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공연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자(입장권 판매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를 말한다)는 공연정보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예매시스템에 의하여 발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자”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연장 등의 전산예매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정보의 제공·전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연법 시행령」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운영) ① 법 제4조제4항에서 “전담인력·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연예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연예술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라 한다)의 운영을 전담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가목의 업무책임자는 1명 이상이어야 한다.

가. 업무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공연예술 또는 전산 분야(이하 “해당분야”라 한다)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해당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업무책임자 외의 직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해당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3.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을 것

4. 정보의 수집·관리 및 통계분석·연구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하는 전담기관(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③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관한 운영 계획의 수립·시행

2.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3.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분석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의2(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 정보의 제공·전송 등) ①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연 관련 정보(이하 “공연정보”라 한다)를 제공·전송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공연정보제공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1. 공연정보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주요 서버 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도록 제공·전송할 것

2. 공연정보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1일 단위로 집계되도록 제공·전송할 것

②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연정보가 1일 단위로 집계될 수 있도록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해야 한다.

③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해 집계된 공연정보를 인터넷

등에 1일 단위로 게시하되, 공연정보제공자의 기업비밀이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게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영화상영관의 관객 수 그 밖의 영화상영관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는 해당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등)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이하 “입장권통합전산망”이라 한다)을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통합전산망자료”라 한다)가 실시간으로 집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해당 영화상영관의 통합전산망자료가 메인 서버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도록 할 것
 - 2. 통합전산망자료가 전용회선을 통하여 입장권통합전산망에 실시간으로 집계되도록 할 것
- ③ 영화진흥위원회는 입장권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집계된 통합전산망자료의 세부내역을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고시하되, 영화상영관의 기업비밀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간 문화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에 관한 정보시스템과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1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① 정부는 독립제작사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독립제작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방송사업자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제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립제작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제작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독립제작사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독립제작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립제작사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을 지망하는 사람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 내용 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관한 일반적 정보

-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관련된 각종 통계 자료
- 나. 법 제18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2.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개별 종사자에 관한 정보

-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의 종사이력
- 나. 법 제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이력
- 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 이수 이력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정보에 대해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정보가 사실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1인 창조기업 간의 협력기반 구축 및 1인 창조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6조(통합인력전산망의 설치)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를 연결하는 통합인력전산망을 구축하여 인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

1) 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보상금

제25조(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① 작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미술품의 소유권이 작가로부터 최초로 이전된 이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 관련 서비스업자가 매도인, 매수인 또는 중개인으로 개입하여 해당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도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권리(이하 “재판매보상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매가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
2.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른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
3. 매도인이 원작자로부터 작품을 직접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재판매하는 경우로서 재판매가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양도될 수 없으며, 작가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30년 간 존속한다. 다만, 재판매 당시 작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작가의 법정상속인이 재판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취지

- ‘추급권(追及權)’으로도 불리는 재판매보상청구권은 미술품의 최초 판매시 작가가 대가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보상적 성격의 청구권으로 형평성에 근거하여 법률상 인정됨.

□ 적용 대상

- 경매회사를 통해 판매된 판매 미술품 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1,000만원 미만 가격대의 미술품이 전체 미술품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저가격 기준을 1,000만원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재판매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할 가능성이 큼. EU와의 재협상 가능성을 감안할 때 EU의 최저가격 기준인 3,000유로와 비슷한 500만원이 무난함.

미술품가격대 구간 (%)						
500만원미만	500만 ~ 1,000만원 미만	1,000만 ~ 3,000만원 미만	3,000만 ~ 6,000만원 미만	6,000만 ~ 1억 원미만	1억 ~ 5억 원미만	5억 원이상
68	11.7	10.9	5.1	2	2	0.3

<경매회사 미술품가격대별 판매 미술품 수 현황(2014~2016년, 서울옥션 및 K옥션 기준)>

-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 저작물¹²⁶⁾의 저작자 규정이 적용되어 실제 미술품을 창작한 작가가 아닌 미술품의 창작을 기획한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자로 의제되는 미술품의 경우 미술품 일본 시장과 미술저작물 시장에서의 권리관계의 충돌로 인한 미술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재판매보상청구권을 보호할 이익과 미술품 소유권자를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일정한 경우 재판매의 범위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음.

□ 산정기준

- 재판매가를 기준으로 재판매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 이전 매매 기록을 보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고 실용적인 산정 방식임.¹²⁷⁾
- 따라서 가액 상승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아닌 재판매가를 기준으로 재판매보상금이 산정되는 방식이 바람직함. 추가 과세의 성격을 갖는 재판매보상금이 시장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되지 않도록 재판매가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다만 복원비, 액자비, 경매수수료 등 필요경비는 제외함.

□ 청구권자 및 지급의무자

- 작가가 생존하는 경우에는 작가에게, 작가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126)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의미함.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참고.

127) Liliane de Pierredon-Fawcett, 앞의 책, p.5

귀속함.

- 미술품 재판매를 통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매도인이 재판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보호기간

- 해외 입법례와 유사하게 작가 사망 후 일정 기간 동안 재판매보상청구권이 존속하도록 하되 미술품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 국내 현실과 도입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여 저작권재산권 보호기간 보다 단축된 기간 동안 보호하고 운영 현황을 검토한 후 추후 저작권재산권 보호기간인 7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함.

□ 경과 규정

- 재판매보상청구권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국내 미술시장의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고 기타 세부적인 제도 마련을 통한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이 필요함.

□ 전문가 의견

- 개인간, 또는 화랑을 통해 이루어지는 미술품 거래 이력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재판매보상청구권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재판매보상청구권이 도입되더라도 바로 시행되는 경우 시장의 혼란이 예상되므로 시행시기의 조정이 필요함.

2) 재판매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제26조(재판매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①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미술진흥원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다만 그 단체로 지정받으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규정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판대보상청구권을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재판대보상청구권자로부터 그 권리행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기관 또는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 또는 그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을 때 제출한 업무규정의 중대한 부분을 위배한 때

3. 기관 또는 단체가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재판대보상청구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재판대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업무에 관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재판대보상금을 분배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분배하지 못한 보상금(이하 “미분배 보상금”이라 한다)이 발생하면 그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미술 진흥을 위

한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및 취소, 재판매보상금 징수·분배 절차 등과 관련한 업무규정, 수수료 징수, 재판매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취지

- 작가나 그의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재판매보상청구권을 관리하고 후속판매를 모니터링하는 어려움을 감안하면 직접 재판매보상청구권을 집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집중관리단체를 통한 재판매보상청구권의 관리가 효율적임.
- 재판매보상청구권을 위한 집중관리단체를 신설하는 방안보다는 기존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이 초기 관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법안 제28조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미술진흥원을 재판매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음.¹²⁸⁾

*유사 입법례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수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

128)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신탁관리는 한국문화정보원이 하고 있음.

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 ⑤ 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 ⑧ 제7항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제7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 ⑩ 제7항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 1. 저작권 교육·홍보 및 연구
 - 2.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 3.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 4. 저작권 보호 사업
 -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 6. 보상권리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 활성화 사업
 - 7.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 ⑪ 제7항·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⑫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 학교·교육기관 및 수업지원기관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⑧ 제1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재판매보상청구권이 저작권법상 보상청구권과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강제적 집중관리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집중관리단체가 해당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작가를 위해서도 재판매보상금을 징수·분배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 효과적인 재판매보상청구권 관리를 위해서는 집중관리단체의 수수료 징수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여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집중관리단체와 마찬가지로 과도한 수수료 책정 및 임의적인 요율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요율에 대해서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미분배된 재판매보상금의 경우 지급한 자에게 환불하기보다는 저작권법상 미분배보상금과 마찬가지로 공익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다만 재판매보상청구권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미분배보상금은 작가의 복지를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집중관리단체에 의한 임의적인 보상금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유사 입법례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 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수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 ⑤ 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 ⑧ 제7항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 ⑩ 제7항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1. 저작권 교육·홍보 및 연구
 2.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4. 저작권 보호 사업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6. 보상권리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 활성화 사업

7.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 ⑪ 제7항·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⑫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 학교·교육기관 및 수업지원기관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6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 ⑧ 제1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⑨ 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제16조의2(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과 문화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에 대하여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가치평가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에 대하여 가치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평가기관은 경영·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연도의 가치평가 정보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1. 평가 대상
 - 2. 평가 범위
 - 3. 평가 수수료
 - ⑥ 평가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가치평가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의3(평가기관 및 평가 수수료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기관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가치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2. 가치평가 기법의 연구
 3. 가치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그 밖에 가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가치평가를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3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1. 문화상품·문화기술의 우수성, 기술성 또는 사업성 평가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2. 평가모델 및 구체적인 평가 기법을 보유할 것
 3.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시설을 갖출 것
 4. 삭제
 5. 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갖출 것
 6. 법 제16조의4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났을 것
- ②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5호의 요건에 관한 증명서류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평가모델의 체계와 그 체계에 대한 설명서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평가기관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2. 전문 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
 3. 지정 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

④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2(가치평가의 신청)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가치평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문화상품·문화기술의 내용을 기술한 서류
2. 저작권·특허권 등의 등록증(등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문화상품·문화기술과의 차이점을 기술한 서류
4. 문화상품·문화기술의 응용 분야 또는 응용 사례를 기술한 서류
5. 문화상품·문화기술의 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6. 그 밖에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3) 정보제공청구권

제27조(정보제공청구권)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재판대보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품 유통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정보를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정보의 범위, 청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취지

- 재판매보상청구권의 실효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매도인, 작가, 집중관리단체 등 다양한 매매 당사자들이 일정한 매매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미술시장에서 이러한 정보는 이용에 많은 제한이 있음.
- 재판매보상청구권의 효율적 행사를 위한 매매 정보 수집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시 정보제공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재판매보상청구권을 인정하면서 매도인이 이러한 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매도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이론적으로 재판매보상청구권의 집행이 보다 용이해지므로 정보제공청구권은 재판매보상청구권과 관련된 정보 부재의 문제에 대하여 부분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
- 강제적 집중관리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정보제공요청권 역시 집중관리단체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제도의 도입 초기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아울러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신원과 같은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정보를 수령한 작가나 집중관리단체에 부과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 의견

- 거래 사실의 노출을 꺼리는 미술품 거래의 특성상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함.

*유사 입법례

「저작권법」

제55조의5(비밀유지의무)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직에 재직하는 사람과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국립미술진흥원

1) 국립미술진흥원의 설립 및 사업

제28조(국립미술진흥원의 설립 등) ① 미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미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이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진흥원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분원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⑥ 진흥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2. 미술 분야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3. 미술진흥을 위한 창작, 기획, 전시 지원
4. 미술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 지원
5. 미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
6. 미술품 및 작가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관련 사업
7. 미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8. 미술진흥을 위한 유통활성화 지원
9. 미술진흥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10.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11. 공공미술품의 관리 및 처분

12. 소비자의 권익 보호

13. 이 법에서 정한 업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업무

14. 미술 관련 기관이 진흥원에 위탁하는 업무

15.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진흥원은 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진흥원의 지원을 받으려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그 업무의 위탁 또는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진흥원이 아닌 자는 국립미술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경비의 지원 등) ①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진흥원이 기부받은 물품 중 미술품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제31조(감사) ① 진흥원의 직무 및 회계, 공정한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감사는 상임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 ① 진흥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이사회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취지

- 이 법상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국립미술진흥원을 설립하여 미술 창작, 기획, 전시 등에 대한 지원, 유통활성화 촉진, 통합미술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미술은행 관리, 그 밖에 위탁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진흥원의 조직 구성과 관련하여 감사, 이사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전문가 의견

- 현재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설립된 기관들과의 중복성 문제를 해결해야 함.
- 미술은행의 경우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의 기능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유사 입법례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①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진흥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운영
 - 2.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 3.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평가
 - 4. 교원의 연수지원
 - 5.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 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 7.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 8.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
 - 9.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⑦ 지역센터는 진흥원의 업무에 준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한다.
- ⑧ 진흥원 및 지역센터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⑨ 지역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① 정부는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⑤ 진흥원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사무소·지사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 ⑥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 2. 문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 3.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
 - 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성과 확산 등
 - 5.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제작·유통활성화
 - 6. 문화산업의 창업, 경영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 7. 문화원형, 학술자료, 역사자료 등과 같은 콘텐츠 개발 지원
 - 8.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
 - 9. 공공문화콘텐츠의 보존·유통·이용촉진
 - 10.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수집·보존·활용
 - 11. 방송영상물의 방송매체별 다단계 유통·활용·수출 지원
 - 12. 방송영상 국제공동제작 및 현지어 재제작 지원
 - 13. 게임 역기능 해소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 14. 이스포츠의 활성화 및 국제교류 증진
 - 15.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보호

16.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⑧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⑨ 진흥원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⑩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⑪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등) ①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振興院”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진흥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원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④ 진흥원은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개발지원사업
 2. 전시사업
 3. 출판 및 홍보사업
 4. 정보화사업
 5. 교육·연수사업
 6. 지방의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
 7. 국제교류·협력사업
 8. 정부의 위촉사업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⑤ 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2. 제21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 관련 사업
 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
 4. 공공디자인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5. 공공디자인의 가치 확산을 위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교육, 홍보
- ③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2.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통·전시·홍보 및 그 지원
 3.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지원
 4. 우수공예품의 지정
 5. 공예품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표준화
 6.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③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2.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생활문화 활성화의 지원
 2. 제8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지원
 3. 제10조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실태조사 지원
 5. 제11조의2에 따른 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6. 제12조에 따른 협력활동 지원
 7.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8. 제17조에 따른 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9.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10.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어기본법」

제24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된 국어문화원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여 국어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국어문화원의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감정센터

제33조(감정센터) ① 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미술품의 평가 등 감정업무를 전담하는 감정센터를 둘 수 있다.

- 1.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미술품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 2. 세무 당국으로부터 과세를 위하여 미술품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 3. 정부미술품의 구입 및 대여, 재평가, 매각 및 처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제30조 제2항에 따라 기증 또는 기부받은 미술품에 대한 심사 및 평가에 필요한 경우
 -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감정센터는 제1항에 따른 감정을 실시한 때에는 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진흥원이 정한다.
- 4. 제26조 제3항에 따라 기증 또는 기부받은 미술품에 대한 심사 및 평가에 필요한 경우
 - 5.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행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감정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을 실시한 때에는 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진흥원이 정한다.

□ 취지

- 미술시장의 투명한 운영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고, 이러한 정책

은 그 의도와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규제에 받아들여지거나 거래 실정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기도 함. 그렇지만 현재 미술시장에 관한 폐쇄성과 불투명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아직 미비한 미술품의 평가 내지 감정 시스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동안 사인 간 또는 옥션 등 시장거래에서의 효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온 것과 비교하여, 미술은행의 감정센터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미술품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세무 당국으로부터 과세를 위하여 미술품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정부미술품의 구입 및 대여, 재평가, 매각 및 처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행정적 또는 사법적으로 필요한 평가와 판단자료로 작동하는 미술품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분쟁이 있는 사안에서 판단자로 또는 사법적 판단의 기초자료 제공자로 역할하자는 것과는 다른 것임.

- 미술품감정연구센터의 업무는 대부분 공적인 업무이고, 미술품 감정결과가 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과세의 근거로도 활용됨을 감안할 때 민간단체를 지정하면 미술품 감정의 신뢰성·공정성 시비가 계속 상존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는 기관 중에서 지정·운영되도록 할 필요성이 큼.¹²⁹⁾
- 진흥원 내 감정센터의 설립은 현재 논의 중인 물납제 도입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큼.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에 대하여 미술품 물납이 시행되지 않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등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그러나 상속세금에 대한 미술품 납부는 세금 납부를 얼마로 할 것인가를 확정하는 미술품 평가체제가 제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탓에 상속세 물납¹³⁰⁾ 도입 여부에 대한 실현 가능성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미술은행에서 상속세 물납에 관한 미술품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미술품에 의한 물납의

129)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검토보고서(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3)

130) 프랑스에서는 일반세법(2019년 2월 1일 개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고, 제2권 세금징수, 제1장 세금 납부 중 1716조 제1항에 따르면, I. - 상속세 납부에 대하여, 서적, 수집품, 문서, 예술적 또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작품 또는 예술 작품의 납부에 의해 세금이 지불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지급 과정은 의회법에 따라 정해진 승인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프랑스 이외에도 상속세의 미술품 물납은 영국의 Acceptance in Lieu 제도에 따라 상속세에 한하여 재무장관이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경우에 한해 물납을 허용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미술품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으며(IHTA 230(1), (4)), 독일의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재산세를 납부할 때 미술품으로 물납할 수 있으나, 물납이 가능한 자산은 예술적, 역사적, 학문적으로 중요하며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함(조세기본법 224a(2)). 일본의 경우,「美術品の美術館における公開の促進に関する法律」제2조 제3호 소정의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등록된) 등록미술품의 경우 상속세 물납 허용 제도 등으로 시행되고 있음.

세액을 평가하여 세무당국에 통보하도록 한 뒤, 그에 근거하여 세무당국에서 물납을 최종 결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적 개선을 이루고, 나아가서 해당 물납된 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는 미술은행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상속 세 물납의 절차와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임. 또한 정부미술품의 구입 및 대여에 대하여는 현재에도 미술은행 및 정부미술은행 시스템에서 미술품의 평가가 행해지고 있음. 다만, 재평가는 일부 작품에 한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하고 처분은 최소한으로만 행해지고 있으며 매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소장 미술품을 재조사하면서 재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미술품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그 자산으로서 미술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구축하게 됨.

□ 전문가 의견

- 미술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민간 감정 기구와의 협력과 정보 공유가 전제되어야 함.

* 유사 입법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3(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위임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라 대기오염도를 과학적으로 예측·발표하고 대기질 통합관리 및 대기환경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이하 이 조에서 "통합관리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국공립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합관리센터로 지정·위임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4(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대상기관) 법 제7조의3제1항에서 "국공립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대기환경 분야에 전문성 있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미술은행의 설치

제34조(미술은행)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미술진흥원

내에 미술은행을 설치한다.

1. 공공미술품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지원
 2. 제5조제2항제8호에 따른 공공미술품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원
 3. 정부미술품의 구매, 자체제작, 선정, 기증 또는 기부 등 취득에 관한 업무 지원
 4. 국가기관이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선정 업무
 5. 정부미술품 및 국가기관이 설치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정부미술품등”)의 유지 및 보존, 대여, 활용 등에 관한 업무 지원
 6. 정부미술품등의 처분에 관한 업무 지원
 7. 제2조제10호나목 및 다목에서 정한 위탁 미술품의 관리
 8. 법령에 따라 미술은행의 업무로 정해지거나 위탁받은 업무
 9.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 ② 미술은행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취지

- 정부미술품을 비롯한 공공미술품의 체계적인 관리, 이용 확산을 위하여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담당하는 미술은행 관련 업무를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정부미술품 전체에 대하여 전반적인 취득과 관리에 대하여 총괄적이고, 전문적인 체계 수립 미비로 정부미술품의 취득에 관한 전체적인 큐레이팅 설계가 부족한 채 구입이 이루어지고, 미술품의 효용 및 전시, 대여, 종합적 이용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로 관리와 대부가 이루어지고 있어 미술에 대한 국가적 문화가치를 반영하기 어려움. 상당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미술품 구입에 이르고 있으나, 정부미술품에 대한 국민의 미술 전시체험이나 문화적 관람기회 등 국민의 문화향유권 입장을 고려한 구입과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임. 또한 현재 정부미술품은 그 구입 및 관리의 주체가 다양하고 각 기관으로 산재되어 있어, 그 수복의 필요성 판단과 적절한 수복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 미술품의 보존 및 사후 관리에 문제점으로 지적됨. 각 부처와 기관의 담당자가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부수적으로 물품으로 관리하는 체제에서 전반적인 정부미술품에 대한 전문가 체제로 변환이 있어야 모든 정부미술품을 염두에 두고 보다 총체적이고 전문적인 전시기획 또는 순회전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한 건축물 미술작품은 그 소유가 대체로 일반인이나 사기업체 법인인 경우가 많지만, 국가가 소유한 건축물인 경우 미술작품을 설치하고 국가가 그 소유자로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미술은행이 국가기관이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선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미술품의 보관이나 전시에 있어서 그 범위가 지방자치단체 영역 범위 내로 한정되거나, 그 지역 주민들만 향유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적인 보관과 전시, 수복 등에 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미술은행에 미술품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주는 업무를 수행토록 함. 전시 장소의 광범위한 선정, 훼손된 미술품의 전문적인 수복, 많은 관람자가 다양한 미술품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위탁의 장점이 있고, 일정한 약정 기간 도과 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미술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도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미술품(지역미술은행이 설치된 경우도 포함)의 관리를 위하여 미술은행에 관리를 위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전문가 의견

- 현재 미술은행의 업무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성격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기구로의 독립이 필요함.

* 유사 입법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전승공예품은행) ① 문화재청장은 전통기술의 전승활성화 및 전통공예의 우수성 홍보 등을 위하여 전승공예품의 구입·대여 및 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이하 “전승공예품은행”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전승공예품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감독

제35조(감독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 업무, 사업지원,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진흥원에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진흥원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취지

- 감정, 지원이나 미술품 구매를 위한 심사 등 공정성과 객관성이 필요한 진흥원의 사업이 미술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진흥원에 대한 관찰 부처의 감독 근거를 마련함.

5) 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6조(별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①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별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진흥원의 업무 중 지원사업 심사, 미술품 구입, 관리, 처분 및 미술품의 평가 또는 감정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으로 위임받거나 위 업무를 위탁받아 관여한 일반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별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 진흥원의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진흥원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처리한 일반인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 취지

-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에 기하여 공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에 포함된다하여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처벌의 필요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법률해석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2012년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1헌바117) 취지임.

- 이 법에 위 공무원 의제조항을 두지 않는다면, 공공성이 큰 업무를 수행하는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법에 위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진흥원의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으므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 임직원만 공무원으로 의제 처벌되고, 민간위원은 공무원으로 의제 처벌되지 않아 부패행위 예방 및 제재가 곤란하고, 특히 외부에 미술품의 감정 내지 평가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민간위탁업무수행자의 경우에도 그 업무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유사 입법례

「예술인복지법」

제16조(별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별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1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별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마. 권한의 위임·위탁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 미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취지

- 각 지역별 미술계 현황에 실정에 맞는 정책이 입안·실행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미술진흥원이나 기타 민관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미술진흥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주체가 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유사 입법례

「예술인복지법」

제16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 예술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 또는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바.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중 미술품 감정업자의 신고 의무 규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36조제3항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술품 유통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미술품 유통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미술품 유통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취지

- 부칙 제1조제1항은 재판매보상청구권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국내 미술시장의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고 기타 세부적인 제도 마련을 통한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이 필요함. 부칙 제1조제2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일이 2022년 5월 19일라는 점을 감안한 규정임.
- 부칙 제2조는 미술 관련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에게 신고와 관련하여 1년 유예기간을 두어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기득권을 보호하는 경과조치로 필요한 입법임.

제4장 미술진흥 단계적 제도화 방안

1 중기 제도화 방안

1. 국립미술진흥원의 사업 범위 확대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현재 미술 분야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지원의 일관성이나 체계적 통일성 미흡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미술 창작, 기획, 전시 등에 대한 지원, 향유 확대, 유통활성화 촉진, 통합미술정보시스템체계 및 운영, 미술은행 관리, 그 밖에 위탁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된 기관 설립이 필요함.

□ 추진방향

- 현재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국공예문화디자인진흥원,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을 비롯한 기설립된 기관 및 조직들과의 사업 범위 조정이 필요함.

2. 전시(展示) 손실보상제도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일본의 경우 전시회의 주최자가 전시회를 위해 빌린 미술품에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 정부가 해당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에 도움이 되는 전시회의 개최를 지원하고 있음.¹³¹⁾
- 국민의 미술품 감상 기회와 체험 확대를 통해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실의 유무나 원인의 위법·적법에 관계없이 전시 관련 모든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이 제도는 다양한 형태로 세계 선진국에서도 이미 도입을 하고 있는 제도임.¹³²⁾
- 국가가 전시회 주최자가 입은 손해 또는 손실을 배상 또는 보상하는 법리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대해 고의, 과실 또는 하자가 요건이 되지만, 미술품 등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험 지급은 과실 책임에 의한 것이 아님. 그 때문에, 국가배상법으로는 모든 손해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결과책임주의에 근거하는 국가에 의한 보상제도를 수립하자는 취지임.

□ 추진방향

- 전시회의 선정 및 평가액의 사정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평가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즉 이러한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술품의 평가 체계가 수립되어 있어야 함. 보상계약과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고, 잔존물 대위의 법적 문제에 대하여도 미술품의 평가가 선결적으로 판단이 필요함.
- 또한 실제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보상계약과 관련한 대상 미술품별 보상금의 액수의 산정 방법 등에 대해서도 국가 예산이 지원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 적정성과 공정성이 확립된 미술품 평가 체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할

131) 展覧会における美術品損害の補償に関する法律(平成二十三年法律第十七号).

132) 외국의 제도를 소개한 논문으로는, 寺倉 憲一, 美術品の国家補償制度-これまでの経緯と主要国の制度, 일본국립국회도서관, Issue brief (691), 2010. / 蓑豊, 「海外における美術品の国家補償制度-日本での実施の参考として」『美術フォーラム21』8号, 2003. pp.134-136. 참조 / 미국의 제도에 관하여는 Nea Arts, "Insuring Art for Everyone: the Arts and Artifacts Indemnity Program" <https://www.arts.gov/NEARTS/2008v4-new-ways-seeing/insuring-art-everyone>.(2008 NUMBER 4) 참조.

필요가 있음.

- 거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대작 전시회를 해외에서 유치하는 것에는 그에 따라 피할 수 없이 보험료가 급등하게 됨.¹³³⁾ 이러한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국민의 미술품 등으로의 접근성 확대나 지역 간 격차의 시정을 위하여 고액의 차입 미술품 등을 포함한 전시회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도 이미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국가에 의한 보상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서 그에 따른 보험료 등 비용의 합리적 절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¹³⁴⁾
- 나아가, 사무 절차의 간소화나 보험료 경감을 위해서 집단 보험 계약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집단 보험 계약제도는 어느 정도 균질의 미술관 등을 포괄해 우량모집단을 형성하여 위험의 분산·표준화를 시도하고, 동시에 사무의 간소화를 실시해 보험료율의 저감이나 보험의 장기 안정화에 반영시켜 보험비용을 절약하는 방안임. 이러한 집단 보험계약의 도입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위험회피를 위한 시스템을 통한 노력이나 인재양성 등 다양한 지원 시책과 함께 미술관 등의 활동의 충실화나 수준의 향상을 아울러 도모할 필요가 있음.

3. 미술저작권 관리 및 활용을 통한 수익 창출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미술의 특성상 프로젝트의 성공예측이 어렵고, 물적 담보가 부족하여 작가, 기획자, 관련 단체에 대한 민간금융권의 투·융자 유인이 낮음.

133) 1979년에 이미 국가 보상 제도를 도입한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최근 제도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서, 2017년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Communication and the Arts, “Australian Government International Exhibitions Insurance Program.” [https://www.arts.gov.au/documents/australian-government-international-exhibitions-insurance-agie-program-guidelines].(Published 9th Jun 2017) 참조.

134) 다만, 이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업 등 민간업자 영역에 대한 압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위험분산의 측면에서 예외라는 반론이 있음. 또한 적절한 정도로 국가의 부담을 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전시회의 위험을 모든 국가가 맡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는 주최하는 미술관 등에서 자기 부담액을 설정할 수도 있고, 재정 규율의 관점에서 국가 부담의 상한액을 전시회별로 또는 연간예산에 따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국가보상제도를 도입한 미국에서는 사고 방지를 위한 각 미술관의 노력이 미술관 전체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보험료를 낮추거나 실제 보상금액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 이러한 리스크 관리에 관한 기준은 미국 박물관 협회가 마련한 시설, 조직, 운영 등의 평가 기준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함. 이에 관련하여 寺倉 憲一, 앞의 글, p.4 참조.

- 현재 저작물의 거래 비용을 줄이고 합법적인 권리 처리를 통해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디지털저작권거래소 (Digital Copyright Exchange)가 구축되어 저작권 정보를 수집하여 통합저작권관리 번호를 부여하여 제공하고 권리자와 이용자간 장르별 온라인 이용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있으나 미술 분야 저작권 유통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특허와 달리 콘텐츠 분야의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 가치평가센터가 유일함. 그러나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가치평가의 경우 콘텐츠 제작(초기, 중기, 후기) 단계별 사업화 가능성(완성·홍행)을 종합평가(등급, 경제성)하여 금융권에 추천함으로써 투자 연계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업종(분야)이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뮤지컬, 웹툰 6개 분야로 제한되어 있음. 이외에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콘텐츠IP 보증제도'를 2020년 신설하고 장르 다변화 콘텐츠를 제작하려는 기업과 콘텐츠IP를 활용해 문구나 의류 등을 생산하려는 기업, 콘텐츠 체험존 등 IP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 콘텐츠IP 라이선싱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이종산업 기업 등에 대하여 일정등급 이상을 받은 콘텐츠기업에 대한 보증상품을 지원하고 있으나 미술 분야의 경우 영상이나 상품 형태가 수반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 지원을 받기 어려움.
- 따라서 미술 분야에 특화된 신뢰성 있는 가치평가를 통해 미술 콘텐츠를 담보로 금융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추진방향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미술 관련 가치 평가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참고] 추진 사업

- 블록체인 분산앱*을 활용한 저작권보호 시범사업 추진
- *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시스템에 기록되어 특정한 조건하에서 수행되는 응용프로그램
- 미술저작물의 방송배경화면의 거래조성을 위한 블록체인 유통 플랫폼 개발

4. 미술 관련 분쟁 조정 기구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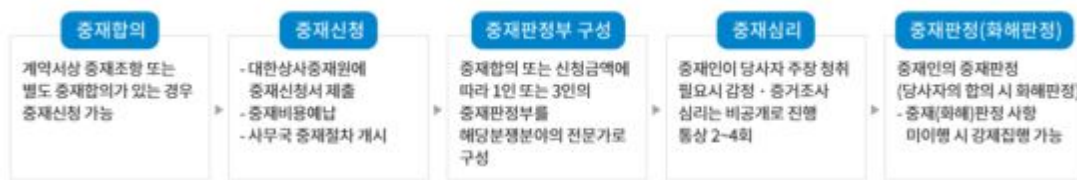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소송 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은 그 효과가 강력한 반면, 시간과 비용, 심리적 측면의 손실이 상당하고, 복잡한 절차 등에서 오는 한계가 큼. 이러한 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소송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소위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 현재 다양한 영역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중재와 조정이 그 대표적인 예임.
- 중재란 분쟁 당사자 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사법(私法)상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하는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사인(私人)인 분쟁당사자들이 선정한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그 해결을 맡기고 최종적으로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율적 분쟁해결절차를 말함.¹³⁵⁾ 반면 조정은 분쟁 당사자가 중립적 제3자인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분쟁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당사자는 조정인의 권고안(조정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분쟁을 해결하게 되는데, 이러한 권고안에는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중재와 차이가 있음. 대법원은 상임 조정위원이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 내에 조정센터를 설치하였음.
- 국내 대표적 중재기관으로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있음. 중재합의가 있으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신청 시에는 중재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재비용을 예납하여야 함. 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은 중재신청서를 접수하면 양측에 중재인 후보자명단(신청금액 5억원 이하는 5인의 후보, 5억원 초과는 10인의 후보. 단, 신속절차의 경우 중재인 사무국에서 선정)을 송부한 후 그 결과를 존중하여 중재판정부 구성을 진행하는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중재인 선정도 가능함. 이후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증거를 제출받는 중재심리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리는 순서로 절차가 진행됨. 중재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중재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1차 변론기일전까지 본안전 항변을 통하여 중재계약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

135)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

면 법원은 소 각하 판결을 하게 되며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중재법 제35조).

- 중재는 5~7개월 정도 소요되어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고, 단심제로 중재판정이 일단 내려지면 소송과 같이 불복절차인 항소나 상고제도가 허용되지 않고 분쟁 당사자들에 대하여 최종적인 효력을 발휘하며, 중재의 모든 절차와 결과가 비공개이므로 당사자의 이미지 훼손 및 신용 실추의 우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음. 특히 중재의 경우 각계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중재인이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판정을 내리므로 합리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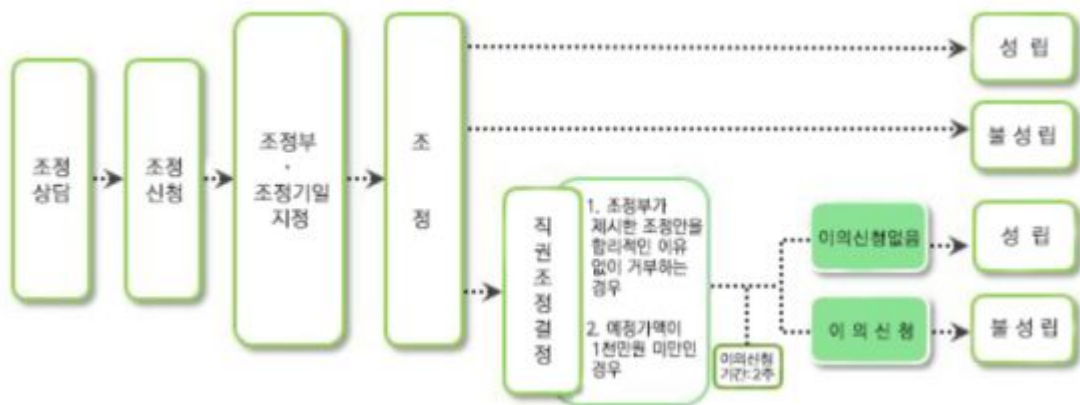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¹³⁶⁾>

- 저작권 관련 분쟁과 관련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¹³⁷⁾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전문적이고 공정한 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정위원 3명으로 구성된 7개 합의부와 조정위원 1명으로 구성된 7개의 단독 조정 등 총 14개의 조정부를 두고 있으며 조정위원들은 법조계, 산업계, 학계 등 저작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며, 각 조 정부는 1인의 변호사 자격을 갖춘 조정위원을 포함하고 있음. 조정절차는 조정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되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며 단,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함. 또한 조정수수료는 신청내용에 따라 1만원에서 10만원까지로 소송비용에 비해 매우 저렴함. 조정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분쟁 당사자는 영업 비밀의 누출, 분쟁 사실의 공개 등에 따른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 특히 2020.08.05.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조 정부는 ①“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또는 ②“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할 때, 직권으로 조정

136) http://www.kcab.or.kr/html/kcab_kor/intervention/intervention_2.jsp

137)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분쟁조정신청서비스 <http://www.copyright.or.kr/customer/adr/main.do>.

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게 됨.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나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분쟁이 종국적으로 종료되고, 그 조정조서 또는 직권조정결정서 정본에 의해 강제집행도 가능함. 그러나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직권조정결정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 결정은 효력을 상실함.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절차¹³⁸⁾>

- 콘텐츠사업자 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설치되어 있음.
- 방송, 대중음악, 연극, 뮤지컬, 만화, 무용, 영화, 문학과 같은 타장르 예술 분야의 경우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별도의 신고처가 있는 것과 달리 현재 미술 분야의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신고·접수된 예술활동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문화예술공정위원회가 내용을 검토한 후 문화예술 분야별 현장 예술인 및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단’을 통한 조정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
- 대한상사중재원은 법조계, 실업계 학계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각 분야 1,5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인단을 갖추고 중재인 선정을 지원하고 있음. 다만 무역, 해사, 건설, M&A, 금융, 지식재산권, 엔터테인먼트, 노동, 부동산,

138) <https://www.copyright.or.kr/kcc/adr/introduction/adjustment-process/index.do>

정보통신, 기타 분야로 전문 분야가 분류되어 있어 미술 분야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역시 저작권 분야에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법조계, 학계, 업계 대표자로 조정위원이 구성되어 왔으나 조정의 효력 강화 등의 이유로 법조계와 학계 중심 편중현상을 보임에 따라¹³⁹⁾ 시각예술분야 전문가는 더욱 부족한 형편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조정절차는 예술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으며 미술 관련 다양한 유형별로 발생하고 있는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유통업자간, 또는 유통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미술 관련 조정 제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 추진방향

- 미술 관련 분쟁의 경우 예술인이 당사자가 되는 불공정행위 이외에 다양한 양태를 보임.
- 따라서 창작, 기획, 전시, 유통 등 미술생태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미술 관련 분쟁을 일관성있고 통일된 기준으로 해결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유관 기관과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진흥원 내 미술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 기구가 신설될 필요가 있음.

* 유사 입법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콘텐츠사업자 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르며, 방송통신과 관련된 분쟁 중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분쟁조정 대상(같은 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외주제작사가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재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각각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콘텐츠 관련 분야의 학과에서 조교

139)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법 선진화를 위한 개혁: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하)』(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6), 572면(이영록, 앞의 논문(주 772), 48면에서 재인용).

- 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3. 콘텐츠 및 콘텐츠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이용자 보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 5.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콘텐츠 육성 업무 또는 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⑤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 ⑦ 조정위원회는 콘텐츠의 종류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⑧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30조(분쟁의 조정) ① 콘텐츠사업 또는 콘텐츠 이용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거나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고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 중단에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제34조에 따라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1.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서를 작성한 때
 -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 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 ⑥ 그 밖에 콘텐츠 관련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 제31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위원의 배우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신청한 사항
 - 2. 위원, 위원의 배우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청한 사항
 - 3.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신청한 사항
- ②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 제32조(자료 요청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분쟁당사자, 콘텐츠사업자 또는 참고인(이하 “분쟁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쟁당사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등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33조(조정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분쟁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34조(조정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양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5조(조정 비용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조정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36조(비밀 유지)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 제114조(조정부) ① 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인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4조의2(조정 신청 등) ①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114조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
- 제115조(비공개)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부의 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제116조(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한 진술은 소송 또는 중재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 제117조(조정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 ②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의 장은 제11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2.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③ 조정부는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직권조정결정서에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조정위원 모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④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조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

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2.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제118조(조정비용 등) ① 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② 조정의 신청 및 절차, 조정비용의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118조의2(「민사조정법」의 준용)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5. 미술 향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구축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021년 6월 소더비 뉴욕은 ‘네이티브리 디지털 : 큐레이션 된 NFT(Natively Digital: A Curated NFT Sale)’라는 온라인 경매를 진행하면서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인 디센터랜드(Decenterland)에 런던 소더비 지점을 오픈함. 이용자들은 가상의 공간에서 작품을 보고 설명을 듣고,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낙찰자들은 자신이 구매한 작품을 크립토월렛으로 받아 자신의 메타버스에 전시할 수 있게 됨. 2021년 7월 서울옥션의 자회사인 프린트 베이커리는 메타버스 전시를 개최함. 이 전시는 NFT 기반 디지털 아트를 메타버스 크립토펙셀(cryptovoxels) 내에 지상 2.5층으로 건축된 가상의 섬인 에디션(eddysean) 갤러리에서 진행되었으며 메타버스와 연결된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작품 소장도 가능함. 이처럼 미술과 첨단과학기술의 결합을 통한 다양한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미술 분야에서 COVID-19 이후 물리적 공간을 가상 현실로 대체하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메타버스(Metaverse)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메타버스(Metaverse)’란 초월·변화를 뜻하는 메타(Meta)와 우주·세상을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친 말로 웹과 인터넷 등의 가상세계가 현실 세계에 흡수된 형태를 나타냄. 메타버스는 단순한 3차원 가상 공간이 아닌 가상과 현실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공간으로 생산활동, 경제활동이 모두 가능함. 이러한 이유 때문에 메타버스는 단순한 가상세계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개개의 가상세계가 서로 연결된 상태나 연결된 상태에서 생성되는

콘텐츠 일체를 의미하기도 함.

- 메타버스에서는 준거법 및 소송 관할 문제, 메타버스에서 타인의 디자인 등록된 디자인을 사용하거나 아이템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디자인권 침해 여부, 메타버스에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아이템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 상표권 침해 여부, 실존하는 건축물, 조각상 등 저작물을 가상 공간에서 재현했을 경우의 저작권 침해 여부, 메타버스에서 유명인사의 캐릭터를 자신의 아바타로 사용하는 경우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메타버스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현실세계에서의 권리행사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대체불가능토큰(NFT)이 메타버스의 주요 디지털 자산으로 주목받으면서 메타버스 내 저작권 침해를 비롯한 다양한 법적 쟁점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미술품 구입을 희망하는 고객이 갤러리나 옥션을 통해 작품 가격을 지불하고 작품의 실물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미술품 유통이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작품의 “지분을 매매하고 소유”하는 형식을 도입한 블록체인 기반 미술 플랫폼은 미술품 매매와 소유의 개념을 분산과 공유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대체하면서 미술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¹⁴⁰⁾
- 2021년 3월 11일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JPG 확장자를 가진 300메가바이트(Mb)가량의 디지털 그림 파일인 '매일: 첫 5,000일(Everydays: The First 5,000Days)'이란 작품이 930만 달러(약 784억 원)에 팔리면서 NFT(Non 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 기술이 적용된 미술품 판매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아트앤가이드가 최초로 미술품 분할소유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총 6개 업체(2021년 3월 기준)가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 NFT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된 디지털 자산으로 작품의 생성시간, 소유자, 거래내역 등의 정보를 분산해 저장하는 방식으로 위변조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특히 그동안 거래가 어려웠던 디지털 아트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NFT는 기존의 가상자산과 달리

140) A. Whitaker and R. Kräussl (2018, June). Blockchain, Fractional Ownership and the Future of Creative Work(방문 일자: 2021. 3. 20. <https://ssrn.com/abstract=3100389>)

코인 등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고유 가치가 중요한 요소인 미술품의 거래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음. 작품의 소유권뿐 아니라 저작권을 NFT로 분할해서 거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미술시장의 저변 확대와 대중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지니고 있음.

- 특정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거래 참여자들이 거래 내역을 검증하고 대조함으로써 상호 간 신뢰에 기반을 둔 거래를 가능하게 하며 특히 모든 거래기록을 해쉬코드로 서로 연결하여 저장하되,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나누어 저장하는 분산화된 방식은 중간 유통 매개자 없이 창작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줌. NFT 아트의 창작자 및 현재의 소유자가 직접 저작물 유통의 주도권을 갖게 되고, 누구나 제작자, 발행인이 될 수 있어 현재의 유통 플랫폼 중심의 유통체제가 재정립되는 계기가 되고, 콘텐츠 유통의 생태계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을 수 있음.¹⁴¹⁾
- 또한 NFT의 출처, 발행 시간 및 횟수, 소장 이력 및 기타 정보가 저장되지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그 공개성과 투명성으로 인해, 위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술 유통시장 질서 교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위작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¹⁴²⁾
- 또한 NFT는 블록체인을 통해 작품의 창작시기, 공표시기 등이 자동기록되어 저작권 증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저작권을 활용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음.¹⁴³⁾ 상당수의 국가에서 저작권은 등록이나 납본 등 형식적 절차 없이 발생하므로 작품이 각국의 저작권 등록기관에 등록되는 등록률이 높지 않고, 개별 국가의 집중관리단체에 신탁되는 경우도 제한적임. 인터넷에 유통되는 콘텐츠 중에는 저작자 표시나 권리관리정보의 표시도의 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콘텐츠 중 누가 저작자인지 알 수 없는 고아 저작물(orphan work)이 많이 양산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블록체인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등록과 권리증명이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저작권 인증제도 대체가능성이나 기존 저작권 관리 시스템과 연계한 역할분담도 고려할 수 있음.¹⁴⁴⁾ 블록체인 기반 NFT 플랫폼에 참여하는 저작권 관련 거래 당사자

141) 박경신, “NFT 아트를 둘러싼 저작권법 쟁점에 대한 검토”, 2021 저작권 학술대회: 새로운 플랫폼에서의 저작권 쟁점 자료집(2021.6.11.), p.74.

142) VerisArt 와 같은 신생 스타트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작품의 정보와 소유권, 거래기록의 저장은 물론,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판매기록을 지속해서 업데이트하여 분산 저장하는 방식으로 위작이나 각종 변조 위험을 방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143) 박경신, 앞의 글, p.73.

들은 디지털 기호화되어 익명으로 남지만, 거래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됨. 스마트 계약¹⁴⁵⁾에 의해 거래와 대금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거래 중개자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사전에 설정된 저작권 사용료 분배율에 따라 정산과 분배도 동시에 이루어짐.¹⁴⁶⁾ 또한 유통뿐 아니라 저작권 관리와 보호차원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저작권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 해결이 가능함. 입력된 저작권에 관한 내용이 입력 이후 변경되지 않은 정확한 정보라는 것을 인증하는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의 특성에 따라, NFT는 권리취득 분쟁과 침해 판단에서 그 해결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으며 불법 복제 및 공유에 대한 기록이 블록체인 위에 저장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추적기능을 활용할 수 있음. 이외에도 미술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이처럼 블록체인 기반 미술 플랫폼은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동시에 검증하기 때문에 사후 조작이 불가능하고, 거래에 참여한 사람에게 거래 내용이 공개되므로 안전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기술적 장점 이외에도 기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일반인의 미술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신진 예술가 발굴과 육성을 통한 창작 및 전시 기회 확대한다는 점에서 수평적 위계 구조를 통한 미술품 소유의 분권화, 작가-관객의 공유와 협업의 개념을 직접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확고하게 구축된다면 문화민주주의¹⁴⁷⁾ 구현을 위한 실천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미술품 소유권 관련 정보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에 관한 논의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지만, 미술시장이 가지고 있는 폐쇄성 때문

144) 박경신, 앞의 글, p.75.

145)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은 블록체인의 핵심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탈중앙화 인프라이다. 이와 달리, 코드로 설계된 계약은 중앙화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코드로 설계된 계약은 다른 집단이나 사용자에게 의해 계약 내용의 변경, 종료, 삭제가 가능하지만, 스마트 계약은 계약 내용이 서면 동의서에 저장되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다.

146) Monegraph와 같은 서비스는 디지털아트나 사진처럼 라이선스 활용이 빈번한 장르의 경우, 작품을 직접 웹상에서 등록하면 이미지 사용 기록을 추적하고 기록하여 저작권료를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47) 문화 민주주의는 “참여로서의 문화, 동등한 권리로서의 문화, 실천으로서의 문화”를 추구하며, “시민 스스로를 위한, 시민 스스로에 의한” 문화 활동을 장려함. D.Y. Won, “Characteristics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Cultural Policy and Search for the Timely Change”, Humanities Contents, Vol. 32(2014), pp. 219-245. 문화민주주의는 다수의 대중이 스스로의 문화를 창조해 나갈 권리를 위해 대중의 예술 참여 기회의 균등성, 문화의 생산수단에서의 동등한 접근을 강조함.

에, 미술품 거래 이력의 추적이 가능한 실효적 시스템의 구축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NFT 기반의 데이터를 통해 거래 이력의 투명화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미술품 거래 시스템에 새로운 변화 계기가 될 수 있음. 나아가 추급권 도입 및 그 집행을 위한 행정상 부담 및 비용 소요의 문제를 경감해 줄 수 있음.

-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등기부 등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과 별개로 저작권 침해 NFT 아트의 유통, 위작의 NFT화의 문제와 함께 여러 가상화폐와 마찬가지로 NFT 역시 불법 금융 거래에 악용되거나 투기세력의 시세 조작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21년 5월 31일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작가의 작품 3점이 NFT화되어 온라인 경매에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시장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나, 박수근과 김환기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유족과 재단측이 반발하고 나섰고 위작 논란까지 함께 제기되자, 경매를 진행했던 업체는 경매를 중단한 바 있음.

□ 추진방향

- 이와 같은 미술 향유 환경 변화가 시장 지배적 현상으로 대두될 가능성도 있으나, 종래 미술품 유통과 병행하여 그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융합이 지속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앞으로의 시장의 추세 변화와 기술의 변용이 미술 향유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임. 따라서 이를 연구하고, 융합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필요함. 또한 조사와 분석에 필요한 인력이 미술시장의 이해를 토대로 그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글로벌 시장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학계와 미술계, 기술 분야의 융합적 연구가 마련되어야 함.
- 메타버스 환경에서 이용자는 직접 콘텐츠를 창작하면서 타인의 저작물을 소비하는 '프로슈머(prosumer)'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메타버스 구현에 있어서 콘텐츠 제작 단계 및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의 재료 콘텐츠(micro-contents)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DB 구축,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적 안정성 담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
- 특히 NFT는 미술품의 위치, 설명 등만 기재되어 있어서 NFT 거래가 이루어

지더라도 미술품이 직접 전송되는 것은 아니며, NFT 메타데이터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접근 가능할 뿐임. 따라서 미술품의 물리적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링크가 제공되는 형식이므로 링크는 영속성이 없는 만큼 구매 후 저작물이 사라질 수도 있고, 링크가 사라진 NFT를 구매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급부의 불안정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IPFS(InterPlanetary File System)를 이용하여 파일을 저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는 만큼 법적 불안정성이 있는 상황임. 따라서 NFT 거래의 유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또한 블록체인 기반 NFT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여부와 관련해서는 데이터의 불변성이라는 블록체인의 특징으로 인하여 저작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정보 삭제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감안하여 블록체인 기반 NFT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 통지 및 삭제 규정(Notice&Takedown) 법리가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OSP의 면책 조건 및 범위에 대한 검토 및 입법적 논의가 필요함.¹⁴⁸⁾

6.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개편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는 1972년 8월 14일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당시에는 제13조에서 ‘건축물 미술장식’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됨.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건축물에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지역민의 예술체험 및 예술가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메세나를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에 도입됨. 도입 당시에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가 권장 사항으로 규정되었으며 국민 문화 기본권과 작가 창작활동 진흥을 목적으로 1995년 건축물 미술작품 의무화가 시행됨. 특히 선택적 기금제를 통해 출연된 기금으로 공공미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미술 작품에 대한 국민들의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더욱더 확대할 수 있게 되었음.¹⁴⁹⁾

148)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박경신, 앞의 글, pp.85-89.

14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 포털, <https://www.publicart.or.kr>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공공미술포털사이트 (www.publicart.or.kr)에 의하면 총 18,659점의 건축물 미술작품이 설치되어 있음.¹⁵⁰⁾

(단위: 건, 백만원)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10.	계
출연 건수	2	9	18	18	31	42	46	76	66	308
출연 금액	145	902	1,010	1,144	2,716	3,181	4,762	8,138	8,545	30,543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대신하는 기금 출연 현황(기준: 2019. 10.10)>

□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상 건축물미술작품 제도의 이관

- 건축물 미술작품 조항은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당시부터 문화예술의 발전의 도모라는 측면에서 점에서 의미있는 조항이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포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항은 아님.
- 건축물 미술작품이 미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감안하고¹⁵¹⁾ 미술진흥법이 가지는 독자적 측면과 조화를 이루고 정책의 일관성을 꾀하기 위해 관련한 사업을 미술진흥법으로 이관하고 문화예술진흥법상 해당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이관한다면 전담기관의 변경이 필요함.

□ 사후 관리의 한계 및 건축주의 사후 관리 부담

15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 포털, <https://www.publicart.or.kr>



<화랑 판매방법별 작품판매 여부(출처: 2020 미술시장실태조사(2019년도 기준))>

151) 2019년 건축물미술작품은 총 설치금액 974억 원에 886점의 작품이 설치되었음.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은 제15조에서 시·도지사는 건축물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미술장식품의 철거·훼손·용도변경 및 분실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서 행정관청이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원상회복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아무런 제재수단이나 벌칙 조항이 없어서 원상회복 명령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음.
-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은 원상회복 의무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건축물 미술작품은 건축주의 재산인 건축물의 소유권과 운명을 함께 할 가능성이 크므로 철거 또는 매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 게다가 실외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경우 변경이나 훼손에 노출되기 쉬움. 그러나 현행 법의 해석상 건축물 미술작품의 수명이 없는 “영구설치를 전제”¹⁵²⁾로 하고 있어 건축주의 사후관리 부담이 큼.
- 건축물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 되거나 분실되는 경우 이에 대한 회복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건축주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조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건축주의 귀책사유가 일부라도 인정되는 경우와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할 수 없는 경우가 경합되어 발생하는 경우에도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함.

□ 건축주의 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의 충돌 문제

- 실외에 배치되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경우 일반 미술저작물과 달리 지역사회의 취향이나 시민들의 민원에 민감하며 변경, 훼손에 노출되기 쉬워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의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많음. 특히 공공재인 동시에 건축주의 사유재인 건축물 미술작품의 경우 위치 변경이나 철거 또는 폐기를 둘러싸고 건축주의 재산권과 작가의 저작인격권이 충돌할 수밖에 없음. 이와 관련하여 ‘도라산역 벽화’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벽화의 소유권자가 이 사건 벽화를 떼어낸 후 소각하여 폐기한 행위는 이 사건 벽화의 “소유권자로서의 권능을 행사한

15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 공공미술 토크시리즈 - 공공의 조건, 예술의 선택 자료집”(2012), p.76.

것”으로 “이에 대하여 원고가 동일성유지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원고가 저작물본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대가도 지급 받은 이상 그 저작물이 화체된 유형물의 소유권자인 피고의 그 유형물 자체에 대한 처분행위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이 보호하는 ‘저작물의 동일성’은 저작물이 화체된 유형물 자체의 존재나 귀속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저작물의 내용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설시함. 나아가 “만일 저작인격권자가 저작물 원본의 소유권 양도 후에도 동일성유지권을 유보하고 소유권의 행사에 대하여 언제라도 이를 추급할 수 있게 한다면, 저작물의 소유권자로 하여금 저작물 보유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과도한 부담을 갖게 하여 오히려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해할 우려도 있다”고 설시하였으며 나아가 “장소특정적 미술이란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개념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 다른 저작물에 비하여 특별한 보호를 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함¹⁵³⁾

□ 관련 법률 및 유사 입법례 검토

- 건축주의 미술작품 설치와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병행을 골자로 한 문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534, 발의일자: 2019. 9. 18.)에 의하면 공동주택과 같이 다수의 미술작품을 설치할 때, 일부 작품이 심의에서 수차례 부결되는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어 이에 따른 건축비용 증가, 입주지연 등의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를 포기하고 기금으로 출연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의 미술작품 감상기회를 박탈하는 등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제도의 본래 취지인 국민 문화 향유권 및 작가 창작활동 진흥을 실행하기 위한 취지에서 작품설치와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미술작품 설치의무 미이행분에 한정함)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¹⁵⁴⁾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안 제9

153) 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나31842판결. 반면 법원은 “이 사건 벽화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손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복원 과정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벽화를 다시 제작한 후 다른 곳에 전시하거나 보관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었으며”, “피고가 이 사건 벽화를 소각할 예정임을 원고에게 미리 알렸다면 원고는 자신의 작품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시 매수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함. 이 판결은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95666 판결을 통해 확정됨.

154) 문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34) 제안이유

조 제2항의 표현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를 대신하여 “미술작품 설치와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을 병행”하는 것만 인정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미술작품 설치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미술작품 설치금액에서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를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라고 반영함으로써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거나 그 밖에 미술작품 설치와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병행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그 표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이 있음.¹⁵⁵⁾

□ 사후 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정

-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은 건축물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지사가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건축주가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이행 강제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건축물 미술작품이 철거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 작품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해당 건축주 자신이 이행할 수 없는 비대체적인 행위일 수도 있고, 일부 수선 등은 해당 건축주가 이행할 수 있는 대체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효적인 행정 대응방안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 행정상 강제집행으로 대집행, 집행벌(이행강제금)을 규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 과태료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인 행정질서벌로 이는 벌금이나 과료인 형벌과 다르고, 형법총칙이 적용되고 행정질서 목적을 위해 규정되는 행정형벌과 다름. 반면 이행강제금이란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그 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 이행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이행이 없을 때에는

155)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34) 검토보고서(국회입법조사처, 2019.11)

일정한 금전적 강제를 부과할 것을 계고하고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그 기간 안에 이행이 없는 경우 그 금액을 부과하는 행정상의 간접적인 강제 집행수단임. 이행강제금을 규정한 대표적인 개별 법률로서 현행 건축법 제80조의 이행강제금을 들 수 있음.¹⁵⁶⁾ 종래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에는 대집행, 행정상 강제징수, 집행벌, 직접강제 등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은 그 중 집행벌에 해당함. 이행강제금도 일정한 금전적인 부담이 과해진다는 것을 통지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과태료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한번 행정형벌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같은 사안으로 다시 처벌할 수가 없고, 과태료가 부과된 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지만,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재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 (예, 위법한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청의 시정명령 후에 그 위반이 제거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후에도 다시 위반이 제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됨. 이러한 성격으로 이행강제금은 동일한 사건에 있어서 과태료 또는 형사벌과도 병과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반복하거나 증액이 될 수 있고 다른 징계수단을 대체할 수도 있음.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행정 목적 달성에 강력한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지만, 법률에 그 요건과 부과 대상, 횟수, 부과금액 등이 정해져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행강제금의 부과에는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를 명확하게 확정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부과하여야 하는 엄격한 요건이 따라야 함. 그러나 미술작품의 설치 및 훼손 복구 등 사후관리 불이행에 관하여 이행강제금을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① 건축주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이행 여부가 비대체적 작위의무일 수도 있고, 대체적 작위의무일 수도 있으며, 특정한 경우 해당 미술작품의 복구 자체는 건축주로서는 이행하기 어려운 의무가 될 수도 있는 점, 또한 그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한 판단 여부를 (미술 및 기타)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해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②

156)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훼손의 복구 또는 재설치 등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축주에 대하여 상당한 이행 기한을 부여하고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의 본질상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한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볼 때, 최초의 이행강제금도 포함되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회피할 수 있는 건축주의 행위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점, ③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작품의 설치를 건축주의 의무로 규정함과 아울러 그 작품 설치에 대체하여 일정한 기금 출연의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미술작품을 설치한 경우 사후 관리의무에 관하여 건축주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는 경우, 규제로서의 동 제도의 성격을 감안할 때 과도한 의무 부과로 인하여 제도적 취지와 정당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④ 만일 건축물 미술작품이 설치된 건축물에 설치 당시와 명령을 발할 당시 건축주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그에 관한 원상회복명령이 새로운 건축주에게 부과될 수밖에 없다는 점등을 고려하면, 그 해당 건축주로서는 과도하게 자유와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 따라서 이행강제금의 방안보다는 그에 관련하여 선택 가능한 집행 방안으로, 문화예술진흥법상 시·도지사는 해당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의 원상회복 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 조례¹⁵⁷⁾를 정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법 제22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및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참조)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제27조 제1항).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상 시·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시·도에 설치된

157) 지방자치법 제15조,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는 것이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

미술작품에 대하여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이때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므로, 문화예술진흥법의 위 규정에서와 같이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사무일 뿐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사무라고 할 수 없고, 그에 관련한 과태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음. 문화예술진흥법상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의무에 관한 내용 및 건축물 미술작품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과태료는 행정적 제재처분이고,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며 기관위임사무라는 점에서, 법률에 부과 근거가 필요하고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이후, 건축주 변동 등으로 인해 건축주와 건축물 미술작품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는 현재의 건축주가 과태료 부과 대상임. 다만 만일 건축물을 재건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는 새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의무가 부과되므로 이는 원상회복 의무라고 볼 것은 아니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할 수 없음.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이의 제기에 대해서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함. 건축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선택적 기금으로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원상회복을 위한 지원금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건축주의 귀책사유가 일부라도 인정되는 경우와 건축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가 경합되어 발생하는 경우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 중 일정한 비율에 대하여 지원을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보조금 지원의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행령과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건축주의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한 개정

-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소정의 경우 소유권자의 관리행위(철거·변경) 및 처분행위(철거·매각)를 허용함. 미술작품이 중대한 손상을 입어 복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일반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등과 같이 미술작품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경우에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된 작품의 철거 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¹⁵⁸⁾ 다만 건축주의 소유권과 작가의 저작인격권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미한 위치 변경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사전 신고 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¹⁵⁹⁾ 아울러 미술작품이 구조적인 안전성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경우, 해당 작품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경우, 중대한 유지 또는 보수비용이 드는 경우 등에는 시·도의 해당 부서 공무원이 긴급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미술작품을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되 이러한 철거 조치 후 소정의 기간 내에 작가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이러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고,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수리, 재설치, 유지 또는 폐기 등을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작가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¹⁶⁰⁾ 미술작품의 상태가 미적 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유지 또는 보수비용이 드는 경우, 다른 작품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등 소정의 경우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미술작품의 매각을 허용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만 미술작품의 매각 대금은 원래의 작품을 대체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음. 미술작품의 변경 등의 사항, 철거나 폐기 등의 처분행위, 처분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작가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필요하며, 매각 등 처분행위와 일정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작가의 우선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작가가 해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함.¹⁶¹⁾

158) 이에 대하여 참조할 만한 외국의 입법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에서 공공미술에 대한 사후관리를 규정한 San Francisco - Administrative Code Sec.3.19 APPROPRIATION FOR ART ENRICHMENT OF PROPOSED PUBLIC BUILDINGS, ABOVEGROUND STRUCTURES, PARKS AND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JECTS와 시소장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규정한 Policies and Guidelines for the Civic Art Collection 의 내용이 있다.

159) 이동기·박경신, 건축물 미술작품의 관리에 관한 법적 개선방안 연구, 법학논총 Vol.26 No.1,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2013), p.60

160) 이동기·박경신, 앞의 논문, p.61.

161) Policies and Guidelines for the Civic Art Collection 7.5.2

□ 건축주의 재산권과 저작자의 저작인격권간의 이익 균형 도모

- 미술작품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술작품이 원래 설치된 장소에서 유지될 수 있는 작가의 권리에 일정한 기간 동안의 시효를 규정해 작품 설치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건축주가 자신의 건축물 또는 토지에 설치된 미술작품을 제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이 경우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작가에게 자신의 미술작품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는 경우 작가의 저작인격권 보호와의 이익형량을 도모할 수 있음. 건축물 미술작품의 경우 변경이나 훼손에 노출되기 쉽고 건축주의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철거 또는 폐기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¹⁶²⁾

2 장기 제도화 방안

1. 미술진흥기금 설치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규정되어 있으나 미술진흥이라는 미술진흥법상 고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기금 조성이 필요함.
- 미술진흥법에 따른 창작, 기획, 전시 활동 등의 지원과 유통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미술진흥기금의 운용·관리 주체는 한국 미술진흥원으로 하고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함.
- 다양한 재원을 통해 미술진흥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재원사용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 가능처를 명확히 함.

샌프란시스코 사카운티가 작품을 변경, 철거, 파괴하거나 교체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예술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 예술위원회는 시의 의도와 예술가에게 대한 소유권 이전, 저작권 포기 등 가능한 선택사항을 등기우편으로 예술가에게 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162) 이와 관련하여 스위스 저작권법 제15조는 “저작물 복제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원저작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수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저작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파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유자는 이에 대해서 재료 가치 이상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저작권법은 §106A(a)(3)(B)에서 저작물의 파괴를 금지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 기부금품의 경우 한국미술진흥원이 수령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지원 대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함.

□ 추진방향

- 미술진흥기금은 한국미술진흥원이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도록 함.
- 미술진흥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미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를 대신하는 건축주의 출연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함.
- 미술진흥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한국미술진흥원은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부하는 자가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미술진흥기금 설치의 취지를 감안하여 용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미술의 창작, 기획, 전시활동의 지원, 미술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 전문인력양성, 국제 미술 교류 및 해외 진출 지원, 유통활성화 및 정보화, 통합미술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용, 한국미술진흥원의 운영에 드는 경비,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술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이 여기에 해당함.

□ 전문가 의견

- 현행 문화예술진흥기금과 별도의 기금 설치 필요성과 사용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문화예술진흥기금과 마찬가지로 미술진흥기금의 고갈 문제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 유사 입법례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관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기금의 설치 등) ①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3.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2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2.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3.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4. 소형영화·단편영화의 제작 지원
- 4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의 지원
5.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유지 및 개선 지원
- 5의2.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6.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영화 관련 사업 지원
- 6의2. 영화 관련 교육·연수 등과 관련된 사업 지원
7. 예술영화·독립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 영상문화의 다양성·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 8의2. 영상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지원
- 8의3.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지원
9. 비디오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사업 지원
10.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 10의2. 남북 간 영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1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12. 그 밖에 영화산업 및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지원

② 제1항제12호의 사업에 집행될 수 있는 기금의 액수는 연간 기금 집행 액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2. 공공수장고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공공수장고의 개념은 공공에서 설립과 운영을 담당하여, 소장작품의 공적인 활용과 공개를 통해 공공성을 강조하는 개념이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그 수장고의 운용으로 인한 혜택이 국민 누구에게나 돌아갈 수 있는 수장고를 의미함.
- 1990년대 이후 미술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약해졌던 작품관리 문제가 제기, 공공·민간·창작 영역 등 전반에 걸쳐 작품의 수집, 소장,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 특히 정부는 각 부처에 분산 보관되어 전문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분실 및 폐기된 정부미술품도 존재, 정부부처가 보유한 수장고도 포화상태에 놓여있으며 이마저도 전문적인 수장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옴. 2010~17년 여러 차례 정부미술품 허술한 정부미술품 관리 지적, 2012년 정부미술은행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됨. 2010년 이후 343개의 정부미술품이 훼손, 수복불능, 파손, 소유주 반납 등으로 폐기됨.

- 지역 미술은행의 경우도 수장고가 따로 마련되지 않았거나 별도의 보존 및 수복 관련 규정이 없음. 지역 수장고가 있는 경우에도 항온항습 및 방화 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공간부족으로 손상 위험이 있고, 역시 전문적인 담당자 부재함.
- 전국 공·사립미술관 중 관대 보존수복부서를 갖추고 있는 미술관은 매우 드물고 비전공자(보존수복)나 비전문가(학예사)가 처리하고 있음.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은 미술은행 작품관리 시스템(ABMS)을 통해 구입한 작품과 작가 정보 등 자료 DB를 전산망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월1회 수장고 정기점검 및 연1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안정적 작품상태를 유지하고, 훼손 시 원형 보존을 위해 수복함.

국내	해외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청주)	프랑스 프낙과 프락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연면적 19,855㎡ 청주시 위치 공사립 미술관 소장품의 경우 일부 보존처리 서비스를 지원	국립현대미술재단(FNAC): 기탁제도 운영, 수장고 6,600㎡, 파리 신도심 위치 지역현대미술진흥재단(FRAC): 작품보존을 위한 수장고 역할, 각 지역별 22개 설치

<국내 수장고와 해외 수장고의 비교>

-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산하 2018년 완공된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청주)’는 정부 소유 미술품 중 부실하게 관리되는 민간 주요미술품 2만여 점을 집중적으로 수장·보존할 수 있는 보존 시스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상시대여를 통해 민간으로 확대하여 국민 향유기회를 확충할 방침임. 청주시의 용도 폐기된 옛 연제조창 건물 남측동(약 19,855㎡)을 리모델링해 총 사업비 577억원, 규모 11,000여점을 수장하는 ‘국립 미술품 수장·보존 센터’인 문화시설로 재창조함. 위 센터는 스위스 바젤의 샤울라거 미술

관을 롤모델로 하여, ‘개방형 수장고’를 표방하였으나 설계안이 수차례 변경되면서 미술관 기능이 퇴색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음. 5층 건물에 10개의 수장공간과 15개의 보존과학공간, 1개 기획전시실, 2개 교육공간, 조사연구기관인 라이키움, 소장품 4,000점과 미술은행 소장품 1,100점 등 5,100여 점(2020 기준)을 소장함.

□ 추진방향

- 공공수장고는 기존 미술관 내에 부속된 시설로 취급되어 오던 수장고를 뜻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고, 미술관 관리 체계하에 놓인 기구가 아니라 미술은행의 역할에 일정한 기능을 하지만 그 운영체계와 조직 면에서 하나의 기관의 성격을 지님.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미술은행 소장 작품을 중심으로 독립수장고 조성을 하는 기능을 하고, 공공수장고의 발전적 방향으로 정부미술품 이외에도 작가의 이용 주체성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수장 공간의 확보와 아울러 수장 시스템의 전문화를 추진함. 소장품의 수집, 보존, 관리, 활용 등 전 기능을 갖추고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관리체계를 갖추어 전시기획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음. 수장환경을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선진화된 운영체계와 시설 및 설비가 갖추어져야 함과 동시에 전문 인력의 확보와 DB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함.

3. 미술진흥지구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미술지원의 밀집성으로 인해 재정지원 및 행정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집적성으로 인해 지역미술진흥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
- 북경의 ‘다산즈(大山子) 798’와 ‘M50’으로 불리며 널리 알려진 상해의 모간산루(莫干山路) 50호 지역은 중국의 대표적인 예술지구임. 북경의 798예술특구는 약 640,000㎡ 규모의 공장지대로서, 원래 1950년대에 독일이 설계를 맡아 공장지역으로 형성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 점차 빈 공장이 늘어나면서 남은 공장 건물 일부를 세놓기 시작했고 특히 2002년부터 지역의 예술가들이 저렴한 임대료와 넓은 공간을 찾아 이곳에 작업실과 전시공간을 꾸미면서

예술창작촌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함. 798예술특구의 폐공장은 기본적으로 임대를 통해, 예술가의 창작실과 전시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입주자들과 베이징시가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임차인들이 공간을 조성하고 있음. 798예술특구는 200여개의 창작 공간과 400여개의 갤러리, 50여개의 패션샵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스튜디오, 레스토랑, 카페, 출판사 등이 입주해 있고 예술, 매체, 광고 등 다양한 산업군을 형성하고 있음. M50은 상하이시 보타구에 위치한 예술단지로, 1930년대에 세워진 제분공장과 방직공장들이 1990년대부터 공장들이 외곽으로 이전하고, 제분·방직산업이 쇠퇴하면서 공장들이 문을 닫고 폐공장이 늘어났으나 1998년 모간산로 50번지 근처 서소주로 일대의 폐공장을 활용한 창작활동이 일어나면서 건축가들과, 영화, TV, 디자인 및 미디어 회사들이 임대해서 입주함. 베이징 798 예술특구처럼 저렴한 임대료와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술가들이 자연스럽게 몰리게 됨. 2004년 상하이 시정부가 '상하이 창작산업단지'로 지정하면서 모간산로 M50라는 정식명칭을 얻었으며 현재 모간산로 M50은 중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됐고, 국제적인 문화예술 교류의 장이 되었음.

- 부산시 금정구 금사공단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예술지구_P>는 유휴 공장 부지를 활용하여 재개발된 예술공단의 개념으로, 공연기획 전방위 예술극장 <금사락>, 예술현장을 기반으로 한 인문학 공간 <아트랩 P>, 미술가 레지던시 및 기획전시 운영 <창작공간 P>, 사진가 레지던시 및 기획전시 운영, 사진 미디어 공간 <포톤>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과 부산경남 지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문화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전시, 공연, 아티스트 레지던시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를 관련 예술가들이나 인근 지역민들에게 소개하며, 수용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종다양한 사람들이 더 많은 문화예술활동 등을 향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조성됨.

□ 추진방향

- 미술진흥지구의 조성의 경우 부처간 협력 및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미술진흥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미술진흥지구에 창작공간 등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할 수 있으며 기존의 건축물을 활용하게 하거나 그 건축물에 지원시설의 입주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시·도지사는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미술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미술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미술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세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효율적인 미술진흥지구 조성 및 운용을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미술진흥지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미술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미술진흥지구 조성사업은 주무부처, 지방자치단체, 이용자,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개발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폭넓은 참여와 협상과정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함.

□ 전문가 의견

- 미술진흥지구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조성되는 경우 지역미술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

* 유사 입법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 및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그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집적화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단지 등에 문화산업진흥

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할 수 있으며 기존의 건축물을 문화산업진흥시설로 활용하게 하거나 그 건축물에 지원시설의 입주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민간인 등이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및 문화상품 개발·제작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에 따른다.

제26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세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사업의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 달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3(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③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본다.

제29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진흥시설의 확충과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시설, 문화산업단지, 제작자·투자회사·투자조합이 문화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창업자 및 창업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문화산업진흥시설과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장비, 설비 및 부품 등에 대하여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8조(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제5장 결 론

- 미술 분야의 진흥은 헌법에 정한 문화국가 원리 실현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을 구성하고, 그에 관한 지속적인 성장과 진흥을 위한 국가적 책무는 그 진흥을 위한 제도화를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문화행정으로 발현될 수 있음.
- 창작에 대한 지원을 근간으로, 전시 및 유통 체제를 공정하고 지속발전가능한 현대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미술창작자와 기획자, 전시를 비롯한 유통과 감정 등 미술 관련 서비스업에 미술 진흥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화할 수 있는 법률안을 제언함.
- 이를 통하여, 시장의 활성화로 인한 대중의 미술 향유가 창작자에게 환류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유럽 각국에서 시행 중인 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전시 및 창작 지원을 위한 제도와 함께 비영리 미술 관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안공간과 비엔날레 등 지원 근거를 제도적으로 정비함.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진품증명서 등의 발행을 명문화하고, 시장 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미술 유통업 등 미술 관련 서비스업자들에게 신고제를 도입하여 시장 질서의 현대

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이러한 제도를 실행하고 법안의 제도들을 담당할 국립미술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안에 미술은행과 감정센터를 둠으로써, 미술품 거래와 시장 질서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통 체계의 투명화 구축을 위한 감정 제도의 정비와 동시에 국민의 미술품 향유를 위한 공공미술품 관리를 체계화하고자 함.
- 이상의 제도적 기반을 입법화하기 위하여, 별지와 같이 3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 본 법의 목적, 정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창작과 전시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강구, 실태조사, 유통활성화, 통합미술정보체계 구축 등의 규정과 함께 미술진흥정책위원회 설치 및 한국미술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규정하는, 「미술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연구의 결론으로 제시함.

별지

미술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향유를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술”이란 시각적 매체를 이용하여 예술적 경험을 창출하는 일련의 예술활동을 말한다.
2. “미술품”이란 작가가 미술 관련 활동을 통하여 산출한 유·무형의 창작물을 말한다.
3. “미술기록물”이란 미술 활동 과정 중에 생성된 기록 중 보존할 가치를 지닌 기록을 말한다.
4. “미술전시”란 미술품 및 미술기록물(이하 “미술품등”이라 한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보여주는 활동을 말한다.
5. “미술 관련 서비스업”이란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이 경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미술품 유통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 가. 화랑업: 작가를 발굴 또는 양성하고 미술전시를 통해 미술품을 대여, 중개하거나 판매하는 업
 - 나. 미술품 경매업: 경매(「민사집행법」 제271조에 따른 경매는 제외한다)를 통하여 미술품을 중개하거나 판매하는 업
 - 다. 미술품 대여업: 가목 이외에 업으로서 미술품을 대여하는 업
 - 라. 기타 미술품 유통업: 미술품(미술품에 대한 권리 포함)에 대하여, 위 가목부터 다목 이외의 방법으로 중개, 판매 또는 대여하는 업
 - 마. 미술품 자문업: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 방법으로 미술

품(미술품에 대한 권리 포함)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 결정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는 업

7. “미술품 감정업”이란 미술품의 진위(眞僞)나 예술적, 문화적, 역사적 의미와 수준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표시한 감정서를 발급하는 업을 말한다.
 8. “미술 전시업”이란 미술품등의 전시를 기획, 조직, 개최, 또는 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9. “미술 관련 서비스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제19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게 신고하고 미술품 유통업 또는 미술품 감정업을 하는 자
 - 나. 미술 전시업을 하는 자
 10. “공공미술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소장품은 제외한다.
 - 가. 제11호에 따른 정부미술품
 - 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 교육청이 소유하는 미술품 중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미술진흥원에 관리 업무가 위탁된 미술품
 - 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 소유하는 미술품 중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미술진흥원에 관리 업무가 위탁된 미술품
 11. “정부미술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이 소유한 미술품으로서 예술적 가치 또는 보존가치가 높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정·관리되는 미술품을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미술과 미술품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미술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술진흥 중·장기 기본방향
2. 미술진흥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3. 미술 창작·기획·전시 활동의 지원
4. 미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5.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6. 미술 관련 공정한 거래질서의 구축
7. 미술품의 유통 활성화
8. 공공미술품의 관리
9. 미술 향유 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10.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법인·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확정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에서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미술진흥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미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미술진흥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미술진흥 정책 방향 설정
3. 미술진흥 지원사업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위원은 미술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의 이해와 관련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미술진흥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창작 환경, 유통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 관련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창작, 유통 및 향유

제8조(창작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 창작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9조(전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미술문화 향유를 확대하고 미술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술 전시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 전시 활성화를 위하여 기획자, 미술 전시업자, 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창작공간등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 창작, 전시 및 보존·보관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이하 “창작공간등”이라 한다)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작공간등을 직접 제공하거나, 민간이 운영하는 창작공간등에 대해서 유지보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창작공간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창작공간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지역미술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미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역 간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협력과 교류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과 관련한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관련 자료의 출판 및 배급
2.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조사·연구
3.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4. 그 밖에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의 기반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수급의 균형 및 다양성 확보
2. 산·학·관의 협력기능 강화
3. 전문인력의 연수·교류·재교육 기회 확대
4. 연구기반 강화
5. 전문인력의 관련 분야 진출 기회 확대
6.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진흥이나 미술 관련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15조(미술 관련 서비스업 활성화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은 미술관련 서비스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미술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미술 관련 서비스업의 활성화 및 정보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은 미술 관련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 관련 서비스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 ① 국가는 미술진흥을 위하여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미술시장 현황 분석 및 평가
2. 그 밖에 공정한 거래 및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미술의 창작, 기획, 전시, 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불공정한 계약을 계약상대자에게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미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미술 관련 용역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소비자 보호) ① 정부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미술품

유통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작가 또는 미술품 유통업자로부터 미술품을 구매한 자는 해당 미술품의 진품 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진품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발행하여 줄 것을 해당 작가 또는 미술품 유통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표준계약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미술 창작, 기획, 전시, 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누구라도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서에 ‘표준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술인 복지법」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9조(미술품 유통업 또는 미술품 감정업의 신고) ① 미술품 유통업 또는 미술품 감정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에 관여하는 미술품 유통업 또는 미술품 감정업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미술품 유통업 또는 미술품 감정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20조 제1항에 따라 영업폐쇄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⑤ 제1항에 따라 미술품 유통업 신고를 한 자(이하 “미술품 유통업자”라 한다) 또는 미술품 감정업 신고를 한 자(이하 “미술품 감정업자”라 한다)가 폐업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으면 신고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제20조(영업정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술품 유통업 또는 미술품 감정업을 하거나, 미술품 유통업자 또는 미술품 감정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때
 2.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4. 제19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에 같은 조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업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영업의 승계) ① 미술품 유통업자 또는 미술품 감정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미술품 유통업자 또는 미술품 감정업자(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가 종전의 미술품 유통업자 또는 미술품 감정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등은 그 양수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종전의 미술품 유통업자 또는 미술품 감정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9조제5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여 신고사항이 말소된 미술품 유통업자 또는 미술품 감정업자가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그 미술품 유통업자 또는 미술품 감정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미술품 유통업자 또는 미술품 감정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22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의 창작, 기획, 전시, 유통 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함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품등의 불법복제·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 정보의 부착
2.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연구·조사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술 창작, 기획, 전시, 유통, 미술품등의 관리·보존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력·시설·기자재·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 연구·조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미술 관련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술진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 개인에게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제3장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제25조(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① 작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미술품의 소유권이 작가로부터 최초로 이전된 이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 관련 서비스업자가 매도인, 매수인 또는 중개인으로 개입하여 해당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도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권리(이하 “재판매보상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매가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

2.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른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
 3. 매도인이 원작자로부터 작품을 직접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재판매하는 경우로서 재판매가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양도될 수 없으며, 작가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30년 간 존속한다. 다만, 재판매 당시 작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작가의 법정상속인이 재판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26조(재판매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①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미술진흥원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다만 그 단체로 지정받으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판매보상청구권을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재판매보상청구권자로부터 그 권리행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기관 또는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 또는 그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을 때 제출한 업무규정의 중대한 부분을 위배한 때
 3. 기관 또는 단체가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재판매보상청구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재판매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업무에 관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재판매보상금을 분배하려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분배하지 못한 보상금(이하 “미분배 보상금”이라 한다)이 발생하면 그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미술 진흥을 위한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및 취소, 재판매 보상금 징수·분배 절차 등과 관련한 업무규정, 수수료 징수, 재판매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정보제공청구권)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재판매보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품 유통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정보를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정보의 범위, 청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립미술진흥원

제28조(국립미술진흥원의 설립 등) ① 미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미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진흥원이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진흥원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분원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⑥ 진흥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 2. 미술 분야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 3. 미술진흥을 위한 창작, 기획, 전시 지원

4. 미술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 지원
 5. 미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
 6. 미술품 및 작가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관련 사업
 7. 미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8. 미술진흥을 위한 유통활성화 지원
 9. 미술진흥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10.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11. 공공미술품의 관리 및 처분
 12. 소비자의 권익 보호
 13. 이 법에서 정한 업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업무
 14. 미술 관련 기관이 진흥원에 위탁하는 업무
 15.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⑨ 진흥원은 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진흥원의 지원을 받으려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그 업무의 위탁 또는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진흥원이 아닌 자는 국립미술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경비의 지원 등) ①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②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진흥원이 기부받은 물품 중 미술품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제31조(감사) ① 진흥원의 직무 및 회계, 공정한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명을 둔다.

- ②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 ③ 감사는 상임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 ① 진흥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이사회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3조(감정센터) ① 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미술품의 평가 등 감정업무를 전담하는 감정센터를 둘 수 있다.

- 1.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미술품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 2. 세무 당국으로부터 과세를 위하여 미술품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 3. 정부미술품의 구입 및 대여, 재평가, 매각 및 처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제30조 제2항에 따라 기증 또는 기부받은 미술품에 대한 심사 및 평가에 필요한 경우
 -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감정센터는 제1항에 따른 감정을 실시한 때에는 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진흥원이 정한다.

제34조(미술은행)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미술진흥원 내에 미술은행을 설치한다.

- 1. 공공미술품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지원
- 2. 제5조제2항제8호에 따른 공공미술품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원
- 3. 정부미술품의 구매, 자체제작, 선정, 기증 또는 기부 등 취득에 관한 업무 지원
- 4. 국가기관이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선정 업무
- 5. 정부미술품 및 국가기관이 설치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정부미술품 등”)의 유지 및 보존, 대여, 활용 등에 관한 업무 지원
- 6. 정부미술품등의 처분에 관한 업무 지원
- 7. 제2조제10호나목 및 다목에서 정한 위탁 미술품의 관리

8. 법령에 따라 미술은행의 업무로 정해지거나 위탁받은 업무
9.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 ② 미술은행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35조(감독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 업무, 사업지원,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진흥원에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진흥원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 제36조(별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①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② 진흥원의 업무 중 지원사업 심사, 미술품 구입, 관리, 처분 및 미술품의 평가 또는 감정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으로 위임받거나 위 업무를 위탁받아 관여한 일반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③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 진흥원의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진흥원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처리한 일반인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 미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술품 유통업 또는 미술품 감정업을 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중 미술품 감정업자의 신고 의무 규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36조제3항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술품 유통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미술품 유통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미술품 유통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산공립문화재단의 성과를 알리는 책

연구책임자 이동기(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변호사)

공동연구원 최태만(국민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김남시(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교수)

박경신(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연구보조원 임수아(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한효정(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발행일	2021년 6월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전화	(044)203-2000
팩스	(044)203-3447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